# 2019년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Ⅱ)

2019. 9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 2019년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Ⅱ)

2019. 9


**기 획 재 정 부**

**보조사업평가단**

# 목 차

## 제1부 서 론


### 제1장 국고보조금의 개요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3
2. 국고보조금의 기능 ····· 5
3. 국고보조금의 유형 ····· 6
4. 국고보조금 근거 법률의 주요 내용 ····· 10

### 제2장 국고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 13
2.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 14
3. 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 14
4.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 15

### 제3장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근거 및 방법

1. 법적근거 ····· 24
2.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특징 ····· 24
3.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정 ····· 25
4. 2019년 평가단 구성 ····· 28
5. 평가 절차 ····· 30
6. 평가 기준 ····· 31

## 제2부 평가결과 분석

### 제1장 최종 판정 결과 총괄 분석


1.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 결과 ····· 37
2. 예산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 ····· 37
3. 판정유형별 국고보조금 감축 규모 ····· 38


### 제2장 부처별 판정 결과


1. 부처별 최종 판정결과 ····· 39
2. 부처별 세부사업 최종 판정결과 ····· 45


### 제3장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1. 보조사업 재평가 개요 ····· 66
2. 보조사업 재평가 결과 ····· 66


## 제3부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1. 대법원 ····· 77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87
3.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 99
4. 기획재정부 ····· 109

5. 교육부 ····· 1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91
7. 외교부 ····· 299
8. 통일부 ····· 319
9. 법무부 ····· 381
10. 국방부 ····· 411
11. 행정안전부 ····· 431
12. 문화체육관광부 ····· 541
13. 농림축산식품부 ····· 935
14. 산업통상자원부 ····· 1303
15. 보건복지부 ····· 1521
16. 환경부 ····· 1787
17. 고용노동부 ····· 1917
18. 여성가족부 ····· 1997
19. 국토교통부 ····· 2073
20. 해양수산부 ····· 2187
21. 중소벤처기업부 ····· 2387
22. 국가보훈처 ····· 2507
23. 식품의약품안전처 ····· 2527
24. 국가인권위원회 ····· 2581
25. 방송통신위원회 ····· 2595
26. 금융위원회 ····· 2695

27. 국민권익위원회 ····· 2703
28. 방위사업청 ····· 2713
29. 경찰청 ····· 2725
30. 문화재청 ····· 2735
31. 농촌진흥청 ····· 2847
32. 산림청 ····· 2901
33. 특허청 ····· 2981
34. 새만금개발청 ····· 3011
35. 해양경찰청 ····· 3019

#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
경관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과수생산유통지원
국가인증농식품지원
국제농업협력(ODA)
귀농귀촌활성화지원
기능성식품산업육성
기후변화실태조사
농기계임대
농기자재수출활성화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농식품유통교육훈련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농업협상대응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도매유통활성화지원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말산업육성지원
밭작물산업육성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
수리시설유지관리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시도가축방역
쌀소비활성화
원예시설현대화
원원종및원종생산
자조금지원
재해대책비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전통발효식품육성

#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직불
종자산업기반구축
축산물HACCP지원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자조금
취약농가인력지원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자재지원
폐업지원
푸드서비스선진화
품종심사및재배시험
피해보전직불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가축개량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0.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1.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9.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5.3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감축과 사업방식변경을 권고함<br>·내내역사업 중 '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사업의 내용은 홍보관을 건축하는 것이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은 우수한 형질 선발 개량 사업이 아니라, 농가에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br>·벌통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150백만원을 감축함(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신축지원은 2018년 종료)<br>·한우·젖소 개량사업과 정액의 농가보급을 농협경제지주(가축개량원)를 통해 일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재 사업추진방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사업방식변경])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와「축산법 시행령」에 사업의 추진과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둠

○ 가축개량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④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강제규정은 아님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한우·젖소개량지원, 돼지경제능력검정, 종축등록사업지원, 기타가축개량지원, 지역단위 한우암소개량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모두「축산법」제3조에 명시된 가축의 개량·증식과 연관성이 있음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축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축산법 시행령」
**제4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조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업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목적은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계획교배의 반복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을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가축의 생산성, 축산물의 품질향상,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정과제는 아니나,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보조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자치단체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유우군능력검정사업, 한우암소검정사업, 한우육종농가 육성, 종돈검정사업 등에 참여하는 양축농가, 지자체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임. 또한 가축개량을 통한 성과의 잠재적 수혜자는 가축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얻는 국내 축산농가 전체라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한우·젖소개량지원', '돼지경제능력검정', '가금류개량지원', '종축등록사업지원', '기타가축개량지원',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으로 축종별로 구성되며,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대체로 명확함

- 다만, 일부 사업내용의 경우 보조사업의 목표와의 연계성이 미약하여 내내역사업 조정이 요구됨. 특히 내내역사업 중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신축지원(홍보관))'과 '기타가축개량지원(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사업의 내용은 홍보관을 건축하는 것이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은 우수한 형질 선발 개량 사업이 아니라, 농가에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이 중 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신축지원은 2018년 종료되었으므로 제외하고, 벌통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150백만원을 감축함

○ 동 사업은 각 축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중장기(5년 주기) 및 연도별 (성과지표) 가축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축종별 사업계획을 수립함

- 중장기 목표 및 연간목표(성과지표)

| 지 표 | 2015년 | | 2020년 | | 목표('25년) | 비 고 |
|---|---|---|---|---|---|---|
| 한우 거세우 도체중 | 429kg | ⇨ | 440kg | ⇨ | 451kg | 농식품부고시 |
| 젖소산유량(305일) | 9,103kg | | 9,240kg | | 9,377kg | 제2017-53호 |
| 돼지(두록) 일당증체량 | 658g | | 670.5g | | 683g | ('17.7.12) |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 | | | |
|---|---|---|---|---|---|---|
| | 구분 | '15 | '16 | '17 | '18 | '19 |
| (1) 젖소산유량(kg/두/년) | 목표 | 8,865 | 9,010 | 9,152 | 9,177 | 9,208 |
| | 실적 | 9,103 | 9,142 | 9,298 | (9,269) | - |
| (2) 한우1등급 출현율(%) | 목표 | 62.4 | 68.3 | 69.7 | 69.9 | 72.8 |
| | 실적 | 67.9 | 69.3 | 72.0 | (72.7) | - |
| (3) 돼지산자수(두) | 목표 | 11.4 | 11.6 | 11.9 | 12.3 | 12.6 |
| | 실적 | 11.6 | 11.8 | 12.2 | (12.4) | - |

○ 중장기 및 연간목표 달성도가 비교적 양호하여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가축의 생산성, 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어느 정도 인정됨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 가축개량지원 사업추진으로 축종별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18 가축개량관련 자료)

  * 한우 : 한우 거세우 도체중 매년 5.3kg, 1등급 출현율은 매년 2.6%씩 증가
  * 젖소 : 305일 유량은 매년 120kg, 유지량은 4.9kg, 유단백량은 4.3kg씩 증가
  * 돼지 : 두록 90kg 도달일령 매년 0.68일 단축, 요크셔 산자수 연간 0.45두 증가

- 국가단위 가축개량에 의한 국내 축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면, 약 5,451억원의 전체 소득증대 효과

  * 한우 : 체중증가 및 고급육 생산으로 1,992억원/년
  * 젖소 : 산유량 증가로 일반농가 대비 3,185억원/년
  * 돼지 : 비육돈 생산성 및 산자수 향상에 따른 274.3억원/년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젖소산유량(kg/두/년)'과 '한우1등급 출현율(%)', '돼지산자수(두)'로 최근 4년간(2015-2018)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과지표가 축종별로 설정되어 보조사업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파악 가능함

○ 동 사업은 20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보통' 판정을 받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민간이 시행해야할 사업이기는 하나,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씨가축(종축)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역량이 아직 높지 않은 점,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사업과의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으나, 양축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축산선진국과의 FTA 확대 등으로 수입축산물과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요구되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실집행율은 2016년 83.9%, 2017년 97.2%, 2018년 98.8%로 3년 평균 93.3%이며, 이월금이 비교적 많음

- 실집행율은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특히 돼지경제능력검정 사업의 경우 한돈혁신센터 용역지연 및 준공지연 등으로 실집행율이 2017년 84.7%, 2018년 80.2%에 불과함(* 2018년 종료)

| | 2016 | | | 2017 | | | 2018 | | |
|---|---|---|---|---|---|---|---|---|---|
| | 예산 | 집행액 | 집행률 | 예산 | 집행액 | 집행률 | 예산 | 집행액 | 집행률 |
| ○ 기능별 분류(계) | 65,164 | 54,673<br>[53,671] | 83.9<br>98.1 | 52,437 | 50,991<br>[51,354] | 97.2<br>101 | 53,699 | 53,096<br>[52,168] | 98.9<br>98.3 |
| · 한우·젖소개량지원 | 47,351 | 47,160<br>[46,341] | 99.6<br>98.3 | 40,204 | 40,134<br>[40,828] | 99.8<br>102 | 40,966 | 40,898<br>[38,095] | 99.8<br>93.1 |
| · 돼지경제능력검정 | 1,768 | 1,768<br>[1,698] | 100<br>96.0 | 1,803 | 1,527<br>[1,306] | 84.7<br>85.6 | 2,903 | 2,329<br>[1,955] | 80.2<br>83.9 |
| · 가금류개량지원 | 500 | 500<br>[500] | 100<br>100 | 1,000 | - | -<br>- | - | - | -<br>- |
| · 종축등록사업지원 | 174 | 174<br>[174] | 100<br>100 | 180 | 180<br>[154] | 100<br>85.6 | 180 | 180<br>[100] | 100<br>56 |
| · 기타가축개량지원 | 371 | 371<br>[261] | 100<br>0.7 | 150 | 150<br>[66] | 100<br>0.4 | 650 | 650<br>[31] | 100<br>4.7 |
|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융자) | 15,000 | 4,700<br>[4,700] | 31.3<br>100 | 9,000 | 9,000<br>[9,000] | 100<br>100 | 9,000 | 9,000<br>[9,000] | 100<br>100 |

| | |
|---|---|
| 2016 | – 불용액 발생 사유<br>·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융자) 높은 이자율(2%)에 따른 수요부족(10,300백만원)<br>· 한우·젖소개량지원(91백만원) :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시설비·자산취득비 집행잔액(35백만원), 가축개량기술교육 등 집행잔액(56백만원)<br>– 이월액 발생 사유 : 해당 없음 |
| 2017 | – 불용액 발생 사유<br>·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시설비·자산취득비 집행잔액(10백만원)<br>· 우수종돈 정액농가 보급 지원 및 육종센터 씨수소개량비 수요부족(81백만원)<br>– 이월액 발생 사유<br>· 한돈혁신센터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지연(355백만원)<br>· AI 발생 및 살충제계란 파동에 따른 자부담확보 부족으로 닭경제능력검정소 공사 지연(1,000백만원) |
| 2018 | – 불용액 발생 사유<br>·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시설비·자산취득비 집행잔액(29백만원)<br>· 우수종돈 정액농가 보급 지원 지자체 수요부족(36백만원)<br>– 이월액 발생 사유<br>· 한돈혁신센터 설계변경등으로 준공 지연(893백만원) |

○ 2016년 보조사업 평가결과 1) 보조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정주관기관의 적정성 평가, 2) 인센티브, 패널티 등 보조율 배정방식의 변경을 통한 전체 예산 5% 감축 결정이 있었고,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예산 감축을 이행함

- 보조사업자 선정을 주관하고 있는 관련기관들의 적정성 평가는 일부 이행함

**[2016년 보조사업평가 최종 판정결과]**

1) 자율적 개량추진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나 보조율 배정방식의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주관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을 주관하고 있는 관련기관들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련기관들에 의한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평가결과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보조율을 적용함으로 지원규모를 5% 감축하도록 판정함

**[부처 조치사항]**

1)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함께 매년 초 보조사업자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장 선정시(육종농가, 암소검정사업 농가 선정 등) 농식품부가 함께 선정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사업 실시 중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2017년 예산은 ('16) 64,266 → ('17) 52,437로 18.4% 감소

3) 육종농가에서 선발되는 씨수소의 유전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함

4) 보조율 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자부담을 늘렸고, 자부담 늘린 내역을 시행지침에 명시함

<자부담 규정 명시 예시>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이후 |
|---|---|---|---|---|---|
| 합 계 | 28,171 | 23,316 | 24,272 | 27,430 | 27,430 |
| – 보 조 | 27,104 | 21,118 | 22,272 | 25,280 | 25,280 |
| – 융 자 | | | | | |
| – 지방비 | | | | | |
| – 자부담 | **1,067** | **2,198** | **2,000** | **2,150** | **2,150** |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1에 기준보조율 준수함(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 100%)

- 한우·젖소 가축개량사업은 100% 보조사업(인건비 일부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돼지개량은 원종돈 개량에 필요한 유전자원(정액) 지원 및 사업비에 일부 비용을 지원
- 가축개량에 장기간(최소 6년)이 소요되어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한우 및 젖소는 국가주도로 전액 국고로 지원(인건비 일부 제외)하고, 돼지 등은 민간주도로 검정, 유전평가 등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

○ 재정소요액 추계가 되어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정부가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법에 따라 고시된 가축개량(검정)기관인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종축장)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종축장) 중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전문인력, 종축보유여건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진청 축산과학원에 적합여부 등을 의뢰하거나 협의하고 선정

○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교부 및 정산, 사후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시행지침 및 사업개요(요약본)을 게재

○ 사업시행지침(가축개량사업지침)에 사업대상자 기준 및 지원요건 등을 명시

○ 축산법에 따라 고시된 가축개량(검정)기관인 농협(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

- 한우·젖소 개량사업은 축산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종축 개량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농협경제지주(가축개량원)를 통해 개량사업과 정액의 농가보급을 일괄 수행

- 양돈 개량사업 시행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종축 개량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종축개량협회가 시행

○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교부 및 정산, 사후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함

○ 축산법(제48조)와 축산법시행령(제21)조에는 기금의 운영을 농협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우·젖소 개량사업과 정액의 농가보급을 농협경제지주(가축개량원)를 통해 일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재 사업추진방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보조사업 평가에서도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강화를 요구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관리체계를 사업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

○ 보조금 집행,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농식품부, 가축개량총괄기관(축산과학원), 농협 가축개량원이 축종별 검정참여 조합,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 개선사항,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당 년도,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

- 실집행 현황에 대해 사업담당자, 기금, 부내에서 매월 점검

○ 관련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의 경우 가축개량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련 하위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에도 교부조건을 통해 보조금 집행 및 중요재산관리, 정산, 위반시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안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부정수급자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있고, 해당 규정을 준수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음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사업시행(주관)기관의 현장점검 시 보조금 부정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을 안내

○ 한우육종농가사업,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조합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적절히 선정하고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 함께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고 있고, 참여조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현지 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가축개량지원 사업의 목적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을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각 축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연관규정을 찾을 수 있으나, 재정적 지원은 강제규정이 아님

○ 보조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자치단체이며, 가축개량을 통한 성과의 잠재적 수혜자는 가축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얻는 국내 축산농가 전체라 볼 수 있음

○ 내내역사업 중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신축지원(홍보관))'과 '기타가축개량지원(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함

- 이 중 미래한돈창조혁신센터 신축지원은 2018년 종료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해당예산 150백만원을 감축함

○ 중장기 및 연간목표 달성도가 비교적 양호하여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가축의 생산성, 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어느 정도 인정됨

○ 2016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중 '보조사업자 선정주관기관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요구를 부분적으로 이행하여 추가적 이행이 요구되며, 특히 한우·젖소 개량사업과 정액의 농가보급을 농협경제지주(가축개량원)를 통해 일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재 사업추진방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가축위생방역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8.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8.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 효과성은 인정할 수 있음. 방역활동을 통하여 외부성이 큰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br>·실질적인 수혜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과다함. 보조사업의 내용이 생산과정에서 기업활동에 해당하는 공정에서 정부가 대행해주는 형식의 지원으로 경영체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됨. 지역과 해당농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는 있음<br>·장기적으로 축산업이라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 지역과 해당 농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규모의 일부 감축노력은 필요. 지역과 해당 농가의 부담비율을 높이는 조치 필요<br>·공동방제단 방역활동에 있어서 해태, 부정수급 가능성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조직에 관한 근거규정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가능성 규정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5. 6. 22.>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축산법 제3조의 경우 가축 위생을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가능성 규정

○ 두 조항을 종합할 때 본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명확

○ 국고보조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구축은 정부주도의 필요성

- 전염병에 대한 파급은 외부성이 크고 네트워크효과도 높아 정부개입이 요청되는 대표적인 분야임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피해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가차원의 방역체계로 추진할 필요성 인정

- 축산업이라는 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면이 있으나 연관 산업에도 피해가 미치고 산산업을 넘어서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방역은 전국단위에 효과가 파급된다는 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인 개입이 필요함

- 방역으로 인한 피해와 이를 방지함에 따른 혜택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 방역대상인 지역 모두에 공유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이 필요. 특히 중장기적으로 광역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부담 폭 확대 필요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은 내역사업 ① 가축위생방역본부 운영, ② 공동방제단 운영 ③ 가축질병근절대책지원으로 구성

○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본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조직체계 구성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필요

○ 공동방제단의 활동이 방역성과를 달성하는가 하는 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될 것임

○ 가축질병근절대책지원은 방역지원 활동을 위한 인프라로 방역활동의 성과로 간접적으로 사업성과의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임

○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 어느 정도 성과관리가 되고 있음

○ 다만, 결과지표, 영향지표, 만족도지표 등을 볼 때 사업의 효과의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문제

-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방역활동이 필요
- 방역활동은 외부성에 의하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어려움
- 지역이 혜택을 보는 면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정부와 농가의 1차적 책임에 대한 강화 필요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고려

-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방역사업은 다른 전염병과 달리 고유한 특성이 있어 사업주체와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려

- 방역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필요성이 인정됨

- 감염원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계속되므로 사업을 연장 지속해야 할 필요 인정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사업비가 적정 하게 구성 되었는지 고려

- 지자체 방역직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가축질병근절 사업,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는 있음.

- 방역지원에 대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사업구성으로 파악됨

- 다만 1차적 책임자인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 필요

○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 지를 고려,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지를 고려

- 방역직 인건비 60%, 공동방제단 운영 50%의 보조율로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조율이나 경영체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고려하고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할 여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 질병 발생시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이 크다는 점에서 방역활동에 사회적 가치구현의 의미가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사업]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 따름

○ [지자체사업만 대상]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 지자체 선정에 대한 절차 확인 필요

○ [민간사업 대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보조사업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보조사업자로 적합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잉과 관리에 적절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전반적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감시 강화 필요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방역활동을 통하여 외부성이 큰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방역활동의 1차적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 필요

○ 성과관리에 있어서 영향지표, 결과지표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는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사업은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국가적 보호가 요구되는 축산업 보호와 국민이 소비하는 축산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지원을 유지할 필요

○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 지역, 지방정부와 해당 농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조사업의 규모, 보조율의 조정 필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경관보전직불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8.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판정함<br>·본 보조사업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타당함.<br>·직불금 지급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보조사업을 통해 지방에서 지급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br>·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8년 예산이 2017년에 비해 감축되었고, 2019년 예산도 마을경관보전활동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감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예산편성 시 본 사업의 예산규모를 조정하지는 않되, 2019년에도 이용 및 전용을 포함한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2021년 예산 편성 시 규모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사업 내용, 사업의 수혜자 등이 법령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조직불제),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을 법적인 근거로 하고 있음. 본 조항은 '농촌과 준농촌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 및 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5조(경관보전보조금의 신청대상자)에서는 경관보조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제36조에 따른 경관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타당함.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는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음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도농 간의 격차해소 측면에서 볼 때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일부 있음.

○ 본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실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으로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음. 그러나 그 범위가 넓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아름다운 경관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수혜자의 범위는 직접적인 수혜자의 범위보다는 넓다고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농지에 직접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재배관리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행점검 여부가 보조금 지급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축제와 연계한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관광객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해당 방문객 수가 경관작물 재배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경관보전직불제 도농교류 프로그램 연계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보고된 연계현황이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 이외의 정책수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지원이나 조세지원 등 다른 지원 방식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직불금 지급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보조사업을 통해 지방에서 지급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이에 2010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을 국가사무로 유지하되, 지급사무는 지방에서 처리하는 법정수임사무로 결정한 바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경관보조 직불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 수요의 70% 수준에서 사업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효과가 높은 경관식물 위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본 사업의 2019년 예산은 8,356백만원으로 2018년 예산 9,216백만원에 비해 감축되었음. 이는 마을경관보전활동비 860백만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작물재배직불금 규모는 2019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이 동일한 규모임. 단, 2017년의 작물재배 직불금은 10,400백만원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 본 사업은 사업 특성 상 협약 미이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업으로 예산 삭감이 사업규모의 지속적인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을 예산편성 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름. 그러나 실집행률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에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2016년 결산금액의 9.4%에 해당하는 1,271백만원이 불용됨. 2017년은 예산의 19.2%에 해당하는 2,200백만원이 쌀소득보전고정직불사업으로 전용되고, 결산기준 1.9%에 해당하는 222백만원이 불용됨. 2018년은 밭농업직불사업 예산부족으로 경관보전직불금 중 1,000백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8,216백만원이 자치단체에 교부되어 8,088백만원이 집행됨

- 2016년 예산의 9.4%가 불용되었고, 2017년 2,200백만원이 전용된 후에도 222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또한 2018년 역시 1,000백만원 전용 후에도 불용이 발생하였음. 이는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다만 2018년 예산이 2017년에 비해 감축되었고, 2019년 예산도 마을경관보전활동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감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예산편성 시 본 사업의 예산규모를 조정하지는 않되, 2019년에도 이용 및 전용을 포함한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2021년 예산 편성시 규모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본 사업은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22호의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의 규정에 따라 50%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관작물 재배 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농촌 경관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일정 정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경관보전직불은 시군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가 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자가 이행요건을 수행하는 경우, 이행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시장과 군수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 지구를 선정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을 배정하고 있음

○ 2016년 결산금액의 9.4%에 해당하는 1,270백만원이 불용되었고, 2017년 결산기준 1.9%에 해당하는 220백만원 불용, 19.2%에 해당하는 2,200백만원이 전용이 되는 등 21.1%에 해당하는 2,420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미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지구 선정 및 시도의 작물 재배자 선정이 엄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보여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경관보전직불 사업 시행지침에 이행점검단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단계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연 2회(동계작물1회, 하계작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한하여 경작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작물재배 관리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건이 미이행되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지급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경관보전직불 사업 시행지침에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에 보조금 정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작물재배 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재배 관리 전체 사업지구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있음. 시군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 이행점검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타당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할 목적이라 볼 수 있으나,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필요성도 일부 있음

○ 직불금 지급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보조사업을 통해 지방에서 지급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2016년과 2017년 집행잔액 비율이 평균 15%를 초과하는 바, 재배자 및 재배지역 선정과정의 기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2016년 예산의 9.4%가 불용되었고, 2017년 2,200백만원이 전용된 후에도 222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또한 2018년 역시 1,000백만원 전용 후에도 불용이 발생하였음. 이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단 본 사업의 특성 상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고려가 되어야 함.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예산을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지속적인 예산삭감으로 사업규모가 작아질 수 있음.

### 3-2 정책 제언

○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8년 예산이 2017년에 비해 감축되었고, 2019년 예산도 마을경관보전활동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감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예산편성 시 본 사업의 예산규모를 조정하지는 않되, 2019년에도 이용 및 전용을 포함한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2021년 예산 편성 시 규모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경영이양직불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6.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5.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7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br>·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 사업방식변경이 결정되었으나, 사업종료 가능성과 규모 축소 수준을 포함한 '사업 재설계' 및 '영농규모화'의 목표와 방법, 기한에 대한 종합 로드맵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br>·경영이양직불 사업의 대상자가 소폭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최근 2년 2.1% 감소), 직불금 수급 대상자와 전업농 역시 전체 규모와 신규 인원 규모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최근 3년 21.8%, 51.2% 감소), 사업규모의 축소가 필요함<br>·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 불충분과 직불금 대상자의 절대수 감소를 이유로, 2019년 요구예산 47,200백만원 중 분할지급예산을 제외한 6,365백만원의 10%를 감축하고(636백만원), 사업방식변경을 변경하여 사업을 효율화함('농지 매도 중심 추진', '사업유인력 향상' 및 '영농규모화 종합로드맵'을 포함한 사업 재설계)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과도 연관되므로, 사업시행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있고, 세부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므로,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 근거에 대한 별도 판단이 불필요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을 통해 소득안정을 꾀하고,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82(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및 국정과제 83(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고령농업인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농지를 양수받는 전업농으로, 수혜자 범위가 넓지 않고 특정 집단에 국한되며, 사업의 외부효과 입증 자료가 없어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보기 어려움

- 특히 직접적, 간접적 수혜자 수가 최근 4년간 지속 감소하여, 사업수혜자 범위가 축소됨

※ 직·간접적 수혜자

고령농업인: '15년 22,367명 → '16년 21,252명(△5.0%) → '17년 19,704명(△7.3%) → '18년 17,489명(△11.2%)

전업농: '15년 1,460명 → '16년 1,033명(△29.2%) → '17년 990명(△4.2%) → '18년 713명(△28.0%)

- 도시인구 고령화 및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지원의 도농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고령은퇴농업인은 제외되므로 농촌 고령인구에 대한 국가지원의 면에서도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사업의 수혜자가 농지소유 고령인구라는 사업의 특성상 자치단체별 편차가 큰 편임

<'17년 경영이양직불사업 지역별 수령 인원 및 비율>

| | 합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인원 | 19,704 | 1,044 | 756 | 810 | 2,588 | 4,982 | 6,152 | 2,079 | 1,284 | 9 |
| 비율 | 100.0 | 5.3 | 3.8 | 4.1 | 13.1 | 25.3 | 31.2 | 10.6 | 6.5 | 0.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역사업의 목표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과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비교적 명확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의 [경영이양직불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안정효과(매도이양 9.2%p, 임대이양 농가 8.2%p)', '농지이용 효율화 효과(농지규모화를 통한 기준 면적당 생산비 절감)' 등이 확인되어, '소득안정'의 면에서는 사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 '영농규모화'의 면에서는 관련 성과지표가 없음

○ 성과지표는 '당해 연도 경영이양 계획 면적(500ha) 달성도(~'17년)'로 2015-2017년 3년 동안 초과달성하였으나, 이는 목표치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정한데 이유가 있어, 본 사업의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성과지표 | 달성률 | '15년 | '16년 | '17년 |
|---|---|---|---|---|
| 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 면적(500ha) | 목표 | 570 | 500 | 500 |
| | 실적 | 1,772 | 1,250 | 1,364 |
| | 달성률(%) | 310.9 | 250 | 272.8 |

- 국정감사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 목표치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부처에서는 성과지표를 '신규 경영이양 면적(ha)'에서 '신규 매도이양면적(ha)('18년~)'으로 변경하였고, 2018년도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85.0%)

| 성과지표명 | 구분 | 2018년 |
|---|---|---|
| 신규 매도이양 면적(ha) | 목표 | 200ha |
| | 실적 | 170ha |
| | 달성도 | 85.0% |

**※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규 경영이양 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2015년과 2016년도에는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과도하게 높이 나타나 성과지표 설정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의 성과지표를 새롭게 만들거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

○ 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 '사업재설계', '경영이양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사업방식변경'이 결정되었으나,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

**※ 2016년 보조금 사업 평가결과**

(영농규모화) **영농규모화의 목표와 방법, 기한에 대한 종합 로드맵과의 연계를 통해** 동 사업을 통한 영농규모화의 목표달성기한**과 수준**을 구체화하여, 목표 달성 시점 이후에는 동 사업종료 가능성과 규모 축소 수준을 포함하여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소득보전) 이양농지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지급보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파악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대상·단기·기한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하여, 제도 실효성, 수요자 체감도 및 재정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볼드체 부분은 부처 제출자료에서 누락된 문장임

**※ 2016년 보조금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부처 조치결과**

- 경영이양직불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17.1)하여 '17년 신규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 외 영농은퇴기간(76~80세) 추가, 영농은퇴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간 지급된 직불금 환수
- '18년부터 매도이양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급단가 차등 적용
  (기존) 매도·임대 동일 연 300만원/ha → ('18) 매도 330만원/ha, 임대 250

- (영농규모화) '18년부터 기존 농지규모화사업 및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으로 개편하고 쌀 전업농 위주의 지원에서 2030세대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으로 전환함. 그러나 사업종료 가능성과 규모 축소 수준을 포함한 사업 재설계 자료가 없으며, 영농규모화의 목표와 방법, 기한에 대한 종합 로드맵과의 연계가 이루어지 않음

- (소득보전) 부처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경영이양 면적, 지급단가, 연령별지급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총 4ha(매도・임대 합산)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과도한 지원을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대상·단기·기한을 차등화하는 사업재설계를 이행하지 않음. 다만, 직불제 사업의 특성상 소득수준별 차등화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됨

  ※ 특히 2016년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는, 농지연금제도와 경영이양직불 제도를 연계, 운영하여 노후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령은퇴농민에게는 보조금 지급 수준을 낮추도록 함

- (경영이양 지원자격) 현재 경영이양 지원자격은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으로, 2016년 보조사업 평가에서는 기존의 연령확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요부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축소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부처에서는 사업예산을 소폭 축소함

  ※ 2016년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는, 경영이양 대상자와 신청가능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경영이양 대상자 연령상한을 70세→74세로, 전업농은 60세→64세 이하로 확대), 수요를 확대하는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요부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축소하도록 함

  ※ 예산: '16년 573억원→ '17년 545 (△4.9%)→ '18)년 497(△8.8%) → '19년 472(△5.0%)

○ 국정감사 결과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임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농지 매도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도와 임대에 따른 직불금의 차등지급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임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

농지임대가 농지매도보다 수익이 크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임대를 선호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라는 사업의 목적과 달리 임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근본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농지 매도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도와 임대에 따른 직불금의 차등지급 방안을 모색할 것

- 이에 부처에서는 2018년부터 지급단가를 차등화하여((기존) 매도·임대 동일 ha당 연 300만원 → (변경) 매도 330, 임대 250), 매도중심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매도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음

| 구 분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 액 |
| 계 | 750 | 61,737 | 570 | 58,998 | 500 | 57,339 | 500 | 54,517 |
| 신규매도 | 100 | 120 | 180 | 252 | 200 | 221 | 200 | 328 |
| 신규임대 | 650 | 780 | 390 | 467 | 300 | 2259 | 300 | 492 |
| 분할지급(매도) | 1,495 | 3,636 | 1,396 | 4,114 | 1,423 | 4,163 | 1,507 | 4,173 |
| 분할지급(임대) | 18,426 | 53,508 | 16,823 | 50,544 | 17,257 | 48,043 | 16,529 | 45,967 |

| 구 분 | | 실적 | | |
|---|---|---|---|---|
| | | 면적(ha) | 인원(명) | 금액(백만원) |
| 계 | | 16,925 | 17,489* | 44,383 |
| 신규 | 소계 | 921 | 852 | 1,133 |
| | 매도 | 170 | 242 | 199 |
| | 임대 | 751 | 671 | 934 |
| 분할지급 | | 16,004 | 16,669 | 43,250 |

○ 2018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우수' 한 것으로 평가받음

※ 경영이양직불은 단위사업 농가소득보전에 포함되어 재정사업평가 실시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민간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실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 면에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농촌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농가 비율과 농가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경지규모 1.0ha 미만 영세농가가 많아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 | '15년 | '16년 | '17년 |
|---|---|---|---|
| 전체 | 1,088,518 | 1,068,274 | 1,042,017 |
| 65세 이상 농가<br>(경지규모 1.0ha 미만) | 582,005<br>(423,252) | 592,670<br>(438,517) | 606,642<br>(450,217) |
| 65세 이상 농가 비율 | 53.5% | 55.5% | 58.2% |
| 경영이양보조금 수혜 | 22,367 | 21,252 | 19,704 |

○ 경영이양직불 사업과 농지연금은 사업의 대상과 목적(고령농업인 소득 안정)이 유사하나, 전자는 보조금 사업, 후자는 융자사업으로 사업방식의 차이가 커 통합은 어렵다고 판단됨

※ 농지연금 :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농지연금은 소유농지가격에 비례해 수령액이 책정되는 반면,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수령액이 결정되어 지가가 낮은 지역의 은퇴농 소득안정에 기여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야기되지는 않으나 사업의 성격상 국가주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예산내역은 '경영이양직불금'과 '사업운영비(2019년 기준 전체 사업비 중 6.4%, 직불금의 6.9%)'로 구성되며, 사업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교육홍보비로 최근 3년간 사업비 중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집행율을 높이고 적격여부 및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의 중요성을 볼 때, 내역별 예산편성비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직불금: '16년 53,782백만원→ '17년 50,960(△5.2%)→ '18년 46,461(△8.8%) → '19년 43,978(△5.3%)
※ 사업운영비: '16년 3,557백만원→ '17년 3,557(-)→ '18년 3,201(△10%) → '19년 3,201(-)
※ 사업운영비 비율: '16년 6.20%→ '17년 6.52%→ '18년 6.45% → '19년 6.78%

○ 경영이양직불금 사업의 규모는 2017년 기준 고령농업인 19,704명(신규 1,174명), 전업농 990명(신규)으로, 이에 따라 예산액이 54,517백만원임

-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대상자(65-74세 농업인 중 선정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가 소폭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불금 수급 대상자와 전업농 역시 전체 규모와 신규 인원 규모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사업수혜자 감소비율이 사업대상자 감소비율보다 훨씬 큰 것은 사업의 유인력 부족 혹은 효과성 부족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지를 소유한 고령농(통계청) : '15년 328천명 → '17년 321천명(△2.1%)
※ 사업수혜자(고령농업인): '15년 22,367명 → '18년 17,489명(△21.8%)
※ 사업수혜자(전업농): '15년 1,460명 → '18년 713명(△51.2%)

○ 본 사업의 실집행율은 2016년 100.0%, 2017년 98.7%, 2018년 99.4%이며, 불용액 규모는 2017년 685백만원, 2018년 278백만원임

○ 「보조금법 시행령」과 농업소득보전고정직불의 기준보조율 100%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고보조율 100%는 적정함. 다만 농업분야 및 수산업분야 조건불리 보조금 보조율을 고려하고, 자치단체별 형평성 차원에서 국고 80%, 지방비 20%를 검토해 볼만함

###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지원과 2030세대 청년농 육성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농업·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공헌하며, 사회적 가치(⑧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정됨

- 부처 제출 자료를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농 영농정착 및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확인함

※ **(소득안정 지원)** '17년까지 고령농업인 105,629명에게 6,175억원 지원(1인당 5,846천원)
* ('15) 554억원(22,367명) → ('16) 547억원(21,252명) → ('17) 503억원(19,704명)

※ **(영농정착 지원)** '17년까지 농지 78,563ha를 전업농 등 74,497명에게 지원(1인당 1.05ha)
* ('15) 1,772ha(1,460명) → ('16) 1,250ha(1,033명) → ('17) 1,364ha(990명)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고용효과 자체 평가 시 10억원 당 고용효과 10.8명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함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고 있음.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조금 지원 적격대상자를 선발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계획에 의거,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교부·집행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의 목표
>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 3. 시·군 또는 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 계획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4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규정 되어있음

○ 경영이양직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관리(반기1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 경영이양직불사업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00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제13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제1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은 자 및 양수자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함(제15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업무지침]에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사후관리 조사, 지급약정 해지 및 보조금 환수절차 등을 규정함

○ 분기별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약정자의 사망여부 확인('17년 270명, 행자부 협조), 농지 소유권 변동여부 확인(국토부 협조), 타 직불금 중복수령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기관운영, 농업생산기반정비, 지역개발, 농지은행 및 직접 지불사업 등 업무전반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함('18년 4월)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중 약정위반 등으로 환수한 사례는 있으나, 대부분 약정변경 사유 발생 사실의 신고를 지연한 경우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례는 없음. 부정수급 관리체계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20,979명 중 약정위반 등으로 환수대상은 964명(133백만원, 0.04%)이 발생함. 환수사유는 주로 임대차 계약 해지(373명, 38.7%), 경영이양자 사망(237명, 24.6%), 임대 농지의 소유권변동(154명, 16.0%) 등

○ 부정수급 방지는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량검증(타 기관 정보 연계)', '농업경영체 DB와 연계한 사업 대상자 종합 관리', '경영이양 지급대상자 온-오프라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목적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을 통해 소득 안정을 꾀하고,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하고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있음.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연관규정을 찾을 수 있음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고령농업인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농지를 양수받는 전업농으로, 수혜자 범위가 넓지 않고, 직간접적 수혜자 모두 최근 4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음

○ 내역사업의 목표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과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는 것임. 성과지표는 '당해 연도 경영이양 계획 면적(500ha) 달성도(~'17년)'로 2015-2017년 3년 동안 초과달성하였으나, 이는 목표치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정한데 이유가 있고, 신규지표인 '신규 매도이양면적(ha)('18년~)'은 2018년도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85.0%)

○ 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 '사업재설계', '경영이양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사업방식변경'이 결정되었고, 이에 부처에서는 매도중심사업 추진을 위해 단가 차등화 및 영농은퇴기간 도입 등을 실시하였으나, 영농규모화 및 소득보전과 관련된 사업방식개선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음

- (영농규모화) 사업종료 가능성과 규모 축소 수준을 포함한 사업 재설계 자료가 없으며, 영농규모화의 목표와 방법, 기한에 대한 종합 로드맵과의 연계가 이루어지 않음
- (소득보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대상·단기·기한을 차등화하는 사업재설계를 이행하지 않음. 다만, 직불제 사업의 특성상 소득수준별 차등화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됨

○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대상자가 소폭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최근 2년 2.1% 감소), 직불금 수급 대상자와 전업농 역시 전체 규모와 신규 인원 규모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최근 3년 21.8%, 51.2% 감소)

○ 2016년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 불충분과 직불금 대상자의 절대수 감소를 이유로, 2019년 요구예산 47,200백만원 중 분할지급예산을 제외한 6,365백만원의 10%를 감축하고(636백만원), 사업방식변경을 변경하여 사업을 효율화함(농지 매도 중심 추진, 사업유인력 향상을 포함한 사업 재설계)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식품부 |
|---|---|
| 사 업 명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 보조유형 | 자치단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6.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3.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3.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8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25억원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br>·실질적 수혜자에 비해 재정지원 규모가 과다하며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br>·공영도매시장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시장 도매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br>·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늘리거나 융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점검 등의 결과가 사업 집행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명확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보조금과 융자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지출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법률상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수탁독점권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의 주체가 명확하므로 국고보조의 타당성이 약함

-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나 시장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는 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산물 판매를 맡기게 되어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은 판매금액에 정률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공영도매시장이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 2016년 가락 도매시장 5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 19.9%, 당기순이익 약 292억 원을 기록함

○ 공영도매시장 거래량 증가로 인한 일차적이고 금전적인 혜택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돌아가며,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경우 출하 및 판매의 편리성과 거래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발생할 수 있음

-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등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간접적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나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시설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진 도매시장의 경우 1인당 하역 물량 및 팔레트 출하 비율의 증가 추세가 다른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함

- 낙후시설의 개선을 통해 시설유지 및 보수 비용은 감소함

○ 규모가 크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가락 도매시장이 보조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예산이 불용 되거나 사업비 증액 및 사업 기간 확장 시도를 통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사업계획의 효과적인 집행이 미흡한 편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현행 국고보조와 지자체 보조가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융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국고보조를 감축하고 자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융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공영도매시장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수익성이 낮은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자부담 대신 융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용자 만족도 결과를 보면 차량 동선이나 점포 규모 등 기본설계에서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들이 존재함

○ 보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비 구성과 기간이 변경되는 등 사업비 구성에 대한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16년도 정산결과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보조와 융자는 상당한 규모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노후 공영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화재 등의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및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 가능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매년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공모하며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면평가 시 사업계획서 종합 평가를 시행하여 비용부담 능력의 적정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여건 등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지자체가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반기별로 농식품부가 현장점검 추진

- 지자체 현장점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지자체의 추진상황 점검 이행 노력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농식품부 현장점검을 통해 제시된 유통물류 및 건축 시설 전문가의 검토 의견과 지적사항은 다음 분기에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공사 입찰, 계약, 사업비 지급 등을 관리하고 있음

○ 가락시장의 경우 2단계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인 채소2동 사업이 당초 2020년까지 완료되어야 함에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사업 집행의 적정성이 미흡함

- 사업 진행 중에 사업비 증액 요구가 이루어지는 등 사업 선정 이후 책임성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집행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부과되는 페널티 등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미흡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사후관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짐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적은 없음

○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을 관리함

○ 사후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제도 마련이 미흡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짐과 동시에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수탁권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과 거래량 증가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게 발생하는 구조임

○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보조해야 하는 타당성이 낮으므로 보조 규모를 감축함과 동시에, 공영도매시장의 개별적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자부담을 높이거나 융자 비중을 높이는 등의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함

○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집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과하여 잦은 공사계획 변경과 예산증액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3-2 정책 제언

○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생산자의 이용 방식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이후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거래물량의 변화가 공영도매시장의 낙후시설 때문인지 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변화 흐름 때문인지 파악하여 이를 공영도매시장 정책에 반영해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과수생산유통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7.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9.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7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해당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소요액 수준을 감안하여 2019년 예산의 5% 수준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판정함<br>·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인정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br>·사업의 목표와 성과가 추상적인 수준이고 제시된 성과는 기본적으로 투입에 관한 것으로 산출이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상의 목표도 안정적으로 달성되지 않고 있음<br>·사업포기자로 인한 미집행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br>·해당 사업은 사업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산출 중심의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어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를 법적 근거로 두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제1항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를 통해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들고 있음

- 또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사업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는 제1항의 규정은 농업 발전 혹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할 수 있다’로 판단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인정됨

○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지원 대상이 된 과수농가이며 과수사업의 경쟁력 강화나 농민의 소득 증대 등은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은 부족함

- 또한 소비자의 혜택이나 국가경쟁력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역시 부족함

○ 2003년 대비 2017년 6대 과종 농가소득이 47% 증가하는 등 해당 사업을 통한 효과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성과는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경제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했을 때 증가 수준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기는 힘듦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현재 제시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는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세부 목표의 제시가 필요함

- 제출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거점APC 평균매출액 성장률과 주요 과실 단위 면적당 농가 조수익(생산액) 증가율 등 두 지표 모두 목표가 안정적으로 달성되지 않고 있음

| 성과지표 | 가중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목표대비 달성률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① 거점APC 평균 매출액 성장률(%)(%) | 0.6 | (당년 평균 매출액-기준연도('10년) 평균 매출액) / 기준연도 평균 매출액 * 100 | 목표 | 50 | 70 | 80 | 85 |
| | | | 실적 | 66.9 | 76.5 | 77.9 | (88.2) |
| | | | **달성률(%)** | **133.8** | **109.3** | **97.4** | **(103.8)** |
| ② 주요 과실 단위 면적당 농가 조수익(생산액) 증가율(%)(%) | 0.4 | (당년 10a당 생산액 - 기준연도 10a당 생산액) / 기준연도 10a당 생산액 * 100<br>*주요과실 :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단감<br>*기준년도 : '09~'13년 최대, 최저 농가 조수익(생산액)을 제외한 3개년 평균 | 목표 | 신규 | 10 | 15 | 5 |
| | | | 실적 | 신규 | 8.3 | 10.8 | (17.3) |
| | | | **달성률(%)** | **-** | **80** | **72.1** | **(345.7)** |

○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목표는 대부분 산출지표가 아닌 투입지표로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매년 사업포기자로 인해 발생하는 미집행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사업의 성과가 안정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임

○ 다만 해당 사업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농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사업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농어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내역 사업이 대부분 산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 목표만 제시하고 있어 사업비의 적정한 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해당 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보조율을 산정한 것으로 평가함

-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소요액을 상회하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 '17 | '18 | '19 | '20 | '21 | '22 | 연평균 증가율 |
|---|---|---|---|---|---|---|---|
| '17~'21 계획 | 587 | 565 | 541 | 530 | 525 | - | △2.8 |
| '18~'22 요구 | - | 565 | 576 | 651 | 586 | 651 | 3.6 |
| '18~'22 심의 | - | 565 | 537 | 521 | 510 | 505 | △1.8 |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사업시행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와의 상호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함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의 과정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의 집행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함

- 농식품부·지자체·관계기관 합동 사업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재 및 처벌에 관한 규정도 적절하게 구축한 것으로 평가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동 사업 지침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두고 그에 근거하여 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사업시행지침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 부정수급 현장점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Agrix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을 사후관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시행지침 혹은 Agrix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확인되고 있음

- 다만 집행점검의 활동 상세내용 및 평가결과, 그에 근거한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인정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또한 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규정과 절차,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사업의 목표와 성과가 추상적인 수준이고 제시된 성과는 기본적으로 투입에 관한 것으로 산출이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사업포기자로 인한 미집행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3-2 정책 제언

○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현재의 목표와 성과체계, 사업 미집행액의 발생을 고려했을 때 보조금액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함

- 동시에 산출 및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 목표를 재구성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작동을 통해 사업성과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식품부 |
|---|---|
| 사 업 명 | 국가인증농식품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2.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2.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GAP 인증 양적 성장 정체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의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할 필요 있음<br>·GAP 인증 농가 비율이 10% 수준에서 정체되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규 성과지표의 개발을 포함한 사업방식의 변경이 요구됨<br>·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PLS 교육·홍보지원 등 GAP 이외의 중요한 내역사업의 성과도 함께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110조(자금 지원)에 GAP · 지리적표시등록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에는 각각 식품산업 발전,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진흥을 위한 국가 책무,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하고, 홍보·육성 등에 자금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각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및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내역사업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와 제110조에서 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 농식품국가인증홍보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내역사업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인증제도별 개별법에서 국가의 책무,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식품 인증제도(GAP, 친환경, 지리적표시 등)의 전반적인 발전과 육성을 통해 농식품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됨

○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정과제 83(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의 4번째 실천과제(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와 동 보조사업의 연계성이 확인됨

○ 동 보조사업을 통해 인증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안전하게 생산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어 건강과 복지가 향상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농식품 국가인증홍보,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는 농식품 인증제도(GAP, 친환경, 지리적표시 등)의 전반적인 발전과 육성을 통해 농식품 인증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우리 농식품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리적인 설정으로 평가됨

○ 각 내역사업별 목표와 사업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어 두 가지 성과지표인 농식품 국가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GAP 인증 확대 측면에서 목표 대비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음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가 향상('18년 목표 64.3% → 실적 72.3)되었고,
-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GAP 인증 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전체농가 대비 GAP 인증률: '12년 3.5% → '14년 4.1% → '16년 6.9% → '18년 6월 8.3%)하였음

○ GAP 인증 농가 비율이 10% 수준에서 정체되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규 성과지표의 개발을 포함한 사업방식의 변경이 요구됨

- 예산 비중이 큰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나,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PLS 교육·홍보지원 등 중요한 내역사업의 성과도 함께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민간보조를 통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수단이고, 특히 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지자체나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부적합함

○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다양한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부처내 타 사업 또는 타 부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발견되지 않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운영사업의 경우 유사성이 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존 사업과 통합되어 현재 운영 중임

○ 국가관리 인증제로서 인증의 보편적 확대, 농식품 안전 및 국민건강 증진, 농업소득 증대, 국가정책 신뢰 유지 등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80%에 불과하였으나, '19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관련 농관원 유사사업과의 통합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30% 감액되는 효과가 있어 해당 불용 사유가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은 없으나 내역사업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내역사업의 경우 대국민 홍보사업으로 불특정 다수가 본 사업의 수혜대상이므로 국비 100% 보조로 추진함이 합리적임

- GAP시설보완사업은 GAP인증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사업이고 직접 수혜자가 시설 보유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정적이므로 국비:지방비:자부담=30:20:50 비율이 적정하고, GAP 인증의 필수 요건인 안전성 조사·분석의 경우 GAP 참여 농업인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비:지방비=50:50 보조율이 적정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요청을 하고,
- 지자체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현황 및 사업 추진상황을 연중 관리하고 있음
-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에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하고 시군 계약부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행기관 공모 및 계약 체결 등 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내역사업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보조사업자로 적정하게 정책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며 사업 내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보고 및 승인을 통해 업무수행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음

- 연도별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관리·감독, 점검 등 관리체계·주기를 명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 및 관리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함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국가에 반환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별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동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 국고 반납조치하고 있음

-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계획 선 수립 후 해당 계정의 사업비를 지출하여 명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민간보조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농식품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금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낮고 그간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도 없음

○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각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농식품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발전과 육성을 통해 농식품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은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있고,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및 광범위한 수혜범위도 인정됨

○ GAP 인증 농가 비율이 10% 수준에서 정체되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규 성과지표의 개발을 포함한 사업방식의 변경이 요구됨

○ 인증의 보편적 확대, 농식품 안전 및 국민건강 증진, 국가정책 신뢰 유지 등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함

○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80%에 불과하였으나, '19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관련 농관원 유사사업과의 통합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30% 감액되는 효과가 있어 해당 불용 사유가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예산 비중이 큰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나,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PLS 교육·홍보지원 등 중요한 내역사업의 성과도 함께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국제농업협력(ODA)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8.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7.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4.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국제농업협력(ODA)사업은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br>·본 사업은 기획협력사업, 다자성양자사업 및 컨설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br>·그러나, 사업을 통해 수원국 원조 효과에 대한 성과 이외에 식량원조, 식량안보에 대한 성과 목표치는 다소 모호함. 특히 우리나라 식량 안보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움<br>·또한 본 보조사업은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가 방법,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고, 환류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br>·해당 부처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확약함(농림부 국제협력총괄과-1347)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의 추진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은 12개국, 20개 사업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제농업협력(ODA)사업은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수혜자의 범위가 수원국의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구축 및 생활환경개선, 주민역량 개발 등을 통하여 수원국 정부 및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어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기획협력사업, 다자성양자사업 및 컨설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기획협력사업은 인적·물적 수단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사업으로(평균 사업기간 3.5년), 수원국과의 수요협의,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수원국의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내용 및 기간을 설정함

- 컨설팅 사업은 개도국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도국의 농업 연구기반 발전 및 농업정책 수립에 기여함

- 다자성양자사업은 FAO, IFAD, ADB, WFP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원조,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함

○ 그러나, 사업을 통해 수원국 원조 효과에 대한 성과 이외에 식량원조, 식량안보에 대한 성과 목표치는 다소 모호함. 특히 우리나라 식량 안보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본 보조사업은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가 방법,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고, 환류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ODA 사업의 기본적 특성 상 국가 주도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민간업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함이 효율적임

○ 국제농업협력(ODA)사업은 ODA 기관간 협업활성화 및 타사업과의 중복 및 분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n-2년 예비검토제를 도입('14년)하여 사업착수 2년전부터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수립하고 그것에 근거한 세부사업 추진 등 전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고보조금의 확대 추이를 감안할 때 적절한 사업 규모를 산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2개 기획협력사업의 사업별 평균 단가('18년)는 707.6백만원으로 각 평균 총사업비가 30.4억, 사업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하면 한해 평균 사업이 869백만원 정도 소요되어야 함

- 또한, KAPEX는 국가당 3~4억을 배정하였고, 타당성조사는 5개사업에 대해 300백만원, 사후관리 2건에 200 및 평가3건에 125백만원을 배정함

○ 그러나, 전체 사업비중 행정경비 비중 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은 추후 확인이 필요함

○ 현행 보조율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부족하고, 장기 재정소요액 추계의 객관성이 떨어짐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 추진 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달 등을 실시하였으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참조)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농어촌공사 등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음

○ ODA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를 소속 유관기관 등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였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림분야 ODA사업 추진과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과 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관리 및 집행은 보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분기별(4회)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감독 계획, 관리체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보조사업에 대한 DAC 평가는 ODA사업에 대한 적절성 평가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님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자체평가 및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을 마련('14.3.)하였고, 이후 개정('18.1월)하여 사업관리기관과 평가관리기관을 분리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농촌경제연구원)

○ 그러나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등 보조사업 특성에 맞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지 않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보조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사업수행자(PMC)에게 집행되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에게 모든 사업비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 상시 관리를 통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국제농업협력(ODA)사업은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기획협력사업, 다자성양자사업 및 컨설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을 통해 수원국 원조 효과에 대한 성과 이외에 식량원조, 식량안보에 대한 성과 목표치는 다소 모호함. 특히 우리나라 식량 안보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본 보조사업은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가 방법,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고, 환류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그러나, 전체 사업비중 행정경비 비중 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은 추후 확인이 필요함. 또한 현행 보조율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부족하고, 장기 재정소요액 추계의 객관성이 떨어짐

○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DAC 평가는 ODA사업에 대한 적절성 평가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님. 따라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등 보조사업 특성에 맞는 관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내역 사업의 구성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ODA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미칠 순기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사업선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재정소요액 추계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1.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br>·국가, 자치단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국가의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와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br>·교육 참여자와 자치단체가 재정역량에 비례하여 사업비용을 분담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내용과 체계를 개편하고,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를 파악하고 발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국가의 해당 보조사업 추진이 의무로 규정되지는 않음

○ 내역사업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박람회,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농촌 유치지원, 귀농인의 집 사업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 10, 12, 13, 14, 22조 등에 근거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함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을 포함하며, 본 사업은 이 과제에 부합함
- 국가의 지원은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귀농·귀촌이 귀농·귀촌인의 여러 동기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정착지역에 여러 형태의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을 통해서도 교육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은 명확하지만, 사업 수혜자가 광범위한 대상으로 확산되지는 않음

- 직접적인 사업 수혜자는 귀농·귀촌인과 정착지역이 속한 자치단체로,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정착지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혜택이 명확하나, 광범위한 대상으로 사업의 혜택이 확산된다고 보기 어려움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박람회,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귀농인의 집 사업으로 교육, 컨설팅, 초기 주거지원, 홍보지원, 정보제공 등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었음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의 경우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사업을 선정하여 국고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총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총액 지원 방식이 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지원금이 일부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이 실제 귀농귀촌 장려와 정착률 제고에 기여한 효과에 대한 정량평가가 필요함

-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박람회,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농촌유치지원 등 각 내역사업이 귀농귀촌 규모와 정착률 제고에 미친 효과는 정량평가가 가능하며, 정량평가 결과를 사업추진체계 개선에 환류하여 반영함이 바람직함

- 귀농인의 집 사업의 경우 이용률을 파악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홍보 등은 민간에서도 일부 수행할 수 있음

- 여러 민간 단체에서 귀농귀촌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홍보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사업추진 범위를 민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본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이 없고 앞으로 수요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민간 및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므로 국가, 자치단체, 민간 사이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타 국가 보조사업은 발견하지 못했음

- 현재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앞으로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유사 사업이 추진중이며, 자치단체도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국가, 자치단체, 민간 사이의 명확한 역할구분과 사업 범위의 조정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에서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자치단체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동기가 상당하므로, 민간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투자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은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는 자치단체의 자체부담으로 추진할 동기가 상당함

- 국가, 자치단체, 민간의 역할과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과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투자 및 사업추진 의지를 극대회하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경제 육성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사업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와 교육생의 자발적인 투자역량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자부담 노력에 대응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 귀농귀촌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생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30% 내외로 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 및 경감하고 있는데, 교육생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므로 자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이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집행 및 관리되고 있음

- 귀농귀촌 교육지원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귀농귀촌 박람회,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은 사업시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별도의 사업별 시행지침으로 관리 감독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각 내역사업 집행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중이며,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시 지원금을 환수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2018년에 귀농어귀촌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금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음
- 자치단체와 민간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와 민간의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감이 바람직함

## 3-2 정책 제언

○ 국가, 자치단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국가의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와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교육 참여자와 자치단체가 재정역량에 비례하여 사업비용을 분담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내용과 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를 파악하고 발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4.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3.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며, '20년부터 예산의 10%인 3억원 정도를 감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br>·투입 예산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보조사업을 통한 산업연계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부처에서도 사업방식 변경을 고려하고 있음<br>·본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대부분 민간기업이므로 제품 개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부담 비중을 높이고, 보조율을 조정하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br>·지원기업의 규모별로 지원율에 있어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국가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한 것과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 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건강기능 식품원료 등록 지원 및 국내의 다양한 기능성 농식품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합DB 운영을 통한 기능성 농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기능성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능성평가 및 등록지원, 국산 소재 기능성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DB구축, 마케팅 지원 등의 추진을 통해 기능성식품 원료의 국산화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와도 연계되어 있음

- 또한 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외 기능성식품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국산 소재의 연구개발 자료가 빈약하여 국내 식품기업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외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화하는 경향이 있고, 영세한 규모의 식품업계에서 다년간의 연구 기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국산 원료에 대한 기능성평가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강기능식품원료 수입/국내 제조 현황: 581건[국내제조 169(29.1%), 수입 412(70.9%)]

○ 본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및 제품화에 평균 5~7년, 3~10억원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에서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을 규명하여 기능성식품 소재화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농업회사법인 등) 및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과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은 농산물 등 식품 원료에 포함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세포·동물 시험 및 인체적용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능성농식품활성화사업은 수입산 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 원료발굴 및 과학적 근거자료를 조사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기능성관련 자원정보 등을 통합한 기능성농식품 DB를 구축·운영으로 식품기업의 국내외 판촉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능성식품 시장의 확대를 위해 소재발굴부터 기능성규명, 제품 유통소비활성화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나 그 산업적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의 목표는 국산 농산물 등 식품 원료의 기능성 규명을 위한 개별인정 및 특허 등록 7건이며, 기능성농식품활성화사업의 목표는 기능성농식품자원 실태조사의 경우는 대체원료 10건이상 발굴, 기능성농식품자원통합DB구축, 기능성식품 판촉지원 10개 기업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명확함

○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사업은 '09년부터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별인정 9건, 특허등록 41건, SCI급 등 논문게재 104편, 기능성식품개발 28건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능성농식품활성화('18~)은 신규추진 사업으로 기능성농식품자원 실태조사 결과 5개 Health Claim에 25개 수입 대체 원료를 발굴하고, 통합DB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18.12월)한 상태로 '19년도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DB에 탑재, 시스템 이용활성화를 통해 향후 식품기업의 국산 소재 탐색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기능성식품, 고령친화식품 등은 식품분야 중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및 지자체가 사업 수행시 특허 및 개별 인정시 특정 지역명을 포함하게 되어 전체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민간기업 등은 수입산 소재 활용 및 과도한 투자비용 소요로 국내산 소재에 대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여 국가적 지원이 일정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음. 또한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국내외에서 기능성식품 및 사업자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고려하여 부담률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식품기능성평가 사업신청 대비 선정 현황(최근5년)>

| 구분 | 예산 (백만원) | 신청사업자 (A) | 사업자수 (B) | 반영율 (B/A) |
|---|---|---|---|---|
| 2014년 | 2,450 | 73 | 34 | 46.6 |
| 2015년 | 2,740 | 83 | 37 | 44.6 |
| 2016년 | 2,740 | 108 | 38 | 35.2 |
| 2017년 | 2,636 | 103 | 34 | 33.0 |
| 2018년 | 2,106 | 80 | 30 | 37.5 |
| 평균 | | 89.4 | 34.6 | 39.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내역사업의 구성('19)에서 식품기능성평가지원은 2,606백만원이며,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사업은 200백만원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산업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수출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고부가식품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 및 사업자의 수요가 증대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 보조율은 하향 조정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증대할 필요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은 '09년 사업시작 당시 품목당 지원단가를 100백만원으로 유지하였으나 물가인상 및 사업비 증가 소요 등을 반영하여 '19년 20% 증가된 12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품 개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부담 비중을 높이고, 보조율을 조정하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보조율(%) : ('09) 100 → ('10) 80 → ('11~'17) 70 → ('18) 60 → ('19) 50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본 사업은 기능성 식품의 적절한 복용은 각종 노인성 질환의 예방이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 미래의 일자리를 주도할 성장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취업 유발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및 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있음

※ 고용인력 : ('16년) 14,743명 → ('18) 16,850명 → ('23) 40,383명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공고(농식품부・한국식품연구원·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식품외식경제 등 신문 게제, 식품과학회 등 회원 E-mail)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사업 신청서 접수후 신청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및 공개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대상기관 : 식품기업, 농식품관련 법인, 농업인 등, 지원조건 : 정부보조금 60%, 기업부담금 40%
전문가 POOL의 3개 분야별(식품/소재/기능성·안전성/임상) 전문가 총 10인 내외로 구성
선정기준 : 국내농업연계성, 사저준비성, 인체적용시험가능성, 성과활용도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법령, 사업운영 전문성,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기능성평가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에 따라 적정한 평가(중복성검토, 서면·공개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에 따른 절차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 지원을 결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4조에 따라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관련 공무원들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실적, 지원조건 이행상황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사업 관련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에 따라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및 부정 수급자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외부회계 법인의 검증, e-나라도움 시스템 검증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노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련 규정 등의 준수 및 예산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조사업자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처와 1차 보조사업자인 한국식품연구원서 실제 사업비가 지급되는 연구수행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연구진행 상황 점검 등 부정수급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타 유사사례 수집,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기능성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능성평가 및 등록지원, 국산 소재 기능성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DB구축, 마케팅 지원 등의 추진을 통해 기능성식품 원료의 국산화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와도 연계되어 있음

- 또한 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외 기능성식품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국산 소재의 연구개발 자료가 빈약하여 국내 식품기업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외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화하는 경향이 있고, 영세한 규모의 식품업계에서 다년간의 연구 기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국산 원료에 대한 기능성평가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은 '09년 사업시작 당시 품목당 지원단가를 100백만원으로 유지하였으나 물가인상 및 사업비 증가 소요 등을 반영하여 '19년 20% 증가된 12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품 개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부담 비중을 높이고, 보조율을 조정하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의 산업연계 성과가 성과가 명확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하여 '20년부터 예산의 10%인 3억원 정도를 감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보조율(%) : ('09) 100 → ('10) 80 → ('11~'17) 70 → ('18) 60 → ('19) 50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 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건강기능 식품원료 등록 지원 및 국내의 다양한 기능성 농식품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합DB 운영을 통한 기능성 농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필요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민간기업 및 단체가 대부분 이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외부회계 법인의 검증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기후변화실태조사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2.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2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br>·사업 시행 초기라는 점과 기후영향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br>·더불어 향후 실태조사 규모의 확대나 방법의 개선을 명목으로 한 추가적인 예산의 증가가 이루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재의 실태조사가 기후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br>·해당 사업의 내역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br>·사업의 성과를 자료의 활용과 관련한 산출 지표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집행의 관리를 위한 지침이 보다 실제의 사업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제47조에서 기후영향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법의 시행령을 통해 관련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사업의 내역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의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의 국가책무에 관한 조항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인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포괄적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이고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사업의 구체적인 수혜자는 특정할 수 없으나 향후의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농업종사자와 농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함

- 다만 해당 사업의 성과가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으로 농업·농촌의 기후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목표는 기후변화실태조사 건수를 제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기후영향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정책 결정 및 관련 연구 등에 활용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성과 목표를 실태조사 건수 등의 투입 목표가 아닌 기초자료의 활용과 관련한 산출 목표로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으로 농업·농촌의 기후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민간에서의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적 차원의 사업으로 평가함

- 또한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후영향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100%)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국가업무 위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사업비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조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나 매년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됨

| 기후변화 실태조사 | 2016 | 2017 | 2018 |
|---|---|---|---|
| 예산(백만원) | - | 400 | 833 |
| 집행률(%) | - | 91.3 | 94.9 |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자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 것으로 평가함

- 구체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 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 집행을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라기보다는 사업의 일반적인 운영체계인 것으로 평가함

- 사업의 단계별 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 및 문제 발생시의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와 관련한 점검 및 운영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 집행점검(분기), 정산 등을 통해 사업의 단계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기본적인 법적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회계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정산 및 회계감사,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의 일반적인 지침으로 평가됨

- 따라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지침>을 보완하여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정산 및 회계감사,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경쟁입찰과 지원금 외부회계 감사 실시 등으로 부정수급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관리체계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위의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지침(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평가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기후영향평가 등을 위한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 이를 통한 정책 결정 수준의 제고와 자료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의 선정도 기본법 등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사업의 성과를 자료의 활용과 관련한 산출 지표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집행의 관리를 위한 지침이 실제의 사업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기초적인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관리를 위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활용도 등 산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와 성과의 활용도가 평가될 때까지 보조금의 적정 수준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실태조사 규모의 확대나 방법의 개선 등을 명목으로 한 예산의 증액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기계임대 |
| 보조유형 | 자치단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7.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5.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1.7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국가(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며,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40억 원의 예산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br>·사업의 중장기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수요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처 내 검증시스템이 적절히 구축·활용되어 있는 않으며, 사업으로 인한 성과 및 중장기적 효과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br>·개별 내역사업이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함. 비록 사업의 속성 상 단기간의 성과로 나타내긴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보조적인 성과지표의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적 성과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br>·중장기 추진계획 상의 연차별 계획에 따른 단순한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수요예측에 대한 부처의 자체검증 기능 강화, 사업의 효과성에 따른 예산배분, 효과성의 모니터링에 기반한 예산배분 등의 방식으로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공동이용),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에 농기계임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필요성, 국고지원, 지원대상, 지원용도 등이 관련 법령에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주된 내용인 농기계임대가 농업구조 개선 혹은 식품 및 농업 자재산업 활성화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공동이용),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은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은 아님

○ 관계 법령에 따라 농기계임대 사업을 추진 중이나 세부 내역사업의 사업영역을 법령이 구속하는 것은 아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공동이용)은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주산지일관기계화 등 내역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향까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기계화영농의 필요성은 증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기계 구입과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국가(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논타작물 재배사업 추진, 농촌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밭작물 기계화 촉진 대책”('17.12. 장관)을 도입한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조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개별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함이 타당함

○ 해당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나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부담 없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그 수혜의 범위가 농업인에게 광범위에서 귀속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됨

- 사업의 수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 일반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잠재적 편익은 광범위하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음

- 실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 이용의 혜택을 수혜한 농가 수가 일정한 수준에 있는 등 그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인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목적 및 정책수요를 절절히 고려하여 법령 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이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내역사업들이 농기계임대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부족함

- 밭농업 기계화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밭작물 재배농가는 농기계를 이용기간이 짧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고려할 때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의 추진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여성친화형농기계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구성 근거 및 효과성에 대한 제시는 다소 미흡함

○ 공동이용을 위한 임대 농업기계 구입과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작물 기계화를 추진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며, 각 내역사업도 개별적인 근거와 방향성을 갖고 수행되고 있음

- 다만, 내역사업 들 간의 차별성 및 개별 내역사업이 상위목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함. 가령, 여성친화형 농기계 대여사업의 경우 기존의 밭작물 농기계 대여와 사업수행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며 상위목표를 위해 어떤 차별적 기여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산지일관기계화의 경우에도 장기임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 및 이의 성과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내역사업의 수요추계가 단순하여 부처의 관점에서 이의 검증기능이 충분했음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예산투입의 즉각적인 산출인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 및 농기계당 이용 일수 등만을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단순 이용자수 등으로 제시된 성과지표는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 및 밭작물 기계화 촉진'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비록 사업의 속성 상 단기간의 성과로 나타내긴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보조적인 성과지표의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적 성과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으로 인해 농기계 구입부담이 경감된 정도(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포함) 및 밭작물 기계화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가급적이면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됨

- 농기계임대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소농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수익 창출성 사업이 아니며, 농업임에게 직·간접적 수혜성 사업으로 민간보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존재하는 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고유성이 충분히 인정됨

○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가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 중단 시 농기계 구입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밭작물 기계화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다만, 밭작물 기계화율이 '13년도 56.3%에서 '17년도 58.3%로 미미하게 증가했음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사업의 효과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연장의 논거로서는 적절하지 않음. 해당 사업의 산출-단기적 결과-장기적 효과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농기계임대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소농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폐지 시 이들 농가 및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 폐지 시 농기계 공동이용이 저하됨에 따라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산물 가격 인상 및 수입 농산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해당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사업폐지 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목표('17년도 58.3% →'22년도 75.0%)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과장일 수 있음. R&D 지원과 밭작물 농기계 보급 등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다른 정책수단들과 병행되어야 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국 140개 시·군의 44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비를 추계하였으나 항목별 소요액의 도출근거가 다소 미흡하게 제시됨

- 농기계임대사업(32개소), 주산지일관기계화(50개소), 여성친화형농기계(60개소), 노후농기계대체(50개소)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부처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해당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인 50%를 준수하고 있음

○ '밭작물 기계화 촉진대책'에 따라 밭작물 농기계 보급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밭작물 기계화 촉진대책' 추진을 위해 '18~'22년 동안 밭작물 농기계 보급 예산 3,967억원 투입이 예정되어 있음

- 국회의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요구 등에 따라 임대사업 소요예산을 추계하였으며, - '15년도 410개소 → '21년도 560개소 지원 계획 및 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 노후화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추계한 내용임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을 통해 노후농기계로 인한 농업인 재해를 경감함으로써 ①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인정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선정 및 교부절차 등 보조사업의 추진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계획 등록/제출→ 보조사업계획 검토/통보→보조사업 가내시 → 보조사업 확정내시 →보조사업 권한설정→ 보조사업 교부결정/통보 등의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기계임대사업의 집행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수행이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농림식품부 및 시·도가 사업승인, 보조금의 예산통보, 배정, 자금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등의 책임을 수행하며 시·군에서는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를 집행하는 등 각 단계별로 적절한 역할분담과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사업소의 현장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 시책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집행 교육을 추진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시 위반사항이 발생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시 공문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매년 정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의 내용을 제도화하고 있음

- 시·군은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를 시·도에 시·도는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를 농림식품부에 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적절히 갖추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 집행, 정산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뿐만 아니라, 공문을 통해 접수하고, 시행결과, 집행 정산, 결산, 교육 등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연도별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 및 누락결과, 조치결과 등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기계임대사업은 일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으며 지금까지 부정수급 발생 사례가 없으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보조금 교부시 공문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기계화영농의 필요성은 증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국가(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해당 보조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개별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함이 타당함

- 해당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나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부담 없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그 수혜의 범위가 농업인에게 광범위에서 귀속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예산투입의 즉각적인 산출인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 및 농기계당 이용 일수 등만을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단순 이용자수 등으로 제시된 성과지표는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 및 밭작물 기계화 촉진'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비록 사업의 속성 상 단기간의 성과로 나타내긴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보조적인 성과지표의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적 성과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32개소), 주산지일관기계화(50개소), 여성친화형농기계(60개소), 노후농기계대체(50개소)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부처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며,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가 더욱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 중단 시 농기계 구입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밭작물 기계화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농기계임대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소농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수익 창출성 사업이 아니며, 농업인에게 직·간접적 수혜성 사업으로 민간보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전국 140개 시·군의 44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비를 추계하였으나 항목별 소요액의 도출근거가 다소 미흡하게 제시됨

- 임대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구성하였으나 개별 내역사업의 수요추계가 단순하여 부처의 관점에서 이의 검증기능이 충분했음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추진계획 상의 연차별 계획에 따른 단순한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수요예측에 대한 부처의 자체검증 기능 강화, 사업의 효과성에 따른 예산배분, 효과성의 모니터링에 기반한 예산배분 등의 방식으로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산출-단기적 결과-장기적 효과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3-2 정책 제언

○ 사업목적 및 정책수요를 절절히 고려하여 법령 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이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농기계임대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 함

○ 보조사업으로 인해 농기계 구입부담이 경감된 정도(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포함) 및 밭작물 기계화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가급적이면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성과지표의 경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해당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사업폐지 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목표('17년도 58.3% →'22년도 75.0%)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과장일 수 있음. R&D 지원과 밭작물 농기계 보급 등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다른 정책수단들과 병행되어야 함

○ 사업수요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과와의 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업규모의 적절성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기자재수출활성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5.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5.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의 정상추진을 제안함<br>·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과 목표치를 비교적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어 사업의 정상추진을 제안함<br>·농기자재 수출정보 구축, 분야별 수출전략정보 등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설정한 목표에 맞게 수출정보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br>·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확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결과지표의 관리를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타 부처의 수출관련 지원사업들의 기 구축된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8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였으나 보조사업의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지는 않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8조에는 농업 투입재 산업의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함
- 농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참가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농업기계화촉진법 제13조제2항)

○ 위 법령은 농기자재수출정보지원 및 농기자재수출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농기자재수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3조제2항은 농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참가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 해외투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 수립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내역사업의 내용과 연관성이 크다고 여겨짐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농기자재 산업의 수출산업 육성 필요에도 농기자재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출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현지바이어 발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지원은 필요함

- 농기자재 수출을 위한 자체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농기자재 업체는 매우 적음
- 국내 농기자재 산업은 협소한 시장규모로 외연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됨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 광범위 하나 직접적 수혜자는 일부로 한정됨

- 직접수혜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기자재산업 관련 기업이라 할 수 있음
- 간접수혜자로는 농기자재수출 활성화로 창출된 경제적 효과로 혜택을 받는 연관 산업 수행자, 구직자, 관련단체 등 비교적 넓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농기자재산업의 외연확대 및 수출 활성화 촉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역사업의 세부 내용 보완이 필요함

- 농기자재수출 빅데이터 정보 지원사업의 명칭과 세부내용이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사업 내용과 연계한 명칭으로 내역사업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연도별 성과지표로서 농기자재 수출정보 구축, 분야별 수출전략정보 등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성과목표 설정근거가 미흡해보이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설명함

- 18년도 4개의 품목 수 및 현지정보 제공 수출국에 대한 설정 근거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음
- 수출기업육성과 관련한 결과지표가 없음(투입지표 위주)
-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명확한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기자재수출활성화사업은 비교적 영세한 농기자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정보 획득 및 네트워크 구축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농기자재기업은 대부분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기자재 수출활동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침체된 국내 농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농기자재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
- 사업이 폐지 될 경우 진행 중인 수출예정 기업의 손실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며 그간 지원되었던 해외 인프라의 활용이 떨어져 재정적 손실이 야기 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해외수출 지원사업 관련하여 중복의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무역협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해외국 수출정보 등)과 중복의 여지는 있어 보이나 그 내용상 차별적이라고 설명함

  * 산업부(코트라)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나, 코트라는 전반적인 산업 지원 측면이고, 동 사업은 농식품(기자재) 분야의 특화된 지원이라 설명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어 보임

- 사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사업비의 10%미만임(약 5.4%)

○ 보조 사업의 비용구조가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음

- 해외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비 산정과 관련된 내용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

* 해외정보제공의 경우 4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있으나 그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정해진 보조율은 없으나 유사한 다른 농림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춰 보조율을 책정한 것으로 보임

- 농식품부 내 수출 관련 정책사업 중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과 '해외판촉사업'의 경우는 보조율을 70%로 설정하고 있음

- 산업부나 중기부 관련 수출 지원 사업도 보조율은 최대 7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본 보조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수출기업육성지원사업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지원 사업운영지침)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출기업육성기업 선정함(운영지침 제6조)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운영지침 제7조)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실·국별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함

○ 분기별로 사업시행기관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수령함

-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규정 제69조 중요재산 관리에 따라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 공시하게 되어있음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회계검사보고서 수령해야 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을 할 경우 지원된 농식품 사업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부당 사용 시 제재부가금 부가, 수행배제, 지원제한 등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현재까지 보조사업의 집행실태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음

- 보조사업 점검 평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점검 실시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내역 사업의 경우 사업 명칭과 내용의 연계가 불명확해 보이므로 내역사업의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명확한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무역협회에서 진행 중인 수출지원관련사업들과 내용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나 향후에도 유사중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연도별 성과지표로써 농기자재 수출정보 구축, 분야별 수출전략정보 등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출기업육성과 관련한 투입지표만 있고 결과지표가 미흡해 보임
- 농기자재해외정보조사 등 농기자재수출 빅데이터 정보지원과 관련된 비용정보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부처의 수출관련 지원사업들의 기 구축된 정보 및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해외수출관련 지원 사업은 무역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8.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5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 추진<br>·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규정 존재함. 국가물류비 절감과 농산물 표준화에 부합하고, '국가 물류 기본계획'에 보완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br>·성과제고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하역기계화율 확대 등 지속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br>·향후 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 현황 확인 등 적극적 사후관리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규정 있음.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은 공동선별·물류기기 공동이용하고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일관 팰릿타이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①공동선별비 지원, ②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각 내역사업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br>-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br>농수산물품질관리법<br>- 제110조(자금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물류비 절감과 농산물 표준화에 부합하고, '국가 물류 기본계획'에 보완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공동 선별비 지원은 국산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한 산지 유통 주체의 조직화가 진척될 때까지, 물류기기공동이용은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감모 청소비가 많이 지출되고 지역별 생산품의 편재 현상 때문에 국가적 보조사업 타당성 인정됨.

- 물류기기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농산물을 출하하는 일부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동이용(Pooling)함으로써 물류기기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단위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됨.

○ 생산자의 소득 제고와 소비자들에 대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①공동선별비 지원, ②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내역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사업은 공동선별·물류기기 공동이용 등 지원으로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일관 팔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함.

- 성과지표인 '국내산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하역기계화율'은 산지유통조직 등을 통해 공동 생산, 선별, 출하된 농산물을 표준화된 물류기기를 활용하여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 유통하는 비중 제고라는 목표에 대체적으로 부합함.

- 국내산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하역기계화율 달성률은 연차별로 달성되고 있고, 성장 추이 또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15 107.6% → '16  135.5 →  '17 170.8)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공동선별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조직화 참여 확대 유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바, 보조사업의 필요성 인정됨.

○ 물류기기 공동이용의 경우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및 종묘비, 비료비 등 경영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며, 기상여건 및 재배면적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높아 농가소득 불안이 가중되고, 밭농업 생산농가가 자체적으로 물류기기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필요성 인정됨.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 중 지속 지원이 필요한 2개 내역사업만으로 2013년 통·폐합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 중복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속적인 보조사업 필요성 인정됨.

- 공동선별 사업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속지원 필요성 인정됨.

-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농촌 지역의 꾸준한 수요 발생으로 신청량 대비 배정량은 최근 3개년 평균 89.4%이어서 지속적 보조사업으로서 필요성 보유 인정됨.

○ 사업이 폐지 시에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재정적 손실이 일부씩 발생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상호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공동선별비 지원 부분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로 인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수요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산지조직화의 신규 소요도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됨.

- 물류기기 공동이용 부분은 농산물이 기본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겁고, 시간에 따라 품질과 선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통업체, 가공업체는 하역기계화 필요성 있고 광역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 인정됨.

###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사업인 공동선별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가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군은 산지유통 종합평가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등 객관적 과정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년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별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배정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실 인정됨.

○ 민간사업자 지원인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전년말부터 연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사업신청을 공고하여 사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 인정됨.

- 선정 및 교부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인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을 적절하게 구축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국장이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확인됨.

○ '17년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하는 체계 구축 한 것으로 평가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중요재산 관리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 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존재하고 있음.

○ 회계연도 완료 후 사업 시행 주체를 통해 정산 결과를 보고받은 후 사용금액 및 불용액 등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반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물류기기공동이용의 경우 실제 미사용 금액이 예상될 시 전·수배를 통해 사업수요가 있는 사업자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배정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 기울이는 사실 인정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제한 여부 등을 사업 신청 시부터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지원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지원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원

- 자부담 지출 여부 및 실제 물류기기 이용 여부 등을 확인 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 부정수급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자부담 확약 후 실제 자부담을 지출하지 않은 사례를 점검하고 검출하는 노력 기울일 필요 있음.

○ 부정 수급 시 지원제한,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2016년부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마련하는 등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실 인정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규정 있음.

- 국가물류비 절감과 농산물 표준화에 부합하고, '국가 물류 기본계획'에 보완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산지유통조직 등을 통해 공동 생산, 선별, 출하된 농산물을 표준화 된 물류기기를 활용하여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제고하는 효과 인정됨.

## 3-2 정책 제언

○ 도매시장 현대화에 따른 하역기계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 공영도매시장 하역기계화율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자부담 지출여부 및 실제 물류기기 이용여부 등을 확인 후 국고보조금을 집행가고 있어 부정수급이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 현황 확인 등 지속적 사후관리 필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산물마케팅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9.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2.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br>·산지통합마케팅지원은 국가의 산지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평가요소인 조직화 수준을 연계하여 평가를 강화하고 차등지원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산지정책 촉진을 도모 할 필요 있음<br>·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과거에 개최하였던 행사를 관성적으로 반복하는 형태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개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연도별 시장상황 및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관계 법령에서는 농산물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허용하고 있음

- 농산물마케팅지원은 산지유통을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유통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에서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농산물마케팅지원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혜택이 농산물 생산자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됨

- 농산물 산지통합마케팅을 지원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고, 국정과제(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에도 포함되어 있음
- 산지통합마케팅지원과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의 혜택은 특정 자치단체나 민간단체를 넘어 농산물 생산자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산지통합마케팅지원과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나, 내역사업의 실제 내용과 기간은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은 산지통합마케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등의 조직을 선정하여 컨설팅, 위탁교육, 품질조사, 브랜드육성, 상품포장 디자인, 홍보물 제작, 시장개척 등의 사업비용을 정해진 보조율에 따라 총액 지원하는 사업인데, 산지조직화 제고 등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평가에 연계하여 보조사업이 추진되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화훼, 인삼, 차, 잡곡 등의 소비촉진을 위해 관련 행사 개최, 홍보, 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연도별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내용을 개선하고 사업추진 규모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은 참여조직과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오지만,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은 궁극적으로 참여조직과 농가의 이익증대를 가져오는 사업으로, 조직화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조직화 단계별로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가와 참여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의 필요성은 각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연도별 시장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지원을 실시할 필요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됨

- 과거에 개최한 행사를 관성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연도별 시장 상황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농산물마케팅지원의 재정지원 규모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평가에 근거하여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은 산지 조직화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1인당 소비량 변화 등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의 평가지표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차등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차후 정량평가 없이 사업규모가 관성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감축 등의 불이익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농산물마케팅지원은 혜택이 지원 대상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사업추진을 통해 생산 및 유통 등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보조금 집행 및 사업자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연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추진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역 사업별로 연초에 수립하는 소비촉진 종합홍보 추진계획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보조금 집행 및 사업자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사업계획, 집행과정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각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해 적절히 관리 및 감독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의 사후관리는 부처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농식품부, 과수농협연합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수시점검하고 있으나, 연간 추진계획 등을 통해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사례는 없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제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농산물마케팅지원은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상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성과에 연계한 평가가 강화되고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마케팅지원은 산지통합마케팅지원과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의 두 가지 내역사업을 통해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상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은 산지정책 촉진에 필요한 조직화율 목표인 50%에 도달할 때까지 추진하고,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각 연도별 시장 상황과 기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를 근거로 사업 내용과 규모가 조정되어야 함

### 3-2 정책 제언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은 조직화율 목표인 50%에 도달할 때까지 추진하고,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연도별 시장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내용을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은 조직화율 목표인 50%를 달성할 때까지 추진하고, 조직화 관련 평가지표 및 지원기준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산물소비촉진지원은 과거에 개최하였던 행사를 관성적으로 반복하는 형태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개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연도별 시장상황 및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 보조유형 | 자치단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3.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8.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4.3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감축 (‘20년 39억원 감축,‘19년 내역사업인 일반APC 지원 예산 21,905백만원)<br>· 성주군 APC 지원 예산 39억원‘19년 2년차로 사업 종료<br>· 본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6년 22.6%, ‘17년 14.6%로 ‘16년에는 일반APC 사업대상자(1개소) 사업포기,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 ‘17년도에는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사업계획 변경(축소),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수요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되었음 (불용액‘19년 예산에 반영)<br>· 일반 APC지원사업은 향후 APC설립을 최소화하고 시설개보수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 바, 지자체부담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국고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br>·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수요조사를 충실히 하여 사업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활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인삼산업법 >**

○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

○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등은 관련 법적근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우리 농업은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를 혁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사업의 경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지유통주체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단위 등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심사·평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인삼 및 특용작물 산업발전을 위해 주산지 권역별로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인삼·특용작물산업 전문 거점 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경우 전국 단위의 사업 진행이 필요하고 1차 농산물 신선도 유지는 농가 소득증대 및 국민 전체의 식생활 수준 및 소비자 권리 증진과도 연계된 개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생산되는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반가공 제품을 전략품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산지 생산·유통조직을 육성하여 농가의 안정적 판로 및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유통비용 감소로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지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상품규격화 및 통합마케팅 실현 등 산지 역량강화를 통한 APC 평균매출액 증가 등 농가 소득에 기여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됨

＊ APC 평균매출액 : ('16) 119 → ('17) 140 (17.6%↑)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참여조직의 통합마케팅조직 출하비율 증가 등 본 사업을 통한 통합마케팅 활성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동계산액 100억원 이상 조직 수 : ('13) 57개소 → ('15) 68 → ('17) 69

＊ 통합마케팅조직 개소수 : ('13) 83개소 → ('15) 88 → ('17) 115

＊ 참여조직의 통합조직 평균 출하비율 : ('16) 40.0 → ('17) 42.3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인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된 인삼전문생산단지는 12개소로, 권역별 전문생산업체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인삼제품 생산을 통해 소비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기여하여 2010년 수출시장이 77개국에서 2017년 105개국으로 확대되는 향상된 성과가 있었음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18년 시설기준 23개 사업소 33억, 차량기준 12개 사업소 3억, '19년 사업자 대상 시설기준 16개소 33억, 차량기준 8개소 3억 지원 등 예산불용 등은 없으며, 평균 사업 경쟁률이 4:1이 넘는 등 목표 달성이 가능한 우수 업체 선정이 용이하여 효과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라 판단됨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에 시설 및 설비지원으로 농산물 가공능력 향상 및 품질개선 등으로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국산원료 사용량 : ('16) 7개소 / 5,825톤 → ('17) 15 / 9,334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산업은 산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을 조직화·규모화하기 위해 계약재배 품목과 농가수를 확대하고, 산지 출하조직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매출액도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계약재배 품목수/농가수 : ('16) 93품목/554호 → ('17) 93/412

＊ 출하회 조직 : ('16) 4개소 → ('17) 11개소

＊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 ('16) 203억원 → ('17) 251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농산물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해당 품목의 수급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자율수급조절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인삼 주요 거점지역의 사업추진은 완료되었으나, 기존 생산유통시설의 노후화, 시설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원예 농산물을 사업 대상으로 삼는 만큼 일원화된 광역 단위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중·소형 농업 법인의 저온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특성 상 민간의 수행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사업 주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원료 농산물 가공 및 유통확대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업체의 시설설비 확대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은 농업인 스스로 자생력을 갖춘 규모화된 영농조직으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자치단체보조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28,606백만원 | 29,337백만원 | 29,777백만원 |
| | 33.3% | 35.2% | 37.0% |
| 자치단체부담 | 27,622백만원 | 26,582백만원 | 26,002백만원 |
| | 32.1% | 32.2% | 32.3% |
| 민간단체부담 * | 29,788백만원 | 27,178백만원 | 24,788백만원 |
| (자부담) | 34.6% | 32.6% | 30.8% |
| 합계 | 82,636백만원 | 83,367백만원 | 80,567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민간단체보조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1,762백만원 | 875백만원 | 1,182백만원 |
| | 94.6% | 88.6% | 92.2% |
| 민간단체부담 | 100백만원 | 113백만원 | 100백만원 |
| | 5.4% | 11.4% | % |
| 합계 | 1,862백만원 | 988백만원 | 1,282백만원 |
| | 100% | 100% | % |

○ 기재부 중기재정 계획으로 연평균 △8.5% 감소하도록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내역사업 일몰(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유통-채소류출하조절) 사업수요를 감안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중기재정 요구 : ('18) 347억원 → ('19) 284 → ('20) 251 → ('21) 255 → ('22) 243

○ 본 사업예산의 불용액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은 감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16년 22.6%, '17년 14.6%로 '16년에는 일반APC 사업대상자(1개소) 사업포기,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이 있었음

- '17년도에는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사업계획 변경(축소),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수요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되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및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사업선정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을 하여 선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은 지자체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한해 APC사업 신청자격 부여하며,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선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은 관할 도에서는 농협·법인·기관 등이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지원 및 지원 제외대상 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유통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정된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선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주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지정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및 인삼검사소현대화, 국정검사지원사업은 인삼산업법 제17조에 따른 국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업무를 위탁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공모대상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온유통체계구축-행정경비사업은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 주체를 동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지정하여 사업자 선정단 구성, 현장 실사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법적합성, 적정성 등의 측면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주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집행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며, 사업시행기관이 현장점검 등을 수행

○ 특히,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또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중요재산 관리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 및 규정을 따라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을 하고 보조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완료시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 부당사용시 보조금 반환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신청시부터 지원제한 여부 등을 사업시행주체(시·군)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지원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지원제한 대상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고 있고,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로 자금을 교부 하고 해당 지자체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상시 현장 점검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부정수급시 지원제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16년부터는 보조금 부당사용시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 부과, 수행배제 및 지원제한, 명단 공표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지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성주군 APC 지원 예산 39억원은 '19년 2년차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년 예산편성시 감축함 ('19년 내역사업인 일반APC 지원 예산은 21,905백만원)

○ 본 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바 사업계획과 집행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6년 22.6%, '17년 14.6%로 '16년에는 일반APC 사업대상자(1개소) 사업포기,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 '17년도에는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사업계획 변경(축소),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수요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되었음 (불용액은 '19년 예산에 반영됨)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우리 농업은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를 혁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일반 APC지원사업은 향후 APC설립을 최소화하고 시설개보수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 바, 지자체부담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국고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수요조사를 충실히 하여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2.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1.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감축(‘20년 예산 4억원 감축,‘19년 내역사업(채소가격안정) 예산은 15,137백만원)<br>·예산불용액(‘16년 87.8%, ‘17년 68.6%)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의 약 3%인 4억원을 감축하여 운영함(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용액에 비해 소액 감축하고, ‘19년1/4분기 배추, 양파가격 폭락을 감안함)<br>·본 사업은 가격폭락 등 수급불안이 발생해야 집행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예산의 부족과 불용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임<br>– 예비비로 편성시 적시에 사업이 집행되어 조기에 시장안정 가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처 장관의 결정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유통협약·명령 이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br>·본 사업의 목표인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등 전 국민적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 고안 등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6조(계약생산),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관련 법적근거를 '16년 12월 2일에 마련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채소류는 기상조건 등에 따라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하여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불안정으로 영농기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소비자 물가 급등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농가의 안정적 계약생산을 유도하고, 사전적 수급 조절 등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앙주산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생산자단체·농협·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산지간 재배 정보 교환, 적정 면적 배분, 주산지협의체를 통한 면적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주산지협의회 의견수렴에 따라 수립한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간 조율하는 등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유통협약·명령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빈번해지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 등 안전영농기반과 농산물 가격 등 국민들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은 일정목표 가격 보전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 계약재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면적 조절 및 출하조절 등을 통해 적정 수급을 유도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3년간 사업을 살펴볼 때 일부 품목에 있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16년 고랭지배추는 7~8월 고온, 가뭄, 폭염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이 전년대비 26%, 평년대비 29% 생산량 감소로 도매시장 가격지속 상승시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4,640톤을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가격 상승폭을 최대한 완화한 사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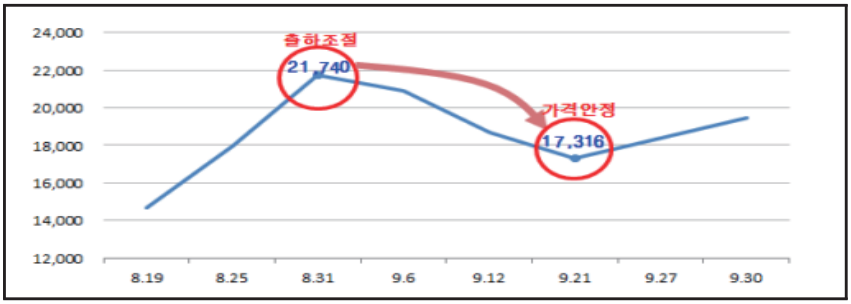


* KREI는 집중 투입이 없었으면 가격이 최대 57%이상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

- '17년 가을배추·무는 공급 과잉(평년대비 배추 2.9%, 무 3.5% 증가)으로 인해 10월 하순 배추는 1,144원까지, 무는 618원까지 하락하고, 추가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 배추 10천톤 무 5천톤을 선제적으로 면적조절(산지폐기) 대응하는 수급대책을 추진함으로써 11월 하순 배추는 1,810원, 무는 789원까지 상승하는 사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18년 5월초 양파 가격 하락 시 사전면적조절(17천톤)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전면적조절 전과 대비하여 12%상승하는 사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8.5월 659원/kg → 7월 738원)

- 또한 '18년 7~8월 폭염의 영향으로 무 생육이 지연되고 병해충 발생이 많아 가격이 높았을 때, 조기출하(일일 100톤 수준)로 전과 대비하여 21% 정도 가격 상승세를 완화하는 사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8.8월 2,782원/개 → 2,187원/개)

○ 유통협약·명령지원은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로 '17년부터 비축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2년간 운영하였으나, 통폐합 효과 없이 관리상 비효율성이 증가하여 '19년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내역사업으로 재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음

- 유통협약·명령지원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 성격상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농산물생산조절지원에 통합 편성하는 것 효율적이라 판단됨

- 다만, 사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 판단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수급 및 가격불안정성이 심하여 안정적 계약생산 제고 및 사전적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필요

- '15년부터 실시하는 수입보장보험(양파, 콩, 포도)과 가격 보장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입보장보험은 농가 경영안정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수급기능(수급조절 의무 등)이 없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과 목적 및 운영 방식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통협약·명령은 생산자조직이 주체가 되어 농산물 수급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정된 대상품목의 가격이 상당기간 낮게 형성되거나 생산비 이하로 낮은 가격이 예측될 경우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산자 조직이 사전적·자율적으로 물량규제, 품질규제, 시장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 중단시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의 폭등·락 현상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18년 수급안정사업에 따른 효과액(755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단체보조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10,000백만원 | 16,819백만원 | 16,082백만원 |
| | 30% | 30% | 30~100% |
| 민간단체부담 | 13,333백만원 | 22,425백만원 | 21,128백만원 |
| | 40% | 40% | 0~40% |
| 합계 | 23,333백만원 | 39,244백만원 | 38,210백만원 |
| | 70% | 70% | 70~100% |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국고금(30%) 지원시 주산지협의체(지자체, 농협, 생산자로 구성)에서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를 매칭하여 집행하는 사업임

- 농협경제지주가 사업시행주체로서 주요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품목별·지역별로 사업농협에서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행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아 예산절감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품목별 평년생산량의 약 15%수준 계약물량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통협약·명령사업은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시 수급안정대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정부 등 민·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민간단체 자체 재원만으로는 수급안정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대책(시장격리, 소비촉진 등) 추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정 부분 정부 개입 및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

-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여 별도의 행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아 예산절감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통협약·농산물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해 대상품목 평균 생산량(과실류 1,460천톤, 채소류 3,433)의 약 0.5%로 크지 않은 규모라 판단됨

○ 본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6년 87.8%, '17년 68.6%임

- 내역사업인 유통협약·명령은 '16년에는 사업 대상 농산물 수급안정으로 인해 농산물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유통협약·명령 수요 감소, '17-18년은 생산자 단체에서 유통협약 미요청으로 불용되었음.

- 채소가격안정지원(생산안정)사업은 '16~17년은 사업대상 품목(배추, 무 등)의 수급안정으로 집행수요가 감소로 예산이 불용되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과 유통협약·명령지원 사업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사전적·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수급·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여 그에 따른 손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라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가 실현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농협경제지주가 신청된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주산지협의체 시·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등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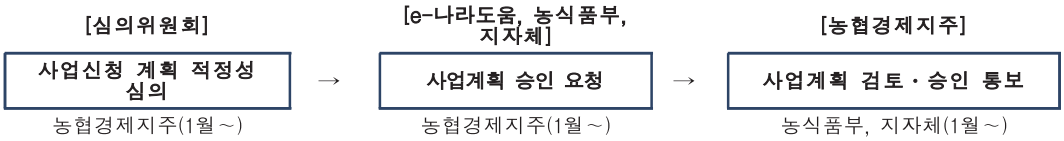


○ 유통협약·명령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에 따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로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생산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에서 보는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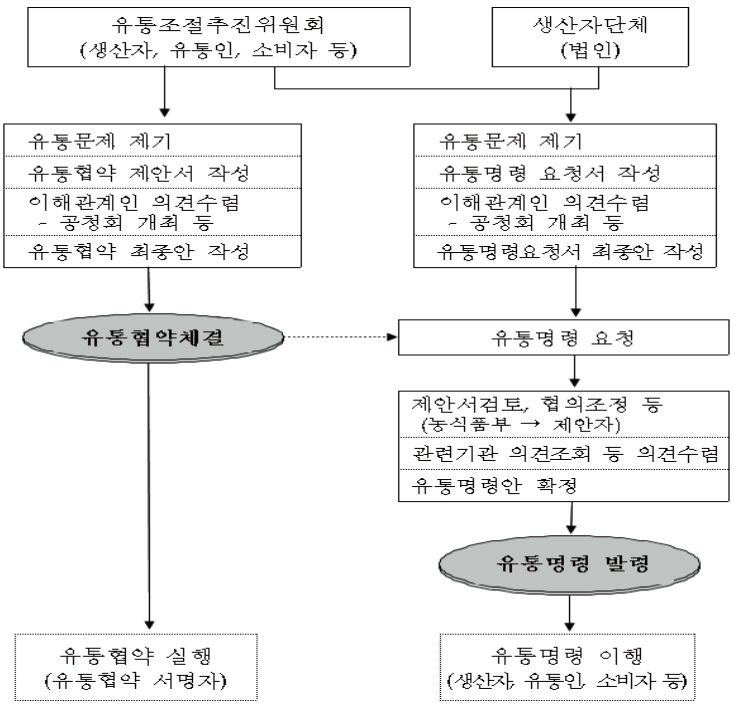

## 2-2 보조사업자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집행관리체계 및 규정 등에 따라 시행하여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검증 및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과 법과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외에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이내에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하고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 신청을 하도록 하되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토록 충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해당 보조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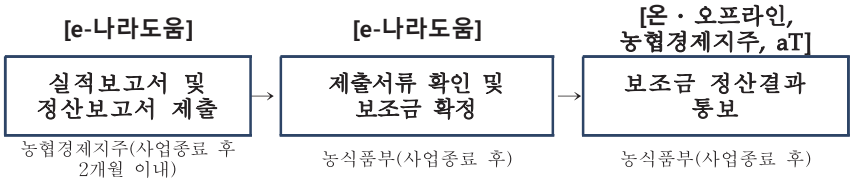


○ 유통협약·명령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사업개시 후 매월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고, 사업완료시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식품부는 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후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을 실시하고 오류 및 누락사항에 대한 반납조치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세부계획 점검 및 승인
*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요청
*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등은 반납조치
* 정산 후 문제점 발견시 재정산을 통해 추가 반납조치

○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등 발생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본부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충실한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집행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통협약·명령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규정에 따라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도말 농안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중요재산관리, 자금집행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충실히 노력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은 일정목표 가격 보전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 계약재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면적 조절 및 출하조절 등을 통해 적정 수급을 유도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일부 품목에 있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평가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불용액이 높기 때문에 '19년 내역사업(채소가격안정 예산 15,137백만원) 사업비의 약 3%인 4억원을 감축하여 운영함

-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용액 평균 78.2%에 비해 소액 감축하며, '19년1/4분기 배추, 양파가격 폭락을 감안함

  * 본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6년 87.8%, '17년 68.6%

## 3-2 정책 제언

○ 유통협약·명령사업은 가격폭락 등 수급불안이 발생해야 집행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예산의 부족과 불용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임

- 예비비로 편성시 적시에 사업이 집행되어 조기에 시장안정 가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처 장관의 결정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유통협약·명령 이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함

○ 본 사업의 목표인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등 전 국민적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 고안 등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5.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2.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2.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감축 (‘20년 5천만원 감축,‘19년 예산 3466백만원)<br>· 본 사업의 ’19년도 이월액(272백만원)을 포함한 실집행률이 97%정도로 약 3%가 불용처리되고 있어 약간의 예산감축은 불가피하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br>· 본 사업은 농산물 수급상황, 도·소매 가격정보, 유통실태, 수입정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실태 관련 정보를 조사·제공함으로써 농업인·유통인·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목표로 정부의 수급대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서 재정보조를 통해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br>·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연도별 성과지표 초과 달성 근거 외에 각 내역사업별 구체적 성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

○ 제1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급정보조사, 국내가격정보조사, 화훼유통정보조사, 유통실태조사, 수입정보조사,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등은 관련 법적근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농산물 수급상황, 도·소매 가격정보, 유통실태, 수입정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실태 관련 정보를 조사·제공함으로써 농업인·유통인·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목표로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전국단위의 조사가 필요하고, 공익적 기능이 강하므로 특정 지자체 중심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산물 유통정보를 활용하여 수립한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생산자는 소득지지, 소비자는 가계지출 절감 등 총 1,070억원의 사회경제적 후생이 증진되는 등 간접적 혜택도 발생하고 있다는 '18년 연구보고도 있음

* 노지채소 비축 및 시장 격리 등으로 농가소득 810억원 증가

* 이상기상으로 채소류 가격 폭등시 비축물자 방출 등으로 소비자 지출은 260억원 절감

○ 본 사업은 연도별 성과지표인 농산물 유통소비정보 조회수는 목표를 114% 초과 달성하였으나 각 내역사업별 구체적 효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전국단위의 정보조사가 필요하고,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 등 수급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 또는 지자체에서 수행할 유인이 없어 국가에서 재정보조를 통해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산물 유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은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 확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생산자, 소비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므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 중단시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 중단으로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의 폭등·락 현상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수급안정사업에 따른 효과('18년 1,070억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단체보조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2,146백만원 | 3,435백만원 | 3,466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민간단체부담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합계 | 2,146백만원 | 3,435백만원 | 3,466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비용('18년 기준, 농안기금 운영비, 잡비)은 31백만원에 불과하며, 34억의 보조금이 유통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목적 달성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은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농축수산물의 도·소매가격과 이를 분석한 공공데이터(알뜰장보기, 제철농수산물)를 홈페이지(www.kamis.co.kr), 포털사이트(네이버), SNS(카카오) 등을 통해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측면임

- 주간 알뜰장보기, 제철농수산물 등을 통해 소비자는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방송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가격이 하락한 농수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농어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임

- 명절(설·추석) 성수기 및 김장철에는 전통시장·대형마트 간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의 이용을 유도하는 측면임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농안법」 제72조 및 「유통공사법」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83년부터 농산물가격정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급 및 가격정보 조사 및 정보제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 2-2 보조사업자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 제4장(계획수립 및 신청), 제5장(예산편성), 제6장(집행관리)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라 농안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검증 및 관리·감독을 받는 등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보조사업의 단계별 업무 추진현황 및 분기별 개산급 신청시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관리하여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체계 >

① 예산 수립 및 배정(농식품부)
↓
② 사업계획 수립(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계획 수립 후 농식품부 보고
↓
③ 사업계획 승인(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
↓
④ 사업 추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⑤ 사업결과 보고 /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부) : 사업실적, 집행액 정산 및 승인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기금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0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매년 결산 직후 농안기금에 대해 민간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자금집행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3조: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 의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 감사원 감사 등의 적용을 받아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농안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중요재산관리, 자금집행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농산물 수급상황, 도·소매 가격정보, 유통실태, 수입정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실태 관련 정보를 조사·제공함으로써 농업인·유통인·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목표로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적 사업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본 사업은 전국단위의 조사가 필요하고, 공익적 기능이 강하며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또는 지자체에서 수행할 유인이 없으므로 국가에서 재정보조를 통해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의 실집행률이 97%정도로 약 3%가 불용처리되고 있어 약간의 예산감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유통정보를 활용하여 총 1,070억원의 사회경제적 후생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의 연도별 성과지표 초과 달성 근거 외에 각 내역사업별 구체적 성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사에 앞서 어떤 문항이 더 필요한 지를 실제 조사결과를 사용하는 최종유저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자문회의 등을 통해 미리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7.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8.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감축을 판정함.<br>·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당분간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점차 국가의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의 자립화 모델을 지향해야 함.<br>·교육, 홍보 등 직거래활성화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기초인프라 투자는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 직거래장터 지원(2,450백만원)에 배정된 예산의 10% 2.45억원 감축을 제안함.<br>·지자체 및 민간의 유사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간 연계와 농협 등 기존조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는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임.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재거래의 촉진 등)에서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양 조항 모두 “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동 사업의 내역사업들(직매장, 직거래장터, 직거래교육, 사이버거래소 설치·운영, 유통개선 사업 등)과 법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은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도매 중심의 기존 유통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대안의 경로로서, 국가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지자체나 민간에서도 필요에 의해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할 유인은 충분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고민은 필요함.

○ 농산물 직거래가 넓게 활성화된다면 불필요한 유통단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크게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설치, 사이버거래소 운영 등 기초인프라 확충과 교육, 홍보 등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내역사업이 구성됨.

-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10%안팎의 수수료만을 받는 직거래의 취지상 사업장 소득이 높지 않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적자로 인해 도산하는 사례가 빈번함.

- 따라서 사업범위가 직매장 개설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통해 직매장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책방향 설정은 타당하다 생각됨.

○ 농산물 직거래가 국가적 지원 없이도 기존 유통 경로와 자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된다면 동 보조사업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나 아직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직거래 규모가 '14년 1.8조원 ⇨'15년 ⇨ 2.4조원 ⇨'16년 2.7조원⇨'17년 3.2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각 내역사업들의 성장세도 확인됨. 동 보조사업이 계획한 목표는 나름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구분 | 단위 | '10 | '13 | '14 | '15 | '16 | '17 |
|---|---|---|---|---|---|---|---|
| 로컬푸드직매장(누계) | 개소 | - | 32 | 71 | 103 | 148 | 188 |
| 직매장 매출액 | 억원 | - | 317 | 948 | 1660 | 2,607 | 3,565 |
|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 억원 | 1,755 | 16,073 | 22,131 | 24,444 | 29,958 | 29,78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는 도매시장에 출하할 정도의 생산력을 갖추지 못하고 직거래를 주된 판로로 활용하는 영세·고령농 등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 일단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는 존재하고, 직거래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보다 높은 수익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다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언제까지 지원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점차 지자체의 지원의무 확대, 자부담 확대 등의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함. 궁극적으로 농가의 자립화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임.

○ 최근 깨끗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로 지자체나 민간 차원에서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복 및 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산물직거래를 단순히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측면에서 프리미엄 농산물 직거래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직매장, 직거래장터, 사이버거래소 등 기초인프라 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교육·홍보 등 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비를 증액하는 정책방향은 타당해 보임.

○ 농산물 유통개선 분야의 기준보조율은 40%이나 직매장 설치지원(보조 30%)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해진 기준 보조율보다 상향지원하고 있음. 공익적 분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임.

○ 2018년 청탁금지법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지속 감축 편성해 오고 있음.

* ('16) 15,377백만원 → ('17) 14,402 → ('18) 14,705 → ('19) 13,215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직거래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생산이 지역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모델이 정착이 된다면,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어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부분 기여 가능하다 평가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장(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요구하는 공모절차 규정, 사업자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인력, 보조금 교부기준, 절차 등을 준수하여 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음.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방식을 취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보조사업자는 주로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선정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공모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임.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30%~70%)을 의무화하여 동 사업 추진에 있어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총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과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사업집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업자를 적발하고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수입농산물 판매 등 위반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3회 적발시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로 보임.

○ 기초조사보고서에 언급한 사례처럼, aT의 정기점검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한 원인을 높은 자부담률로 파악하여 지방비(0% ⇨ 30%) 매칭을 늘린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각 내역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대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5장(보조금 반환 및 제재) 및 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에서 요구하는 사항별로 내부 운영지침상 보조금 반환 및 제재사항, 성과활용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장(보조사업 집행관리)에 준수하여 연도별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 및 누락결과, 조치결과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3년 사업시작 후 부정수급 1건 발생함.

- ‘16년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에서 내부자 제보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현재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를 진행 중임.

○ 대체로 부정수급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격, 중복수령 등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직거래를 주로 활용하는 영세·고령농의 자립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점차 국가의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지자체의 지원의무 확대, 자부담 확대 등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의 자립화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임.

- 교육, 홍보 등 직거래활성화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직거래장터 등 기초인프라 투자는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요인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18년 청탁금지법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 편성해오고 있는 바 직거래장터 지원(2,450백만원)에 배정된 예산의 10%, 2.45억원의 감축을 제안함.

○ 최근 깨끗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로 지자체나 민간 차원에서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간 연계 가능성 및 농협 등 기존조직을 활용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최근 SNS 커머스, HMR(가정간편식) 시장 급성장 등 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러한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농산물직거래를 단순히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측면에서 프리미엄 농산물 직거래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식품ICT융복합촉진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2.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6.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5.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5.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4.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8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5.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농식품ICT융복합촉진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이 필요<br>·동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br>·동 사업은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실제 농가에 모델을 확산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업이나, 현재 데이터 수집의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음<br>·'18년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확산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내역사업의 설계 및 추진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ICT융복합촉진'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융합촉진법」을 법적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사업은 농식품ICT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으로 「산업융합촉진법」과의 연계성은 찾기 어려움
-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규정에 따라 동 사업 지급 근거의 타당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은 '17년 '스마트팜 정보의 수집·활용 기반 확립에 의한 ICT융복합 확산 촉진'으로부터 '19년 '스마트팜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체계 확립으로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로 일부 확대되었음

-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수집·활용'임, 즉 스마트팜이 보급·확산되기 위해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육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인프라 지원보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국정과제 83번)'과 연계되어 있으며, 스마트팜은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은 일부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품목과 농가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사업소관부처는 이를 통해 농식품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제조기업, 컨설팅기업 등 관련 산업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육성됨에 따라 수혜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동 사업의 성과를 통해 편익을 받는 주요 수혜자는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농가가 아닌 동 정보를 활용하는 농가임

- 즉 동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는 동 사업을 통해 가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는 농가라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지식정보가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따라 동 사업의 수혜자 범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동 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18년을 기준으로 변화하였음

- '17년의 경우 동 사업은 'ICT융복합 모델개발' 및 '농가활용 정보서비스 개발'이라는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18년에는 그간 추진되었던 ICT융복합 모델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16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반영), 이를 통해 체감형 성과확산을 발굴하는 형태로 동 사업방향을 전환하였음

- 이러한 구조변화로 인해 '17년에는 민간경상보조 및 지자체경상보조가 혼합되었던 사업이었으나, '18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체계 개편

○ '19년부터 동 사업은 '농가활용서비스 개발'과 '현장 체감서비스 개발' 내역사업으로 사업구조가 변화하였으며, 내역사업의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농가활용서비스 개발' 내역사업은 스마트팜 우수농가를 발굴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한 컨설팅, A/S 등을 지원함
- '현장 체감서비스 개발' 내역사업의 경우 '19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체감 모델 데이터 수집을 위한 농가를 100호 추가 선정하고 센서 5개 내외 설치를 지원하여, 스마트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분석체계의 강화 측면에서 현행 내역사업의 구성에 대한 합리성은 일부 인정됨

○ 다만, 동 사업목표를 고려할 때 현행 사업은 단순히 빅데이터 수집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향후 실제 농가에 확산하고자 하는 모델의 확산을 위한 사업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 동 사업은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 활용을 위한 모델 확산에 있음
- 실제 '18년의 경우 동 사업은 모델의 확산을 위해 ICT융복합 모델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신규 확산모델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그러나 '19년의 경우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수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신규 내역사업인 '농가활용서비스 개발' 역시 다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딸기에 대해 병해관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즉 '18년 사업을 통해 실제 확산가능한 모델이 도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소관부처 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내역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식품ICT융복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들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동 사업은 농업 관련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함

- 향후 관련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 분야의 경우 시장 개방의 확대, 농업 인구의 감소,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 취약한 생산여건으로 인해 ICT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팜 확대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누적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0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추진된 자료누적 및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예산 투자가 모두 매몰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어 재정적 손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만을 고려하면 그 범위는 '19년 기준 약 130호의 농가이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주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업 폐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의 재정적 손실은 크지 않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데이터 조사와 관련된 행정비용이 일부 존재함

- 다만, 동 사업은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도가 중요한 사업이므로, 불가피한 조사비용으로 판단됨

○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농가 지원 강화,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등 주요 내역사업의 구성 및 규모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존보조율 적용대상이 아님

- '17년까지는 기준보조율 규정에 따라 모델개발사업은 40%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되었고, 농가활용서비스는 100% 국고보조가 진행되었음,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국고 100%로 조정되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농가활용서비스 개발은 수익성 창출·보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화사업 법적 전담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동 분야의 특수성은 일부 인정되나, 충분히 적정성을 담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집행 현황 등을 수시 관리하고 있음

- '17년 기준 보조금법 이외에 상기 훈령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 통지함

- '17년 기준 내역사업 중 'ICT 융복합 모델개발'은 지자체 공모 및 선정절차를 준수하고, S/W감리를 포함하여 사업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였음

- 내역사업 '농가활용서비스 개발'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나,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결과 보고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실적보고, 이행점검 등을 실시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부정수급자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17년 기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부정수급자 관리 등을 실시하며, 보조사업자의 세부계획 점검 및 승인, 완료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7년 기준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부정수급 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17년 기준 보조사업자의 세부계획 점검 및 승인, 완료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였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농식품ICT융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구성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일부 내역사업의 조정이 필요

###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은 단순히 농업 관련 데이터의 수집에 한정되지 않으며, 향후 실제 농가에 확산하고자 하는 모델의 확산이라는 측면이 반드시 고려된 사업 설계가 필요함

- 동 사업이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현장 활용을 위한 모델 확산까지 포함됨

- 실제 '18년의 경우 동 사업은 모델의 확산을 위해 ICT융복합 모델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신규 확산모델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그러나 '19년의 경우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수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신규 내역사업인 '농가활용서비스 개발' 역시 다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딸기에 대해 병해관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즉 '18년 사업을 통해 실제 확산가능한 모델이 도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소관부처는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내역사업의 설계가 추진하여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1.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1.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동 사업은 농식품 수출 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농식품 생산-유통-수출 전과정 맞춤형 수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br>·다만, 개별박람회 지원 등 **일부 세부내역 사업은 자부담* 도입·상향, 보조율 하향 조정** 등 **사업방식의 개선이 요구됨**<br>*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자부담(10%) 도입, 샘플통관지원 자부담 비율 상향(10%→20%) 등 (2020년 부터 추진, 부처 의견)<br>·농식품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동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배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 등에 지원근거(임의규정)를 두고 있음

○ 동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 판매조직 육성, 수출업체맞춤지원, 농식품수출바우처 지원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식품 수출 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과 수출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 수출농가를 조직화·규모화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식품 수출마케팅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의 실천과제(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에 포함*되어 있음

* 농식품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및 시장다변화 등 추진

- 동 사업의 수혜대상이 전국의 농산물 수출농가,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산물 생산농가 전체로서 사업수혜자가 광범위한 것으로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농식품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사업목적에 따라 생산기반 조성, 판매조직 육성, 수출업체맞춤지원 및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의 4개 내역사업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간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식품 수출액은 '15년 61.1억달러에서, '16년 64.7억달러, '17년 68.3억 달러, '18년 69.3억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사업재편을 '1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 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들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들임(수출물류비 1990-, 유통연계판촉 1995-, 수출상품화지원 1997-, 안전성 관리.검역관 초청 2006-, 수출협의회 육성 2008-, 선도유지제.수출선도조직.전문인력 육성 2009-)

- 수출 전과정에서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생산기반 조성, 판매조직 육성, 맞춤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비교적 구제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동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되었으며, 성과지표 중 백만불 이상 농식품수출업체 수의 계획대비 실적은 98.2%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17년 계획 700개소(실적 86.0%), ' 18년 계획 650개소(실적 98.2%)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농식품 수출 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는 판단됨

- 농식품 생산-유통-수출 전과정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에 따른 국내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 추정됨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2012-2016)에 따른 농식품 수출액 증가는 국내 농식품 가격안정(수출중단시 과일 ☞·채소류 가격 하락 5.36%, 농업생산액 증가(2015년 1조3천억원/년), 농가소득 증가(2015년 5,646억원/년)에 기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기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에 포함, 매년 중장기 재정계획 검토·심의 받고 있음

- 농식품 수출 전과정에서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서 생산기반 구축(5.4%), 판매조직 육성(5.3%), 수출업체 맞춤지원(88.8%),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0.6%)로 구성되어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요 시행주체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업 제10조의5에 따라 보조사업을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요 시행주체임

○ 내역사업 중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민간시행주체를 복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식품연구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노력 중임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절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업시행주체는 각 사업별 정산지침 이외에도 예산관리지침, 회계관리지침, 법인카드사용지침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한 지침 등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추진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각 사업별 정산 기준 배포 및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사업시행주체 대상 사업정산 추진을 통해 적정집행 부분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결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중복지원 등 문제 발생시기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 전액환수 가능한 정산지침 및 계약서 상 의무 부여 등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 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별 보조금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사업정산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정산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집행여부 점검 및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운영비 적정성 평가 등 정산점검을 통해 적정 집행 분에 한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승인하고,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수행주체로부터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집행내역서 등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며, 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시 보조금 환수, 교부제한 등 사업별 지침에 의거 적의 조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기관(aT)이 사업수행 시 사업신청단계부터 e-나라도움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의 정산증빙 및 계약서에 의거 정산집행을 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 위반 시 사업지침, 계약서 등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방식 변경**

- 동 사업은 농식품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농식품 생산-유통-수출 전 과정 맞춤형 수출지원을 위한 컨설팅, 해외인증비용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다만, 개별박람회 지원 등 일부 세부내역 사업은 자부담* 도입·상향 및 현행 보조율 하향 조정 등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자부담(10%) 도입, 샘플통관지원 자부담 비율 상향(10%→20%) 등 (2020년 부터 추진, 부처 의견)

### 3-2 정책 제언

○ 농식품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동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배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총액한도제(중앙 9%, 지자체 20% 한도) 설정 및 연도별 감축방안, 저가-저품질 위반 사례 공유, 물류비 폐지대비 국제기준 부합하는 대체사업 발굴 협의 등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수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식품수출다변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3.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동 사업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와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를 목적으로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수출전략형제품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br>·동 사업에서 예산비중이 높은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변화** 불가피함<br>·아울러 지자체가 농식품수출다변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토록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 제17조에 지원 근거(임의규정)를 두고 있음

○ 동 사업은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수출전략형제품 인큐베이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에 대체로 부합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①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기관과의 교류 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17조(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 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와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일본, 중국, 미국 3국에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으로 농가 및 중소수출기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

○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사업 참가업체 및 농민, 청년 등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수출업체의 신시장 적합품목 개발부터 현지 바이어 발굴, 세일즈 로드쇼 등을 통한 업체 미팅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와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 목표 달성에 합리적임

- 해외거점 구축을 위한 파일럿요원 파견(신흥국 5개국, 100개 바이어), 세일즈 로드쇼, 전략국 집중마케팅(14개국), 월드서포터즈(20개국 250명), 거대 신흥시장 바이어상담회(수출업체 150회, 바이어 100회), 프런티어업체 인큐베이팅(100개사 육성) 등

- 다만, 청년해외개척단 활용은 사업목표와 연계성 및 직접적 효과가 명료하지 않음

○ 동 사업은 파일럿 요원 파견, 청년해외개척단. 월드서포터즈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된 반면, 프런티어업체 육성, 세일즈 로드쇼는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프런티어업체 육성(목표 100개사 → 실적 95개사), 세일즈 로드쇼(목표 12회 89사 → 실적 11회 88사) 등

- 신규수출 확대, 세일즈 로드쇼에 따른 계약액·수출액 증가하는 등 사업 효과를 거둠.

  ＊청년 해외개척단 취업률: 1기(94%) → 2기(41%) → 3기(50%)

■ 청년해외개척단의 구체적 성과
- 참여기업 1:1 매칭을 통한 참여사 목표국 수출확대 : ('17년) 2,694천불 → ('18년) 9,527 (253.7%↑)
- 참여사의 전략국가 20개국 수출실적 확대
  : ('17년) 100백만불 → ('18년) 117 (16.4% 증대)

＊청년해외개척단 마켓터 활동을 통한 주요 수출성과
- (대만) 바이어발굴-인력충원-품목개선 → 신선양배추 대만 수출성공(연 12,000톤, S社)
- (폴란드) 시장조사-마켓테스트-홍보 → 폴란드를 넘어 유럽 5국에 숙취해소음료 선풍(B社)
- (남아공) 매칭기업의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추진여 → 청년개척단 매칭기업에 취업(P社)

출처: 부처 소명자료(2019.2 제출)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확대와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 달성을 위해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역사업 예산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시장개척플랫폼 구축사업(5,520백만원)의 예산구성에서 직접적인 사업효과 거양과 관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에 26% 예산(1,440백만원)을 배정하고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운영(65.5%)과 프런티어 업체 인큐베이팅(34.5%)으로 지원예산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기준보고율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보조율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보조율(통상 80%)에 의거하여 업체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70~90%)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에 기여(다문화가정을 신시장 수출전략품목 품평단으로 활용,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 기여)

- 청년해외개척단의 취업률에 의하면 동 사업과 직접 연관된 업계로 취업한 비율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동법상 보조사업 위탁 사업시행자)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사업에 대해 포괄적 관리를 하고 있음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종료후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법령.훈령 등을 준수하여 정산과정을 거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사업수행주체로부터 사업수행결과 보고서, 집행내역서 등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며 지침 저촉시 보조금 환수, 교부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감사원의 감사, 국회 예결산 감사 등도 실시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규정 및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 사후관리를 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사례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방식 변경**

- 동 사업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와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를 목적으로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 수출전략형제품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사업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가져오는 내역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동 사업에서 예산비중이 높은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및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함

### 3-2 정책 제언

○ 지자체 차원에서도 농식품수출다변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경기도, 전북 등 지자체 차원에서 베트남, 태국 등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농식품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식품유통교육훈련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8.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3.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3.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4.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2억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br>·유통교육훈련을 통한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의 효과성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br>·전문교육과 일반교육의 경우 참가자의 자부담이 가능함에도 국고보조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문교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55%에서 50%로 낮추고 일반교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 중 2억 감축<br>·대부분 업체 종사자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참가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인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3년 이내에 도입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 훈련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근거는 명확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음

○ 교육 훈련 대상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경매사,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종합유통센터의 임직원, 농수산물 출하조직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농어업인, 농수산물의 저장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을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농산물 유통교육이 국정과제 내 추진과제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하나로 포함되어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한 편임

- 13년 수립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개선을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도매시장 운영의 구조를 전환하고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등이 추진과제에 해당함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경매사, 중도매인, 산지조직, 도매시장·유통업체 및 저장·가공 등 농식품산업 유통종사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 등 농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농산물 유통종사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교육을 받은 일차적 수혜자 이외에 교육을 통한 파생되는 간접적 혜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명확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농식품유통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이라는 목적에 어긋나는 내역사업은 없고 교육과정별 목표와 교육대상이 구체적이나, 교육 훈련에 투입된 비용 대비 충분한 성과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움

- 1~3일 내의 단기일반교육과 6개월~1년의 장기전문교육 및 교육정보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의 성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보조사업이 계획한 교육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교육 이수 인원 이외에도 교육만족도, 학습성취도, 현업적용도, 비즈니스 성과 창출도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인당 교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자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도매시장 운영구조를 전환하고 직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 경로를 활성화하는 등 농식품 유통구조의 개선은 국민의 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농어업인 등 유통 관련 종사자의 실무 능력 제고가 수반되어야 함
- 농어업인과 산지조직, 유통기업 종사자 등이 이수하는 일반단기교육 비용이 1인당 14만 원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교육대상이 일부 자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수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타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은 낮은 편임

○ 유통환경이 다변화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육훈련과정의 일관성과 중장기적 계획이 미흡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교육훈련과정의 대부분이 농식품유통교육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장기전문교육 사업은 단기일반교육보다 2배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교육정보화사업은 규모가 작아 사업의 실효성이 낮음

○ 사업비는 대부분 교육비에 해당하며 일부 교수인건비 등에 지출됨

- 단기일반교육은 도매시장 종사자 교육, 산지조직 현장교육, 직거래 활성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전액 교육비에 해당함
- 장기전문교육의 사업비는 교육비와 운영비로 구분되며 교육정보화 사업비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저작권료 및 촬영편집비에 해당함

○ 교육이수자의 자부담이 가능함에도 일반교육의 경우 전액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교육에는 55%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절차가 불필요함

- 농식품유통교육훈련사업지침에 보조금 교부조건 및 교부절차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장기교육의 경우 농수산지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교육을 위탁하게 됨

- 공개모집 공고 후 전문 교육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교육계획서를 평가하여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함
-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교육과정의 내용, 모집계획, 전문교육과정 운영 경험, 교육기반, 교육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식품부 사업지침을 통해 사업관리가 이루어짐

- 교육 시행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며, 농식품부의 계획승인 및 지침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 교육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 지역별 전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 전문교육(간접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 운영과 예산집행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이 이루어짐

○ 간접보조사업자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감독하며 현장점검 점수 70% 이하 기관은 재점검을 시행하고 기관별 현장점검 결과는 운영실적 평가에 반영함

- 기존사업자 중간평가 제도가 1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평가점수 상위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교육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C등급을 받은 기관은 2차 년도 운영권을 미부여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함
- 실제로 C등급을 받아 운영권이 정지된 사례는 없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식품유통교육훈련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 사업비 정산, 보조금 반납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 후 20일 이내,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익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비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농산물유통 전문교육(간접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이루어짐

- 지역별 전문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시점에서 교육비 미집행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거점 교육기관에 반납하도록 하며, 교육비 정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적합하게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
- 2018년에는 위탁 교육기관 7개에 대하여 원가계산 전문업체가 정산 관련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교육 종료 시 정산 처리하여 정산결과를 농식품유통교육원에 통지하였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교육생 과대 산정 등 교육비 허위집행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보조사업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불시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을 점검 및 관리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농산물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 훈련의 성과를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 국고 보조율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보조금 규모를 감축할 것을 권고함

- 전문교육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50%로 낮추고 일반교육의 국고 보조율을 80%로 낮추어 일부 비용을 자부담하게 함으로써 교육 훈련 이수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보조사업 연장평가 이전까지 도입해야 함

- 일회성·단발성 교육과정의 신설과 폐지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의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3-2 정책 제언

○ 대표 성과지표인 계획 대비 교육 훈련 이수 인원은 단순한 투입 위주의 지표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교육 훈련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업인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동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정과제와도 연계되어 있음. 타업종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질환 연구와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보조율 100%도 타당함.<br>·동사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예산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사업의 성과는 사업수행 실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br>·사업이 다년간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서 추진한 직업성 질환 연구조사 결과가 농민들의 질환예방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질환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예방, 치료 등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업인 직업성 질환 요인 도출 및 검진체계 등 기초조사를 수행 하는 것이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주요 업무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사업의 성격이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섬.

- 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작업과 농업인 질환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윤동기로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님.

○ 사업의 수혜자는 전체 농업생산자 임.

○ 국정과제인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제도 도입'과도 일부 취지가 같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내용이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교육을 연중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방프로그램 교육 및 무료건강검진 등에 대한 사업수혜자가 증가하고, 사업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인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개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알아볼 수 있는 세부평가도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기계화 진전,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으로부터의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비농업종사자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 사업의 필요성이 상존함.

○ 농작업 질환의 광범위한 연구조사와 질환 예방프로그램 개발·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본 사업은 지자체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님.

- 사업의 성격상 의료시설 및 관련 전문가 인력수준 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학병원, 연구소 등이 사업실시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동 사업은 이들 기관을 사업실시 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환경부의 환경보건센터가 있으나, 이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예방·저감대책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 본 사업의 내용과 중복 소지는 없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사업은 농작업 질환 유병률 등의 연구, 무료보건서비스, 질환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율 100%로 운영되고 있음.

○ 센터별 3억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예산 규모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1,504백만원 | 1,800백만원 | 1,500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민간단체부담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합계 | 1,504백만원 | 1,800백만원 | 1,500백만원 |
| | 100% | 100% | 100% |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의료·교통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질환예방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무료보건서비스를 지원하여하는 것이 동 사업이므로, 농업인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2.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3호, 2018. 1. 2., 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관련절차 준수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3호, 2018. 1. 2., 개정)을 마련함.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업안전보건센터 간담회를 실시하여 집행실적을 연 4회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사업추진성과를 보고 받아 예산집행 관리 감독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까지 관련된 조항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 금지) ~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사항 점검 등)까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16.1.5)을 수립하여 사업실적보고를 받고 있으며 예산전용, 집행 등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재정 관리를 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정과제와도 연계되어 있음.

○ 타 업종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질환 연구와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보조율 100%도 타당함.

○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 등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동 사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예산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사업의 성과는 사업수행 실적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연구조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사업이 다년간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연구조사 결과가 농민들의 질환예방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질환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예방, 치료 등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하는 것이 좋겠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업협상대응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이 필요<br>·「헌법」 제123조 제1항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보조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br>· 사업의 계획한 목표 대비 달성도의 측정이 어렵고, 각 세부 목적의 달성을 넘어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 | | |

# 평가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 다양한 법령의 취지와 보조사업의 내용이 대체로 연계성이 높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의 농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 한 법률임

○ 국제통상지원사업은 대외변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DDA/FTA 협상, SPS 등 통상현안 및 국제협력 업무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함. 그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이는 모든 농업인에게 그 정책의 효과가 확산되어 수혜자의 범위도 광범위함

○ FTA해외정보조사사업은 FTA 협상대책 마련을 위한 협상상대국 농업현황 및 교역동향 등 기초자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함. 현재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및 양자 간 FTA 증가에 따른 수출입 동향분석·주요국 품목별 관세 자료 현행화 등 해외정보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 그 목적이 타당함. FTA 협상시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혜택은 우리나라의 모든 농업인으로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들의 목적이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됨. 하지만,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계획한 목표 대비 달성도의 측정이 주로 INPUT으로 이루어짐.
- OUTPUT 또는 OUTCOME의 측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각 세부 목적의 달성을 넘어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업분야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관련 DDA/FTA 협상전략 수립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농업분야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민간에 관련 현안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국제통상지원사업 및 FTA해외정보조사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임

○ 쌀 관세화 검증,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중남미 국가 대상 신규 FTA 추진 등이 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농업분야 시장개방 요구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요 통상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최적의 협상전략·통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사업으로 사업이 폐지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종합적인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FTA 관련 정보 구축, 민간전문가, 농업인,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축소되고 의견수렴 등의 소통에 제약이 발생하여 협상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해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 농어업 보호 육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7년 결산 기준 40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로 국제통상정보시스템구축, 국제회의지원, 국제통상협력 업무지원 등 용역낙찰차액,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 각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

○ 보조율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100%의 보조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제통상지원사업 및 FTA해외정보조사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며, 그 법적 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적절한 기관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조 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업협상대응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 절차, 사업비 배분 및 사업내용 변경 승인 기준 및 사업비 집행실적 및 사업비 집행절차 준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 집행 현황 점검을 위해 사업추진 계획 통보 시 월별(매월 말일)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도말 사업비 집행 및 이·불용 전망을 제출하도록 함. 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대응도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로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 국제통상지원사업, FTA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에서 결정통지까지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매 회계연도 사업 종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이 외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 부정수급시 대응에 대해 고지하고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보다 다양한 부정수급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헌법」 제123조 제1항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보조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총 규모에 비해 불용액과 이월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3-2 정책 제언

○ 사업의 계획한 목표 대비 달성도의 측정이 어렵고, 각 세부 목적의 달성을 넘어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농지관리종합정보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5.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은 사업방식의 변경이 요구됨<br>·동 사업은 간접적 수혜 범위가 비교적 넓고,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이나 성격상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br>·다만, 성과지표나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내역사업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경우 사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br>·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독립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거나, 사업효과(예를 들어 제도개선 등의 실적 등)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사업방식 변경])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의 법적근거는「농지법」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므로,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동 사업은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의 경우 「농지법」제28조, 제34조, 제49조와 연관되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사업은 「농지법」제31조의3에 근거함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관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 처리와 대농업인서비스 질 향상으로,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와 연관성은 없으나,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농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농지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전국 230개 시군구와 3,550개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본 사업을 통해 농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며, 간접적 수혜자는 전국 농업인 1,935천 농가('18. 12. 31 기준)로 비교적 광범위하다 할 수 있음. 또한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의 외부효과 입증 자료는 없으나, 대국민 서비스 지원,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간접적으로 연결됨

※ 담당공무원 지원내용 : 농지취득, 처분, 이용실태관리 등 농지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 관련 정보 관리하여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민원 처리 지원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농지관리종합정보화 사업은 '농지종합정보화' 사업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보조사업의 목표와 일치함

-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농지관리업무 정보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대민서비스 질 향상으로, 농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필지별 농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농지관리 및 농촌개발관련 공간정보 DB를 구축하여 농정에 활용하는 것임

※ (사업내용)
- 농지관련 시스템간 DB 연계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전국 농지원부 및 농업진흥지역도 등 GIS DB 구축 관리
- 전국 농지정보를 통합한 농지정보통합시스템 구축
- 농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자체 운영지원 등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사업은 2016년부터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목적은 전체 농지의 약50%에 해당되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기반정비 등 국고가 투자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것임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농업진흥지역 일제 실태조사 및 지속적 유지관리
• 농업진흥지역 상시정비체계 구축 및 운영

○ 성과지표나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내역사업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사업성과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농지정보시스템 만족도(%)와 농지정보시스템 이용도(%)로 최근 3년간(16-18년) 두 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다만 이 성과지표는 내역사업 중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의 사업성과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성과지표 설정 가능성을 검토해볼만함

| 성과지표 | 목표대비 달성률 | '16년 | '17년 | '18년 | 비고 |
|---|---|---|---|---|---|
| ① 농지정보시스템 만족도(%) | 목표 | 93 | 94 | 95 | |
| | 실적 | 93.1 | 94.1 | 95.2 | |
| ② 농지정보시스템 이용도(%) | 목표 | 22 | 23 | 25 | |
| | 실적 | 22.8 | 24.3 | 25.3 | |

- 성과지표 이외의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성과와 미래기대수요 자료의 거의 대부분은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에 해당됨. 따라서 내역사업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조사물량이나, 제도개선 등의 실적 등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지정보시스템의 투자금액 대비 투자기대편익의 2011년 말 시점의 현재가치(NPV)로 산정된 2008~2011년 농지정보화사업의 4개년 투자대비 투자수익율(ROI)는 294.08%로써 4개년 각 투자액 대비 2.94배의 높은 기대수익율로 평가됨

○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2017년 '보통', 2018년 '우수' 평가를 받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지관리종합정보화 사업은 전국 농지 195만ha,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농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전용현황관리, 농지원부 관리 등)하여 농지관리 업무 및 정책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사업내용상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 및 국토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과 연계 구축을 통해 중복성을 배제함으로써 유사·중복 문제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큰 재정적 손실이 야기되지는 않으나,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혼선을 막고, 농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 전반의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농업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주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농지관리종합정보화 사업의 최근 4년간 사업비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예산규모와 구성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
| **세부사업: 농지관리종합정보화** | **1,949** | **1,949** | **2,207** | **1,931** |
| **□ 농지종합정보화** | **1,773** | **1,658** | **1,912** | **1,636** |
| ■ 농지정보통합시스템 구축 | 500 | 400 | 648 | 404 |
| ■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용자 만족도 설문('17~) | 57 | 7 | 8 | 8 |
| ■ 농지정보화 전산장비 유지보수 | 113 | 145 | 145 | 113 |
| ■ 농지공간정도 유지관리 및 농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1,103 | 1,106 | 1,111 | 1,111 |
| - 행정망 및 모바일 통신비 | 27 | 27 | 28 | 28 |
|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895 | 878 | 885 | 988 |
| - 교육 및 운영 지원 | 71 | 74 | 74 | 74 |
| - 기타 | 110 | 127 | 124 | 21 |
| **□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 **300** | **291** | **295** | **295** |
|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시스템 보완 | 133 | 140 | 116 | 110 |
| ■ 농업진흥지역 실태 상시조사 지원 | 167 | 155 | 179 | 185 |
| - 실태조사 시스템운영관리 인건비 | 131 | 119 | 143 | 148 |
| -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 | | | | |

-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은 약47%-59%로 높은 편이며, 2017년 2.5인, 2018년 이후 3인의 인건비가 배정됨

  ※ 인건비: '17년 996백원 사업비 중 51.1%→ '18년 1,035, 46.9% → '19년 1,136, 58.8%

-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의 경우 2014년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연간 예산 약6억) 2017년 이후에는 실시간 통계정보관리 및 고시도면 파일 제작·인쇄·배포를 하고 있음('15년 이후 연간 예산 3억)

  ※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추진일정
  - '05-'06년: 일제 실태조사
  - '07-'08년 보완정비
  - '14-'15년 일제 실태조사
  - '14 시스템구축 완료
  - '16년 이후 유형변동관리, 시설물정보관리
  - '17년 이후 실시간 통계정보관리

○ 동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7년 1,949백만원, 2018년 2,207백만원, 2019년 1,931백만원으로, 실집행률이 높고, 불용액 규모가 작음('17년 1.5백만원, 낙찰차액)

단위 : 천원

| 년 도 | 구분 | 예산 | 집행액 | 집행율 | 불용액 | 불용사유 |
|---|---|---|---|---|---|---|
| 2016 | 농지종합정보화 | 1,773,000 | 1,773,000 | 100% | - | - |
| | 농업진흥지역 | 300,000 | 300,000 | 100% | - | - |
| 2017 | 농지종합정보화 | 1,658,000 | 1,658,000 | 100% | - | - |
| | 농업진흥지역 | 291,000 | 289,519 | 99.5% | 1,481 | 낙찰차액 |
| 2018 | 농지종합정보화 | 1,912,000 | 1,912,000 | 100% | - | - |
| | 농업진흥지역 | 295,000 | 295,000 | 100% | - | - |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이 없으며 국비 100%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정보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한 농식품 창조경제 활성화, 대민서비스 제고, 농지이용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⑨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일부 인정됨

※ 현장조사 등 비용 절감 등 편의성 제고

| 구 분 | 총 관련 업무시간 | 절감율/ 활용율 | 절감시간 서류 절감량 | 시간당 편익서류 비용(원) | 사업투자 성과 (백만원) |
|---|---|---|---|---|---|
| 합 계 | 7,644,001 | | | | **21,391** |
| 1)농지정보업무활용 효율성 | 2,414,288 | (절감율) 42.90% | (절감시간) 444,328 | 14,192/시간 | **6,306** |
| 2)농지정보 정보검색비용 | 189,104 | (절감율) 42.90% | (절감시간) 34,803 | 14,192/시간 | **494** |
| 3)농지정보 효과성 | 2,626,321 | (활용율) 93.20% | (서류발생) 29,977,718 | 20/페이지 | **600** |
| 4)농업분야 국제경쟁력 | 2,414,288 | (절감율) 42.90% | (절감시간) 965,300 | 14,494/시간 | **13,991**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4조(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사업 집행관리 교부절차 체계에 의해 교부금을 집행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가 적정함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4조(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 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여야 하는 농지정보시스템은 별표1과 같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의 관련법에 따라 재원을 집행하여 보조사업자 재원집행이 적정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 승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신청 및 수급·정산하며, 매년 보조사업 집행 후 검정신청서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 승인,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 조치를 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보조금 정산 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집행 후 검정신청서 제출 및 승인 실시함.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사규 및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함(감사기준 시행세칙)

○ 보조금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부정수급 발생사례는 없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1) 디브레인(d-Brain)을 통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실적 점검, 2) 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 부정수급 점검 실시 3)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무처리 점검 등을 실시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 처리와 대농업인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의 외부효과 입증 자료는 없으나, 사업의 간접적 수혜 범위가 비교적 넓고, 대국민서비스 지원,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농지종합정보화' 사업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농지관리업무 정보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대민서비스 질 향상이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사업의 목적은 진흥지역 실태조사결과를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국고가 투자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것임

○ 성과지표나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 미래기대수요 등을 검토한 결과, 거의 대부분은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사업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성과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독립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거나, 사업효과(예를 들어 제도개선 등의 실적, 조사물량 등)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성과관리 강화([사업방식 변경])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서류를 확인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
| 보조유형 | 민간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0.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6.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2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재난관리는 필수적인 국가의 책무로 치수능력확대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이란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인정됨<br>·또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은 저수지, 방조제 등 노후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및 농업인, 관광객, 국민 등으로 광범위한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인정됨<br>·치수능력확대사업은 저수지, 방조제 등 노후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지원·관리해야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 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바 있음<br>·치수능력 확대사업은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을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나 농어촌공사가 추진한다고 해서 부정수급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움.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함<br>·치수능력 확대 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발견되는 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정의, 추진 방법,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농어촌정비법’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에 나타나 있음

○ 본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은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은 5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내역사업은 농어촌정비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그 근거가 있으며, 재해예방 및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재난관리는 필수적인 국가의 책무로 치수능력확대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이란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인정됨

○ 또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은 저수지, 방조제 등 노후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및 농업인, 관광객, 국민 등으로 광범위한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인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예당저수지 치수능력증대, 삽교방조제 배수갑문확장,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 이동저수지 치수능력증대, 대형농업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사업은 설계강우량, 농업용수 공급률 등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활용하는 등 효과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치수능력확대사업은 저수지, 방조제 등 노후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지원·관리해야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 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바 있음

○ 대규모 저수지, 방조제의 경우 농업인 스스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저수지의 물넘이 확장이나 방조제의 배수갑문확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간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저수지가 노후화되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치수능력확대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규모 수리시설의 재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재정소요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집행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홍수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배수개선'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보조사업 이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국고 100%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해석이 가능함

○ 본 사업은  신규지구를 추가 착수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중기재정계획('18-'22) 수준에 따라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등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에 대한 기술이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치수능력 확대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기관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지구는 실태조사시(사업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의 기초자료 분석, 기술적 분석, 비용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관리 중임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총사업비 관리 지침 등에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총사업비 관리 지침 등에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농식품부도 주기적인 집행점검을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본사차원의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시행령 제 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의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내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 보조사업 담당자인 농어촌공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절차 수행토록 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치수능력 확대사업은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을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나 농어촌공사가 추진한다고 해서 부정수급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움.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재난관리는 필수적인 국가의 책무로 치수능력확대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이란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인정됨

○ 또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은 저수지, 방조제 등 노후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및 농업인, 관광객, 국민 등으로 광범위한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인정됨

○ 치수능력확대사업은 저수지, 방조제 등 노후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지원·관리해야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 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바 있음

○ 본 사업은  신규지구를 추가 착수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중기재정계획('18-'22) 수준에 따라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등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치수능력 확대사업은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을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나 농어촌공사가 추진한다고 해서 부정수급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움.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2022년까지 예정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마무리를 통해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신규지구를 추가로 선정할 시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식품부 |
|---|---|
| 사 업 명 | 도매유통활성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1.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0.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의 타당성이 미흡함<br>·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매시장법인 컨설팅과 같은 내역사업은 도매시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시장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고보조의 타당성이 낮음<br>·도매시장 컨설팅 사업은 내역사업에서 폐지함. 도매시장 평가 비용의 일부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사업에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위한 유통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보조사업 전반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가짐

- 도매유통활성화 사업 가운데 도매시장 평가 등 운영·관리 지원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 주체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에 해당하여 유통구조 개선과는 차이가 있음

- 도매시장 운영비 성격의 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 정보화 사업과는 다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도매시장법인에게 있으며 평가, 업무검사,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효율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 시장 운영에 대한 비용 역시 운영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국가자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은 미흡하나, 공영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정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도매시장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함

○ 도매시장 컨설팅지원과 같은 세부사업은 도매시장법인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으로서 수행이 타당하지 않음

○ 보조사업의 일차적인 수혜자는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도매시장법인으로 범위가 협소하며, 그 혜택이 전체 소비자와 국민에게 전달된다고 보기 어려움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세부사업은 대체적으로 도매시장 유통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내역사업은 도매시장 운영관리비의 단일 항목이며 여기에는 도매시장 운영평가, 운영개선 지도 및 제도 발굴, 도매시장 업무검사,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시스템 운영·관리, 온라인 경매 시스템 시범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시스템 운영·관리는 도매시장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이 있으나 도매시장 운영평가, 업무검사와 같은 항목은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이 높음

- 세부사업에는 도매시장 유통실태 조사(3천만원), 통계연보 발간 및 고도화(4천만원), 도매시장 발전협의회(1천5백만원), 도매시장 관계자 워크숍(1천만원) 등이 포함됨

○ 동 보조사업이 도매유통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도매유통활성화 정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가·수의매매의 확대가 가격 안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일부 사업은 유통구조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시행과 관련이 있어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나 도매시장 컨설팅 사업은 직접적 수혜대상이 도매시장법인이며 평가 결과가 낮은 도매시장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매시장 운영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전환해야 함

-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 시스템, 온라인경매 시스템 등은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정보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합당함

○ 도매시장 운영 컨설팅지원과 같이 도매시장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수혜대상이며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는 세부사업은 보조사업에서 폐지하고, 도매유통 활성화와 관련이 높고 국고보조가 타당한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규모에 비해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도매유통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부족함

- 보조금은 18년 약 10억원으로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지출 내역이 다양하므로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직업 및 시설 홍보를 통한 도매유통 관련 신규인력 유도, 도매시장의 공익적 성격 홍보 등을 위해 도매시장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도록 지역사회에 공헌함

- 지역 대학(전북대, 전남대, 순천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소개(현장견학), 경매사 직업소개 등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없이 농안법에 근거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가 매년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 사업비를 집행함

○ 자체 업무규정에 따라 개별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집행에 관한 관리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단계별 집행점검 등 집행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집행현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부재함
- 사업별 집행점검과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른 환류 체계 역시 미흡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종료 이후 익년도에 사업추진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집행현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함

○ 보조금 반환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을 준수함

- 불용예산은 교부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 정산일로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환수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임

- 도매시장 평가, 제도 정비, 시스템 운영 등 행정과 관련된 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정액 지급 및 실비 기준으로 집행됨

○ 부정수급 적발사례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 내에 정가·수의매매 시스템 및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시장 업무검사 및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통계조사, 관계자 워크숍 등 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음

○ 다만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컨설팅 사업은 업무검사 미흡에 따른 페널티 성격을 가지므로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 하에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지양해야 함

- 시설현대화, 유통시설 지원, 유통시스템 지원 등 다양한 성격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영도매시장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도매시장 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므로 운영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3.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2.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2.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사업은 통폐합 및 감축을 권고함<br>·내역사업의 구성이 세부사업 목표인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내역사업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함<br>·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하도록 하는 2016년 보조금사업 평가결과를 이행하지 않음<br>·성과관리체계가 충실하지 않고, 성과지표 이외의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br>·'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의 경우 실집행율이 2017년 100%, 2018년 75%로 낮음<br>·2016년 보조금사업 평가결과 불이행과 사업성과 부족, 내역사업의 구성의 체계성 및 연계성 부족의 이유로,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19 1060백만원)은 2019년 완공 후 폐지하고, 생명자원 통합 DB 구축사업('19 650백만원)은 2020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업에 통폐합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사업의 법적근거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일반적 규정의 성격이 강하여, 내역사업의 명확한 근거규정이라 해석하기 어려우나,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곤충산업 관련기술개발',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4조에서 '제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정보화 및 인력육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동 사업은 2019년의 경우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강제규정이 아니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3조, 제14조), '생명자원 통합DB 구축' 사업은 '시행하여야한다'고 규정됨(「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생명자원 정보 통합DB를 구축하고,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 지원을 통해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 곤충사업은 지역성이 높아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생명자원 통합 DB구축 사업은 국비 100%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사업은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이 적고, 공약사업도 아니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필요성이 크지 않음

○ 사업의 수혜자는 내역사업에 따라 상이한데, 곤충종자보급센터의 경우 직접적 수혜자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간접적 수혜자는 곤충농가(3천여 농가)이며, 생명자원 통합DB 구축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민간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간접적 수혜자는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2017년 기준 44,269명임(출처: 한국바이오협회 2017년 기준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보고서).

- 다만 생명자원 통합DB 구축 사업의 경우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농생명소재산업이 국민건강, 농업소득 증진 및 나고야 의정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는 있으나, 명확한 외부효과 입증자료가 없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 구성은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함. 동 사업의 목적이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지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 센터 건립이나 행사지원적 성격으로 구성되어있음

○ 특히 내역사업 구성의 일관성이 없으며, 단기적인 예산소요를 보조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 구성은 연도별로 매우 상이하여, 2015년 5개, 2016년 4개, 2017년 6개, 2018년 8개, 2019년 2개 사업이며, 이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큰 폭으로 변화한 바 있음

- 2017년 3가지 사업을 추가 구성하였고(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 곤충유통사업단 운영,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 2018년에도 3가지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추가 구성하여 추진함(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건립, 인체장내미생물은행건립 타당성 용역, 곤충산업클러스터조성 및 타당성 용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 **9,341<br>-** | **9,761<br>4.5** | **1,731<br>△82.3** | **3,141<br>81.5** | **1,710<br>△45.6** |
| 생명자원 통합DB구축 | 661 | 661 | 661 | 661 | 650 |
| 생명산업대전 | 300 | 300 | 300 | 200 | - |
| 곤충가치 및 산업정책 홍보 | 200 | 100 | 100 | - | - |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 6,800 | 8,700 | - | - | - |
|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 | - | - | 240 | 1,200 | 1,060 |
| 곤충유통사업단 운영 | - | - | 130 | 130 | - |
|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 | - | - | 300 | 300 | - |
| 곤충생태지원관 | 1,380 | - | - | - | - |
|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건립 | | | | 250 | |
| 인체장내미생물은행건립 타당성 용역 | | | | 200 | |
| 곤충산업클러스터조성 및 타당성 용역 | | | | 200 | |
| | 5개 사업 | 4개 사업 | 6개 사업 | 8개 사업 | 2개 사업 |

○ 2019년 내역사업의 구성이 세부사업 목표인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음

- 2019년의 2개 내역사업인 곤충종자보급센터와 생명자원 통합DB 구축사업은 세부사업인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사업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극히 한정된 분야에 치중되어있음

※ **곤충종자보급센터**(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 약45%, 충청북도 농업기술원)는 '17년 설계, '18년 센터 건축. '19년 장비구입
(목적) 균일하고 안정적인 곤충자원의 공급 및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① 곤충자원발굴 및 육종화, ② 우량 곤충종자 보급 ③ 생산·분양 이력 관리 ④ 질병관리 모니터링

※ **생명자원 통합DB 구축사업**(민간경상보조, 국고100%, 농임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목표)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인 생명자원 정보의 공유 및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미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내용) 생명자원 통합DB 내실화 및 확대구축,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운영관리 체계 강화, 국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문 서비스 강화,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

○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2016년 보조금사업 평가결과를 이행하지 않음

- 1) 생명자원 통합DB구축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 2017년 말까지 폐지하도록 한 생명산업대전 사업은 2018년까지 진행하였고, 3) 2017년 3개 사업(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 곤충유통사업단 운영, 농축산용미생물제품인증지원), 2018년 3개 사업(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건립, 인체장내미생물은행건립 타당성 용역, 곤충산업클러스터조성 및 타당성 용역)을 신규로 구성하여 추진함

**※ 주요 지적사항**

- 1) 민간단체지원과 지자체지원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 생명자원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구축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작업만 완료하고, 3) 생명산업대전은 공공성이나 외부성이 미약한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비교적 낮으며, 4) 곤충산업은 지역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조치결과**

- 생명자원통합 DB(기재부 사업필요성 인정), 곤충종자보급센터건립('17년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곤충홍보비 폐지('18~), 생명산업대전 폐지('19~) 등 점진적으로 예산 감축
- ('17) 6개 내역사업, 1,731 → ('18) 8개 내역사업, 3,141 → ('19) 2개 내역사업, 1,710

○ 성과관리체계가 충실하지 않고, 성과지표 이외의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지표가 없으며('19년 성과지표로 있는 내역사업 폐지), 제출된 통합재정사업사업 평가결과는 세부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에 대한 것으로 세부사업의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2018년까지의 성과지표는 '생명산업대전 관람객 만족도(%)'로 최근 5년간 100% 달성함. 다만 곤충종자보급센터 관련 성과지표가 없음

| 세부사업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 | | | |
|---|---|---|---|---|---|---|---|
| | | 구분 | '14 | '15 | '16 | '17 | '18 |
| 동식물자원 산업화지원 | 생명산업대전 관람객 만족도(%) | 목표 | 4.2 | 4.25 | 4.35 | 4.5 | 4.6 |
| | | 실적 | 4.4 | 4.3 | 4.4 | 4.5 | 4.6 |

- 성과지표 이외의 사업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역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생명자원 통합DB 구축사업의 경우 한국데이터진흥원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 인증서(G마크) 획득, 페이지뷰 건수 및 방문자수 증가 등의 성과를 제출하였으나, 성과가 미약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은 건축단계로 성과목표와 관련된 성과가 아직까지 없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 면에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않음

- 곤충종자보급센터는 곤충종자 간에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나, 2019년 센터가 건립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생명자원 통합 DB 구축사업은 6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고보조를 통해 DB구축이 완료되었고, 2020년 이후에는 단일 내역사업으로 남아 세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2020년)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는 해당되지 않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 규모는 2016년 1,731백만원, 2017년 3,141백만원, 2018년 1,710백만원으로 증감폭이 큼

- 실집행률은 '생명자원 통합DB 구축사업'은 2017-2018년 100%이나,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의 경우 2017년 100%, 2018년 75%(이월 300백만원)로 부진함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인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관련 규정 50:50을 준수하고 있으며, '생명자원 통합DB 구축'사업은 국고 100%임

###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사업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관련성이 없어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음 (부처 제출 자료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은 사업자선정시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와 운영주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부지확보, 운영주체 등 센터 설립계획 및 운영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생명자원 통합 DB 구축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내부규정으로 사업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함

- 사업시행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두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보조사업자 재원 집행과정은 대체로 적정함

-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은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승인 → 보조금 교부요청 → 보조금 교부(보조금사정결정서통지) → 점검 → 사업비 정산으로 교부절차 준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시행기관별 사업시행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의 절차로 보조금을 집행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 제4장(계획수립 및 신청), 제5장(예산편성), 제6장(집행관리)에 따라 농업생명정책관실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보조사업 집행 점검 실시

○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실적, 집행현황점검 등을 보고받고 있으며 집행부진시 현장점검 등 사업 추진 독려를 촉구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서에 중요재산 관리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 후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산시 오류 및 누락사항에 대한 반납조치를 실시하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실시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곤충종자보급센터의 경우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부정수급 발생현황 없으며, 또한, 2017년부터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부정수급 등 발생 사례는 낮음

○ 생명자원 통합DB 구축의 경우 부정수급 발생현황 없으며, 사업수행자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 감사원 감사 등의 적용을 받는 등 타 사업대비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사업의 목적은 생명자원 정보 통합DB를 구축하고,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 지원을 통해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내역사업의 구성이 세부사업 목표인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지원을 통한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내역사업 구성의 일관성이 없고, 일회적인 사업을 편성하고, 단기적인 예산소요를 보조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하도록 하는 2016년 보조금사업 평가결과를 이행하지 않음

- 1) 생명자원 통합DB구축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 2017년 말까지 폐지하도록 한 생명산업대전 사업은 2018년까지 진행하였고, 3) 2017년과 2018년 6개 사업을 신규로 구성하여 추진함

○ 성과관리체계가 충실하지 않고, 성과지표 이외의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내역사업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의 경우 실집행율이 2017년 100%, 2018년 75%로 낮음

○ 따라서 2016년 보조금사업 평가결과 불이행과 실집행률 저조, 사업성과 부족, 내역사업의 구성의 체계성 및 연계성 부족의 이유로,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은 2019년 완공 후 폐지하고, 생명자원 통합 DB 구축사업은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업에 통폐합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식품부 |
|---|---|
| 사 업 명 | 말산업육성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5.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2.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3.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4.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2.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4.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20억 감축 및 사업방식변경<br>·수혜자가 제한적이고 보조금 투입 규모에 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br>·민간승마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의 타당성이 낮고 민간승마시설 투자를 구축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융자 전환을 통하여 내역사업 예산을 1,900만 원 감축함. 전문인력교육 및 워크숍 사업은 교육참석자가 직접적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 전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의 타당성이 낮으므로 자부담을 부과하여 100백만 원 감축함<br>·승마 저변 확대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기 위하여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지원 대상에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대책을 개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말산업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임

- 말산업육성법 제4조에서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는 명확한 편임

- 말산업육성법 제9조에서 전담기관이 말산업육성계획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말산업육성법 제14조와 제17조 등에서 국산마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승마 관련 사업 및 국산 경주마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말산업육성법 제17조에서 말산업 관련 인력 양성과 말산업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말산업육성을 통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목적은 명확하나, 말이라는 특정 축종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타당성은 부족함

- 농업환경 변화와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중 말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 객관적 근거는 미흡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기반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넓지 않고 파급효과도 크지 않음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농민, 승마장 소유주, 마주, 유소년승마단, 승마대회 참가자, 말산업 전문인력 및 관련 산업 종사자로 범위가 제한적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은 대체로 합리적임

- 말산업 수요확충 및 연관사업 육성에서는 승용마 조련 및 유통체계 구축, 승마 대중화 및 품질 제고,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함
-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승마시설 확충, 복합단지 조성, 말산업 특구 활성화, 말고기 소비 촉진 및 등급제 추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함
- 말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는 승용마 생산 농가 지원, 경주마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함
- 말산업 지속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산업 컨설팅, 간담회, 홍보사업 등을 수행함

○ 5년마다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목표가 명확한 편이나, 목표가 대부분 양적 투입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계획상의 목표 달성도가 미흡함

- 1차 종합계획 종료 이후 사육두수, 사육 농가, 체험승마 인구와 같은 지표의 달성률이 60% 내외로 낮음
- 2018년도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산업 규모, 일자리 수, 공공 승마시설 수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조금의 효과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 부재로 말산업 특구 운영, 공공승마길 설치 등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내역사업에 대하여 자체수행, 융자 등 보조금 이외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승마시설 신설, 학생승마체험 확대 등 승마 저변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국산마 인공수정 지원, 경주 퇴역마 조련 등 승용마 시장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보조금으로 수행
- 민간승마시설의 개보수 지원사업은 직접적인 혜택이 승마시설 소유자에게 발생하므로 보조사업을 통한 운영이 타당하지 않으며 융자 방식을 통해 재원 조달의 용이성을 강화함

-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산업 컨설팅, 간담회 등 마사회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홍보사업, 국산 경주마 종마 선발 등 경주마 관련 사업들은 마사회 자체수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인력양성기관 워크숍, 현장밀착형 자격체계 운영, 전문인력 교육 및 연수 사업은 직접적 수혜자가 교육참가자이며 그 파급효과가 국민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사회가 자체수행하고 일부 참가자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음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시급성 역시 낮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산정함

○ 세부사업 간 합리적 보조율 산정기준이 미흡함

-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연수, 인력양성기관 워크숍, 현장밀착형 자격체계 운영 등 인력양성사업에 국고보조 100%가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합리적 보조율 산정기준이 부재함
- 경주퇴역마 조련, 용도 다각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주퇴역마 조련의 경우 국비 100%, 용도 다각화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50%가 지원되어 내내역사업 간 일관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이 부재함

○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소요가 추계되어 있으며 7년 이상의 장기 재정소요액 추계는 이루어지지 않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말산업을 활용한 사회공익 승마, 재활승마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 공공승마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 소득을 창출한다면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는 적정함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전 절차, 여건 등을 검토하는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자체 선정하며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함
- 민간보조사업은 한국마사회를 통해 추진하며 선정 절차는 없으나 말산업 육성법 제8조에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마사회가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말산업육성 사업별로 관리·감독계획, 집행점검, 집행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
- 사업신청단계 → 사업자 선정단계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금배정 단계 →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단계로 명시하여 사업을 관리
- 지원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을 매 분기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연간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사업 종료 이후 익년도에 보고하도록 함

○ 말산업육성지침서에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 및 처벌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를 부과함
- 개별사업별로 사업량 배분 시(학생승마체험 사업, 말산업 특구 등) 집행률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여 심사 및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사업집행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 위반 시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령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정산 이후 사업종합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의 세부계획 점검 및 승인, 완료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마사회의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나 민간사업자의 부정수급 사례는 존재함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말산업육성지원 보조사업을 통해 승마장 개보수 공사지원에 보조금 1억2천만 원을 교부 받은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횡령하여 4백7십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됨

○ 민간사업자에 의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음

○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법률에 따르고 있어 민간사업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적당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협소하며 말산업육성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 규모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함

○ 민간사업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고 자체부담 비중을 늘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승마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본보조 예산을 3년간 단계적으로 민간융자 예산으로 전환하고 전문인력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에게 교육 비용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여 사업비 감축

- 국산 경주마 종마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을 마주가 아닌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함

○ 민간승마대회 지원, 유소년 승마단 지원 등 참여 인원이 제한적인 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

- 학생승마체험의 경우 사회공익 승마의 비중을 높이고 유소년승마단에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등 차상위계층 유소년이 포함되었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소년승마단 참여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승마대회 지원사업은 국산마 및 유소년 승마 수요를 확대하고 생산자 소득향상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 어린 말과 유소년 위주로 전환함

○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를 적절하게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민간사업자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고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적도 있는 바,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말산업육성을 위한 재원 투입의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밭작물산업육성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1.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농업분야의 선진화라는 목표의 타당성이 있으나 연도별 5% 감축.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낙후된 농업분야의 일정 수준까지의 발전에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경영체의 경영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소를 확대하는 것이 성과관리에 바람직할 것으로 봄<br>·사업수행기간이 장기임에도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다소 부족. 국정과제인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과 연관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1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목표개소가 적시되어 있음<br>·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수혜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에 문제.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니즈에 비하여 증가폭이 큰 정도로 판단됨.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체리 등 서양과일과 파프리카 등 서양채소류에 대한 지원 필요하며 지원대상을 집중화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br>·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의 일정정도 감축 필요. 예산의 증가폭의 점진적인 축소, 사업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보조사업 규모를 일부 감축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있음

- 특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에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내역사업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및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사업으로 법령의 내용과 대체로 벗어나지 않으나 법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관계로 사업추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분명하고 강하지는 않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일반적으로 농업분야에서 밭작물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으로 일정정도의 정부에 의한 지원 및 산업고도화 노력이 요구됨

- 농업분야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국정과제로 이해됨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음

- 밭작물경영체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됨. 2차적 수혜는 직접적이지 않음.
- 다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농업이 경제체제에서 자립할 정도로 성장할 경우 농업분야 경제 전체에 건전성이 높아져 농경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에는 일부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밭작물분야의 자립적 경제생태계가 조성되면 국가의 지원은 감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관련 정책방향 설정 연구용역'을 통해 산지유통 관련 주요 지원 분석, 밭작물 공동경영체 개념, 지원자금의 용도, 지원형태(2년차 사업), 대상품목(채소, 과수, 밭식량작물) 및 지원체계, 사업 진행 프로세스, 주산지협의체 운영방안 등 사업방식을 결정

- 맞춤형 사업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점은 바람직

○ 다양한 내역사업이 정책대상의 니즈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정책대상의 필요성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와 확인 필요함, 보조적으로 사업참여자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내용적으로 공동시장 마케팅, 상품화 과정 지도, 생산과정 지도 등 밭작물 생산 전 공정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에 따라 경영체 수의 증가 등 성과

○ 성과관리를 위하여 주로 투입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내역사업간 통·폐합을 통해 3개 내역사업('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밭식량작물산업육성', '주산지정비')를 '17년부터 2개 내역사업('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컨설팅 및 홍보')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집행률 및 실집행률이 상승효과
  * 밭작물산업육성 집행률 : ('15) 94.1% → ('16) 98.2% → ('17) 100%
  * 밭작물산업육성 실집행률 : ('15) 22.0% → ('16) 56.8% → ('17) 82.4%
- 산출지표, 영향지표 등 결과지표 활용해야 함, 만족도 지표에 의한 보완도 필요
- 대체적으로 산업의 기반을 놓는 단계로서 밭작물관련 경영체 수의 확대 등의 성과가 있어야 하겠음

○ 내역사업 통·폐합을 거치는 기간 내 일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가 있었으나, 내역사업 조정완료 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함

* 계열화 경영체 재배면적 점유율 달성율 : ('15) 109.8% → ('16) 89.3
* 밭작물공동경영체 품목 생산량(출하량) 증가율 달성율 : ('17) 224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업이라는 특정산업에서 기업체에 해당되는 밭농업경영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제도정비와 함께 재정적 지원으로서 본 사업의 방식이 일정정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본사업에 의한 경영컨설팅 기능은 점진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역할 이전이 요구됨
- 내역사업인 '컨설팅 및 홍보'는 밭작물산업육성 관리를 위한 행정경비 성격의 사업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행) 사업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사업요소로 인정할 수 있음

○ 본 정책 영역에 고유한 특성이 있어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음

○ 현재 밭작물산업지원에 지속적인 정책에 대한 니즈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영체 자체의 자립에 따라 정부지원의 규모를 감축해나가야 할 필요는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밭작물산업육성은 매년 20~25개소 수준의 신규사업자와 동일수준의 계속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음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을 통한 지역별 주산지 대표품목 육성을 목표로 사업의 중장기 목표인 290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을 위해서는 매년 30개소 이상의 신규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목표 : ('16) 15개소 → ('18) 55 → ('25) 290

- 점진적인 사업규모 확대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2차년도 종료 이후 3년 후 또는 5년 후의 존속여부, 매출지속 상승 여부 등 산출지표에 대한 관리, 검토 필요

○ 현행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성, 지역경제 공헌 등의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인정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사업]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 따르고 있으며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은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시·군은 주산지 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함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aT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평가단 구성 후 서면·현장·발표평가 실시하고 선정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농식품부는 이를 기초로 사업지원 대상자 최종확정
- 현장평가에는 사업여건 및 통합마케팅 조직과의 협력체계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하여 사업대상자로서 적정성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수행지침을 사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사업수행지침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지자체)의 요건으로 사업 대상 품목이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단계에서 지방비 확보계획 및 자부담 확보 여부(농업법인에 한함)를 확인하고 있어 사업대상 품목의 적정성 및 자부담능력을 검토하고 있음
- 세부사업계획 승인 이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세부사업계획 심의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절한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중요재산 관리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점검평가단 활동,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농업분야의 선진화라는 목표의 타당성이 있다고 봄

○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낙후된 밭작물 농업분야의 일정 수준까지의 발전에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수혜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에 문제임

○ 밭작물경영체의 지속적 성장, 경제활동, 매출증가 여부 등에 대한 산출지표 중심의 관리가 요구됨

○ 본사업을 통하여 자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가 정착하기 위하여 경영체의 역량확보, 경영체 경영구조, 경영인 배출하는 것이 사업의 초점이 되어야 함

○ 이런 면에서 경영체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한 지원액 차등 지원 등 적극적 인센티브 확대하고 자립적인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고수하기 보다 산업적 니즈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실집행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17년 82%로 낮은 편임

○ 사업효과에 관한 자료를 보면 경영체 1개소당 2년간 10억 정도 지원되며 연간매출액 증가가 경영체 평균 5-6억 있는 것으로 보임. 연간 경영체 평균 매출액 증가 등을 기준으로 재정규모의 확대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의 일정정도 감출 필요가 있음

○ 사업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 사업으로 인정하되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예산수준으로 사업규모를 5% 일정수준 감축하고 향후 공동체경영체별 매출액에 대한 달성여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식품부 |
|---|---|
| 사 업 명 | 사료산업종합지원(융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8.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2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사업 관리체계가 미흡함<br>·사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스템 구축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고 연기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br>·보조사업의 단일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사료관리업무 전반의 효율성 증대와 관련이 높으므로 구축 완료 이후 사용자의 편의와 업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은 사료의 품질을 제고와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법적 근거는 명확한 편임

- 사료관리법 제3조에 정부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역사업과 관련 법령이 연결되어 있음

-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료 품질 향상과 관계가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의 목적이 명확하며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축산업에 직결되어 있는 사료의 안정적 수급을 관리하고 사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축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사료산업 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일차적 수혜자는 보조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농관원, 농진청, 지자체, 사료제조업체, 사료 관련 단체, 사료 검정·인정기관에 해당하며 2차 수혜자는 사료 구매자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의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 관리업무 전반(원료·제조·유통·판매)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2017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축·유지·보수 비용 지원이 약 1억5천만 원 소요되었음

-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은 사료제조업체, 사료 관련 단체, 지자체 및 해당 관청이 사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보조사업의 본래 목적인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단일 내역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임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 내역사업의 목표임

○ 현재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 운영의 성과는 파악하기 어려움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운영하기는 어려우므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함

- 사료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원화된 관리시스템 운영이 필요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음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빈도 및 활성화 정도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의 충분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보조사업이 폐지될 경우 사료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여 업무의 효율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의 규모는 2018년 기준 1억5천만 원으로 소액이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단일 내역사업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행정비용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보조금 규모는 내역사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모이나,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이라는 목표달성에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음

○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국고보조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며 공모 등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해당 분야 정보화 촉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문제는 없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법적합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며, 교부절차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짐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3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

- 기본계획 통보, 계획 승인, 정기 점검, 사업비 정산, 사업종합성과보고서 점검을 실시함
- 추진 방향, 기본계획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사항, 사업 변동사항 보고 체계 확립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3호)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사업 완료 보고 및 정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함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마련되어 있음

-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제76조(중요재산 사후관리),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을 실시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으며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가능성 낮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 등), 제81조(강제 징수),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안정성 제고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함

○ 내역사업이 보조사업 목표에 위배되는 바는 없고 국가가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내역사업의 일차적인 효과는 사료관리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실효성 있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역사업의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완료 시기가 2019년으로 예상되므로, 시스템 구축 이후 사료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는지 사용자의 업무 편의가 증가하였는지 성과 평가를 명확히 파악해보아야 할 것임

## 3-2 정책 제언

○ 농식품부가 농수산물, 식품,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화 촉진사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전담하고 있는 구조이나, 각각의 보조사업 또는 개별적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보화 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하여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수리시설유지관리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5.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5.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판정함<br>·본 사업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인정됨<br>·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충당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 자체 충당금 규모가 50%를 초과하고 있음. 단, 2000년 이후 농업인이 별도의 농업용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바, 농업인의 자부담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br>·수리시설관리원 수당 부정수급이 있었으나, 농어촌공사 감사실에서 이를 적발하였으며, 이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위촉방법, 위촉기준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관련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br>·농업인의 농업용수 자부담에 대한 판단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사, 농업용수 징수비용 및 징수 시 적절한 부담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관리),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29조(보조금), 「농어촌정비법」 제16조(구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이관),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이 확보) 등의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되고 있음

- 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9조(보조금)에서는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의무규정은 아님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기능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점거 및 정비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홍수조절 등의 재해 예방 역할은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저수지 붕괴 등 사고발생 시 일반국민과 농업인의 재난 피해가 크므로, 국고지원을 통한 정부 관리가 필요함

○ 조성된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국가가 관리 의무를 공사에게 이관하여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은 직접적인 수혜자는 공사 관리구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업인임.

- 간접적으로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 기능, 홍수조절 등의 재해 예방 기능 등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수선정비가 긴급히 필요한 시설물 보수비, 전력료, 수리시설관리원 운영비, 수초 및 퇴적물 제거비 등 시설물 운영관리비, 기타 직접비, 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양수장 임시대책시설 설치비 등의 직접비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한 인원의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이 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의 효과가 있었음. 이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가 매년 상승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조세감면, 규제 완화, 융자 등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하기 어려움. 보조금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

○ 13,911개에 달하는 시설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인력 확보 등에 있어 비효율성이 큼. 공사를 통한 관리가 효율적임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있음. 그러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응과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임. 수리시설 운영 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는 본 사업과 일정정도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사업을 통해 일상적인 보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위험시설에 대한 복원, 파손 등의 개보수 작업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서로 보완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88년 이후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용수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조합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음

- 1999년까지 본 사업은 국고, 조합비, 농지개량조합의 자체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가의 부담은 1999년 기준 45.1%였음.

- 2000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후 농업인 자부담없이 공사 자체 충당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5년간의 재정소요액이 추계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토 및 심의를 받고 있음

- 본 사업의 예산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가규모가 결정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의 자체충당금 확보 노력을 고려하여 보조금 규모가 확정되고 있음

○ 단, 공업용수 등의 이용에 대해 이용료가 부담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용수 이용에 대해 일정 정도 자부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자부담에 대한 인식, 농업용수 징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해 농업기반시설인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를 통해 농업용수의 공급의무를 가짐. 따라서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적절함

○ 본 사업 추진 시 공사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약 55%의 사업비를 공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요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보조금 정산 등의 절차가 잘 갖추어져 있음.

○ 본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 절차가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매년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집행실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모니터링 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의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가뭄과 폭염 등 자연재해가 나타날 경우, 신속한 사업비 재배정이 이루어지는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연2회 자체충당금 확보 이력보고, 연1회 현지점검 등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최근 나주지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 출신이 10년 동안 수리시설감시원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하는 일이 있었으나, 공사 감사실에서 이를 적발하여 환수 조치하였음. 이후 신규 수리시설감시원 위촉방법, 위촉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개선하였으며, 위촉수수료 지급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음. 개선된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 이후 채용 과정을 지역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으며, 비농업인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감시활동 내역서, 운영현황점검표 등을 상시 비치하여 1인이 다수 지역을 담당하는 관행을 차단하였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충당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 자체 충당금 규모가 50%를 초과하고 있음. 단, 2000년 이후 농업인이 별도의 농업용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바, 농업인의 자부담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자부담에 대한 인식, 농업용수 징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수리시설관리원 수당 부정수급이 있었으나, 농어촌공사 감사실에서 이를 적발하였으며, 이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위촉방법, 위촉기준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관련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농업용수 자부담에 대한 판단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사, 농업용수 징수비용 및 징수 시 적절한 부담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58.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37.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7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2.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3.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8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감축('20년 2,800백만원)'을 권고함<br>·보조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성 제고가 필요<br>·2018년 예산 실집행률은 70.9%로 총 예산 10,500백만원 중 3,053백만원이 이월되었고, 2019년 예산의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실제 사업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br>·예산감축과 더불어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현행 일원화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유형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목표 달성 이후 동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을 법적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사업은 스마트팜 등 생산·유통·배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해당되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에 따라 보조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보조사업 법적근거로서의 구체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스마트팜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특히 다수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보조지원은 타당함

- 또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국정과제 83번)'과 연계되어 있으며, 스마트팜은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은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동 사업의 편익이 광범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포함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서 '스마트팜' 사업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사업소관부처에서는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의 수혜자로 해당 지역 입주 농업인의 경영효율성 제고, 기반조성 이후 해당 지역 기술개발의 기여,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제시된 내용은 동 사업의 완료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보다 상위 계획 및 총괄 사업의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임

- 즉 동 사업의 기간내 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은 실제 동 사업의 수혜지역내에 입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업의 편익이 광범위하게 전파된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노후시설 현대화 및 이전 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스마트원예단지조성을 지원하는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ICT융복합 생산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내역사업 구성과 목표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보조사업의 목표를 고려할 때, 사업의 내용 역시 명확하며 구체적임

○ 다만 기반조성이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이 고려되었는가에 대해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 '18년의 경우 실집행실적이 70.9%으로 총예산 10,500백만원 중 3,053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특히 '19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년 실적을 감안한다면 실제 사업계획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또한 원예단지 기반조성 대상이 2개소 추가되었던 '18년 사업예산의 이월액이 증가되었으며, 그 이월액 규모는 1개소 1년차 지원예산규모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함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정율(%)'로 설정되어 있으며, '17년도에는 사업 성과목표인 50%를 달성하였음

- 다만 '18년도의 성과목표 달성과 '19년 성과목표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 다만 예산 집행실적과의 연동되는 공정율의 특성을 고려할 때 '18년도는 성과지표 달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율이 낮을 경우 합리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일련의 기반조성사업으로 스마트팜 단지 운영에 필요한 부지조성, 도로, 전기·용수·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비 편성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을 통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 특히 민간의 수익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은 타당함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과수와 시설원예작물' 등 지원 분야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수출전문단지조성',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도 시설투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온실시설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다만 지역에 따라 교차지원이 발생할 경우 기반시설의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의 수요는 사업선정 수를 상회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 시·도의 공약사업으로 스마트팜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시급성은 인정됨

- '17년의 경우 2개 시군이 응모하여 1개 시군이 선정되었고(충남부여 35억원), '18년의 경우 8개 시군에서 응모하여 2개 시군이 선정(경북 상주, 전북 김제, 각 35억원)

○ 다만, 동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단순히 기반시설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 사업의 폐지 그 자체가 가져올 손실은 크지 않다고 평가됨

- 특히 '신규 적격성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반시설이 구축되어도 선도농업경영체가 입주하여야 하고 시설투자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농업경영체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 투자의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목표 달성과 비교하여 사업비 배분은 재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 2개년 사업비의 경우 10,000백만원, 단년도의 경우 5,000백만원으로 획일화된 것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이 요구됨

-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부지정비, 도로정비, 용수 관정, 전기시설 확보 등의 소요예산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공정지연·비효율적 예산배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2018년 사업공모에 응모한 8개 시·도의 수요가 최소 30ha에서 최대 182.1ha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볼 때, 실제 지역별 기반조성사업 예산을 획일화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사업소관부처는 '17년 이후 예산집행실적 및 기반조성과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행 일원화되어 있는 지원사업 유형을 다원화하여 지원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부지정리 분야가 강화되어야 하는 유형, 도로 정비가 시급한 유형, 용수·전기·부지정리 등의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유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자체자본보조를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현행 '개소'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고, 'ha' 당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지자체별 요구 ha별로 지원예산을 차별화하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존보조율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정하나,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선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사업소관부처는 동 사업의 보조율 70%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80%, '농업기반정비사업' 80%와 비교하여 합리적이라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 물론 보조금법 시행령상 농어업 기반정비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80%를 적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나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의 경우 국고 보조비율이 60%임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보조율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의 중기재정계획('18~'22)과 비교할 때, '19년 예산은 28,000백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자료 검토가 필요함

- 중기재정계획상 '19년 예산은 2년차 예산 7,000백만원만 반영되었으나, 현재 예산은 2개소 14,000백만원, 2개소 7,000백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책정되어 있음
- 따라서 재정소요액 추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제약이 존재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사업대상자(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성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예비계획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가감적 항목 등의 결과를 합산하여 조성지역을 선정하며, 공모 진행 시 시·도,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조성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모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설계·시공을 일괄 위탁하여 사업 추진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집행점검·관리 추진

- 보조금법 이외에 상기 훈령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 통지함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계완료 전에 기술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실적보고,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지침상 사업 실적부진, 부실집행, 의무조건 미이행, 무단 용도변경 등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예산 이월의 규모가 상당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 집행이 적절히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사후관리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는 동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며, 연 2회 과수·시설채소·화훼분야 재정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동 사업은 지자체보조사업이나, 지자체 직접시행이 아닌 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으로 설계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술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설계·시공사 결정과정을 모니터링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으로서 노후시설 현대화 및 이전 수요가 있는 지자체의 스마트원예단지조성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동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일부 예산의 감축을 권고함

## 3-2 정책 제언

○ 2018년 실집행실적이 70.9%으로 총예산 10,500백만원 중 3,053백만원이 이월되었음을 고려할 때, 기반조성이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이 고려되었는가에 대해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 특히 2019년 예산의 경우 단년도 사업이 편성됨에 따라 실제 사업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중기재정계획 등 고려하여 2,800백만원의 예산 감축을 권고함

○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유형화가 시급히 요구됨

- 한 가지 대안은 부지정리 분야가 강화되어야 하는 유형, 도로 정비가 시급한 유형, 용수·전기·부지정리 등의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유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자체보조를 추진하는 것임

- 다른 한 가지로는 현행 '개소'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고, 'ha' 당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지자체별 요구 ha별로 지원예산을 차별화하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유형 다변화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총괄목표 달성 이후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권고함

- 당초 동 사업의 목표는 8개소별 20ha의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사업유형을 다변화할 경우 동 사업의 목표는 변화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당초 목표였던 160ha(8개소×20ha)를 사업소관부처가 ha별 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목표달성 시점은 언제인지 목표달성 이후 동 사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시도가축방역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8.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7.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5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사업은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br>·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br>·내역사업 중 개업수의사 교육은 수익자 부담을 통하여 국고보조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방역장비 지원은 지자체 자본 보조에 해당되므로 지방비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br>·보조금 집행에 대한 외부회계 법인의 검증 강화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방역 활동 중 예방백신 등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투약 등과 소독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고,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에 대한 교육은 「수의사법」에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이며,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교육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 신분을 가짐으로써 그 교육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근거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 또는 우려시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진단킷트 및 방역복 등을 지원하여 조기 근절 및 확산 방지하고 수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적정 추진 및 자질향상을 통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 약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판정에 사용되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노후화된 검사장비 및 내구연수가 경과한 소독·방역차량 교체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가축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인근 지역으로 쉽고 빠르게 전파되고 개인이나 민간이 전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려워 전국적인 확산이 되어 지역과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개인과 민간에 맡기기에는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으며, 그  예방을 개인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노력하여 예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정부의 행정, 예산 및 기술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창궐과 확산으로 축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후 사후조치 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며,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근절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방역물품·기자재, 소독비용 및 수의사 자질 향상 교육 및 축산농가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주도하여 지자체·민간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관심과 추진 의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축산업계 전반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하며 일차적인 수혜자는 축산농가임. 간접적 수혜자는 사육농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사육을 맡기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수의 분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 개업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이나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이동제한 및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일반국민 불편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 등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식생활 비용 증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축산농가 현황('18.1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팜스 기준) : 총197천호(한우·젖소 106천호, 돼지 6천호, 닭 57천호, 기타 28천호)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수의사연수 교육,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지원 및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의 분야 자질 향상과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가축전염병 예방백신·검진·검사 현장 지원 및 방역 기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의 '18년 예산은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55백만원, 수의사연수 교육 등 2,893백만원, 예방주사 등 지원 114,776백만원, 방역장비 등 지원 12,17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의과대학생 임상교육을 위하여 17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본 사업의 목적 등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대학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은 구제역 백신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등에 대한 사업량을 매년 지자체 등의 수요를 예측하여 사업량을 정하여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매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율 0.4% 이하로만 설정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특성 및 정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목표치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지자체에 방역·소독 차량, 소독장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전염병 검사실 신축·개보수 및 질병진단 장비를 구입(교체)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의 진단 기능을 보강하며 거점소독 및 세척시설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지속적인 방역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음

- 국가가축방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별 방역정책 및 진료기술 보급 등 보수교육* 실시하고 신규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연간 150명)에 대하여 방역 정책 및 가축방역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의과대학생 임상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재 검토가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수준이 낮고, 소규모 영세 농가 또는 계약 농가가 많아 국내 축산규모에 비해 가축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한 수준이며, 가축 방역 사업을 농가, 민간과 지자체에 그 책임을 모두 맡길 경우 개별 농가와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나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적절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은 없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계는 물론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향후 신종 플루 등 동물과 사람간의 교차 감염으로 인한 새로운 인수공통전염병의 창궐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가축방역 지원 사업은 연장 필요성 역시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규모 >

**< 구제역 발생 현황 >**

- 2010년 : 2개시군 5,956두 살처분(재정소요 298억원)
- 2010년~2011년 : 75개시군 2,479천두 살처분(재정소요 약 3조원)
- 2014년~2015년 : 33개시군 171천두 살처분(재정소요 635억원)
- 2016년 : 6개시군 33천두 살처분(재정소요 80억원)
- 2017년 : 3개시군 1.4두 살처분(재정소요 98억원)
- 2018년 : 1개시군 12천두 살처분(재정소요 41억원)

**<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

- 2008년 : 19개시군 10,204천수 살처분(재정소요 1,817억원)
- 2010년~2011년 : 25개시군 6,472천수 매몰(재정소요 807억원)
- 2014년~2015년 : 81개시군 24,772천수 매몰(재정소요 3,364억원)
- 2016년~2017년 : 66개시군 38,076천수 매몰(재정소요 3,621억원)
- 2017년~2018년 : 15개시군 6,539천수 매몰(재정소요 906억원)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내역사업의 구성에서 약 200명에 달하는 신규 임용 공중방역수의사 교육에 55백만원, 개업 동물병원 4,506개소에 근무하는 약 6,500명에 대한 연수교육 등에 2,893백만원, 예방주사 등 지원에 114,776백만원, 방역장비 등 지원에 12,179백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다만 예방주사 등 지원 금액과 방역장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조율은 사업별로 정해져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은 국비 100%, 개업수의사 보수교육 등은 국비 50%~100%, 자부담 0%~50%, 예방백신 지원 등은 국비 22%~97%, 지방비 3%~78%, 자부담 0~50%, 방역장비 지원 등은 국비 25%~50%, 지방비 30%~75%, 자부담 40%로 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본 사업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살처분, 매몰 등으로 인한 주변 생활 환경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살처분, 매몰 등에 동원되는 인력의 근로 환경을 발생시키지 않음으로써 안전한 근로· 생활 환경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에도 기여함으로써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및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연계되어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 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각 지자체는 사업 추진 사전 철차 이행 여부 등 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매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지원함

- 민간보조사업은 국가방역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수의사회, 한국 수의학교육인증원, 마사회, 농협(축협)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관련 법령, 사업운영 전문성 및 인력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에 따라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및 부정 수급자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의 불비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 교부, 집행점검, 부정수급자 의심 모니터링, 외부회계법인 검증, 정산결과 점검 등의 과정으로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에 따라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및 부정 수급자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외부회계 법인의 검증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을 교부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급 과정이 이루어지므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수의사 교육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원 단체에 대한 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인근 지역으로 쉽고 빠르게 전파되고 개인이나 민간이 전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렵고 지역과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반면, 개인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노력하여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은 있음

- 또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수준이 낮고, 소규모 영세 농가 또는 계약 농가가 많아 국내 축산규모에 비해 가축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한 수준이며, 가축 방역 사업을 농가, 민간과 지자체에 그 책임을 모두 맡길 경우 개별 농가와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나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적절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사업별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바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은 국비 100%,, 개업수의사 보수교육 등은 국비 50%~100%, 자부담 0%~50%, 예방백신 지원 등은 국비 22%~97%, 지방비 3%~78%, 자부담 0~50%, 방역장비 지원 등은 국비 25%~50%, 지방비 30%~75%, 자부담 40%로 하고 있으나 개업수의사 교육은 수익자 부담을 통하여 국고보조를 줄여 나가며 방역장비 지원은 자본 보조에 해당되므로 지방비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은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수의사연수 교육,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지원 및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의 분야 자질 향상과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가축전염병 예방백신·검진·검사 현장 지원 및 방역 기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임

- 다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외부회계 법인의 검증 강화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쌀소비 활성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1.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6.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5.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8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및 감축(6억원)<br>·동 사업은 쌀소비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양곡의 수급조절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br>·쌀소비 증대를 통해 양곡 수급조절에 소요되는 지출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추정 제시하였으나, 양곡매입 및 관리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br>·실효성있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역사업 재구조화 및 기존의 정부주도 일방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직접적인 소비촉진 활동 및 소비자·기업 주도의 홍보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br>*기존 쌀소비활성화 홍보지원 예산 일부 감축 및 지원방식 변화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양곡관리법 제26조(임의규정)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강제·임의규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쌀소비 활성화와 라이스랩 설치·운영은 상기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

**<양곡관리법 제26조(융자 및 보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문화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쌀소비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양곡의 수급조절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쌀소비 활성화와 라이스랩 설치·운영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국정과제와 연계: (82-1) 쌀 수급 안정: 가공용 쌀, 쌀가공식품 수요 확대

- 양곡의 수급조절은 전국적 규모의 사무로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타당함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수 있다.

3.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양곡수급 조절이라는 국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쌀소비 활성화와 라이스랩 설치운영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음

○ 1인당 쌀소비 감소율 완화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성과를 제시함

- '03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으로 동 사업 추진 후 쌀소비가 여전히 감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성과지표를 쌀 소비 확대나 **1인당 적정 쌀소비량**에 근거한 지표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쌀소비 활성화 지원을 통한 식량자급 기반유지와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쌀소비 활성화와 라이스랩 설치·운영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구조적인 쌀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며,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 정부양곡관리비, 논타작물재배지원(2018년 예산. 1,598,263백만원) 등 재정지출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제시

**<쌀 소비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 시나리오 추정>**

**(1) 주요전제**
**(1-1) 사업에 따른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추가 쌀 소비량 : 2kg**
**(1-2) 대한민국 인구수 : 약 5천만명**

**(2) 관련 재정사업**

| 구분 | 재정지출 감소 산식 | 재정 지출 감소예상액 (백만원) |
|---|---|---|
| (2-1) 정부양곡 관리비 | '18년 인구수 × 2kg<br>×정부양곡 관리비용(37,331백만원/10만톤) | 37,331 |
| (2-2)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 '18년 인구수 × 2kg<br>×' 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액(12,517원/80kg) | 15,646 |
| (2-3)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 $\frac{('18년\ 인구수 \times 2kg)}{5{,}230kg/ha} \times 3{,}400천원/ha$<br>* '18년 평균 생산량 : 5,230kg/ha<br>*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 3,400천원/ha | 65,384 |
| 합계 | | 118,361 |

→ 간접적으로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가구부문 쌀 소비량 증가분만을 사업의 효과로 추정한 결과,
- 동 사업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효과는 **118십억원**으로 추정됨

자료: 부처 제출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쌀소비 활성화 홍보사업(60억), 라이스랩 설치운영(4억원)으로 지원

- 쌀 소비활성화사업은 국고보조 100% 지원, 라이스랩 설치·운영은 국비:지방자치단체=50:50으로 지원하고 있음
- 민간부문의 쌀관련 창업시책과 연계해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쌀소비 홍보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직접적인 연관성 없음

- 신규 일자리 창출은 '사업의 효과성'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임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쌀소비 활성화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로 추진하며, 라이스랩 설치운영(지자체 경상보조)은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지원하고 있음

- 라이스랩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부담능력과 의지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쌀소비 활성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100%)하여 시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쌀 소비 활성화사업은 매주 및 매월, 라이스랩 사업은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아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관리, 정산, 회계감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라이스랩 사업 정산후 집행잔약 반환 등 사후관리를 집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쌀소비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 추진중임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 사업방식 변경 및 감축(6억원)

- 동 사업은 쌀소비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양곡의 수급조절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쌀소비 증대를 통해 양곡 수급조절에 소요되는 지출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추정 제시하였으나, 양곡매입 및 관리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실효성있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역사업 재구조화 및 기존의 정부주도 일방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직접적인 소비촉진 활동 및 소비자·기업주도의 홍보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함

* 기존 쌀소비활성화 홍보지원 예산 일부 감축(10%, 6억원) 및 지원방식 변화 필요

## 3-2 정책 제언

○ 농림부가 농산물 품목의 소비 및 홍보 목적으로 추진하는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포함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정원 '자화자찬'식 쌀 소비 활성화 사업 평가 안 돼(2018.10.22. 12:10)**
**'예산만 많이 쓰이고 효과는 미미한 쌀 소비 홍보' 비판**
**박완주 의원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기준 만들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매년 쌀 소비촉진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과연 효과적으로 쌀 소비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매년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 방식이 객관적이지 않고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만 비춰지고 있어 홍보사업 효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농정원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 동안 실시한 사업으로 총 139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무엇보다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2014년 20억 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45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지만 쌀 소비량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이었으나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는 61.8kg까지 떨어져 최악을 기록했다.
이처럼 예산 증가액만큼 소비량 변화가 없어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정원은 홍보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쌀 소비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긍정인식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내 쌀 과잉공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쌀 소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정원은 홍보사업의 성과지표를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아닌 연도별 쌀 소비 증감률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사업 평가 방법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원예시설현대화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8.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4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5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감축(2020년~2022년: 매해 10% 감축), 사업방식 변경<br>·미집행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가 2년 연속 보통 등급으로 보다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의 발전이 요구됨.<br>·시설원예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내역사업들의 적절한 조화(예산 편성)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의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함.<br>·이와 함께, 본 보조사업의 출구전략과 원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권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제5조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동 사업의 법적근거는 비교적 명확함.

-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농식품부장관은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인 지원 투융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이 채소, 화훼, 인삼, 특용작물 등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므로 지원은 타당함.

〈내역사업 현황〉

| 내역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목적 |
|---|---|---|
| 시설원예현대화 | 고정식온실에서 채소·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 생산시설 현대화 통한 생산성·품질 향상으로 농가의 경쟁력 제고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고추 재배 농업인 등 |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의 실천과제 '3.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과 연계되는 보조사업임.

- 83번 국정과제의 목표는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한 산업기반을 확산하여 농식품산업을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생산·유통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22년까지 스마트팜을 7천ha 조성)한다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원예작물의 시설현대화는 농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원예농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수출제고 효과 및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국가 차원에서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재배 농업인으로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과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수확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어 농가의 가격·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간접적 수혜자는 채소·화훼류, 인삼·버섯·특용작물 소비자로 고품질의 신선농산물을 적정가격에 연중 지속적으로 소비 가능
- 국가 차원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내역사업은 시설원예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용작물시설현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동 사업 내역사업은 구성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는 2년 연속 보통 등급으로 보다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6회계연도 평가('17년): 보통(82.0), '17회계연도 평가('18년): 보통(76.0)

○ 미집행액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임.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억원, %)

| 년도 | 당초계획 (A) | 전년이월 (B) | 계획변경 (C) | 현액 (A+B+C) | 집행 | 차년이월 | 불용 |
|---|---|---|---|---|---|---|---|
| '15년 | 1,469 (100.0) | - ( - ) | - ( - ) | 1,469 (100.0) | 1,366 (91.3) | - ( - ) | 103 (8.7) |
| '16년 | 950 (100.0) | - ( - ) | - ( - ) | 950 (100.0) | 859 (90.4) | - ( - ) | 91 (9.6) |
| '17년 | 874 (100.0) | - ( - ) | - ( - ) | 874 (100.0) | 724 (82.8) | - ( - ) | 150 (17.2)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원예 분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 사업은 발견할 수 없음.

○ FTA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농가 대다수가 영세한 소농인 점을 감안 시 융자금을 지원하면 신용,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FTA 피해 농업인의 지원금 활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설 투자비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음.

| ○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시설현대화 및 첨단 시설원예 단지 조성을 지원 |
|---|

○ 기초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요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낙후된 시설의 인프라 현실을 감안할 때, 원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산으로 정하고 있음.

- 매년 보조율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정한 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추진 시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지침에 보조율을 명시함.

○ 그러나, 개별 사업의 보조율 책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미흡함.

〈사업별 보조율〉

| 사업명 | 보조율 |
|---|---|
| - 시설원예현대화 | 20% |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20% |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br>(버섯배지유통센터)<br>(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 20%<br>(30%)<br>(50%) |

○ 매년 기재부 심의를 거쳐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정하여 중장기 재정소요액을 추계함.

| 구분 | '18 | '19 | '20 | '21 | '22 |
|---|---|---|---|---|---|
| '18～'22 요구 | 40,025 | 57,479 | 40,025 | 40,025 | 56,879 |
| '18～'22 반영 | 40,025 | 36,023 | 32,421 | 27,179 | 26,2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기초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라는 동 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는 비교적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농업인, 농업법인 등)를 사업시행기관인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거나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지자체가 재정부담능력, 지방비 편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8조 제1호, 제39조, 제40조 관련 법령**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한 실제 집행내용 및 근거자료가 미흡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 자금배정, 사업시행, 업체 선정, 감리 의무화, 부정수급 예방, 보조사업 실적보고,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령,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실제 집행내용 및 근거자료가 미흡함.

○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2016년 보조사업평가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16년부터 마련하여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17년 회계연도 이후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으나 부정수급 발생 개연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짐.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 제5조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동 사업의 법적근거는 비교적 명확함.

○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는 2년 연속 보통 등급으로 보다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미집행액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임.

- '16회계연도 평가('17년): 보통(82.0), '17회계연도 평가('18년): 보통(76.0)

○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 자금배정, 사업시행, 업체 선정, 감리 의무화, 부정수급 예방, 보조사업 실적보고,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령, 규정, 지침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실제 집행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미흡함.

## 3-2 정책 제언

○ 본 보조사업의 출구전략과 함께 원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원원종 및 원종생산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0.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2.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의 정상추진을 제안함<br>·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이 인정되며 품종별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연도별 성과 목표치를 비교적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음<br>·신품종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도록 원원종 보급목표를 설정하였고 원종은 도별 주력품종 등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종자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달성하였음<br>·원종에서 보급종으로 유통 시 수익이 발생하는바 향후 원종의 생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은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명시되어있으나 제시된 법령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음

< 종자산업법 22조 >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내역사업이 없고 단일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금 근거의 타당성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주요 농작물 보급종 생산, 공급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은 식량안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농작물 보급종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 및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음
- 주요 식량작물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사업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익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원원종 및 원종 생산 단일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농작물 생산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품종별로 비교적 합리적인 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성과지표로서 작물별, 품종별 원원종 및 원종 생산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설정근거를 외부 환경을 고려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도별 생산, 공급계획으로 하고 있음

- 신품종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도록 원원종 보급목표를 설정하였고 원종은 도별 주력품종 등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종자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정하였음

- 예산집행을 100%로 하였고 사업목표인 종자생산도 계획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은 자체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특성상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 자체수행을 위해서는 토지 및 관련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이미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음

-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는 초기자본투자가 필요하나 종자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의 참여가 어려움

- 사업이 폐지될 경우 순도 높은 종자보급이 어려워 종자가격 폭등, 농가경영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우리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 타사업과의 유사· 중복의 여지는 없어 보임

- 원원종 및 원종을 생산하는 단일사업으로 다른 예산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발견하기 어려움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와 사업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 근거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보임

- 각 도별로 종자수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 생산 및 공급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목표가 선정됨

- 작물별로 투입되는 인건비 및 재료의 단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을 책정하므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다고 보임

○ 정해진 보조율에 따라 지자체에 기준 보조율 100%로 교부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별표 1」60호.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름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생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자생산전문기관으로 능력이 구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해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원종 생산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함

○ 종자산업법 제 22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원원종 및 원종의 생산·공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도의 농업기술원은 종자를 육종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점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고 있음

- 국립종자원에서 정산보고서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생산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종자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비정규직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지자체의 시스템에 따라 집행, 관리하고 있음

○ e-호조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집행 및 단계별 집행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 배정 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e-호조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지자체 차원의 실적점검을 통해 예산집행 및 종자실적 등을 연 2회 점검하고 있음
- 사업실적보고서는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부정사용 등에 의한 보조금 반환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잔액은 반환 완료 하였으므로 그 관리가 비교적 잘된 것으로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및 사업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비 교부 시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사업 외 목적으로 사업비 집행 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조치하고 있음

○ 현재까지 보조사업의 집행실태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음

- 보조사업자가 지자체로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으며 그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주요 농작물 보급종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며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치 설정근거가 합리적이며 성과실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여겨짐

- 보조사업의 규모 및 사업의 비용구조가 명확하고 사업목표와 비교적 밀접하게 연관됨
-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목표치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원원종 및 원종의 생산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기호가 달라짐에 따라 종자의 대상품목을 다양화 하여 생산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작물: 벼, 보리(겉보리, 쌀보리, 청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팥, 녹두, 참깨, 들깨, 땅콩, 고구마, 호밀

○ 향후 원종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원종에서 보급종으로 유통 시 수익이 발생하는바 향후 원종의 생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비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및 점검은 지자체 생산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지자체 생산기관 현장점검 및 지자체적인 실적점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나 향후 예산의 실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자조금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5.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9.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6.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5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감축(5억원 감축)<br>·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재정 규모의 조정을 권함.<br>·동 사업은 국정 주요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br>·자조금 용도에 자조금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재정규모 및 지원방안을 포함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을 권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에 대한 관련법령의 연계성 및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서 농수산자조금의 설치, 보조금의 차등지원, 자조금 재원 등이 제시되어 있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기금사업으로 자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17.10.31.)

-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원예농산물 생산자단체가 소비촉진, 자율적인 수급조절,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로 포함된 과제로 국정 주요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소비자 물가안정, 원예농산물 농가 소득 제고 등을 위해 전국단위 품목별 수급조절,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 국정과제 82-4: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
|---|
| • 주산지협의회 활성화,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 및 생산안정제 확대 |
| • 통합마케팅 취급 비중 확대 등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
| • 직거래 활성화 및 유형 다양화 |
| • 소비트렌드에 맞는 소포장 용기·신선도 유지 기술개발 |

○ 그러나, 동 사업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동 사업은 조성된 거출금액에 따라 자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인 자조금단체가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 자조금 조성에 참여한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역 및 품목조합, 유통·가공·수출업체 등 자조금단체 회원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해당품목 거출기준 미만의 영세 농가도 자조금을 통한 자율적인 수급조절 및 그에 따른 농가소득 제고, 판로확대에 따른 시장교섭력 제고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제시된 자료( [첨부 2] '19년 자조금 지원 예산설명서)상의 사업내용으로는 동 사업 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성과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 실집행 실적 >**

(백만원, %)

| 구분 | 예산 | 교부 | 이월 | 현액 (A) | 집행 (B) | 이월 | 실집행률 (B/A) |
|---|---|---|---|---|---|---|---|
| '15년 | 8,000 | 7,383 | - | 7,383 | 6,965 | - | 87.1 |
| '16년 | 7,020 | 6,815 | - | 6,815 | 6,561 | - | 96.3 |
| '17년 | 7,630 | 7,108 | - | 7,108 | 6,803 | 111 | 95.7 |

○ 이와 같은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율적 생산조정시 생산점유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중임.

☞ ‘18년부터 지원대상이 의무자조금단체로 한정됨에 따라 원예품목 의무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율(%)로 개선

**< 지표별 현황표 >**

| 성과지표 | 목표대비 달성률 | ‘15년 | ‘16년 | ‘17년 |
|---|---|---|---|---|
| 원예품목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율(%) | 목표 | 68.5 | 70.0 | 70.7 |
| | 실적 | 68.7 | 69.7 | 58.3 |
| | 달성률 | 100.3 | 99.6 | 82.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민간(자조금단체)에서의 거출된 금액에 국고를 지원하여 법령에 제시된 용도(자율적인 수급조절, 소비촉진 홍보, 교육·연구 등)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민간영역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자체 조성된 거출금만(전체 사업비의 약 50% 수준)으로는 자조금지원 사업목적을 부합하기에는 어려울 것임.
- 국내 농업은 시기별 출하 등으로 시장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중소농가 경영악화로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자조금 단체 역할과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지원의 역할이 필요함.

○ 그러나, 동 사업의 필요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재정 규모의 검토를 권함.

○ 원예농산물 자조금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자조금 지원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연간 90.8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등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특성상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본 사업은 공모형식을 취하지 않고, 해당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조금지원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며, 품목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총괄부서에 제출

- 비공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공모하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총괄부서에서는 자조금단체 평가결과, 전년도 집행율, 자조금 조성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조금단체별 국고보조금 배정계획을 마련하고,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체 및 금액을 확정하고 있음.

| | | | | | | |
|---|---|---|---|---|---|---|
| 품목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1월 중) | → | 검토후 사업총괄 부서(유통정책과)에 검토의견서 제출 (1월 말) | → | 사업총괄부서에서 검토·조정 및 자조금단체 평가 (2~3월) | → |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 (4월) |
| 자조금단체 (계속, 신규) | | 품목담당부서 | | 유통정책과 | | 유통정책과 |

○ 품목담당부서에서 설치목적, 재원확보 방안, 회원자격, 해당품목 농수산업자 대표성 등을 확인 후 승인된 단체에 한해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 보조금 배정은 자조금단체의 조성된 거출금액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 배정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의 자조금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음.

- '18년 자조금지원 재배정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의 적정성, 정산근거자료, 사후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연간 보조사업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있음.

- 사업국장이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사유시에는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17년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차년도 자조금지원 사업 국고배정시 전년도 실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집행율이 저조한 자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중요재산 관리 및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 회계연도 완료 후 품목담당부서에서 자조금단체별 정산결과를 보고받은 후 사용금액 및 불용액 등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반납을 받고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부정수급시 지원제한,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16년부터는 보조금 부당사용시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 부과, 수행배제 및 지원제한, 명단공표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으로 2년마다 운용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 거출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원예농산물 생산자단체가 소비촉진, 자율적인 수급조절,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로 포함된 과제로 국정 주요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재정 규모의 검토를 권함.

○ 자조금 용도에 자조금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재정규모 및 지원방안을 포함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을 권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재해대책비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4.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7.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최근 10년의 집행율(86.0%)를 고려하여 편성된 20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10.1% 증액됨. 그러나 2018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집행율은 40% 미만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2020년 예산은 최근 5년의 집행율(37.8%)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br>·향후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재해 유형별 예산 소요를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근거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및 가축, 농업시설물 등 사유재산 피해 농업인과 저수지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조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4. 생략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농업분야 공공시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해야 하므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업의 목적이 타당함.

- 보조사업의 수혜범위는 농업인이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변동성 확대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국가 지원을 통한 대응이 필요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재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제적 예방책의 대응으로 집행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자연재해시 재해대책비를 긴급하게 지급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은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구성은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재해대책은 보조금 외 다른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민간이나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함.

-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이 없으므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최근 이상기후 및 대기오염 등으로 자연재난이 증가하는 추세임.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과년도 재해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하나, 유형별, 시설별 기준 마련을 통해 장기 재정소요액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단순히 최근 5년,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해재난별 규모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재정 소요 및 단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0년의 집행율(86.0%)를 고려하여 편성된 20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10.1% 증액됨. 그러나 2018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집행율은 40% 미만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2020년 예산은 최근 5년의 집행율(37.8%)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이며, 자치단체의 매칭비가 소요되므로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가 포함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부금에 대한 부담을 명시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의 분할교부 및 중간 점검 등의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실적 자료는 제시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 절차를 실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자치단체에서 복구공사 공개입찰을 통한 공사발주 및 복구시행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관리 기제를 마련하지 않고 실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볼 수 없음.

- 자치단체 복구공사 공개입찰시 단가의 조작 등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법적 근거 및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며 1967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나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을 예측하여 사업의 관리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규정 외에 단계별로 별도의 규정 및 지침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재해대책비의 보조사업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다년간의 재해대책비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재해대책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중요성이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예산의 감축이 적절하지 않으나, 2020년 예산은 최근 5년간의 예산에 근거하여 편성될 필요가 있음. 다년간의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2018년 예산의 초과 집행을 근거로 2019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재해재난 복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자연재해의 유형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실적 관리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이 과학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0.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해당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농식품 분야가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20년 감축목표 이행, 신기후체제에 따른 '30년 감축목표 이행) 상당 기간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축목표달성도 등의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br>·국가단위의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한 농축산물 분야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국가단위의 표준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규제로 인한 편익이 다수의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대표적으로 외부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임<br>·개별 내역사업이 전체 목표를 위해 기여하는 효과가 명확하고 사업 간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구성적 타당성은 높은 편이나 주요 성과지표로 예산집행율,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건 수 등 투입 및 산출의 측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55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49조 등에 사업의 취지 및 방향성이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됨

-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 중 '농식품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에서 관장기관(부처)의 역할,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 중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시행근거와 및 행정규칙에서 감축사업자 선정 기준, 타당성 평가, 모니터링, 인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사업유형과 수혜자 등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배출권거래제 연계 시 필요한 상쇄, 외부사업의 배출량 인증, 적합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 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 사업 중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등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관련 법령에서 시행근거와 행정규칙에서 인증의 신청, 심사·심의 절차 및 방법, 처리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인증의 표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 되어 있음

○ 개별 내역 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내용이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으므로 보조사업과 관련 법령의 목적과 연계가 분명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농식품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목표와의 정합성 그리고 각 부문별 감축 이행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업종별로 중앙행정기관을 관장기관으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단위의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됨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경우 농업분야가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불특정 소규모 농가가 온실가스 배출원이어서 감축 주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농업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기반(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산정체계 개발, 국제적 기준 반영한 운영절차 등) 마련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 해당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국가단위의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가단위의 표준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규제로 인한 편익이 다수의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대표적으로 외부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임

- '농식품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도입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이행을 강제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규제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 대상이 대단히 명확할 뿐만 아니라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규제)이 대단히 명확한 편임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경우 자발적 규제이해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차적으로는 지원사업을 직접 수혜하는 자발적 감축 농가와 저탄소인증 컨설팅 업체에 편익이 귀속되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때 발생하는 편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귀속되므로 그 수혜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달되는 혜택도 명확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농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각각의 내역사업은 전체 목표를 위해 기여하는 효과가 명확하고 사업 간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구성적 타당성은 높은 편임

○ 해당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는 농업·임업·축산·식품 부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 3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목표가 명확함

- 목표관리제는 강제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의무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농식품기업에 대한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등의 규제와 감축기반 구축 등의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발적 감축사업과 저탄소 인증제는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 및 저탄소농업기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감축실적을 인증하고 구매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농가에 새로운 소득 창출과 에너지 비용절감의 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가 저탄소 농축산물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소비 선순환되는 소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목표수준의 달성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저탄소 인증제의 경우 성과지표로 예산집행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건 수 등 투입 및 산출의 측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저탄소 인증제의 경우 감축목표이외에 새로운 소득 창출, 에너지 비용절감,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소비 선순환되는 소비문화를 구축 등의 부수적인 목표가 있음은 충분히 감안되나 사업의 상위목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농업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여한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발적 감축 농가와 저탄소인증 컨설팅 업체의 지원의 경우 단일 운영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단기간 다수의 농가의 컨설팅 및 인증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효과성이 인정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업분야는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블특정 다수 농업경영체가 온실가스 배출원이어서 감축의무를 농가에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추진이 필요함

- 농업분야는 타 산업분야와 달리 불특정 소규모 농가가 배출원이며, 특히 식품기업은 다품목을 생산하고 영세한 반면 위생·안전기준을 이행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규제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 이외의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대상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타당성 평가, 모니터링,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LCA, IPCC 등 관련 전문가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단체나 농업경영체 스스로 자체수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체계 강화방안('16.2.25)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관장부처 책임제로 전환되면서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 문제는 이미 검토된 사항임

- 목표관리제는 소관부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규제대상이 다른 유사사업이므로 중복사업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고유성이 인정됨

- 자발적 감축사업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활성화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상쇄제도와 절차상으로 유사성이 있으나, 각 부처마다 특화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농업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 운영주체와 적용기준 또한 차이가 있어 중복성이 없음

- 저탄소 인증제는 환경부 탄소성적표지제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제품포장에 인증마크를 표시한다는 점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나, 인증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중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농식품 분야가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20년 감축목표 이행, 신기후체제에 따른 '30년 감축목표 이행) 상당기간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新기후체제(Post-2020) 협상이 타결('15.12월)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로 개편하고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해당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해당 보조사업의 추진의 시급성이 인정됨

○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확산과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 제고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이 폐지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

- 목표관리제는 소관부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 규제하는 제도로 부처합동으로 공통의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므로, 단독으로 사업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방식의 수행도 불가능함

- 자발적 감축사업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동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없음을 감안할 때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 및 내역 사업 간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산출근거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됨

- 최근 3년('16~'18년) 목표관리제 연평균 보조금은 10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 등 행정비용은 연평균 2.4억원으로, 동 예산 중 보조사업자의 행정비용은 약 23%이며,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배출허용량 설정, 현장검증, 이행실적평가,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자발적 감축사업 운영에 소요된 보조금은 연평균 9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 등 행정비용은 약 27%로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방법론 등록 및 개정·사업 타당성평가 등록·모니터링 검증 심의회 운영 등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감축실적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재의 보조금의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농식품분야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보조사업 지원단가가 다소 낮은 편이나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만큼의 보조사업 규모는 아니며, 부적절한 사업비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보조율 지원 사업은 아니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국가업무 위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100%)하고 있음

- 현재 100% 보조율 산정의 객관적 근거는 없으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규제 및 농가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자부담 등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재 보조율 수준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 및 저탄소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국가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으로써 ⑩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처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

- 해당 사업은 공모절차가 아닌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서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교부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교부하고 있음

○ 선정 및 교부절차 등 보조사업의 추진절차를 적절히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법적으로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관으로 전문성도 확보되어 사업수행의 적절성이 인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적절한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장 점검 및 회계정산을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음

○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시 위반사항이 발생 시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의 내용을 적절히 제도화하고 있음. 또한 사업지침에 내역사업별 사업세부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서 자체 감사는 물론 감독기관의 감사, 사업담당과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지침에 내역사업별 사업세부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목표관리제의 경우 감축설비, 시스템 구축 등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와 설비 철거금지(5년간), 연간 사후성과보고(3년간)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저탄소 인증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정수급 발생 사례도 없음

- 목표관리제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과 지원금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낮음

- 자발적 감축사업의 경우 참여자 공개모집 및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계획서에 대해 제 3자가 타당성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등록을 승인하고 있음. 또한 등록된 사업에 대해 실제 감축여부에 대해 제3자 검증기관이 검증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 저탄소 인증제의 경우 컨설팅 및 심사비용을 신청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위탁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용역(컨설팅) 및 직접 운영(심사원) 방식을 통해 관리하므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희박함

○ 사업자 선정, 사업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제도화된 절차와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목표관리제의 경우 감축설비, 시스템 구축 등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 감축사업의 경우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업성과 측정 후 정부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탄소 인증제의 경우 인증 취득 후 연1회 이상 인증제품 및 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개별 내역 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내용이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으므로 보조사업과 관련 법령의 목적과 연계가 분명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해당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국가단위의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가단위의 표준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규제로 인한 편익이 다수의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대표적으로 외부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임

○ 각각의 내역사업은 전체 목표를 위해 기여하는 효과가 명확하고 사업 간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구성적 타당성은 높은 편이나 주요 성과지표로 예산집행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건 수 등 투입 및 산출의 측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예산집행 자체가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세부사업의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내역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농업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여한 내용을 보다 객관적·실증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

- 목표관리제와 자발적 감축사업의 목표수준의 달성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성과에 해당하는 감축량이 내역사업의 실제 결과인지를 인과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 및 내역 사업 간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산출근거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됨

- 전반적으로 농식품분야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보조사업 지원단가가 다소 낮은 편이나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만큼의 보조사업 규모는 아니며, 부적절한 사업비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주요 성과지표로 예산집행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건 수 등 투입 및 산출의 측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예산집행 자체가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세부사업의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

별 내역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농업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여한 내용을 보다 객관적·실증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의 일부는 자발적 감축 농가와 저탄소인증 컨설팅 업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므로 전달체계 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근거 및 자료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전통발효식품육성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54.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33.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1.2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9.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작지 않음<br>·부처는 2018년말부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2018년 말 이전까지는 본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발효식품이 얼마나 육성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본 사업과 전통발효식품 육성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본 사업이 통제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br>·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ㆍ발효식품의 소비층(고령층)과 소비시기(명절)가 사실상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만큼 시급하거나 수요가 충분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3년전 보조사업 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br>·당초 감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처가 위의 사항을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고 기속력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br>·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br>·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 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및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 김치·장류·전통주 등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세계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김치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6조(경영개선 지원), 15조(품평회 개최),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 1조(목적), 15조(품평회 개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식품명인 발굴·육성),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닌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량 규정임

- 또한, 정부가 본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으며,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 및 제17조)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원은 보조 이외의 다양한 지원까지 포함하는 용어로서 보조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함)

○ 위 사항은 내역사업 각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부의 보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해당 정책을 추진·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부처는 전통·발효 식품의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제고, 마케팅 지원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근거로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잠재하고 구가가 지원할 경우 파급효과와 일관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만약 역량있는 지자체가 수행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국가 못지않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처가 제시하는 논거가 많은 전문가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는 않음

○ 부처는 본 사업의 직접 수혜자로 전후방사업 관련자를, 간접 수혜자로 전시·홍보·언론사와 소비자를, 최종 수혜자로 우리 국민과 해외소비자를 제시하였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발효식품의 산업기반 조성, 소비 촉진·판로 확대, 해외 진출 촉진, 민·관 협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은 대체로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었음

○ 본 사업은 제조부터 유통·판매,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전 단계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표를 대체로 명확하게 설정하였음

-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은 내용에 따라 사업 단위를 세분화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각의 사업은 대체로 구체적임

○ 부처는 본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해당 지표의 목표 및 실적,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초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부처는 보조금 이외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있는 근거 및 보조금 지급이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결정적 요인이라는 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유사·중복 가능성으로 언급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을 들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은 외식업체 중심의 사업이며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제조업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이 구분되어 현재 관련 사업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억제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사업을 별도로 유지하되 동일한 단위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전통·발효식품의 소비층(고령층)과 소비시기(명절)가 사실상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만큼 시급하거나 수요가 충분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됨

○ 만약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재정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전통·발효식품 산업에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대규모는 아닐 것으로 사료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계량적인 목표가 체계적이며 도전적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전통 · 발효식품의 소비층과 소비시기가 제한되어 있는 한계 속에서 사업비를 확대할 경우 재정관리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

○ 기준보조율이 없어 부처는 특정 지자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50% 이하가 되도록 국비와 지자체·사업자 부담액 간 균형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전국 전통발효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판촉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보조율을 100%로 설정하고 있는데 설득력있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초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교부금 신청과 승인프로세스를 통한 공식적인 교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16조~21조)에 의해 사업목적 적합성, 내용의 적정성, 예산규모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여 관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교부집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 19조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조사업의 관리 및 점검, 평가, 정산 등 사업 운용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 및 관리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사후관리 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e나라도움 시스템의 지원으로 향후에도 부정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작지 않음

○ 부처는 2018년말부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2018년 말 이전까지는 본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발효식품이 얼마나 육성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본 사업과 전통발효식품 육성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본 사업이 통제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ㆍ발효식품의 소비층(고령층)과 소비시기(명절)가 사실상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만큼 시급하거나 수요가 충분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3년전 보조사업 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 후속관리사항: 부처는 보조사업평가단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방식변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2019년중 추진할 계획임. 부처가 첨부 공문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관련 기관과 차후년도 보조사업평가단이 점검할 필요

※ 아래에 부처의 향후 사업방식변경 내용과 일정 등을 담은 공문서를 첨부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장)
(경유)
제목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안) 보고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안)」을 첨부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부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안). 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차장 | 부장 | 처장 |
|---|---|---|
| 임희영 | 문병필 | 2019.3.20. 배민식 |

협조자

시행 식품산업처-684 (2019. 3. 20.) 접수 식품산업진흥과-851 (2019.03.20.)

우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www.aT.or.kr

전화번호 061-931-0731 팩스번호 061-804-4540 / / 비공개(5)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 1. 추진배경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추진 기관별 역할 정립 및 보조사업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수립

※ 2019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향후 3년간 5%의 예산절감 및 사업방식 변경 요구

## 2. 성과관리 추진방향

☐ aT 위탁사업을 **단순 집행형에서 책임관리형으로 전환**하여 **aT가**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의 **성과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현재)** 본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aT의 주도적 역할 미흡

- 농식품부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따라 aT가 사업자 선정, 예산 집행 후 결과 보고 등 단순한 집행행위 담당

○ **(개선)** aT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있는 관리체계로 전환

- 농식품부는 기본방향 제시 및 사업계획의 승인, 중간·사후평가 등을 통해 위탁사업의 적정 수행여부 관리감독 강화

- aT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

* 사업 계획 수립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 수행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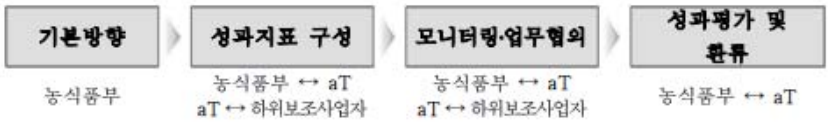

## 3.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 **(성과지표) 농식품부와 aT의 성과목표를 구분 설정**하고, aT가 성과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

○ **농식품부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위목표** 설정, **aT는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목표** 설정

* (예시) [농식품부] 전통발효식품업체 출하액 ↔ [aT] 식품명인 매출액, 이음 방문객 등

○ aT는 2차 보조사업자(용역사, 협회 등)를 대상으로 성과목표 부여

* 단, 보조사업자 성과목표는 의무사항이 아닌 성과제고를 위한 목표로 향후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사업예산 배정 시 활용 가능

□ **(관리강화)** aT 및 2차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농식품부는 지속적 추진사업으로 성과지표와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성과관리 추진상황 점검**

- 본부, aT, 전문가 자문단 합동으로 성과관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방안 등을 정기적(분기별)으로 협의

| 사업 | '19 예산 | 성과목표 | | 분기별 추진일정 | | | |
|---|---|---|---|---|---|---|---|
| | | 농식품부 | aT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 | | | | | |

* (예시) 식품명인 지정 및 육성,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식품문화관 운영 등

○ aT는 2차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정산까지 분기별 모니터링 등 주기적 성과관리

- (사업 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배정

* aT와 2차 보조사업자간 업무협약 조건에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경우 사업방식 변경**, **성과목표 미달성시 다음연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내용 신설

- (사업 추진중) 사업 추진상황 정기보고 및 부실 운영시 추진 방식 변경 요구, 미 이행시 다음연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사업 단계별 서면보고 상시화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주기적 성과관리로 보조사업 관리 강화

- (사업완료 후) 사업정산 및 성과 달성도 점검

□ **(평가환류)** 사업평가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사업평가회 구성) 농식품부, aT,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주요역할) 연간 사업결과 및 성과지표별 추진실적 보고, 지원사업 평가(계획대비 결과, 발전가능성 등), 개선방안 논의 등

○ (결과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사업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및 농식품부 위탁사업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aT 내부 경영평가에 반영**

* 농식품부는 aT 위탁사업 26개 사업에 대해 매년 위탁사업 성과관리를 추진 중이며, 그 결과를 aT 내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급 등 차등지급

## 3. 향후계획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시행('19.3월)

□ aT는 각 세부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후 보고(사업종료 후)

□ 사업평가회 및 성과목표 설정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20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조건불리지역직불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8.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9.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8.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2.8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5.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br>·세부사업의 목표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로 소득보전은 비교적 명확하나 지역활성화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함<br>·성과지표나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득보전' 효과는 인정되나, '지역활성화' 효과는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되어야 함<br>·마을공동기금의 적립 및 활용 사업의 경우 1) 내실있는 사업추진 여부와 사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2) 마을공동기금은 성격상 구조적으로 부정수급, 사후관리상의 허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가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과도 연관되므로,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직접지불제도 시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소득보조금을 '지급한다'로 명시되어있으나, 마을공동기금과 같은 지역활성화 사업의 지원은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강제규정이 아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영어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조건불리지역은 낮은 경지율 및 높은 경지경사도 등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82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사업의 1차 수혜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수혜자 범위가 넓지 않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동 사업으로 인한 농촌지역 소득보전 효과는 입증되나,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볼 수 있는 외부효과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1차 수혜자: '16년 161천명→ '17년 143천명→ '18년 141천명

※ 조건불리지역: 경지율(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이하)과 경지경사도(경지경사율이 14%이상) 기준에 맞춰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농지면적을 50%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읍·면지역의 모든 법정리), 신청면적에 따른 단가를 일괄 적용

※ 단가: '16년 농지 50만원/ha, 초지 25 → '17년 55, 30 → '18년 60, 35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은 내역사업 이관으로 인해 2019년부터는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있음

※ '18년부터 '조건불리 DB관리', '교육 홍보사업'을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

※ '19년부터 '이행점검' 사업을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

○ 세부사업의 목표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로 소득보전은 비교적 명확하나 지역활성화에 대해서는 개념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사업내용은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활용'하는 것으로 구성됨

○ 성과지표나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득보전' 효과는 인정되나, '지역활성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함

-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부처가 제출한 농가소득추이 분석과 효과성분석 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농업인 소득보전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농가소득의 증가나 소득안정효과는 다양한 소득보전형 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의 종합적 효과라고 판단됨

※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직불금 등 이전소득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됨
- 농가소득 : ('05) 30,503백만원 → ('16) 37,197 (21.9%↑)
- 농업소득 : ('05) 11,815 → ('16) 10,068 (14%↓)
- 이전소득 : ('05) 4,078 → ('16) 8,783 (115.4%↑)

※ 한국농촌경제연구의 연구에 따르면 [직접직불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16.12)]에 따르면,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소득보전형 직불제가 농업인 경영과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소득안정효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정주농 비율'로 대상 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인구 유출 예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다만 조건불리지역의 정주농이 지난 5년 평균 99%대의 높은 정주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지표개발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지역 활성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정주농 비율(%) | '14 | '15 | '16 | '17 | '18 |
|---|---|---|---|---|---|
| 목표 | 98.5 | 99.0 | 99.0 | 99.7 | 99.7 |
| 실적 | 99.8 | 99.0 | 99.7 | 97.7 | 99.7 |

※ 측정산식: (대상 법정리의 당해 연도 정주농 비율 / 최근 5년 간 평균 정주농 비율) × 100

- (지역활성화) 마을공동기금의 적립 및 활용 사업의 경우 1) 내실있는 사업추진 여부와 사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2) 마을공동기금은 성격상 구조적으로 부정수급, 사후관리상의 허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가 필요함

※ 조건불리보조금 중 일정 비율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한 경우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위한 경비와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제도개선 계획('17.11)] 이행의 일환으로 내실있는 사업 추진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제도 폐지한 바 있음 ('17년까지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20%) → '18년부터 자율 적립)

○ 2018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우수' 한 것으로 평가받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은 민간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실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 면에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쌀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소득보전형 직불제와 사업목적, 대상 및 사업방식 면에서 일부 유사하나, 타 직접지불성격의 보조금과의 중복수령을 금지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는 해당되지 않음

○ 농촌고령화에 따라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건불리지역 농업환경의 열악성을 고려할 때 농가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 농가인구 감소 현황: '05년 3,434천명 → '10년 3,063 → '15년 2,569 → '16년 2,49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야기되지는 않으나, WTO 협상결과에 따른 농가 소득지지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쌀 관세화와 FTA 확대 등 시장개방 확대 전망, 기상변화 및 자연재해 빈발, 국제 곡물가격의 큰 등락폭, 국내 농산물 수급여건 등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 요인은 증가 추세로 직접지불금을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보조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주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예산내역은 '조건불리직불금'과 '사업운영비'(인건비, 조건불리 DB 관리, 교육홍보사업, 이행점검비)로 구성되어 왔으나, 내역사업 이관을 통해 2019년부터는 '조건불리직불금'만으로 구성되어, 내역별 예산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18년 사업비는 농업인등에게 지급되는 조건불리보조금(지자체경상보조)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이행점검비(자체사업비, 전체 사업비의 0.3% 수준)로 구성

※ '19년 사업비는 조건불리보조금으로 구성(이행점검비가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

○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예산 규모는 2016년 41,911백만원, 2017년 43,103백만원, 2018년 44,321백만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 추세이며(2.8%), 과거 지급 면적과 지급 단가 인상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 실집행률은 2016년 97.4%, 2017년 98.5%, 2018년 98.8%이며, 불용액 규모는 2016년 1,088백만원, 2017년 624백만원임

| 연도 | 부처 | | 사업시행주체 |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교부액 (A) | 실집행액 (B) | 실불용액 | 실집행률 (B/A) |
| 2016 | 41,911 | 41,896 | 41,896 | 40,808 | 1,088 | 97.4 |
| 2017 | 43,103 | 43,086 | 43,086 | 42,460 | 626 | 98.5 |
| 2018 | 44,481 | 44,458 | 44,458 | 43,793 | 510 | 98.8 |

○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가 없는 지자체도 있는 점 등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일부 자부담 하도록 하고, 조건불리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을 20%로 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정함

○ 중기재정추계('18~'22년)가 되어있음. 특히 한·중 등 FTA 피해보전대책 관련 여·야·정 합의('15.11.30.) 및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20년까지 지급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소요 예산에 반영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관련성이 없어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음(부처 제출 자료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신청 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대상 마을 선정 절차,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신청을 새로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절차를 명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조건불리지역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지급대상 요건을 갖춰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조건불리보조금을 지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집행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상하반기 교차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문제 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보조사업 집행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행점검: 시·군에서 신청 받은 필지에 대해 농관원에서 실제 농지 및 초지로 이용·관리 여부, 해당 연도 1회 이상 경운 여부 등을 점검

※ 자격검증: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와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정보, 주민등록정보, 소득정보, 임대차정보, 농지처분, 초지대장, 경영체등록정보, 타 사업참여정보 등 관련정보 공유를 통해 전산검증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을 명시하고(제33조), 사업시행지침서에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5. 사후관리 단계, 다.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사업종료시 지급결과보고, 정산보고 등을 통해 보조금의 정상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문제사항 발생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마을에 대해 기금의 적절한 사용 및 집행 상태와 관련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2016-18년) 조건불리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발생 건수 없으며,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청 및 수령 정보공개를 시행함

- 조건불리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하여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관리

- 이행점검, 자격검증, 교차점검, 합동점검 등 보조금 지급 이전 지급대상 확정을 위한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정수령을 사전에 방지

○ 조건불리보조금 등 농업직불금의 부당수령 차단을 통한 농업직불금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부당수령예방 대책을 마련하여(2017.10.)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부당수령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의 목적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사업수혜 범위가 넓지 않고, 사업의 외부효과 입증자료가 없어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국민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업내용이나 성격상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역사업의 목표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로 소득보전은 비교적 명확하나, 지역활성화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함

○ 성과지표나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득보전' 효과는 인정되나, '지역활성화' 효과는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마을공동기금의 적립 및 활용 사업의 경우 1) 내실있는 사업추진 여부와 사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2) 마을공동기금은 성격상 구조적으로 부정수급, 사후관리상의 허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종자산업기반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9.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8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감축(2020년 721백만 원)<br>·성과목표 미달성이 2017년 국산품종 점유율 지표에서 발생하였고, 우수종묘증식 보급기반 구축을 비롯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에서 효과성 제고 필요.<br>·성과목표 미달성 관련, 2018년도 및 2019년도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액의 10%인 721백만 원을 2020년 보조금에서 감축 판정함.<br>·향후 본 보조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 자본의 경우 예측 가능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성을 활용하고 재정 절감 및 종자 보급경로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종자산업법,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존재함.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 개발·생산·보급·가공·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 2. 종자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 □ 종자산업법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종자산업법 제10조 및 제12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 동사업의 내역사업인 ①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 ②종자산업진흥센터운영, ③종자가치 홍보(종자박람회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종자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자,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야로, 선진국에서는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육성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본 보조사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타당성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됨.

- 종자는 농업생산물의 품질·수량·시장성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공급체계가 취약한 실정임.

-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증된 씨감자 및 고구마 종순의 공급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도 검증된 씨감자 및 고구마 종순의 자체 생산·증식시설, 저장·공급시설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됨.

○ 이 보조사업을 통해 보급된 종자로 농산물이 생산되고, 종자 수요 농업인이 직접적 혜택을 받으며 이는 농산물의 생산비에 영향을 미쳐 최종소비자인 국민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전달되는 것으로 인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으로 우수 종자(종묘)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①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종자 박람회 개최 등 가치홍보를 위한 '②종자 산업 홍보', 종자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③종자 산업진흥센터 운영'이 포함되어 있음.

- 내역과 성과목표는 대체적으로 구체적 형태로 정립되어 있으나, 시간 및 기간계획에 따른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 보조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성과 측면에서는 국산품종 점유율 성과지표에서는 2017년 일부 목표 미달성 부분 확인됨(화훼 95%, 딸기 99%). 지속적 경기둔화와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201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종자가 농업 생산물의 품질·수량·시장성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공급체계가 미흡하고, 벼, 보리, 콩, 밀 등 주요곡물 이외 품목에서 국가차원의 공급체계 부재하며 개인이 자급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민간 부문의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비슷한 명칭의 사업으로 국립종자원의 '종자수매·공급'사업이 있으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업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중복 가능성은 낮음.

○ FTA 농업분야 보완 대책과 관련하여 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의 우수종자 보급 내용이 필요하여 이 보조사업 역시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업의 중단 시 농어민과 소비자 등의 직간접적 재정 손실과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계속비와 신규사업 이외에 국제종자박람회(700백만원: 전시관 및 전시포 조성 500, 박람회 홍보 및 운영비 200, 종자산업진흥센터운영 1,258백만원(센터 및 단지운영 관리비 706,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용역비 134, 분자표지 및 기능성 분석서비스 418 등에서 절감 및 민간자본 활용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로써, 본 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지방회의 협조문서 등)를 제출받고 있으며, 사전 절차인 부지선정 확인을 위해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토록 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선정 및 교부 절차로서 농식품부가 승인한 사업 시행계획, 사업별 시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 모집공고 →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 →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 → 정산”의 절차로 보조금 집행하는 현황 확인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는 종자 산업의 활성화와 종자 수출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 및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상이함.

-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설치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 위탁업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전문성 보유한 기관으로 평가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업생명정책관실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하여 보조사업 집행 점검 실시하고 있는바, 단장을 농업생명정책관이, 반장으로 종자생명산업과장, 점검반으로 업무담당자가 참여하고 있음.

- 다만,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는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전에 설정된 점검 평가 체계에 따라 시행하지 않으면 주관적 판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평가점검 체계 수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기준으로써 전년도 전액 이월 사업이 있는 경우 -10점, 전년도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전년도 집행률 50% 이상 ~ 7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3점 페널티 부여 체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하고,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사실 확인됨.

○ 본 보조사업 관련 '09년 사업 이후 현재까지 부정수급 발생 현황 없음. 주 사업대상자가 지자체(시 · 군, 시 · 도)로 타 사업대비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농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국가 보조사업으로서의 지원 필요성 인정됨.

○ 다만, 지자체자본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참여 및 재정기여를 확대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성 활용하고 재정 절감 및 종자보급경로의 확대 도모할 필요 있음.

○ 성과지표 중 2017년 국산품종 점유율 지표에서 목표 미달 부분 발생하였음. 우수종묘증식 보급기반 구축을 비롯한 전체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하고, 성과목표 미달성 관련, 2019년도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액의 10%인 721백만 원을 2020년 보조금에서 감축 판정함.

## 3-2 정책 제언

○ 사업내역에 따른 성과목표와 기간을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음.

- 사업내역과 성과목표는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나, 시간 및 기간계획에 따른 로드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축산물 HACCP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1.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4.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축산물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되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보조 수준도 적절하다고 평가됨.<br>·동사업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이 어느 정도나 개선되었는지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br>·지자체와 농가에게 자부담을 하도록 하여 책임을 지도록 설계한 것은 바람직함. 향후 점진적으로 생산자와 지자체의 자부담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축산농가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40%로 설정하지 말고, 능력이 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구분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HACCP 제도의 도입·운영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HACCP 전문 컨설팅 및 현장기술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가축위생 및 축산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동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식약처장으로부터 농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보조금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 축산물 HACCP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인증신청 및 인증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 목적은 국정방향과 일치함.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이라는 국정과제(84-4.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와 연계됨.

○ 공중보건 측면에서 볼 때, 생산되는 축산물의 위해관리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1차 수혜자는 농업인임. 농업인으로 하여금 HACCP 인증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유도함.

- 2차 수혜자는 동 사업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하게 되는 전 국민임.

○ 동 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인 것으로 평가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내용이 HACCP 인증을 신규로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 기존 인증 농가 중 운용능력이 부족한 농가에게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한 운용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두 가지 성과목표의 달성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HACCP 컨설팅 종합 만족도(점) : '15(86.6점) → '16(89.8점) → '17(92.7점)
* 도축장·집유장 조사·평가 적합률(%) : '16(84%) → '17(89%) → '18(94%)

○ HACCP 인증농가 확대,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인증농가 : ('14) 5,977 → ('15) 6,822 → ('16) 7,238 → ('17) 7,487 →('18.11월) 7,494
* 인지도(%) : ('15) 76.4% → ('16) 78.8% → ('17) 86.8%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HACCP 인증은 축산식품의 위생수준 제고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지만, HACCP 인증 축산물이 위생수준 개선이라는 공익적 가치 향상에 상응하는 만큼 더 높은 가격을 받지는 못함.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 사업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축산농가 등에 대한 컨설팅은 민간 컨설팅 기관이 직접수행하기에는 얻는 실익이 작아서 민간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상경비(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대상 업종을 분리하여 생산단계(축산농가, 도축업, 집유업)는 농식품부가, 유통단계(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는 식약처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달라 중복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동사업에 대한 농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사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조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 지자체, 축산농가가 40% : 30% : 3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함.
-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보조하는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음(보조율 100%).

○ 하지만, 축산농가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40%로 설정하지 말고, 자부담 능력이 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구분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대규모 양돈농가와 같이 안전성관리를 스스로 시행할 인센티브가 충분한 농가들은 자부담률을 높이도록 해야 함.

< 자치단체보조 >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1,280백만원 | 1,120백만원 | 1,120백만원 |
| | 40% | 40% | 40% |
| 자치단체부담 | 960백만원 | 840백만원 | 840백만원 |
| | 30% | 30% | 30% |
| 민간단체부담＊ (자부담) | 960백만원 | 840백만원 | 840백만원 |
| | 30% | 30% | 30% |
| 합계 | 3,200백만원 | 2,800백만원 | 2,800백만원 |
| | 100% | 100% | 100% |

<민간단체보조>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370백만원 | 530백만원 | 530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민간단체부담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 - % | - % | - % |
| 합계 | 370백만원 | 530백만원 | 530백만원 |
| | 100% | 100% | 100% |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동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총 사업비의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설계함.

- 수요 조사 및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에 사업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있음.

○ 민간단체는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지정하여 동사업의 위탁업무를 수행케 함.

○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집행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음.
- 컨설팅 실적은 시·도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점검하고 있음.
-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물량 배정시 물량을 축소 조정하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 컨설팅 실적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가 없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과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결산감사를 받고 있고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컨설팅이 어떻게 농가에게 feedback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컨설팅업체 인증제도, 보조사업 수행업체 선정제도, 사업대상 농가 배분제도, 계약체결 시 지자체 입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컨설팅업체 인증제도: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기본요건을 공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권역별로 최소 3개소 내외의 컨설팅 업체 인증하고 있음.

- 매년 1회 이상 컨설팅 수행업체에 대한 컨설팅 계약내용 이행 등 컨설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불시 현지 점검하고 있음.

- 농가의 자부담 대납 요구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선정된 업체에 사업대상 농가를 배분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시에도 지자체 입회하에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은 전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라는 국정방향과도 일치함.

○ 동사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됨.

### 3-2 정책 제언

○ 지자체와 농가에게 자부담을 하도록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설계한 것은 바람직함. 향후 점진적으로 생산자와 지자체의 자부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동사업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이 어느 정도나 개선되었는지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9.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9.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7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4.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예산 집행률이 낮고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함<br>·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직접적인 수혜자 범위가 작고 사업효과가 제한적이지만 한·영연방 FTA 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존치할 의무가 있음<br>·목표를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2019년 예산을 2018년 예산대비 50% 삭감이 이루어졌고, 향후 사업대상자 기준을 변경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방식 개선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함

- 「축산법」 제3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시책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사업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소비촉진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소당 10억원 내외(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로 지원하는 사업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한·영연방 FTA 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존치할 의무가 있음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은 산지 및 소비지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한 생산자단체 운영 판매장 확대를 통해 영농법인 등에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특정 지역에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형태로 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선정 지역 축산업자로 국한됨
- 이 사업은 한·영연방 FTA 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시작되었고 2022년 까지는 존치할 의무가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역사업도 목표에 맞게 설정되었지만 예산집행률이 낮고 연도별 직거래판매장 설치실적도 목표에 미치지 못함

- 이 사업은 한·영연방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160개소를 설치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목표를 둠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은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과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맞게 설정되었음

- 2015년과 2016년 예산 집행률이 낮아 2017년부터 예산 규모가 축소 조정되었고, 직거래판매장 설치목표도 축소 설정하고 있으나 아직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민간의 자체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가 재정의 보조 없이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을 통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함

- 설치 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재정의 일부 보조가 이루어지더라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어렵고, 이는 실제로 이 사업의 추진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 집행률이 낮고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므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업규모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규모를 축소 조정할 여지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축산물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부로부터의 방문자 유입 등으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등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과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

- 사업시행지침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 지자체의 사업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2017년부터 보조금 비목을 지자체 자본보조로 변경하여 사업시행기관으로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집행을 적절히 관리 및 감독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시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와 제7장 사후관리에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고,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로 1회 이상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집행과정을 관리감독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환수, 홈페이지 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 및 정산보고서 검정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88조에 부정수급 사유, 중도회수 사유, 환수 방법,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및 납부절차, 부정수급자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중복/부정수급관리를 통해 확인 및 사업지침에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직접적인 수혜자 범위가 작고 사업효과가 제한적이지만 한·영연방 FTA 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존치할 의무가 있음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은 산지 및 소비지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한 생산자단체 운영 판매장 확대를 통해 영농법인 등에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특정 지역에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형태로 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선정 지역 축산업자로 국한됨
- 예산집행률이 낮고 연도별 직거래판매장 설치실적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한·영연방 FTA 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존치할 의무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예산 집행률이 낮고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므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예산을 그동안의 사업추진실적 및 집행률을 반영하여 2018년 예산 대비 50% 삭감한 점은 바람직함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 기준을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축산자조금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7.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1.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6.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5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6.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감축(26억원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 감축), 사업방식 변경

·국고보조율을 25% 수준으로 조정 필요

- 연차별 보조 규모는 자조금의 재정자립도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축되도록 검토·산정할 계획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원계획에 대한 정부 방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의 투명 공시

- 집단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도록 사업 내용 및 집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조금 거출 실적을 높이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축산법 및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 축산법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

□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생존전략의 하나로 FTA 개방에 따른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본 사업의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자조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생산자 개개인 또는 산업의 한 부분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업 전체의 문제일 경우 산업 차원에서 그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기 위하여 조성·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생산자 단체의 자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여 생산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파급효과가 생산자 단체 뿐만아니라 이를 수요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게 됨.

  * 축산자조금의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조절, 조사연구 등에 지출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축산자조금의 소비홍보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조절, 조사연구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음.

○ 보조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우, 한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 파악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닭고기, 계란, 오리 등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미흡함.
- 또한 2015년 만족도 실적이 80.4%이어 다음해에는 이보다 높은 목표 설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목표치는 2015년 실적치보다 낮은 69.6%를 정해 놓고 있어 목표치 선정과 이에 따른 실적치 달성도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축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거출률 안정화 도모를 위해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본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정부지원금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단체는 정부지원 감소에 대한 계획수립함으로써 향후 자조금단체의 운영에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축산자조금 사업은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구분되어 있어, 의무자조금 거출금과 임의자조금 거출금이 축종별로 차이가 있음. 자조금 제도의 성과 또는 축종별 중요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기준을 농가거출금으로 선정하고 거출금의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 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근거가 미흡함.

- "의무축산자조금":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 "임의축산자조금":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

  * 의무자조금 : 한우('05), 한돈('04), 우유('06), 계란('09), 닭고기('09), 오리('15), 육우('14)

  * 임의자조금 : 사슴('07), 양봉('09)

- 농가거출금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 적용(농가거출의 100%범위내 매칭 지원)

  • 한돈: 25%, 한우: 50%, 우유: 70%, 닭고기: 80%, 계란: 90%, 오리 등: 100%

| 구 분 | 10억원미만 | 10~30억원 | 30~50억원 | 50~100억원 | 100~150억원 | 150~200억원 | 200억원 이상 |
|---|---|---|---|---|---|---|---|
| 매칭비율 | 100% | 90% | 80% | 70% | 50% | 25% | 0% |

○ 자조금 용도에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농가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보조 규모는 자조금의 재정자립도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축되도록 검토· 산정할 계획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축산자조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원계획에 대한 정부 방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제시된 증빙자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기 보다는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좀 더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 특성상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본 사업은 공모형식을 취하지 않고, 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을 신청 및 집행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을 별도 두지 않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승인 및 교부하고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시,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로 재검토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제시(기초조사보고서 25페이지)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 또는 이와 관련한 조치 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이 적정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다만, 2016년 일부 자조금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거출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사항>
- 일부 자조금의 거출실적 저조
  · 오리자조금 및 양봉자조금의 경우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각 84%, 59%), 이는 자조금 거출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데 따른 것임(각 62%, 38%).
  · 자조금 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일부 농가나 계열화업체가 자조금 제도에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농식품부 차원에서 미납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현행법 제35조)이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으며 거출 노력이 부족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자체감사를 수행하여 단계별 집행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사업 완료에 따라 실적보고를 등록하고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여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있음.

- 또한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통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관리 방법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점검하고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과 관련한 최근 3년간의 적발건수는 없으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비 불용 및 차기년도 이월에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과정이나 증빙자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정부는 생산자 단체의 자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축산자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조금의 운영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축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사업을 지원해야 하나, 자조금의 운영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며, 실제 자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자조금의 소비홍보가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의 투명한 공시가 필요함

- 대의원회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용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자조금을 납부하는 회원은 누구나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자조금은 집단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도록 사업 내용 및 집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조금 거출 실적을 높이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자조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조금지원' 국고보조사업과의 통합 운영 타당성 검토를 권함.

## 3-2 정책 제언

○ 정부는 자조금 운용에 대한 투명한 감독과 지원으로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의무자조금화를 지향하며 자조금의 거출 등 납부금 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자조금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취약농가인력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7.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3.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0.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내역사업 중 행복나눔이 사업에서 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 감축하여 보조사업 5%감축<br>·본 사업은 복지 지출의 성격이 강하며 복지지출의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한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 복지프로그램으로 유사중복성 있음<br>·19년 예산증가분이 상당하며 국고보조율도 70%로 높음.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보다는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요청임. 내역사업인 행복나눔이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이라는 수혜자대상이 적절하게 설계되지 못함. 사업의 수혜자 재조정을 통하여 예산 감축 노력 요구됨<br>·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은 행복나눔이 사업 국고보조율 재조정과 프로그램 대상자의 축소의 노력을 통하여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는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개정 2015.6.22.>

1. 중략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5조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7.23.>

○ 본 사업의 내역사업과 보조금 지급근거의 내용이 연계되지 못함

- 법령은 일반적인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역사업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내역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가구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됨

- 재난상황에서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특성상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이해됨
- 농어촌 고령취약가구에 대한 행복나눔이 지원의 경우 복지정책의 범주로 파악됨
- 복지정책 및 지출은 정책대상, 사회집단이 과연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만한 사회적 약자이며 지출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함

- 내역사업 중 행복나눔이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달리 농촌의 취약계층에 수혜가 집중되지 못하고 있음: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불허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 조정 필요

○ 수혜범위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이나 이는 특정집단에 한정되어 협소함

- 농업분야의 재난상황에서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산업전체에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농업분야의 재난상황에서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농업분야 재난발생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 구성이 합리적

- 취약가구 행복나눔이 지원의 경우 본 수혜집단이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음. 이런 면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

- 타 복지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은 조정하여 내역사업을 구성하였음

- 다만 실제 행복나눔이의 수혜집단이 원래취지와 달리 농촌사회의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음

○ 개별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임

○ 만족도의 경우는 본 사업이 혜택을 주는 수익적 사업이므로 당연히 높은 것으로 이해됨, 사업타당성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영농도우미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성격에 비추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행복나눔이의 경우 사업의 내용의 재설정이 요구됨

○ 연도별 보조사업 주요 실적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영농도우미 지원(호) | 14,746 | 15,844 | 16,811 |
| 행복나눔이 지원(호) | 13,303 | 14,440 | 24,693 |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 성과지표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만족도(점) | 목표 | 신규 | 80.0 | 90.2 |
| | 실적 | 신규 | 89.9 | 90.7 |
| | 달성도(%) | - | 112.4 | 100.6 |

*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주요내용: 사업수행기관, 수혜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기준완화 및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 91.5점(보통)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영농도우미의 경우 재해 질병에 의한 농업활동 지속 영위가 어려운 경우 농업활동의 지속을 위한 다른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대체가능

- 행복나눔이의 지원은 다른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많고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 영농도우미의 경우 재해 질병이 상존하고 고령화에 따라 니즈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봄

- 행복나눔이의 지원의 경우 사회적 니즈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의 지원 배분, 지역별 배분, 업종별 배분의 내용이 중요함

- 행복나눔이의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외에 배정된 사례다수
  · (영농도우미) 7,252백만원
  * 17천농가(지원세대) × 70천원 × 70% × 10일 = 7,252백만원
  · (행복나눔이) 1,337백만원, 14천농가 지원
  * 15천농가(지원세대) × 12천원 × 70% × 11일 = 1,337백만원

○ 복지지출에 가까운 성격으로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국고보조율을 5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음
  ·영농도우미 지원 : 국고 보조금 70%, 자부담 30%
  ·행복나눔이 지원 : 국고 보조금 70%, 농협 30%

## 1-6 사회적가치 실현

○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나 다른 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회적 가치의 직접적 기여로 보긴 어려움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들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다른 복지프로그램과 중복성이 있고 사업내용의 개선의 여지가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민간사업 대상] 농협에 대한 보조사업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보조사업자로 적합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3호, 2018. 1. 2., 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

- (사업자 선정) 본 사업 특성상 전국 지역농협 1,120개소 네트워크와 인력을 갖추고, 농업인 접근성 및 농업·농촌 이해도가 높은 농협중앙회(지역농협)가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사업효과성이 큼

- (자부담능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경제사업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행복나눔이 사업 예산의 30%를 농협(보조사업자)에서 부담

- (재원 집행)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보조사업자에게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재원을 집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적절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협에 의한 관리에 따라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법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서 벗어나 법규와 내역사업의 내용과 연계성이 낮음

- 실질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셈으로 판단됨
- 현재 제시되고 있는 근거규정은 내역사업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 다만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정정도 인정할 수 있음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복지 지출의 성격이 강하며 복지지출의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한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

- 19년 예산증가분이 상당하며 국고보조율도 70%로 높음
-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보다는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요청임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은 국고보조율 재조정과 프로그램 대상자의 축소의 노력을 통하여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
- 행복나눔이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수혜집단을 명확히 할 필요: 농촌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범주만 인정

○ 이상의 사업내용의 개선을 통하여 행복나눔이사업의 예산을 감축하여 전체적으로 감축 5%로 권고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식품부 |
|---|---|
| 사 업 명 | 친환경농업직불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2.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6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4.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재정투입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며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br>·사업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나 지급 농가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축·편성한 점을 인정하여 보조사업의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함<br>·부정수급의 가능성을 낮추고 인증농가가 충실히 친환경농업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규정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함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동 시행규정 제23조2항에서는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행규정과 시행규칙에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요건, 보조금 산정기준 등의 규정과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유기농업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양의 외부성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에서 과소생산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환경오염 저감과 같은 유기농업의 혜택은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반면 유기농업의 고비용 구조는 농업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시장에서는 최적 생산량이 달성될 수 없음
- 따라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이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높음

-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등 공익적 성격이 큰 직불제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기반 확충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재배면적 비중 확대를 추진함

○ 보조사업의 일차적 수혜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과 축산인이며, 유기농업을 통해 환경오염이 감소할 경우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 파급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직불금 지급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함
- 친환경축산 농가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운영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임

-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인증 농가 수와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증면적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축산농가 수에는 큰 변화가 없어 사업규모에 비해 실적이 미흡한 편

- 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지급 규모는 크게 상승하였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7년 79,479ha에서 18년 80,114ha로 소폭 증가하였음
- 다만 유기인증면적은 '16년 19,862ha, '17년 20,673ha, '18년 24,666ha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기지속직불금의 영향으로 파악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민간시장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우며 보조금을 통한 생산비용 보조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합당함

- 친환경농업의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을 상회하며 사회적 편익은 국민 전체에 파급되므로 국가가 소득보조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촉진하는 것이 적정한 정책수단임

○ 유사중복 가능성은 없음

○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친환경 식품에 대한 시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친환경직불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의 소득 보전의 의미 이외에 농업으로 야기되는 토양·수질 오염을 막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는 사회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함

-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친환경농축산물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므로 생산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함께 도모하여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실적과 실제 집행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감액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직불금 단가 인상과 유기지속직불금 도입으로 불용예산의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급신청 이후 인증 포기, 취소 또는 인증표시와 관련된 지급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여전히 불용되는 예산 규모가 존재함

○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율을 산정함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의 122호에 의하여 보조율 100%를 설정함

○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재정소요액을 추계하고 있으나 장기 재정소요액 추계는 이루어지지 않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통해 수질·토양 오염을 저감하고 생태계 보전 등 비시장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법 제16조 ~19조에 따른 절차와 조건을 준수하며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지침서에 따라 사업자 선정, 자금 배정 및 집행 절차를 규정함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이기는 하나 지자체의 업무가 사업신청 접수, 대상자 확정, 자금 집행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 지자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님
- 인증기관에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한 친환경 인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최종 인증을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연말에 직불금 지급함

○ 친환경축산직불금 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친한경축산직불사업은 사업신청 접수 후 친환경농산물인증과 HACCP 지정을 함께 받은 농장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집행함
- 친환경농업직불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증기관에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한 친환경 인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최종 인증을 유지하는 축산인에게 연말에 직불금 지급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사업집행 점검, 평가, 검사·지도, 집행점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함

○ 집행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을 점검하고 농관원이 2차 모니터링을 시행함

○ 인증기관의 수시 이행점검과 별도로 직불금 부정수급 위험군을 추출하여 농관원과 별도 점검을 추진함

- 전체 인증 농가 중 부정수급 의심 농가를 선별하고 임의 추출하여 대상 선정
- 실제 면적에 비해 인증면적을 과도하게 산정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집행지침서에 사후관리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법,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지자체 실집행 잔액 반납 및 부적정 수급자의 보조금을 환수하여 반납하도록 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으나 부정수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직불금을 부정수급할 가능성
- 인증기관이 친환경농가의 기준 이행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 있으며, 살충제 계란 생산 농가 중 상당수가 친환경 인증 농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증점검의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증관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시행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하며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처벌 등이 수반되지 않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친환경농업은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보다 높은 양의 외부성을 가지는 산업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국가 지원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타당함

○ 사업 규모에 비해 인증 농가 수와 인증면적의 확대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불용예산이 여전히 존재하나 지금 농가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함

○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낮추고 인증 농가가 충실히 친환경농업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관리 감독 기관의 점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정수급 시 인증기관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친환경농축산물 농가와 면적이 재정사업 투입 규모에 비해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친환경농축산물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수요가 적고 이로 인해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생산비용을 보조하는 것 이외에도, 기술지원사업과 같이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친환경농자재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0.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br>·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으나, 토지주 및 농업생산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br>·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의 역할은 민간의 토양환경 개선 노력에 적정 수준의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한정하고, 보조율과 지원단가를 줄이는 대신 지원수량을 늘리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친환경농자재지원은 「농지법」 제21조에 근거하는 사업임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토양의 건전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농지법」 제21조는 국가가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이 지속되도록 토양의 개량과 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이외에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도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있음

○ 친환경농자재지원의 각 내역사업의 보조금 지급은 「농지법」 제21조 등 관계 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친환경농자재지원은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비료 교육·홍보, 유기농업자재 지원,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구축의 다섯 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각 내역사업은 「농지법」 제21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 토양을 개량 및 보전하고,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넓혀 나가기 위해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토양의 개량과 보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농업생산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토양의 개량과 보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수혜자 범위는 광범위하고, 혜택이 명확함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농업인이고, 사업추진을 통해 토양환경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이 조성되면 사업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효과성은 본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의 보급과 사용이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얼마나 더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토양환경이 얼마나 더 개선되었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 본 사업은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내용이 명확한 편이나 사업추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내용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경지토양의 평균 유기물함량(%)과 밭토양의 산도(pH) 평균을 매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지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은 적정하지만, 토질의 개선과 관리주체인 토지주 및 농업생산자들의 인식수준을 평가하고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토양의 물리성 개선이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본 사업의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생산자들의 자부담을 통한 자발적인 유기질비료 사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추진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토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농자재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추진 규모는 효율적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함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의 보급을 통해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민간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유기질비료 등을 통해 토양환경 개선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의 성과로 토양의 물리성 개선이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업생산자들의 자부담을 통한 자발적인 유기질비료 사용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추진 환경 변화에 따라 보조사업의 필요성도 일부 완화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식과 목표 및 규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보조지원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018년 기준 농협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유기질비료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무기질비료(화학비료)의 약 84% 수준으로 더 저렴하며, 최근 3년간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임
- 토양의 물리성 개선이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공급된 3,200천톤 이외에 추가로 약 2,799천톤을 농가가 개별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등 농업생산자들의 자부담을 통한 자발적인 유기질비료 사용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의 역할은 민간의 토양환경 개선 노력에 적정 수준의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한정하고, 보조율과 지원단가를 줄이는 대신 지원수량을 늘리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방식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기준 20kg 포대당 국비 1,300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는 600원 이상 자율적으로 지원액을 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한 집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홍보와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함

- 집행률이 낮을 경우 다음 해 사업비에 10%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 페널티 규정을 갖추고 있고, 사업포기자나 선정 잔액에 대하여 반기별로 점검 후 추가 선정을 진행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실시중임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 등에 근거하여 점검, 평가, 결산, 관리책임, 검사·지도, 집행점검,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에 사후관리, 제재 등 실시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된 바 없음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은 농협에 지급하여 비료와 자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선정·공급·지급전상 등을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 관리하고 있음

- 부정수급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으나, 직접적인 수혜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 토양을 개량 및 보전하고,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넓혀 나가기 위해 보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토양의 물리성 개선이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본 사업의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생산자들의 자부담을 통한 자발적인 유기질비료 사용이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사업추진 환경을 감안한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 3-2 정책 제언

○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의 역할은 민간의 토양환경 개선 노력에 적정 수준의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한정하고, 보조율과 지원단가를 줄이는 대신 지원수량을 늘리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집행방식은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폐업지원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8.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4.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단계적 폐지(2022년 예산 미반영)<br>·관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될 사업임<br>·폐업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12월 20일까지 시행하고 이후 폐지해야 하므로, 2020년도의 피해 지원이 시행되는 2021년까지 예산에 반영하고 2022년부터 예산 미반영함<br>·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폐업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근거하여 실시중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품목, 재배 및 사육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할 수 있음을 규정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중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에 대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별도의 내역사업 없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이 실시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짐

- 지급 요건, 지급액 산출 방법,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이 모두 근거 법률에 의해 정해짐

- 시장 상황에 따라 폐업지원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규모를 미리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기는 불가능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근거 법령에 따라 2020년까지 보조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며, 2020년도의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2021년까지 예산 반영이 필요함

- 폐업지원 사업은 국가가 아닌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 어렵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타 사업은 발견되지 않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에서 폐업지원 사업 시행기간을 「대한민국과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으므로,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이 필요하며, 전년도 가격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한 후 다음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되므로 2021년까지 예산반영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정지원 규모를 사전에 정할 수 없어 예산액을 초과한 사업비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지급 대상 품목이 없는 경우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기도 함

- 전년도 수입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농업인의 신청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사업비 규모를 정하기 어려우며, 지급요건과 단가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 2015년과 2016년에는 폐업지원금 신청액이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불용액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폐업지원 사업비 증액에 활용하였고, 2017년에는 요건을 충족한 품목이 없어 예산액을 전액 불용하였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자치단체보조 사업이지만 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사업은 아님

- 자치단체보조의 형태로 사업을 실시하나,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 재배농가 중 신청자에게 법으로 정한 요율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로 자치단체를 선정하지는 않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은 폐업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 및 감독되고 있음

- 폐업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별 집행점검 등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점검 단계에서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폐업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됨
-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폐업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이행 점검단계에서 환수 처리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폐업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음

- 폐업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수령 농가에 대해 지원금 수령일부터 5년 간 해당 생산지의 활용 방법, 재배 품목 등을 관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관리카드 비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한 폐업현장 사진 부착(전·중·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후관리를 맡고 있으며,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관리카드를 이관하여 기록·관리하고 있음
- 폐업한 농업인에 대해 폐업 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개 농가에서 가축 재사육, 작물 재재배, 가축(폐기)처분 부적절 등이 적발되어 일부에 대해 환수조치 중임
- 재사육 또는 재재배 등 부정수급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폐업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중임

-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에서 폐업지원 사업 시행기간을 「대한민국과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으므로,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이 필요하며, 전년도 가격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한 후 이듬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되므로 2021년까지 예산반영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법에서 정한대로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21년까지 예산 반영 후 2022년부터 예산 미반영하여 폐지함이 바람직하며, 그 때까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폐지함이 바람직함
- 재사육 또는 재재배 등 부정수급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식품부 |
|---|---|
| 사 업 명 | 푸드서비스 선진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4.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39.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3.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2.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4.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보조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고 보조율 산정 기준도 미흡하며 내역사업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br>·외식산업의 높은 폐업률은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과 업체 운영으로 외식업체의 공급과잉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며, 정부가 외식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타당성이 없음.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과 필요성이 낮고 성과도 미비하나, 보조사업 수행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아직 사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방식 전환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br>·외식산업의 발전과 외식업종사자의 경영 안정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는 내역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하고, 차후 보조사업평가에서 사업방식의 개편과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보조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외식산업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의 법적근거는 명확한 편임

- 동법 제6조와 제1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과 경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법 제15조는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제16조는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 사업, 우수식재료 소비기반 확대 사업은 외식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함
- 지구단위 외식업 활성화 사업은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과 관계가 있으나 외식산업진흥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 환경의 개선 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외식산업 지원에 대한 국가적 타당성은 미흡함

- 외식분야 총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등 외식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2011년 이후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11.4%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보호 또는 성장 촉진 등의 목적으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아님
- 폐업률이 타 업종에 비해 높으나 총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해 왔으며, 낮은 진입비용으로 인해 준비와 역량이 부족한 외식업 사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공급과잉이 높은 폐업률의 원인이므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및 레스마켓 등은 비용 절감의 혜택이 크고 수익성이 높다면 외식업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유인이 높으므로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타당성이 없음

○ 보조사업의 일차적 수혜자는 해당 사업을 지원받는 외식업 종사자와 외식 창업 희망자로 범위가 넓지 않음

- 우수 식재료 소비기반 확대 사업과 평창올림픽 내외국인 음식 관광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외식업체 및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나,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 사업은 혜택의 파급효과가 적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일부 내역사업은 창업 및 경영 지원,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을 통한 외식산업의 질적 향상이라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정하지 않음

- 지구 단위 외식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대회 운영비 규모가 크고 관계자 워크숍 및 해외연수 등은 사업목적에 불필요함

○ 외식업 종사자 및 창업 준비자 교육과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부합함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구체적임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청년 외식 창업 준비자에게 외식업 운영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유도함

-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식잴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 설립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 레스마켓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수 국내 식재료 소비를 확대하도록 함

-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 사업은 외식업주 교육과 외식지구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별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가 단순히 투입 위주의 지표로 실효성이 없으며 보조사업이 외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지난 2년간 참가인원 342명 가운데 창업에 성공한 인원이 35명으로 10% 수준임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의 의무 조건인 국산 식재료 구입액은 2년간 17억 원이나 사업 전후 자료가 부재하여 보조사업의 효과를 식별할 수 없고 18년 신청 조직 중 50%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음

-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외식업 선도지구의 전체 매출액, 방문객 수 등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레스마켓의 운영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으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낮음

- 외식업체 공급과잉, 수입산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질적 저하 등의 문제는 민간시장 내의 경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국가가 개입하여 지원할 필요는 없음
- 외식업 선도지구의 진흥과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과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 보조사업보다 효율적일 것임

○ 유사·중복 가능성은 낮음

○ 산업이 충분히 성장해 있고 외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의 문제이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와 시급성은 낮음

○ 사업 폐지 시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이나 문제점 없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고 외식산업의 경영 지원과 질적 향상에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은 18년 사업비는 전년 대비 7배 향상하였으나 창업실적은 예산 증가에 비해 저조함

○ 현행 보조율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이 부재함

-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국고보조 70%,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는 국고보조 100%, 레스마켓 설치지원은 국고보조 50%, 외식산업 경영안정화 사업의 역량강화 교육은 국고보조 80%로 이루어짐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외식업지구 내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국산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며 우수외식업 지구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며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동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도록 하여 법률적 근거가 있음

- 외식산업진흥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함
- 공모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지침에 의해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선정과 교부 절차를 마련함

○ 농식품부가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추진계획을 검토·승인하고 재원을 집행함

-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승인하고 승인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집행 관리체계와 규정을 마련함

○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실집행을 점검하며 사업별 현장점검과 수시점검을 시행함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현장점검, 레스마켓 운영 현장점검

○ 연말 사업결과 평가회를 통해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우수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가산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성과가 미비한 사업자에 대한 상대적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의해 정산과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함

- 농식품부가 실집행을 점검하고 정산을 관리·감독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낮음

○ 보조사업자가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단계부터 보조금 집행까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외식산업 사업체 수와 매출액 등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외식분야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할 타당성은 낮으며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협소하고 실효성이 낮아 보조사업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미흡함

○ 일부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사업별 보조율의 산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보조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역사업들의 경우에도 성과가 미비하거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다만 17년부터 시행된 보조사업으로 아직 사업이 초기인 점과 내역사업의 지속적인 개편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사업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관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외식업의 발전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는 내역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 보조사업 수행 기간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는 차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방식의 개편 정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외식업체의 폐업률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외식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쟁의 결과임

○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푸드 서비스의 질적 개선, 식재료 가격 절감 등은 업체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부분이며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며 정부는 외식업의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3.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4.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9.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의 정상추진을 제안함<br>·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이 인정되며 연도별 성과지표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성과 목표치 달성률이 높다고 판단됨<br>·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성과지표로 채종지원 사업 참여율, 민간육종가 육성품종 실용화 비율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목표를 비교적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음<br>·채종지원사업 참여율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채종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은 종자산업법 제3조, 제 7조,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종자산업법 제3조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장기 투자계획, 종자 관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민간의 육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등을 명시하였음

- 종자산업법 제 7조,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반조성과 종자산업 육성, 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경비,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법적 강제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의 필요성과 지원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임

○ 위 법령은 국내채종기반 구축 및 민간 육종가 지원을 통해 관련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됨

- 종자산업법 제3조에 따른 제2차 종자산업5개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내에 동 보조사 업계획 포함

- 종자산업법 제7조에서 종자산업 관련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명시함

- 종자산업법 제10조에서 채종기반 산업 등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종자산업법 제11조에서 종자산업 관련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등 채종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육종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비교적 명확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내 채소 개발품종의 80%이상이 해외에서 채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유전자원 해외 유출 방지 및 국내 채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국내 채종 수출경쟁력 확보 및 유전자원(원종) 유출 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내 종자산업 기반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채종농업인 소득원 창출에 기여함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 광범위 하나 직접적 수혜자는 일부로 한정됨

- 직접수혜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종자생산업체 및 민간육종가로 볼 수 있음
- 안정적인 국내채종으로 인해 해외 채종 대비 국내채종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사업 및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간접수혜자로는 개발된 종자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농업인 및 종자생산업체 관련 일자리 창출로 혜택 받는 농업인 등이므로 비교적 넓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국내 종자생산 관련 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 채종여건이 좋지 않다는 부분이 크므로 국내 채종기반 구축사업의 내역사업 선정은 바람직해 보임
- 민간육종가의 신품종육성 활성화를 통한 민간육종 저변확대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민간 육종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보조금 집행률은 계획대로 되었으며 연도별 성과지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성과 목표를 100%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목표치 달성률이 높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로 2017년부터 채종지원 사업 참여율, 민간육종가 육성 품종 실용화 비율을 설정함
- 2018년도 채종지원 사업 참여율은 97.5%, 민간육종가 육성 품종 실용화 비율은 98.8%를 각각 달성하였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은 국내채종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해외로의 원종유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농기자재기업은 대부분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기자재 수출활동 하기 어려움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종자업체들이 해외에서 채종을 할 것이므로 국내 채소종자 사업 기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사업이 폐지 될 경우 종자업체들이 해외에서 채종을 할 것이므로 종자생산 비용이 외국으로 반출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해외 채종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재정적 손실이 야기 될 수 있음

○ 민간 육종가 지원사업의 경우 민간 육종가는 사업규모가 비교적 영세하여 신품종 육성 및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어 보임

- 사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사업비의 1%미만임

○ 보조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음

- 국내의 종자생산 단가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원범위를 종자 수매 단가 50%로 설정한 것은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됨
- 민간 육종가 지원 사업 내용 중 해외연수 지원의 경우 일반연수에서 기획연수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연수의 실효성을 개선하였다고 보임

○ 보조사업 내용상 부적절한 사업비는 없어 보임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립종자원 내부규정으로 사업자 선정절차, 신청방법, 교부 조건 등 사업자선정 및 교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국립종자원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및 민간육종가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 공고를 통하여 신청방법, 선정기준, 교부 절차 등 제시함

○ 지원사업 보조금 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음

- 사업관련 회의·행사 참석, 사업발전 기여, 자료조사 협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함

- 지원금 지급은 종자업체의 자부담 금액 지급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적절한 보조 사업자에게 재원 집행을 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립종자원 사업시행계획으로 집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은 사업계획공고 후 신청 시 사업 물량을 배정하고, 지원금의 지급은 업체의 자부담 금액의 지급이 확인되면 교부하고 추후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절차준수 여부를 확인함

- 민간육종가 지원사업은 사업 결과에 따른 사후 지원 형식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함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계획에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5배의 제재부과금과 모든 농림축산식품 보조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제재사항으로 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립종자원 사업시행계획으로 사후관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정산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 민간육종가 지원사업의 경우 실용화 실적 파악하고 있으며 지원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1회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및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신청업체 대표의 직계비속(배우자, 자녀 등), 임직원과의 채종 계약 불가 등 대책을 마련함
-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향후 사업 제외 또는 제한 등의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의 집행실태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음

-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며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다만 일부내역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미흡해 보이므로 효과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성과지표는 선정되어있으며 비교적 목표달성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 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연도별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에 대한 근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채종지원사업 참여율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함
-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채종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 민간육종가 지원사업의 내용 중 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부분은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사 업 명 | 피해보전직불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7.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0.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감축(200억) 및 사업방식 변경<br>·동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br>·동 피해보전직불 보조사업(2026년 종료)과 폐업지원사업(2021년 종료)이 연계되어 예산총액 내에서 교차보조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각 사업의 그간 예산지원규모를 감안해 사업별 금액 조정은 필요함<br>·동 제도는 FTA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사전에 목표 설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대안적인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등에 구체적인 지원근거(의무규정)를 두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제7조(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제8조(피해보전직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보조사업 수혜자 범위는 동법 제6조 및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6조에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이 보조사업 수혜자로 구체적으로 규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목적으로, 별도의 내역사업은 없음

- 법률에 정해진 지급요건, 지급액 산출방법, 지급대상자, 지급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2004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지급요건 완화 및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급요건 완화: 가격하락 80% (2004년) → 90% (2012년 이후)

- 보전비율 상향: 차액의 80% (2004년) → 95% (2015년 이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2004년 한-칠레 FTA 협정이후 동시다발적 FTA 협정 체결로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FTA 이행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한-미 FTA(2011-2017), 한-EU FTA(2011-2021), 한-중 FTA(2015-2015)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FTA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되는 예비비 성격임

- 전년도 수입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농업인의 신청을 거쳐 지원하는 제도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의 어려움은 이해됨

- 보조사업의 합리적인 예산구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지원총액 구조가 (품목 지원 + 행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7년(33억원)은 14.5 : 18.5, 2018년(50.9억원)은 32.4 : 18.5로 품목지원 대비 행정비 비중(2017년 56%, 36.3%)이 과다하게 차지함

○ 국고보조 지원율은 100%로 유사 직접지불제도와 동일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쌀고정·변동직불제, 밭 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기준보조율과 동일

(농민신문, 2018.8.24)

**농업직불제 예산 '도마 위에'**
**과거 집행률 등 고려 않고 관행적 예산편성이 문제**
**쌀 직불금 편중현상도 심각**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농업 직불제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FTA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 예산 불용률 98.4%=농해수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2017년 농업직불제 9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조8538억원이다. 이 가운데 2조6497억원(92.8%)이 집행되고 나머지 2041억원(7.2%)이 불용됐다. 이같은 집행률은 농식품부 전체 예산 집행률 89.4%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씀씀이를 들여다보면 적잖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직불제 불용예산은 대부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폐업지원'에서 발생했다. FTA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을 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거나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32억원이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33억원(1.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99억원(98.4%)은 국고로 귀속된 것.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최근 5년 동안 50%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었지만, 정부는 2014년 이후 매년 이 사업예산에 1005억원씩을 편성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2015년까지 수요가 많아 예산이 부족했지만, 2016년부터 집행률이 떨어지기 시작해 2017년에는 79.1%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거의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재봉 국회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경관보전직불제는 국고보조율 인하라는 제도변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폐업지원은 과거 집행실적, 지출변화 예상치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불용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직불금의 80% 이상이 쌀에 쏠려=직불금의 쌀 편중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이 최근 13년 치(2005~2017년) 직불금 집행액을 조사한 결과 쌀 직불금(14조5566억원)이 전체(17조6270억원)의 82.6%를 차지했다. 게다가 상당수 벼 재배농가는 쌀 직불금 외에 친환경농업직불금도 받고 있으며, 경영이양직불금도 대부분 논과 관련돼 있다.

쌀 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의 목적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를 유도할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된 제도다. 65~74세의 고령농이 농지를 50세 미만 청년농에게 넘기면, 정부는 고령농이 75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만원(1ha 기준)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직불금 수령기간이 끝난 후 영농에 복귀하는 비율이 매년 10%를 웃돌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를 도모하는 반면 쌀 직불제는 농가의 은퇴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이나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지급요건, 지급액 산출방법, 지급대상자, 지급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피해보전직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각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이상 현장지도 및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당지급된 피해보전직불금의 환수 조치(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행점검단계에서 환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시행지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행점검단계에서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시행지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행점검단계에서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4단계)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감축(200억) 및 사업방식 변경

- 동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동 피해보전직불 보조사업(2026년 종료)과 폐업지원사업(2021년 종료)이 연계되어 예산총액 내에서 교차보조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각 사업의 그간 예산지원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별 금액 조정은 필요함

  * 예산감축율은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사업의 평균 예산집행률을 종합 검토해 산정(피해보전직불은 2014-2018년 간 최소 32억원에서 최대 471억원이 집행되어 피해보전직불 사업 단독으로 고려시 50%까지도 감축 가능하나, 폐업지원사업에 교차보조 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축율을 20%로 절충 제안→ 부처 수용)

## 3-2 정책 제언

○ 피해보전직불 제도는 FTA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사전에 목표 설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대안적인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보조사업평가 조치결과 관련, 보조금 법상의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농림부)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농식품부 |
|---|---|
| 사 업 명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9.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2.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보조사업자(한식진흥원)의 사업재원 다각화를 통해 예산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br>·한식문화관 운영 등 일부 내역사업은 자체 수익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식진흥원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 있음<br>·양적 성과 이외에 한식진흥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및 17조의2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식품산업진흥법 17조 및 17조의2 >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연구소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내기반정비, 음식관광활성화, 전문인력양성, 한식해외확산 등 동 보조사업의 각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상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필요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있다고 판단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있어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국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도·소매업 등 농식품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타 산업 부문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국가적 차원의 진흥과 지원은 타당성을 가짐

○ 현 정부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 중 단위과제인 '식품외식산업육성' 의 세부이행계획에 "한식문화 확산"이 포함되어 있고, 동 보조사업은 이와 밀접한 연계성이 있음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한식관련 민간협력 네크워크 대상기관,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상업체, 한식전문 교육기관, 국내 청년 한식당 경영주, 해외 한식당, 해외 한식강좌 대학교 등 2,825여개소에 이르며, 간접적 수혜자는 국내외 한식 관련 산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한식진흥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기반정립, 한식전문인력양성, 음식관광활성화, 한식해외확산 등 합리적으로 구성된 내역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각 내역사업들의 내용과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호 중복성은 낮고 유기적으로 선순환 하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은 99.6%로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해외진출 한식당 점포수와 한식진흥사업 정책수혜자 수 등 사업에서 설정하고 있는 성과지표 측면에서는 목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다만, 해외진출 한식당 점포수는 한식의 해외확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이지만 양적 측면 이외 질적 측면의 성과(예를 들어, 매출액 성장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 있음

- 한식진흥사업 정책수혜자의 수는 수혜의 범위는 측정할 수 있지만, 해당 정책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 정도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부적합함

- 국내기반정립, 한식전문인력양성, 음식관관활성화 등의 내역사업으로 인한 성과도 함께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과 함께, 한식진흥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사업의 목적 달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식당 및 관련인력의 해외진출은 현지정착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정보 부족에 따른 리스크가 높은 특성을 가지므로 한식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을 민간 자체적인 노력에만 의

존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식 국내기반 정립 및 한식 해외진출 및 정착 등을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사업초기 사업시행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기능의 중복 및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는 국회 지적('13년)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이관 등 사업개편을 이미 완료한 바 있어, 현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낮음

○ 한식문화 확산은 국정과제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식진흥을 통한 관련 산업 시장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선제적인 사업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19년 예산규모가 18.6% 기 감축된 점을 감안하여 '20년 이후 동일한 예산규모로 추진하되, 지속적인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보조사업자의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 재원 다각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보조사업자(한식진흥원)의 사업재원 다각화를 통해 예산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 한식문화관 운영 등 일부 내역사업은 자체 수익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식진흥원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 있음

○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은 없으나 내역사업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적정한 근거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한식진흥원이 한식세계화 추진기관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2(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등)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의거 한식진흥원을 한식세계화 추진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2-259호) 및 변경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제2017-452호)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조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 연초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기관(한식진흥원)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승인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에 따라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부정수급자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수립→사업 수행기관의 기본계획 범위 내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승인 요청→중앙부처에서 세부사업 추진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추진→사업비 정산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통해 보조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실집행 현황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하여 보조사업 집행 단계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기준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점검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준하여 적정하게 정산, 후속조치 등을 취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시행자(한식진흥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중앙부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낮음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매 분기별로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음

○ 해외진출 한식당 등 해외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및 17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각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상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필요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내역사업별 보조금 지금의 법적 근거는 있다고 판단됨

○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한다는 목적은 국가적 관점에서 타당하며, 현 정부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와 밀접한 연계성이 있음

○ 한식진흥을 통한 관련 산업 시장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 선제적인 사업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19년 예산규모가 18.6% 기 감축된 점을 감안하여 '20년 이후 동일한 예산규모로 추진하되, 지속적인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보조사업자의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 재원 다각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 해외진출 한식당 등 해외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3-2 정책 제언

○ 양적 성과 이외에 한식진흥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 산업통상자원부

LPG소형저장탱크보급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생태산업개발을통한미세먼지및온실가스감축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석유유통구조개선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수출경쟁력강화지원
수출지원기반활용(산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안전제도기반조성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에너지진단보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전기차산업기반구축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전력효율향상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지역투자촉진
지역투자촉진(세종)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5.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9.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동사업은 2023년까지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상추진함.<br>·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LPG 소형저장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국가의 보조금 지원 타당성이 인정됨.<br>·동 사업에서는 사업기간과 사업물량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2023년도까지 전국 301개 마을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지원은 2022년도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임.<br>·연료 및 난방을 위한 LPG 가스 사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노후시설에 대한 사고 우려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 관점을 적용하여, 계획 대비 차질없이 적극적인 투자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한 사업영역으로 판단됨. | | | | | |

# 평가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구축 및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임. 사업대상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며 사회복지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포함)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점에서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보급률은 82%이지만 지방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낮은 등 에너지복지에 있어 지역별 불균형이 있음.

※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201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92.5%, 부산 89.9%, 대구 95.7%, 광주 99.3%, 강원 45.4%, 전남 47.2%, 경북 62.1%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의 효과가 인정됨.

○ 시설설치 이후 해당 시설관련하여 부실시공이나 가스안전 관련 쟁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방과 에너지 복지가 취약한 복지시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국가의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2017년도에 종료되었으며 지자체 자본보조인 농어촌 마을 시설지원사업은 2023년에 종료예정이고 민간자본보조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최근 연도별 총사업비의 재정 규모가 상당히 불규칙적임. 사업수요 조사와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연도별 운영실적이 상당히 불규칙적임. 2016년 보조사업 평가에서 집행부진에 따라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규모를 2016년 31개에서 2017년 20개로 축소했음. 그런데 지역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55개로 대폭 확대하였음.

○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50%로서 규정대로 집행되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율은 80%를 적용하고 있음. 보조율 규정에서 민간경상보조율은 100%이며 민간자본보조율은 80%임. 경상보조율과 자본보조율이 차이가 있어 실제 금액 기준의 실효보조율은 수치상으로 81%로 산정되었음.

○ 농어촌마을단위 사업의 기준사업비가 3억원인데, 2017년도 정산결과 20개 마을 가운데 19개 마을에서 사업비가 초과되었음. 사업비 기준 확대 필요성이 있지만 2019년 예산계획에서는 기존의 사업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에너지 정책에서에서 재난안전 효과와 환경관리 효과가 인정되지만 해당사업에서 연관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초기에는 '한국LPG산업협회'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했으나 2018년도부터 사업수행자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 마을단위 지원사업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301개 마을을 대상으로 1단계('14년~'18년) 117개마을, 2단계('19년~'23년) 184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임.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은 '13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17년에 전국단위 사업수요 조사결과 990개소가 조사됨에 따라, '18년부터 '22년까지 연간 약 200개소씩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종료할 예정임. 수요조사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집행점검, 부정수급 점검 등의 보조금 관리 절차를 수행함.

○ 2015년도에는 33백만원의 불용액(낙찰차액)이 발생했지만 이후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정산 및 회계감사, 보조금 반환, 부정수급 점검 등의 사후관리 절차를 수행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 시행 이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보조금의 지출은 '이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는 등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복지시설과 농어촌 마을에 대한 에너지 관련 시설투자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중장기 전략은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으며 예산 재원 확보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조금 지원 규모가 설정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따라, 잔여적 복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지원에서 지역별 혹은 시설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사업종료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연차별로 차질없는 사업수행이 요망됨.

## 3-2 정책 제언

○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과 마을 수가 매년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있음. 2019년 예산은 정부의 당초안인 75.9억원 보다 대폭 증액된 113억원이었음. 지원대상 마을이 20개에서 55개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당초 성과목표에서는 30개로 설정되어 있었음.

○ 이는 중기재정계획에서의 투자계획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임. 부처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물량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합리적 재정계획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전국적 차원에서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지원·관리 정책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0.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1.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7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감축(15억, 2019년예산 기준 33%)<br>·이 사업은 2018년까지 5억 수준의 공장성립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었으나, 2019년 노후시스템교체, 빅데이터사업이 편성되면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br>·2019년 단년도 편성이 증가하였고, 시스템교체, 빅데이터구축사업 완료 후 해당 예산이 감축되어야 함. 하지만, 시스템 교체 후 공장설립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운영효율화가 필요하고,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후 공장설립 단계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 계획이 인정되어 33% 수준 감축으로 판단함.<br>·시스템고도화 및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예산 규모 결정 근거가 다소 부족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향후 성과검증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산업집적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사업의 개별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자료 수집, 구축 등의 업무를 통해 빅데이터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유지보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빅데이터 구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운영 등) ① 제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 전산자료의 구축·제공·운영 3. 컴퓨터·통신설비 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정보의 수집·관리 5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한 민원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 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⑥ 위탁사업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6.>[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1. 10. 26.]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사업은 국민(기업)의 공장설립 민원신청과 정보검색 등을 위한「온라인시스템(www.femis.or.kr)」과 전국 지자체·관리기관의 민원업무처리(공장승인·등록 등)·공장현황관리를 지원하기 위한「업무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구축·운영되고 있음. 정부 통합행정시스템의 일부로 국고보조가 일정 부문 타당함.

- 통합행정시스템을 가짐으로써 얻는 정책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 실무행정 효율화 효과가 제시되어 있어 타당성이 약화됨.

○ 사업수혜자의 주된 범위는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 및 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실무자에 한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 내용과 목표가 어느 정도 구체적임.

- 공장관련 제반업무를 처리, 관리하는 정부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 온라인처리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체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목표가 있으나 실제 공장설립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었는지 등 사업효과가 불명확함.

○ 신규사업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공장설립 입지조건 분석 등의 자료가 어느 정도 민원인에 효율적으로 제공될 것인지 사업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업의 효과는 미미함.

-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에 대해 고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대장관리 수준이기 때문에 성과 역시 제증명 처리 횟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판단됨.

- 전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민, 공장갯수 등을 고려할 때 정보화 사업의 역할이 미미함.

표. 시스템 회원 수 및 공장등록건수(누적)

| 연 도 | '15 | `16 | `17 | `18 |
|---|---|---|---|---|
| 온라인 회원수 | 73,165명 | 80,757 | 89,302 | 96,834 |
| 공장등록건수 | 178,121개사 | 182,155 | 187,106 | 189,207 |

표. 시스템 처리 현황

| 연도 | 사업량 |
|---|---|
| '15년 | 공장설립·등록 민원(86,148건), 제증명서 및 기타 (164,867건) |
| '16년 | 공장설립·등록 민원(92,762건), 제증명서 및 기타 (173,804건) |
| '17년 | 공장설립·등록 민원(75,647건), 제증명서 및 기타(178,341건) |
| '18년 | 공장설립·등록 민원(76,819건), 제증명서 및 기타 (167,609건) |

○ 온라인처리율 뿐 아니라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인 공장설립과정에서의 행정효율성을 달성했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향후 제시될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현재까지 사업 성과로 미루어보아 기존 5억 사업에 대한 재정적 손실은 없으나 2019년 기준 시스템개선 16억, 빅데이터구축 24억 등 40억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큼.

○ 시스템 부재에 따른 방문 처리시 연간 4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시스템 부재 시(08년도 이전)에 비해 연간 400억원의 재정적 편익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려움.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유지보수 사업은 행정비용(9천만 원)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하게 구성되었음.

○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 분석서비스 과제 확대, 데이터 개방 서비스 확대 등 모형 개발비, 시스템 개발비 등과는 별도의 서비스확대 비용(약 5억 원)이 포함됨.

- 2019년 빅데이터 서비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실제 공장입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입지변동 적용, 유망업종 예측 등)는 2020년 확대될 예정임.

○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규모가 적정하지만, 올해 신규내역인 시스템 고도화 및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2020년 이후 사업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의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하고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6항>**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⑥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2. 삭제 <2015.6.30>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1996.7.19]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자부 자체 보조금 관리규정에 적정하게 집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자부 자체 보조금 관리규정에 적정하게 집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산자부 자체 보조금 관리규정에 부정수급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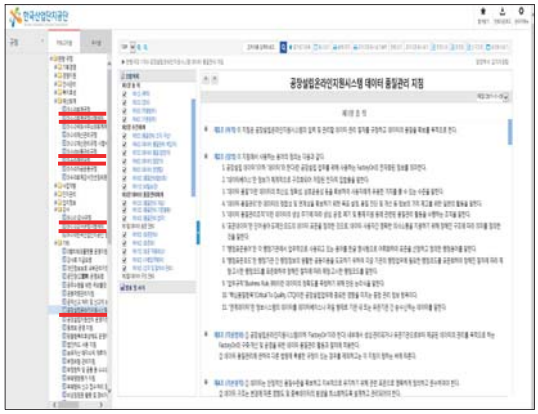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집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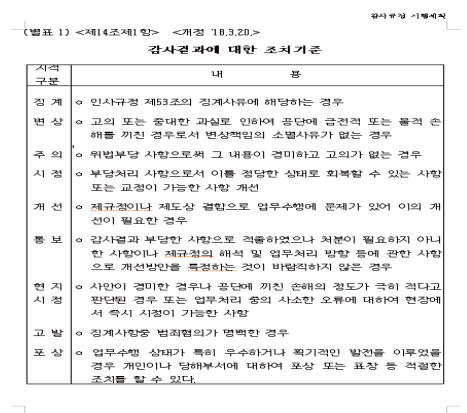

[별표 1] <제14조제1항> <개정 '18.3.20.>

감사권과에 대한 조치기준

| 지적구분 | 내 용 |
|---|---|
| 징 계 | ○ 인사규정 제5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변 상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 |
| 주 의 | ○ 위법부당 사항으로써 그 내용이 경미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
| 시 정 | ○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개선 |
| 개 선 | ○ 제규정이나 제도상 결함으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 통 보 | ○ 감사결과 부당한 사항으로 적출하였으나 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제규정의 해석 및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선방안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
| 현지시정 | ○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단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 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
| 고 발 | ○ 징계사항중 법죄혐의가 명백한 경우 |
| 포 상 | ○ 업무수행 상태가 특히 우수하거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경우 개인이나 당해부서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반환조치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이 사업은 2018년까지 5억 수준의 공장성립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었으나, 2019년 노후시스템교체, 빅데이터사업이 편성되면서 증가하였음(45억). 2019년 단년에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2019년 기준 15억 감축으로 판정함.

- 신규 내역인 공장입지 빅데이터 사업의 성과는 중소기업인들에 충분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임.
- 중소기업인들의 공장설립 단계에서 충분한 컨설팅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사후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일부 감축으로 판정함.

○ 시스템고도화 및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예산 규모 결정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사업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향후 성과검증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공장설립 빅데이터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인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기존 사업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은 중소기업인들의 공장설립단계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함.

○ 팩토리온시스템 및 공장설립 빅데이터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는 직접 수혜자는 공장설립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이거나 대행업무 전문인력일 수 있음. 수혜범위에 따라 시스템 운영방향이 조정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명확한 업무계획 및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1.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0.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이 대체로 인정됨<br>·또한 본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의 적정성도 대체로 인정됨<br>·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br>– 각 내역사업별로 도전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현재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내역사업별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추진 근거가 제시되고 있음

- PMS 보급·확산: 산업발전법 제27조 제1항 제7호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생산성 경영체제 도입)
- 국가생산성통계: 산업발전법 제32조제5항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 2·3차 협력사 생산성 혁신지원 동반성장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등

○ 그러나 생산성본부가 APO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외무부의 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 시행의 근거가 강하지 않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가생산성 혁신기반구축을 통해 기업·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대체로 적절함

- 예를 들어 PMS 보급·확산은 기업의 경영체제 수준을 10단계로 나누어 인증하고 등급별 맞춤형으로 생산성향상 과제 도출 및 해결을 통해 인증등급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생산성통계는 글로벌 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생산성 측정과 분석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위한 경제주체별 대책 마련의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국가생산성혁신기반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광범위한 수혜자가 존재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처는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음.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수혜자에 대한 파악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본 작업이 미비할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에 빠질 우려가 있음.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파

악 및 분류 후 그들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 구성이 사업의 목표달성에 부합하여 PMS 보급확산, 국가생산성통계, APO 국제협력, 2·3차 협력사 생산성 혁신지원 동반성장 구축 등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부처가 각 내역사업의 목표와 역할에 따른 차별적인 추진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처는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만 각 내역사업의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 계획의 도전성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현행 보조금 보다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통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생산성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의 시급성은 일정 수준 인정될 수 있음

- 한편 부처는 본 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만약 본 사업이 폐지될 경우 재정적 손실은 크게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일정 수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대·중소기업간 생산성격차 확대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향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이 중단될 수 있음

- 국가생산성통계는 신뢰성 있는 통계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한데 민간이 추진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곤란할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가생산성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보조금 예산은 기관운영비 없이 직접 사업수행 경비로만 지출되고 있음

○ 본 사업은 각 사업비 또한 사업의 핵심활동을 대응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처는 본 사업의 결과물이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기업경영 개선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사회적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대체로 마련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은 집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대체로 마련되어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를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결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부처와 사업수행자(한국생산성본부)가 이중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수행자가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6장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에 따른 대응 체계, 재정집행관리시스템(클린시스템) 등록, 세금계산서 검증시스템 활용 등 대체로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이 대체로 인정됨

○ 또한 본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의 적정성도 대체로 인정됨

### 3-2 정책 제언

○ 다만, 본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사업방식변경)을 모색할 필요

- 각 내역사업별로 도전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현재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내역사업별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국제 적합성평가 기반 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2.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0.2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4.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사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제적합성평가기반 구축이라는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br>·현재 본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사업명은 '국제적합성평가기반 구축'으로서 본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의 상위 세부사업명인데, 이 세부사업에는 4개의 내역사업이 있고 평가대상의 내용인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 구축사업은 이 내역사업 중의 하나이며, 이 내역사업 예산은 2019년 기준 534백만원이고 본 사업의 내용은 이 중 418백만원을 차지, 내역사업 중에서도 일부의 내용이 본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임<br>·성과관리 측면에서는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전년대비 개선여부 등을 비교분석 하는 등 계획적 운영이 필요함<br>·사업명과 사업내용의 일치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사업명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예측하기 마련이고 사업의 관리를 위해서도 별도 사업화 해야 하위의 내내역사업 각각의 목적이나 예산편성 적정여부 및 성과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br>○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본 사업의 경우 그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별도 관리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어 옴에 따라 시급히 세부사업화해야 할 것임<br>·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경우는 자료를 구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주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와 제24조에서 정부가 적합성평가체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는 정부가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법 제24조에서는 품질·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법 제23조에서는 적합성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이전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 보조금 지원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2000년대 중반 이후 난립한 ISO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 인증 브로커, 과열경쟁, 외국계 인증기관 관리 소홀 등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되었음

- 즉, 보조사업의 시행을 통해 시험, 검사, 제품인증 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고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목적이 부실인증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ISO 인증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고 ISO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여 ISO 인증유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수혜범위가 넓다고 판단됨

- 즉, 1차적으로는 ISO 인증기업이겠으나, 2, 3차 수혜자는 ISO 인증정보망을 이용하는 사용자 모두가 될 것으로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사업명은 국제적합성평가기반 구축이 아니라 이 국제적합성평가기반 구축사업의 하위 4개 내역사업 하나의 사업이며 이 하나의 내역사업 중에서도 일부의 사업만이 해당함

-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업구성의 개선을 전제로 하면서 본 사업내용의 범위만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본 사업은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과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진내용들에 대한 관리는 양호하나 성과목표가 무엇이고 이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함

○ 부실인증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실인증기업에 대한 신고접수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을 위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제품인증 등에 대한 인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시험·인증, 측정검사 결과가 국제기준이나 규정에 적합함을 신뢰하기 위해 공정한 인증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증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인증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부실인증을 관리·감독하는 바, 인증 유지기업 약 5만4천여 건, 환경경영체제 약 2만5천여 건에 대한 자료 접수 및 기타 조사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인정업무는 국내 유일의 인정기구(KOLAS, KAS, KAB)의 고유업무로서 타 부처나, 민간단체 등과의 유사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과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등 2개의 내역으로 나뉘는데 2019년 기준 신고센터 운영에 118백만원, 인정센터 운영지원에 300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음

○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실인증예방활동과 서버 유지보수, 인증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3개 분야 6명으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인증업체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운영센터나 인정체계 구축활동을 위해 소액사업으로서 재정규모나 사업비 구성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상 사회적 가치의 9번인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국제표준화 추세에 따라 품질 및 환경경영인증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시장의 형성과 국제적 통용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본 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됨

##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본 지침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보조사업자 공모), 제10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제10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제11조(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제12조(교부조건), 제13조(교부방법)을 따름

○ 2017년과 2018년 공모결과 1, 2차 모두 (재)한국인정지원센터가 단독 지원하였고 5명의 평가위원이 10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본 센터가 선정되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규정을 준용함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보조금사용방법,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정산보고서의 검증, 회계감사, 보조사업 집행점검 등의 규정이 있음

○ 월별, 분기별 실적이나 활동내역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대한 기록들은 다만 내역들일 뿐이고 사업주체인 국가기술표준원이 검토한 결과나 검토결과 개선조치 등은 예산조정 승인요청 반려건 외에는 파악할 수 없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30조에 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미제재에 관한 제재부과금 부과 등 결정절차를 제31조에 과오납금의 환급, 제32조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절차, 제33조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34조에 부정수급 점검, 제34조의2에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의 기준이 있음

- 동 지침 제35조에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6조에 재산처분의 제한, 제37조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8조에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사후관리와 관련한 이상의 지침대로 실제로 절차를 준수하여 과오납금의 환급~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재)한국인정지원센터가 산통부에 대해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부정수급은 한국인정지원센터 등이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중간 추진주체나 수혜자 중에서 발생할 가능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즉, 보조사업자가 한국인정지원센터가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업들 중 부정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피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제적합성평가기반 구축이라는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

- 본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사업명은 '국제적합성평가기반 구축'으로서 본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의 상위 세부사업명인데, 이 세부사업에는 4개의 내역사업이 있고 평가대상의 내용인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 구축사업은 이 4개의 내역사업 중의 하나이며, 이 내역사업 예산은 2019년 기준 534백만원이고 본 사업의 내용은 이 중 418백만원을 차지, 내역사업 중에서 일부의 내용이 본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임

- 따라서 향후 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으로 단일사업화 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ISO 경영체제 인증을 위조하여 발급한 사례를 적발 및 기소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ISO 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국가 신인도 회복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타당하고 사업의 관리 또한 비교적 잘되어 오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면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전년대비 개선여부 등을 비교분석 하는 등의 계획적 운영면에서는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3-2 정책 제언

○ 사업명과 사업내용의 일치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사업명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예측하기 마련이고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경우는 관련자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임

- 또한 사업의 관리를 위해서도 별도 사업화 해야 하위의 내내역사업 각각의 목적이나 예산편성 적정여부 및 성과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본 사업의 경우 그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별도 관리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어 옴에 따라 시급히 세부사업화해야 할 것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7.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7.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국가적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되고, 그간 비교적 적정하게 예산 계획 및 사업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br>·원전 반대여론 확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증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 및 환경감시활동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의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함<br>·사업목적인 지역주민의 신뢰 및 수용성 제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발전소 및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전기사업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에 동 보조사업의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음

**< 전기사업법 48조 및 49조 >**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①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원, ②석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시범운영 지원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 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접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과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한 감시에 참여하여 조사·확인토록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는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국가사무로 볼 수 있고 국가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간접적인 수혜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함

- 환경·방사선안전·대기오염 감시 등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원 개발 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이룰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전력수급이 안정화되어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동 보조사업의 수혜범위는 광범위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변지역 환경 등에 대한 감시에 참여하여 조사·확인토록 함으로써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 촉진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하고 있고, 원전주변지역 5개 민간환경감시기구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1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비 지원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함

○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원, 석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시범운영 지원 등 두 개의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혜자 만족도, 지역주민과의 소통활동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단순 목표건수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할 필요 있음

- 지역주민과의 소통활동(단위: 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규모를 기준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참여인원 목표치를 설정하여, 지역주민 소통노력의 수준 및 실적을 준거치와 비교하여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있음

○ 보조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주민의 신뢰와 수용성 제고이므로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필요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신뢰구축이 국가 전원 개발 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법적 운영근거 또는 재원부담능력이 부족한 민간단체 및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관련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것으로 판단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외의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원전 반대여론 확산 등 원자력 안전 및 환경감시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시활동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의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성격상 인건비 및 감시인력 활동비 등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의 실효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내역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고, 예산 실집행률이 최근 3년간 평균 97%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매년 발생하는 이월액('17년, 예산 대비 약 22%)은 인력 미채용이 지속되어온 것이 그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대면심사 결과 최근 신규 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어 해당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근거 법령에 따라 보조율 100%로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성격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민간환경감시업무에 대하여 다른 비선호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 원인 유발주체인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 발전소 환경 영향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을 대신해 감시·견제하는 것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이고, 이는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발전소 주변의 환경과 안전성을 측정하는 민간감시기구를 운영함으로써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감시활동을 공신력 있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석탄발전소 주변의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정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공모에 의한 기관 선정보다는 지속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지자체내 민간환경감시기구에게 사업을 수행토록 지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함

○ 사업추진 여건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원전주변 5개 지자체 및 화력발전소 주변 1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적정하게 운영 중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원전 소재 지자체별로 조례(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비 교부절차를 적정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업비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의 적법성과 예산집행 내역, 진도 등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집행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수급시 등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조치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매년 사업종료 후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에 사용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위탁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 전문회계법인에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비 지출내역(통장사본 및 증빙서 첨부)을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함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위법 및 지침 위배시 협약 해지, 사업비 회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지원사업),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제27조(지원금의 결정),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교부)에서 결산까지의 적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체계를 통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 낮음

○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e나라도움시스템과 연동, 실시간 집행현황 및 부정징후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전기사업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내역 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사업의 목표는 국가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직접적인 수혜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간접적인 수혜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함

○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원, 석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시범운영 지원 등 각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혜자 만족도, 지역주민과의 소통활동 등 성과지표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목적인 지역주민의 신뢰와 수용성 제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구체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추적,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원전 반대여론 확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증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 및 환경감시활동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의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함

○ 각 내역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고, 예산 실집행률이 최근 3년간 평균 97%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단순 목표건수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 및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필요 있고, 보조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주민의 신뢰와 수용성 제고이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필요 있음

○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을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환경 영향의 발생주체가 발전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발전소 및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원전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동 보조사업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을 적정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업무수행 공정성,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이 중요한 바,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산업부 지침) 내 평가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보다 세부적으로 강화할 필요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9.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9.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있으며 직간접적 수혜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정한 예산계획 하에 대체로 효과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br>·도서·벽지 지역 주민에게 필수재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해당 지역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동 보조사업의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함<br>·보조사업자의 운영결손비 보전액 비용추계 및 결산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여 유지할 필요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전기사업법」 및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에 동 보조사업의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서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음

< 전기사업법 48조 및 49조 >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1조(목적), 3조(공사비의 재원 등),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제20조의 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등에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근거, 수혜대상,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동 보조사업은 ①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②농어촌 전기공급지원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 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함

-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20조 2항 >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 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20조 2항 >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전기 미공급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신규 전기공급과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결손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도모하고자 하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됨

-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수 자원이므로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그 수는 적지만 지역적 분포로 보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간접적 수혜 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함

- 도서·벽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여건 및 산업 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지역간 경제수준 격차 해소, 해양 수산자원 활용 극대화, 국내 관광자원의 개발, 농수산물 생산증대 등 국가 경제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 도서는 국토 말단에 위치하여 영해를 결정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해당 지역의 필수적 거주 여건 조성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와 이를 통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 보조사업은 ①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②농어촌 전기공급지원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는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인 구성이라고 판단됨

-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내역사업은 전기사업자운영도서 결손지원, 지자체운영도서 결손지원, 주민자치 및 지자체도서 기술지원 등 그 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내역사업은 농어촌 신규전기공사비, 재정융자금 보전 등 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와 이를 통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의 달성정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호당 정전시간, 수혜자 만족도, 발전설비 열효율 등 합리적으로 구성된 세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계획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

* 호당 정전시간(분) : 142.0분 ('07년) → 16.3분 ('17년)
* 수혜자 만족도(점) : 60.2점 ('03년) → 90.1점 ('17년)
* 발전설비열효율(%) : 35.11% ('04년) → 36.44% ('17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은 과거 한국전력이 공익적 기능의 일환으로 제공한 바 있지만,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시장원리 도입 이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시장만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짐

- 농어촌 신규전기공사비 지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결손 지원 등 전기사업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전력공급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해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자가발전시설운영결손비 및 신규전기공사비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음

○ 도서·벽지 지역 주민에게 필수재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해당 지역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동 보조사업의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하며, 사업 폐지시 야기되는 수혜지역 주민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음

- 매년 국제유가 추이 및 전기공급비용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산정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음

- 매년 지자체에서 신청한 신규전기공급개소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법정요건 등을 확인, 선정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

○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용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조율 100%로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조율 75%로 지원하고 있어, 이는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비는 전전년도 지원실적(결손지원금액 및 신규전기공급 공사) 및 지자체 도서 인수계획, 신규전기공급공사 등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예측을 통해 중기(5개년) 소요계획을 적정히 추계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도서·벽지 지역 주민에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해당 지역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일정 부분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의거 전기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매년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하고 있으며,

- 보조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전력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적정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집행·관리업무 매뉴얼”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전담기관),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전담기관→산업부), 보조금 교부결정(산업부→전담기관),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전담기관→보조사업자) 등의 교부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실태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도점검, 성과관리 및 재정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및 결과 심의 연 1회, 현장실태 조사 연 1회 또는 필요시, 서면점검 분기 1회(현장실태조사 1회 포함) 등을 통해 재정집행, 사업진행현황, 성과지표 달성현황, 사업 추진 문제점 도출 및 제도 개선을 시행함

- e나라도움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집행현황 및 부정징후를 점검함

- 정부 및 국회 등 예산·결산 심의, 국가재정법에 의한 주기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매년 전문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실시로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있음

○ 관리·감독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 적발시 통제수단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2조(위반사항의 제재) 및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제재)에 의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음

- 그간 관리·감독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이 없어 현재까지 제재조치 활용이력은 없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매년 사업종료 후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에 사용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위탁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 전문회계법인에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비 지출내역(통장사본 및 증빙서 첨부)을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함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조금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위법 및 지침 위배시 협약 해지, 사업비 회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감독 체계를 통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 낮음

○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집행을 관리 · 감독하고, e나라도움시스템과 연동, 실시간 집행현황 및 부정징후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보조사업자의 운영결손비 보전액 비용추계 및 결산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고, 사업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수혜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현장실사 등 관리강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각 내역 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함

○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도모하고자 하는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며, 직간접적 수혜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함

○ 내역사업 구성은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이며, 대체로 적정하게 구성된 성과지표 하에서 계획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

○ 대상 지역에서의 수익성 부족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전력공급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 적정한 보조율 하에서 각 내역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중기(5개년) 재원소요계획을 적정히 추계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수혜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현장실사 등 관리강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자의 운영결손비 보전액 비용추계 및 결산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대중소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2.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2.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3.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사업방식 변경**<br>· 동 사업의 목적은 명확하고 국정과제 운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br>· 참여 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성과 공유 및 확산 노력이 미흡함<br>·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등 참여 기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주무부처는 동 보조사업의 근거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0조 4항, 제20조의5,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 사업에 반드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0조, 제20조의5,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4 >**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2006.3.3., 개정:2010.1.27)

○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제정:2006.3.3., 개정:2017.11.28.)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7. 그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설:2017. 11. 28)

○ (시행령)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제정:2018. 5. 28., 개정:2018. 9. 18)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컨소시엄 지원비와 공동기획 평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생법 제20조 제4항은 해당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케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주무부처는 모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체 354만여 개의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모두를 동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주장하지만,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협력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수혜자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음(표 참조)

**< 동 사업 추진 실적 및 전체 기업 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개)

| 구 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합계 | 전체 기업 수 |
|---|---|---|---|---|---|---|---|---|---|
| 국고보조금 | 1,698 | 1,742 | 944 | 896 | 851 | 595 | 595 | 7,321 | |
| 대·공·중견기업 수 | 10 | 12 | 18 | 16 | 20 | 22 | 30 | 128 | 5,156 |
| 참여 중소기업 수 | 125 | 143 | 121 | 108 | 159 | 163 | 232 | 1,051 | 3,542,350 |
| 수행기관 수 | 3 | 3 | 3 | 8 | 6 | 9 | 12 | 44 |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컨소시엄 지원비와 공동기획 평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컨소시업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으로 구성되며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사업 운영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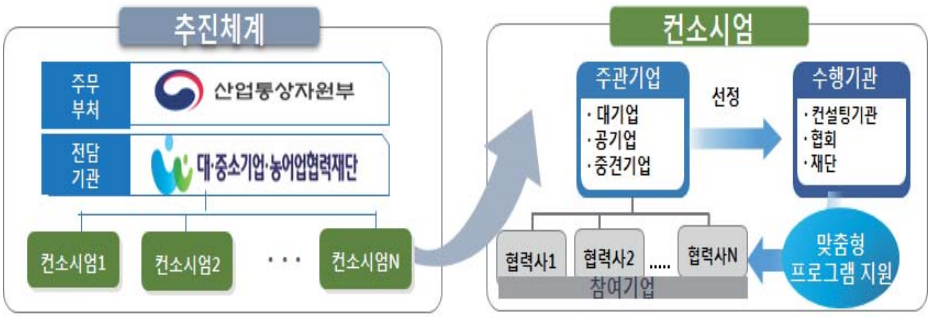


◈ **컨소시엄 : 주관기업+ 참여기업+수행기관으로 구성**

- 전담기관 : 협력재단으로 사업 운영 전담
- 주관기업 :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 재원 출연
- 수행기관 : 컨설팅 기관, 협회, 재단 등 중소기업을 지도하는 전문 기관
- 참여기업 : 주관기업의 1·2·3차 협력 중소기업

○ 동 보조사업의 성과로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효과,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수출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당초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 추진 성과>**

- **생산성 향상(%)** : ('12) 32 → ('13) 33 → ('14) 37 → ('15) 48 → ('16) 67 → ('17) 83
- **재무적 효과** : **총 1,533억원**('13~'17)의 비용 절감효과 발생
- **부가가치 생산성증가율** : 산업평균 2.5%('12~'16)보다 **11.7% 높은 14.2%**
- **매출액 증가율**('13~'16) : **평균 10.8%**(일반 중소제조업 평균 6.7%)
- **수출활성화** : '17년 수출액 증가율 **75.5%** 달성

○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최근 6년간 참여기업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원래 대기업 협력사 위주의 참여기업들의 생산성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동 보조사업이 생산성 증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대기업 협력사라는 유리한 경영 여건에서 생산성 증가를 포함한 수출액, 매출액 등이 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업의 성과로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임

**< 최근 6년간 참여기업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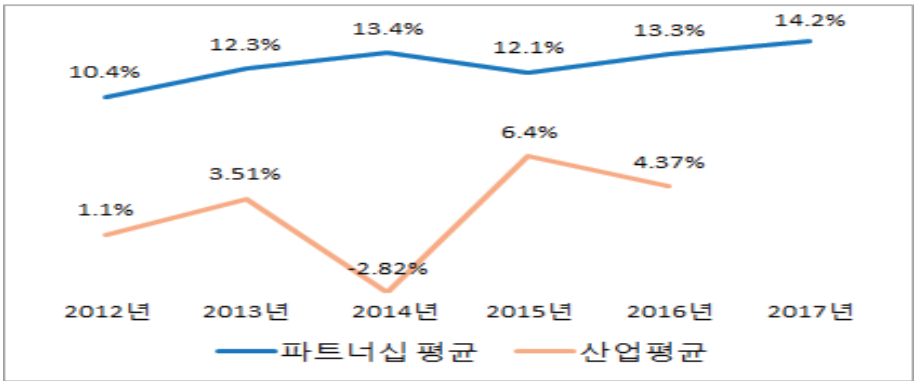


* 산업평균 지표 : 한국생산성본부 전산업 부가가치 분석 지표 참고

○ 추가제출 자료의 우수사례처럼 동 사업의 성과를 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이 동 사업의 홍보에도 많은 기여할 할 수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주무부처는 대·중견기업이 정부 보조가 있을 경우 협력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을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 보조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업 및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동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백만원, 개)

| 구 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합계 |
|---|---|---|---|---|---|---|---|---|
| 국고보조금 | 1,698 | 1,742 | 944 | 896 | 851 | 595 | 595 | 7,321 |
| 대·공·중견기업 수 | 10 | 12 | 18 | 16 | 20 | 22 | 30 | 128 |
| 참여 중소기업 수 | 125 | 143 | 121 | 108 | 159 | 163 | 232 | 1,051 |
| 수행기관 수 | 3 | 3 | 3 | 8 | 6 | 9 | 12 | 4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재정규모는 2019년도 595백만 원이며, 사업비에 해당하는 컨소시업 지원비는 대기업인 경우 30%, 중견기업인 경우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공동기획평가비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100% 지원하고 있음

- 사업비에 비해 행정비용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 | 2017년 예산 | 국고보조율 |
|---|---|---|
| 컨소시업 지원비 | 552백만 원 | 대기업 (30%), 중견기업 (50%) |
| 공동기획 평가비 | 43백만 원 | 대·중소기업협력재단(100%) |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동 사업의 경우 대중소 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있으며, 컨소시엄 지원비는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운영 규정 기준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선정되고 있으므로 적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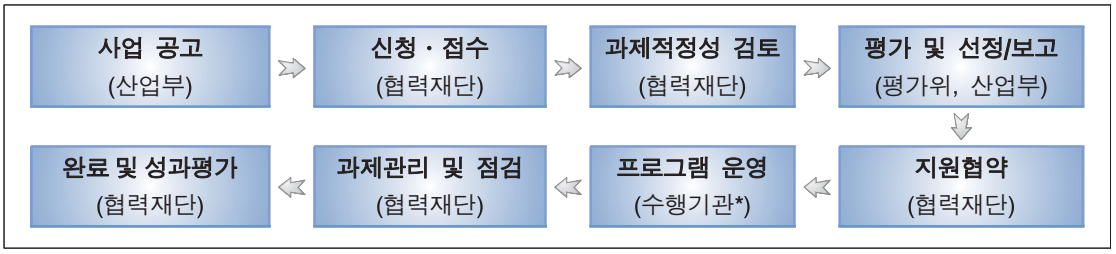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9조(중간점검), 제30조(수시점검), 제32조(최종점검), 제33조(컨소시엄 최종평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집행 현황, 단계에 따른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체계도 정비되어 있어, 집행관리가 적정함

< 추진체계 >

| | | |
|---|---|---|
| 총괄조직 | 산업통상자원부<br>(산업일자리혁신과) | · 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총괄 |
| 관리조직 | 대·중소기업·농어업<br>협력재단 | · 대·중소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 운영<br>· 사업비 조성 및 하위보조사업자에 교부<br>·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및 회계정산 실시 |
| 지원대상 | 全산업의<br>협력 중소기업 | · 수행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26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회계 정산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에 의거해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목적은 명확하고 국정과제 운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참여 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성과 공유 및 확산이 필요하므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등 참여 기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정량지표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우수사례를 잘 발굴하여 성과 공유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2.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5.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127개 해외무역관 운영에 대해 재점검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br>·불인정지출 발생, 실효성 없는 무역관 운영 등 국감 등에서 지적이 있었음. 실적 없는 무역관에 대해 경제성 논리에 의거한 폐쇄보다는 무역관 전반에 관한 운영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임.<br>·2446억 원 중 30%(657억)는 해외사업소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고, 해외수당 및 해외현지직원 비용 등 인건비에서도 38%(495억)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내 급여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관리 감독 노력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인건비 등 경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제13조 보조금 규정에 의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이 사업의 개별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에 대한 근거는 명확함.

- 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도 동법 10조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사업은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등 개별 기업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여건에서 국가가 공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타당함.

- 특히,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성장 등 국정과제와 이 사업이 연관이 깊다고 판단됨.

○ 사업수혜자의 주된 범위는 수출기업, 해외기업 등 사업과 연관된 기업인으로 한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조직망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 예비비,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사업인 내용인 공사 자체의 설립목적와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총 예산 2446억 원 중 약 50%가 인건비이고, 30%는 해외사업소 운영비로 사업비는 18%에 불과함.

- 사업비 내용은 특정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주 내용은 해외마케팅, 현지진출기반조성, 글로벌일자리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해외정보조사 등 해외무역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임.

- 즉, 이 보조사업은 국내 급여 중 국내직원분, 경상경비, 예비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외무역관의 운영과 직결된 사업임.

○ 보조사업 내용과 목표가 일부 구체적임.

- 신규시장개척이 사업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공사의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참가한 후 수출실적이 성과 있는 기업 수를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전체의 목표라기보다는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성과로 판단됨.

- KOTRA의 설립 이유인 전체 수출액, 수출기업 수 증가 등에 대한 성과는 인정되고, 특히 해외무역관은 현재 84개국 127개소에 분포되어 있어 무역외 외교적 성과도 인정됨.

- 새로운 시장수요, 신규시장 개척, 고객수요 증가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해외무역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목표를 재수립 할 필요가 있음.

* 해외무역관 운영 효율화 방안(19.3월말까지)

○ 보조사업자인 KOTRA의 경영 성과는 높지만, 사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해당 국가 수출액과 해외무역관 활용 수출액 성장률 비교 등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 향후 마련되어야 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개별 기업의 연합체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만이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실질적 재정자립도는 22%로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높은 편임.

○ KOTRA의 역할로 미루어보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충분하나 현재 사업량(인력규모, 해외조직망 운영비)이 시급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기관운영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으로 판단하면 관리비용 비중이 높아 효율적 규모라 보기 어렵지만, 현재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비용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해외조직망 운영으로 한정하였을 때, 조직망운영비(656억), 해외수당 및 인건비(495억)가 사업비(446억)를 포함한 총사업비에 비해 행정비용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타 부처, 산자부 사업을 포함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보조사업은 공사의 고유목적을 위해 내역이 구성되어 있어 여건변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지원규모 적정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해외무역관 활용도가 높지만,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127개소 운영 현황, 필요성에 대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노력이 필요함.

- 현재 127개 해외무역관 중 해당국가의 수출액 기준 10억 달러 미만(스톡홀름, 빈, 부쿠레슈티, 취리히, 자그레브, 소피아, 베오그라드, 암만, 다마스커스, 도하 등)인 국가 소재 해외무역관들의 경우 수출효과를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소재 무역관의 규모를 고려할 때 무역관 운영의 비용효율성 점검이 필요함. 유럽(23개소, 64명, 733억달러), 북미(10, 39, 733), 동남아대양주(15, 66, 900) 등 실제 효과에 성과 제고 필요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의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보조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정함.

**< 대외무역법 제8조>**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그 밖에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둔다.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자부 관리지침 및 공사 정관에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공사법에 집행점검 등 관리 및 산자부 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행→정산→감사' 에 이르는 보조금 사용 전주기에 걸쳐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사법에 정산,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으나, 공사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사용내역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한 외부회계감사인을 통해 감사가 수행되고 있음.

- 회계감사는 산업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감사결과는 감사원 검사, 국회 결산을 통해 매년 검증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기관운영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보조사업임.

## [국감] KOTRA, 실적 미달 5개 해외무역관에 5년간 127억 예산 집행

어기구 "KOTRA, 해외무역관 폐쇄기준 마련하고 수년간 이행 않해"

•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9:42
•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42

[세종=뉴스핌] 정성혼 기자 = KOTRA가 실적이 미미해 폐쇄기준을 충족하는 해외무역관을 수년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관 운영관련 자료'에 따르면 KOTRA는 폐쇄기준을 충족하는 5개 해외무역관에 최근 5년 동안 1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 폐쇄대상 무역관 예산 집행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2013 예산 | 2014 예산 | 2015 예산 | 2016 예산 | 2017 예산 | 계 |
|---|---|---|---|---|---|---|
| 무스카트 | 558 | 562 | 367 | 300 | 316 | 2,103 |
| 소피아 | 535 | 410 | 357 | 453 | 327 | 2,082 |
| 카라카스 | 346 | 428 | 364 | 320 | 341 | 1,799 |
| 카에프 | 667 | 626 | 622 | 544 | 526 | 2,985 |
| 델상키 | 684 | 688 | 691 | 808 | 813 | 3,684 |
| 계 | 2,790 | 2,714 | 2,401 | 2,425 | 2,323 | 12,653 |

[자료: KOTRA,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현재 KOTRA는 86개국에 126개 해외무역관을 설치 운영 중이다. '해외무역관 운영기준(2006. 11)'에 따르면 개설 후 2년 경과한 무역관을 대상으로 시장가치, 무역관 성과 및 전략적 요소 등을 고려해 매년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폐쇄기준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출액 연간 10억달러 및 무역관의 수출창출액 연간 200만달러 미만, 전략적 준치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관용차로 자녀 등하교·장보기'…코트라 업무추진비 도마위

코트라(KOTRA) 해외 무역관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문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코트라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해외무역관장이 관용차로 자녀 통학시키고 업무추진비로 슈퍼마켓을 다녔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파키스탄 카라치무역관 관장으로 취임한 A씨는 자신의 관용 차량으로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등하교 시켰다. 지인과의 식사에도 법인카드를 활용했지만 바이어와의 업무협의로 둔갑했다.

문 의원은 "업추비를 거짓으로 보고해도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신고 등이 없으면 돈이 규정대로 사용됐는지 알 수도 없다"며 "이렇게 쓰인 돈이 2017년 20억5000만원, 올해 상반기만 8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황당한 코트라의 업추비 운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전수조사할 계획이 없느냐"면서 "사적인 식사도 바이어와 업무협의로 바꾸는 방식이 술집에서 쓴 업추비도 정당한 식사비용이었다는 청와대와 답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한해 조사할 수 있는 감사 인력으로는 35개 해외무역관을 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이에 문 의원은 "최대한 (조사)하라"고 주문하자 다시 "알겠다"고 했다.
(세종=뉴스1)

○ 부정수급 적발시 내부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인사조치(인사규정), 민·형사 고발 및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시행되었음.

* 카라치 무역관 : 부정수급액 2,861,530원(= US$ 2,538.39) 전액 회수 완료

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KOTRA 주요 내부규정

| 구분 | 주요 규정 |
|---|---|
| 부정수급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 · 내부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지침<br>·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지침 |
| 부정수급 적발시 환수조치 | · KOTRA 임직원 행동강령<br>· 복무규정 |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127개 해외무역관 운영에 대해 재점검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함.

- 불인정지출 발생, 실효성 없는 무역관 운영 등 국감 등에서 지적이 있었음.
- 해당 무역관에 대해 점검하였고, 5개 무역관 중 1곳은 기 폐쇄되었음.
- 실적 없는 무역관에 대해 경제성 논리에 의거한 폐쇄보다는 무역관 전반에 관한 운영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임.

○ 2446억 원 중 30%(657억)는 해외사업소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고, 해외수당 및 해외현지직원 비용 등 인건비에서도 38%(495억)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급여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관리 감독 노력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해외무역관의 평균 운영비는 5억 원 수준이지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지출액은 9억 원 이상이므로 127개 무역관에 대해 기준 및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재편하는 것을 제안함.

○ 해외무역관에 대해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공사의 수출기반구축 기능 기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127개소 중 무역인프라를 위한 보조금이 필요한 곳인지 민간사업기반으로도 충분한 곳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규정마련,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만, 해외무역관의 성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평가체계가 마련되고 환류가 이루어져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몬트리올의정서대응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0.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3.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7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2.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4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O | O | |
| 총 평 | ·감축(0.55억)과 사업방식 변경을 판정함.<br>·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 6억원 중 3억원이 정책연구사업에 배정되어 있음.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직접적 대응책이 아닌 정책연구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정한 사업비 배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책연구비 2.55억원 중 0.55억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감액 조정할 것을 권고함.<br>·오존층 보호의 날 행사, 업체대상 세미나, 홍보포스터·동영상·홍보물·파일홀더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제작되고 있는 만큼 참신한 홍보수단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br>·내역사업이 사실상 두 개의 위탁사업자를 통해 실시되고 있고, 주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에 있어 주변적 역할에 머물러 있는 만큼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항 제1호*, 3호*, 5호*를 근거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은 동 보조사업에 대한 직접적 근거 규정이라기보다는 오존층 보존을 위한 사업에 대한 포괄적 근거임.

*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5. 그 밖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용도

○ 동 법 시행령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항은 법 37조의5 제2항 제5호 “그 밖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용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2호는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다자환경협약인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국내 이행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대체물질 적용 산업구조로의 대체전환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적 이행 준수의무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감축·전폐 정책으로 관련 국내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활한 국내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임.

-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개도국의 협약준수를 위해 선진국들이 다자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대체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를 감안하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수혜의 범위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음.

- 매년 15개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2014~2020년까지 총 105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임. 이는 해당 특정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1,000여개 기업 중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임.

- 또한 특정물질 제조·수출입 및 사용업자 등 관련 산업계가 수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대체전환이 어려운 특정물질 사용 업자의 조기 전폐를 유도하기 위해 연 15개 기업에 기술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과 키갈리개정서 규제대응 정책조사·연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둘째, 몬트리올의정서대응지원은 대체촉진세미나 및 정보자료 발간, 의정서 국제회의 참석, 오존층 보호의 날 행사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 내역사업 중 실제로 의무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대체전환을 위한 기술 컨설팅인데 2014~2017 기간 중 기술 컨설팅을 받은 60개 업체 중 24개 업체가 “대체완료”, 3개 업체가 “일부 대체”하였음. 목표 달성률은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대체전환 기술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반복되는 연구사업과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 포스트·동영상 제작 등 홍보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규제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이행을 위한 투자자금을 저리에 융자하는 등의 방식도 취하고 있으므로 동 보조금이 사업이 유일한 방안은 아님.

○ 타 사업과의 중복이나 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대체를 추진해야 하므로 기술적 지원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며 당사국으로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고 국제적 동향을 국내에 알리는 일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 5.55억원 중 2.55억원이 정책연구사업에 배정되어 있음. 사업 전체 예산 7.55억원 (2019년 예산 기준)의 1/3 이상을 직접적 대응책이 아닌 정책연구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정한 사업비 배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정책조사·연구사업의 경우 1단계 (2014~2017) 기간 동안 실시된 정책연구사업의 내용과 2단계 (2019~2023) 기간에 계획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1단계 기간 동안 키갈리개정서의 실시에 대비하여 국내외 현황조사 등이 이루어진 바 2단계에서는 반복적 연구는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몬트리올의정서대응지원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 오존층 보호의 날 행사와 오존층 보호 포스터, 파일홀더, 브로슈어, 홍보 동영상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매년 비슷한 행사가 반복되고 있고 해마다 차별성이 별로 없는 홍보물이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참신한 홍보수단을 강구하는 등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오존층파괴물질 전폐를 통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를 이행으로 오존층을 복원하고, 이에 따라 피부암, 백내장 등 인류에 미치는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부규정은 없음.

- 다만,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1992년)시부터 의정서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책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동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세부 추진 주체를 살펴보면 이상의 사업자 선정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동 사업은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과 몬트리올의정서대응지원의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7.55억원의 사업비 중 5.55억원, 73.5%의 예산이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에 배정되어 있음.

-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동 사업의 핵심은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조사업자인 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동 내역사업 전체를 사실상 재위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한정적이며 지원 업무에 국한되어 있음.

○ 동 사업과 같은 소규모 보조금 사업이 각 내역사업별로 (사실상) 서로 다른 위탁 사업자를 통해 실시되면서 인건비 등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보조사업자가 주변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 교부 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사업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별도의 집행점검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17년 현장실태조사를 2차례('17.10.24, '18.3.16) 실시하였으며 "보통"으로 평가되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사업 운용관리지침」에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특정물질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사업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몬트리올의정서대응지원사업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 및 누락결과는 없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없었음.

- 보조사업자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자금을 교부받아 용역사업 형태로 사실상 재위탁하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대신 몬트리올의정서대응지원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주관으로 부정수급점검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함.

- 현장실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절차, 목적 외 사용 여부, 보조금 회계처리 현황, 부정수급 의심관련 소명현황 등을 확인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전체 예산의 1/3 이상을 직접적 대응책이 아닌 정책연구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정한 사업비 배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책연구비 2.55억원 중 0.55억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감액 조정할 것을 권고함.

○ 몬트리올의정서대응지원 예산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 오존층 보호의 날 행사 등 행사 비용과 매년 제작하고 있는 오존층 보호 포스터, 파일홀더, 브로슈어, 홍보 동영상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매년 비슷한 행사가 반복되고 있고 해마다 차별성이 별로 없는 홍보물이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참신한 홍보수단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평가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내역사업이 사실상 두 개의 위탁사업자를 통해 실시되고 있고 보조사업자가 주변적 역할에 머물러 있는 만큼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특정업체에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째로 위탁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보조금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기업의 공모, 선정, 사업비 지급, 사후관리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러한 수행방식이 산업통상자원부 여타 보조사업의 일반적인 사업 수행 방식임.

- 현재의 재위탁 용역사업자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대체전환 기술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업체는 아닌 만큼 산업통산상자원부의 여타 보조사업들처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국가 공인업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9.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9.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즉시 폐지<br>·근거 법령이 일몰될 예정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짐<br>·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한 근거 법령이 있으나, 동법은 3년 한시법으로 일몰시점('19.8) 이후 동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20년 즉시 폐지 필요<br>·사업재편계획 승인건수 성과지표 상 '17년까지는 계획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18년에는 승인기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동법 제36조에서는 동법에 따른 특정 업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업무위탁이 가능한 전담기관 등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6조 >**

**제36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동법은 유효기간이 3년인 한시법으로, 최근 기한 연장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등 국회 및 주무부처의 노력이 있기는 하나 일몰시점('19.8) 이후 동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즉시 폐지 필요

○ 동 보조사업은 '19년 기준, ①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②산업진단시스템구축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내역사업 내용은 현행 근거 법령이 규정하는 업무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근거가 다소 미약하므로 이를 업무위탁 범위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내역사업의 세부내용 중 교육·행사·홍보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거 법령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현재로서는 보기는 어려움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전담지원기관 운영,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사업재편지원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과잉공급 위기에 처한 산업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됨

○ 국정과제('38: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와의 연계성도 확인됨

- 동 국정과제는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확산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동 보조사업과 그 정책방향이 부합함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위탁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과 해당 기업 종사자, 각종 교육·홍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내 수요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2차적 수혜자는 사전적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게 된 승인기업 종사자와 향후 승인기업들이 추가 고용을 계획하는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사업의 수혜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 '16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으로 인해 '18년까지 총 100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고, 이 기업들은 향후 3년간 2,011명의 신규 고용과 2.1조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과잉공급 위기에 처한 산업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재편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 보조사업은 ①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②산업진단시스템구축 등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는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인 구성이고 내용도 명확하다고 판단됨

○ 동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 승인건수, 설명회 및 세미나, 홍보회 참여기업 수 등 두 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면서 2017년까지는 계획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 2018년에는 승인기업이 예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설명회 및 세미나, 홍보회 참여기업 수는 단순 업무건수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목적 달성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의 핵심내용은 과잉공급 위기에 처한 산업 내 기업들이 사업재편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시작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승인기업들이 사업재편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사업재편계획 승인건수 이외에 승인기업 지원업무의 성과와 이를 통한 사업재편계획 이행 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은 공공성이 강한 국가사무로서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촉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도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됨

○ 기업이 도산한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타 제도에 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정부가 가진 유일한 사전적 구조조정 지원 제도이므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및 통합 가능성은 낮음

○ 최근 들어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고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산업여건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실 징후 및 한계 기업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인 보조금 규모 대비 행정비용은 '19년 기준 약 23%를 차지하지만, 많은 부분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사업재편 계획서 작성 지원, 승인 기업 사후관리, 승인기업 이행관리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인건비이므로 사업의 실효성에 큰 문제는 없음

○ 내역사업 조정 및 중복 제거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할 필요 있음

- 현행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효과성의 확인도 어려운 교육·행사·홍보 등 일부 내역사업의 내용을 제외시키고, 협의체 운영 사업 내 자문·실태조사·연구용역비 중복 제거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및 산업·금융 협업 통계시스템 구축(내내역)은 산업연구원의 고유업무와 일부 중복성이 있으므로 업무범위 및 예산규모 조정 필요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은 없지만, 현행 보조율은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적절한 보조사업자 공모절차와 보조금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를 보조사업자로 정책 지정하였는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거하여 전국 73개 지방 상공회의소와 함께 18만명의 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정책 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용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보조금 교부조건'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음

-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내역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며,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조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를 1년에 2차례 함으로써 중간에 집행현황을 재점검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 객관적인 외부 검증기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내역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간 부정적 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없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체계를 통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 낮음

○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e나라도움시스템과 연동, 실시간 집행현황 및 부정징후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동법은 유효기간이 3년인 한시법으로 일몰시점('19.8) 이후 동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즉시 폐지 필요

○ 교육·행사·홍보 등 일부 내역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 범위 상 보조금 지급근거가 다소 미약하므로 조정 필요

○ 과잉공급 위기에 처한 산업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정과제와의 연계성도 확인되며, 승인기업 종사자 등 사업의 수혜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하다고 인정됨

○ 사업재편계획 승인건수 성과지표 상 '17년까지는 계획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18년에는 승인기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부실 징후 및 한계 기업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됨

○ 내역사업 조정 및 중복 제거, 산업연구원과의 업무범위 및 예산조정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가 가능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사업재편계획 승인건수 이외에 승인기업 지원업무의 성과와 이를 통한 사업재편계획 이행 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0.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판정함<br>·본 사업은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br>·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이 산업기술보안과 관련된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자구노력에 비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자구노력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33조(권한의 위임 위탁) 등에 근거해 있음

- 동법 16조의 제1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16조의 제4항은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관련 정보 전파, 3.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 홍보 교육 실태조사, 4. 국내의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발간, 4의2. 국내 핵심기술의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다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6조의 제5항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33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의 근거법령에 기초해 볼 때 본 사업을 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해 추진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명확함. 단, 협회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예산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 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

○ 본 사업은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의 일차적인 수혜자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으로 비교적 넓은 편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관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국가핵심기술 수요조사, 분석 및 로드맵 연구,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 산업기술보호 역량강화, 산업기술보호 인식확산, 산업기술분쟁조정 및 확인제도 운영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각의 내역사업은 국가핵심기술관리 및 보호, 산업기술 보호 역량강화 및 인식확산, 산업기술 보호정책 제도 운영 등의 핵심과제와 연계되어 국가 핵심기술 관리 보호 기반 고도화,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강화, 중소 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라는 기본방향을 달성하는데 유용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모든 내역사업이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사업추진이 적합함

○ 단,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이 산업기술보안과 관련된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경우 2016년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보안특성화대학 육성 사업이 2019년 예산부터는 본 사업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보안특성화대학 육성관련 예산 400백만원이 2019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의 2019년 예산규모는 2018년과 비교할 때 크게 감축되지 않았음.(2018년 1,221백만원, 2019년 1,149백만원)

- 이는 2019년 예산에 국가핵심기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종합관리시스템구축 예산 273백만원이 반영되었고, 정책 추진기구 운영횟수가 연 15회에서 30회로, 보안닥터 운영 개수가 5개에서 10개로 각각 2배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각각 20백만원과 100백만원 등 총 120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 국가핵심기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종합관리시스템구축 예산 반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정책추진기구인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의 경우 2016~2018년 기간 중 15회 개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개최횟수는 평균 34회에 이름. 이를 고려할 때 2019년 예산에 30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반영예산 | 20,000 | 20,000 | 20,000 |
| 전문위원회 개최횟수 | 24회 | 44회 | 33회 |

- 보안닥터의 경우 대상이 2018년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에서 2019년 국가핵심기술보유 대기업, 중견기업, 출연연, 대학 등으로 확대됨에 따른 운영개수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기초보고서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내용과 관련 항목은 큰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산업기술보호협회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동 법에 협회의 사업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법에 의해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위탁 위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기술보호협회가 민간 보조사업자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보조사업의 집행에 관한 내용은 협회의 제 규정 '민간보조금의 집행 관리에 관한 요령'의 9조(관리 회계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2조(사업의 내용변경), 제13조9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 명령) 등에 명시되어 있음

○ 협회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클린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협회의 회계규정 및 고정자산 관리 요령 등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이 협회 보조금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임직원 행동강령, 위임전결요령 등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음.

○ 만일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완비되어 있음

○ 2008년 보조사업 시행 이후 부정수급 발생 사례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2016년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보안특성화대학 육성관련 예산 400백만원이 2019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의 2019년 예산규모는 2018년과 비교할 때 거의 변동이 없었음. 이는 2019년 예산에 국가핵심기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종합관리시스템구축 예산 273백만원이 반영되었고, 정책 추진기구 운영횟수가 연 15회에서 30회로, 보안닥터 운영 개수가 5개에서 10개로 각각 2배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각각 20백만원과 100백만원 등 총 120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 국가핵심기술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종합관리시스템구축 예산 반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정책추진기구인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의 경우 2016~2018년 기간 중 실제 개최횟수는 평균 34회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9년에 30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함
- 보안닥터의 경우 대상이 2018년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에서 2019년 국가핵심기술보유 대기업, 중견기업, 출연연, 대학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3-2 정책 제언

○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단,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이 산업기술보안과 관련된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자구노력에 비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자구노력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사업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0.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9.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5.4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br>·동 사업의 목표와 비교하여 볼 때, 목표달성을 위해 일부 내역사업의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br>·'ISTANS 이용 확산 및 활성화' 내역사업은 통계집 발간, 논문경진대회 개최, 경제포럼·통계협의체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순 통계집 발간이 ISTANS 이용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br>·실제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타 관련 정보와 결합하는 데이터 활용방법의 교육 등 다른 접근법을 통해 이용확산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음

**<산업발전법>**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핵심 법적 근거로는 동법 제14조로, 근거 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이나, 그 근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보조금 지금의 근거가 매우 명확하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핵심 목적은 미시적 산업통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임

- 미시적 산업통계의 통합검색·분석이 가능한 웹기반 시스템(www.istans.or.kr)을 구축하여 산업정책 수립의 적시성 제고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 통계는 사회구성원에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산업정책의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타당함

○ 다만, 동 사업의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움

- 사업소관부처는 본 사업의 수혜 산업의 범위가 60대 산업(40대 제조업, 20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통합검색·분석이 가능한 웹기반 시스템 ISTANS 사이트 회원 가입자 수는 2018년 약 42,869명으로 이 중 가입회원의 직업군은 26.5%, 민간기관 46.4%, 학생 27.1%로 분석되고 있음

- 즉 동 사업의 특성상 수혜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크게 네 가지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ISTANS 산업통계 및 통계분석정보 콘텐츠 개발 및 확대

- 둘째, 산업통계 포털 및 분석시스템 확충 및 강화

- 셋째, ISTANS 이용 확산 및 활성화

- 넷째, 미시산업통계 설문조사(ISDB)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동 사업의 목표가 '미시적 산업통계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정책 수립의 적시성 제고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할 때, 이상의 네 가지 내역사업의 구성은 일정부분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됨

- 다만, 내역사업 중 분석보고서 작성 및 발간, 실물산업경제 포럼 운영, 논문경진대회를 추진하는 'ISTANS 이용 확산 및 활성화' 내역사업의 경우 목표와 비교하여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의 네 가지 내역사업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나, 개별 내역사업이 종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과연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인 'ISTANS 이용자 만족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 '17년 기준 성과목표는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및 동향지표·분석보고서 등 작성 배포 횟수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18년에는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및 전문가 집단의 ISTANS 사업평가로 변화하였으며, '19년에는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단일 지표로 재수정됨
- 즉 동 사업 목표의 구체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음에 따라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무료로 산업 통계를 제공하는 일련의 보편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정부 추진이 타당하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 동 사업은 독자적 산업분류체계를 갖는 DB를 구축·운영하고, 산업통계집을 발간하는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격을 지니므로 정부가 자체 수행하기보다 보조사업자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유사·중복성의 문제는 제공하는 정보 차원에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종합적 관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통계를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 중인 각종 통계들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 중심으로 통계지표를 제공

  * (예시) 에너지사용통계, 한국인인체지수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등

- 다만,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통계들을 별도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선 정책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즉 관련 통계의 생산은 별도의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더라도, 성과물의 공개와 활용은 다수의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함

○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측정가능한 동 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 동 사업의 향후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 역시 소규모일 수 있음

- 그러나 약 15년에 걸쳐 진행된 자료의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예산투자가 전체 매몰비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주요한 손실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행정비용은 사업예산 대비 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조사업으로서 실효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의 사업비 구성은 대다수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ISTANS 이용 확산 및 활성화' 내역사업의 경우 향후 개선이 필요함

- '19년 기준 동 내역사업은 통계집 발간, 논문경진대회 개최, 경제포럼·통계협의체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단순한 통계집 발간 등이 이용 확산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이 실제 이용 확산 및 활성화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수요도가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다른 지적정보와 결합하는 추가 활용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이용 확산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예산으로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별도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 동 사업은 독자적 산업분류체계를 갖는 DB를 구축·운영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임
- 산업연구원은 약 40년간 산업경제정책을 연구해온 국책연구기관으로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전문성이 인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관리·감독이 진행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교부함
-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 및 사업 관리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후관리를 추진함

- 통합관리지침 제30조(재제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1조(과오납의 환급), 제3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36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7조(중요재산의 부기 등기)에 대한 규정을 명기하고 사후관리 실시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산업연구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의 단계가 단순하고,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낮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련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 차원의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방안 등 심의함

- 상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였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미시적 산업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정책 수립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점에 보조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사업목표와 비교하여 일부 내역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따라 이에 대한 향후 사업 변경이 요구됨

###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 중 'ISTANS 이용 확산 및 활성화' 내역사업의 경우 향후 개선이 필요함

- 단순한 통계집 발간 등이 이용 확산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요도가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여 다른 지적정보와 결합하는 추가 활용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이용 확산 및 활성화 추진을 제안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4.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8.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7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6.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br>·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과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사업을 통합하여 2018년부터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으로 추진되었음.<br>·2019년 사업명 기준 미세먼지 사업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업명 조정 및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명에서도 미세먼지는 삭제되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내용에 맞게 사업명 조정 필요<br>·공공활용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범용기술사업화로 통합하여 렌털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산업단지 기업내, 기업-기업간, 기업-지역간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 기술을 접목하여 폐·부산물, 폐에너지의 재활용·재이용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환친법 제20조에 의해 여러 측면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음.

○ 이 사업의 개별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환친법 규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범용기술사업화, EIP해외진출지원(출연), 공동활용시설 온실가스감축 인프라 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 미세먼지플랫폼 구축사업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1. 5. 24.]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사업은 개별 기업이 수행할 수 있지만, 환경문제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인프라 지원, 기술 개발 등 지원이 타당함.

○ 사업수혜자의 주된 범위는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 한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인 내역사업은 범용기술사업화, 공동활용시설 온실가스감축 인프라 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 미세먼지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세먼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보조사업의 구성은 합리적이지만, 사업량이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당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됨. 26억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확산되기 어렵고 개별 이용 기업에 효과가 한정됨.

○ 보조사업 내용과 목표가 일부 구체적임.

-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 2017년 집행률, 2018년 실집행률 확인 필요(2018년 실집행률 수정)

| 구분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 - | - | - | - |
| 2017 | 1,868 | 1,868 | 1,868 | 1,868 | - | 1,868 | 228 | 1,640 | - | 12.2 |
| 2018.6월기준 | 2,68 | 2,668 | 2,668 | 2,168 | - | 2,168 | 2,168 | - | - |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개별 기업 자부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만이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보기 다소 어려움.

- 사업내용 상 보조가 없을 경우 산업단지 기업의 참여 유도가 어려운 점이 있음.

○ 중복성 해결을 위해 2018년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태산업 기술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태산업 기술수요에 맞춰 주요 수요국가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기술개발로 수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베트남, 터키, 말레이시아, 중국, 모로코, 미얀마, 모리타니 등

○ 재정적 손실은 아니지만,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2.6억 원으로 약 10%를 차지함.
- 행정비용 높은 편임.

○ 타부처 사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음.
- 공공활용설비 지원의 경우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80% 지원하고, 렌탈서비스의 경우 민간과 1:1 매칭임.

○ 공공활용설비 지원사업의 경우 렌탈서비스로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공영렌탈, 민간렌탈과 같이 자부담의 부과방식을 사용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사회적 가치 실현 인정됨.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세부관리지침(한국산업단지공단)을 제정하여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였음.
-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반영한「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세부관리지침」제정(2018.2)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 법 조항을 근거로 예산서에 보조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세부관리지침에 의해 적정한 관리체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총괄기관 |
|---|
| 산업통상자원부 |
| **시행기관** |
| 한국산업단지공단 |
| **수행기관** |
| 주관기관, 참여기관 |

| 구 분 | 구성 및 역할 |
|---|---|
| **산업통상자원부**<br>(총괄기관) | ○ 사업총괄<br>-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등 |
| **한국산업단지공단**<br>(시행기관) | ○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br>○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 검토<br>○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행기관 관리 |
| **사업수행기관**<br>(참여기업, 기관) | ○ 사업 신청, 사업 참여<br>○ 설비 설치·운영, 사후관리<br>○ 감축실적 관리·보고 등 |

○ 설비 시공 및 운영,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 점검 결과 설비 설치 완료 및 정상 운영·관리 중임을 확인하고 있고,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객관적 검증 성과 제시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세부관리지침에 의해 정산 등 적정한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위반 시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구 분 | 주요 위반사항 | 조치기준 |
|---|---|---|
| 보조금 지급 이전 | ○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
| | ○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
| | ○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
| |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변경<br>(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 보조금 지급 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
| | ○지원설비를 당초 계획대로 운용중이나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br>보조금의 50% 환수 |
| | ○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5년<br>보조금 전액 환수 |
| | ○부도, 사업장 폐쇄 등으로 감축설비 운용이 어려운 경우 | 설비 적정가격 평가 후 유상 또는 무상 양도 |
| 공 통 | ○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br>보조금 전액 환수<br>사업자명 공표 |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과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사업을 통합하여 2018년부터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2019년 사업명 기준 미세먼지 사업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업명 조정 및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명에서도 미세먼지는 삭제되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내용에 맞게 사업명 조정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공공활용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범용기술사업화로 통합하여 렌털서비스로 운영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2.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단계적 폐지(2020년말 종료)<br>·동 사업은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여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br>·지원대상 전수조사 추진결과, 향후 약 20만가구 호스사용 가구가 남은 것으로 파악되어 **2020년까지는 정부지원이 필요**함<br>·추가 사업기간 연장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하여 국민생명과 안전 증진 노력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2항(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임의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무규정) 등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을 위해 LPG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제46조(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할수 있다.

② 제44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LPG호스 사용주택은 2020.12.31.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타당함

○ 동 사업의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부칙)에 의해 202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에도 불가하고,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개선이 불가한 가스사고 위험 노출 서민층을 지원하는 사업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교체 지원토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따른 수혜가구의 만족도가 높고, 가스안전에 대한 안심도가 높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지자체는 금속배관 교체비용과 안전점검비를, 민간은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구조가 명료함

- 2011년 정부지원(100%)에서 2012년부터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장상황별 맞춤 시공으로 시공비 절감, 가스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확보와 사회적 배려 등 공익증진효과 인정받아 정부우수사업(2017년) 선정

○ 지원대상 전수조사 추진결과, 향후 약 20만가구 호스사용가구가 남은 것으로 파악되어 2020년까지는 정부지원이 필요함

- 본 보조사업 평가는 부처에서 제출한 추정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부처의견) 현재 현장실태 진행 중으로 2019년 4월중 최종 지원대상 가구조사 완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자체 전수조사 토대로 법적 의무화 기한인 2020년까지 교체 완료할수 있도록 2019년 예산을 2배 증액 편성함 (2020년 12월31일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 2018년 9,670백만원 → 2019년 19,850백만원

○ 2012년부터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으로, 서울과 지방에 차등보조 적용하고 있음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그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 사업 추진전과 추진후 주택LPG사고 50% 감축 효과 도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가스안전공사)이 수행하고 있음

- 지자체는 금속배관 교체비용과 안전점검비를, 민간은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이 적절함
-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매칭 및 차등보조율(서울 50%, 지방 20%)을 적용하고 있음

○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 간 MOU체결을 통해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의 홍보, 예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적절하며,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가스안전공사 총괄부서 및 각 지역본부에서 현장 지도점검 등 사업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현장실태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지침 계약서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가스안전공사가 검수를 마친후 1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완료 세대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통해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1)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급 후에라도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개선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참여를 제한한다.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근거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없음

- 또한 가스안전공사 자체 중복지급 등 예방을 위한 중복방지 전산프로그램 운영 중임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단계적 폐지(2020년말 종료)

- 동 사업은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지원대상 전수조사 추진결과(부처), 향후 약 20만가구 호스사용가구가 남은 것으로 파악되어 2020년까지는 정부지원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추가 사업기간 연장이 되지않도록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하여 국민생명과 안전 증진 노력이 필요함

* 당초 2011-2015년 지원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 연장(2011-2020) 추진하고 있음 (2020.12.31. 의무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석유유통개선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3.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6.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br>·동사업은 국내 석유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및 석유유통정보 고도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 및 석유수급 안정 도모하고, 알뜰주유소, 품질인증프로그램 등 자가상표 주유소 육성·지원으로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국내석유시장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필요성이 대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br>·하지만 내역사업들 모두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br>·특히 알뜰주유소시설개선 및 품질인증프로그램은 보조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br>·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목표수준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 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에너지및자원회계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 동사업은 석유류 가격공개 사업을 수행하거나, 알뜰주유소·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등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하여 석유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시장 경쟁촉진 등을 목표로 함에 따라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사업의 내역사업들은 오피넷, 석유유통정보고도화, 유통시장경쟁촉진, 시장투명성제고 등이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 등 국내 석유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및 석유유통정보 고도화를 통한 석유제품가격 및 석유수급 안정 도모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및 품질인증프로그램 지원 등 자가상표 주유소 육성·지원으로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국내석유시장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

○ 이러한 목적을 가진 동사업은 대체로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유통시장은 과점형태로서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가 공급물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대리점과 주유소 또한 정유사의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 사업자 간 경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동 사업은 이러한 석유유통 과점시장의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시 국내시장의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으로 발생된 소비자 편익이 특정 지역이 아닌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의 범위가 대체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안전하고 올바른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오피넷 운영 및 개선,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유통시장 경쟁촉진(알뜰주유소 시설개선지원, 품질인증프로그램 지원), 유통시장투명성제고로 구성되어 있어 대체로 목적달성을 위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내역사업들 모두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사업 종료 등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8년의 경우 동사업은 다음과 같은 실적을 거두었음

- 오피넷 웹 메뉴 및 스마트폰 앱, 관리자 시스템 기능 개선
- 웹서비스 보안 취약점 개선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율 및 정확성 제고 및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 품질인증프로그램 400업소 협약
- 11월, 알뜰주유소 1,178개소 영업중

○ 또한 최근 3년간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다음과 같음

| 성과지표 | 구분 | '15 | '16 | '17 | '18 |
|---|---|---|---|---|---|
| 오피넷 유가정보 이용실적 (단위: 만명 ) | 목표 | 18.3 | 27.0 | 27.8 | 31.1 |
| | 실적 | 24.6 | 27.2 | 30.2 | 32.7 |
| | 달성도 | 134.4 | 100.7 | 108.3 | 105.1 |
| 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업소수 (단위: 개소) | 목표 | 신규 | 신규 | 400 | 400 |
| | 실적 | 신규 | 신규 | 400 | 400 |
| | 달성도 | - | - | 100.0 | 100.0 |

- 동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성과지표는 목적 측정에 미흡하고, 목표수준도 도전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정유사 과점체제로 인해 유효경쟁이 부족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동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낮음

- 석유와 관련된 사업은 현재 3개(석유비축사업, 석유품질관리사업,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로, 그 중에서 석유 유통질서 확립 및 경쟁 강화와 관련된 사업은 동 사업이 유일함

○ 다만 알뜰주유소 전환 지원사업의 감소 등으로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및 품질인증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오피넷 운영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격수집 시스템 관련 수수료(VAN수수료, ARS 등), 서버운영비(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통협회 등이 유통정보 수집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음

- 알뜰주유소, 품질인증프로그램 지원은 사업자 수요에 맞추어 각 사업자당 지원금액을 책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업소수가 정해짐

○ 현재 알뜰주유소는 3,000만원 한도로 시설개선자금 지원하고 있고, 품질보증프로그램 한 개소당 48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다음과 같음

**<보조사업 지원 비율 (단위 : %)>**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비율 |
|---|---|
| 한국석유공사 | 100(알뜰지원 90) |
| 한국석유관리원 | 100(품질인증 36) |

- 하지만 이러한 보조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서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심사에서 석유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을 축소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16년부터 단계적 축소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보조율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기관들은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위탁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4호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 수행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석유공사는 국내 제일의 석유가격 전문가 집단으로서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제도가 정착되기 이전부터 주유소 판매가격을 조사해왔으며 국내석유정보망(Petronet, Pedsis)을 운영한 경험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오피넷 운영 및 석유유통정보고도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유통시장 감시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등의 권한을 법령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은 그 근거에 따라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통지 등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보조금 집행·관리 업무에 대한 보조사업자 집합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집행관리 체계 구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 → 교부조건 → 교부결정의 통지를 공문으로 명확히 시행중임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증빙자료 관리, 통장 거래내역 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 중임

○ 매분기 보조금 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현황 및 부정집행 발생 사항 등을 적절히 점검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전용 최대한 억제, 불용액의 목적 외 집행 금지 등 원칙 등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산업통상자원부로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미집행액 원금 및 발생이자 반납

○ 보조사업자인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은 매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주무부처에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를 하였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실적보고, 반환, 환수 등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의 외부 회계감사 수감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인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석유유통·품질관리 등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고 보조사업 수행이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았음

○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고 세부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등 비교적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및 관련 사업의 집행 점검하고 있음

-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자체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하여 그 조치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보조사업 집행 및 부정수급 실태조사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4조의 2 신설('18.1월)

○ 종합적으로 볼 때 부정수급관리는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사업은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 등 국내 석유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및 석유유통정보 고도화를 통한 석유제품가격 및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알뜰주유소, 품질인증프로그램 등 자가상표 주유소 육성·지원으로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국내석유시장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대체로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내역사업들은 오피넷 운영 및 개선, 석유유통정보 고도화, 유통시장경쟁촉진(알뜰주유소 시설개선지원, 품질인증프로그램 지원), 유통시장투명성제고로 구성되어 있어 대체로 목적달성을 위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및 품질인증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후 중장기 발전방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알뜰주유소는 3,000만원 한도로 시설개선자금 지원하고 있고, 품질보증프로그램 한 개소당 48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동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성과지표는 목적 측정에 미흡하고, 목표수준도 도전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3-2 정책 제언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및 품질인증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한 동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보조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목표수준도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5.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2.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3.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을 판정함.<br>·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본재인 에너지 제품의 품질 보장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강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추진의 이유는 충분함.<br>·현행 검사 수수료율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함. 검사대상 업계는 품질검사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해당 비용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 석유제품 관련 사업자의 의무와 석유품질관리원의 설립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해당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 제1항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항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제품의 판매와 인도를 하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품질검사 수검을 의무화하고 있음.

- 동 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하는 석유관리원의 설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동 조 제2항은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11호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석유품질관리지원사업”의 내역사업과 높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은 석유관리원의 운영을 위한 수입의 출처로 수수료와 보조금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동 조 제2항은“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석유 및 가스의 품질·유통 관리를 통해 가짜석유 제조,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석유산업의 발전과 사회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석유와 가스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의 기본적 재화로서 두 제품의 품질관리와 건전한 유통은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국가를 대신해 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불법석유제품 유통 차단을 통한 세수탈루 방지, 석유시장 유통체계 확립, 국민안전 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대기환경 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비정상적 영업활동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조성됨에 따라 양질의 석유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게 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의 구성은 사업목적에 잘 연계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함.

- 내역사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검사시험장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 석유유통관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운영, LP가스 품질검사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각 사업은 석유 유통 전 과정을 통해 불법, 가짜 석유의 통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임.
- 각 내역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동 사업의 목적과 잘 연계되어 있음.

○ 동 사업은 성과지표를 통해 정량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도에 따르면 계획한 목표는 대체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내역사업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 (p.249~251)에 의하면 “전산수급보고제도”내역 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상당수의 주유소 사업자가 이탈하여 예산 지원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석유품질관리사업의 성격상 규제, 융자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 특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석유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 동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인 만큼 사업 위탁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지속되어야 함.

○ 타 재정사업과 유사 중복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석유 및 가스사업이 존재하는 한 유통질서 교란행위는 근절되기 어려움. 석유 및 가스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검사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감시는 지속되어야 하는 바 동 보조사업은 연장되어야 함.

○ 동 사업이 폐지될 경우 석유 및 가스제품 유통질서의 교란으로 저질의 관련 제품 유통률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 사고발생, 대기환경 오염, 세금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고 있는 만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함. 다만, 지급내용과 규모에 중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석유와 LP가스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해당 업계는 품질검사의 수혜자이기도 하므로 해당 비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이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관리원은 연료유의 경우 검사 1건 당 15,000원, LPG의 경우 건 당 222,000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보조금 삭감에 따른 검사 1건당 수수료 인상액 추정>**

(단위: 천원)

| | 검사건수 | 현재 건당 수수료 | 건당 수수료 인상액 | 수수료 인상 후 건당 수수료 |
|---|---|---|---|---|
| 연료유 | 78,793 | 269 | 15 | 284 |
| LPG | 5,227 | 23 | 222 | 245 |

*검사건수, 현 수수료, 보조금 총액, 보조율 등은 2018년 기준임.
*한국석유관리원 작성

- 연료유의 경우 수수료는 4개 기업에 98%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추가 수수료 부담은 연 최고 3.7억원(SK에너지)에서 최저 2.4억원(S-Oil) 수준임. LPG의 경우 6개 기업에 99% 이상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추가 부담은 최고 3.6억원(SK가스)에서 최저 3천만원(현대오일뱅크) 수준임.

- 이상 해당 기업들의 추가 수수료 비용 부담을 이들의 매출액 수준과 비교하면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은 수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설사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일부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수수료 인상은 물가수준과 연관되어 있어 물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인상추진은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에 따른 12가지 사회적 가치 분류에 따르면 석유품질관리지원사업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음.

- 가짜 석유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및 차량손상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2012년 이후 가짜석유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사례가 없으므로 정량적 수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선정되었음. 동 기관은 석유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해당 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탁 사업자로서 법적 근거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1983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해옴에 따라 동 기관을 대체할 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체기관을 찾기는 어려울 것임.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음.

-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내역사업별 편성예산 및 실집행률, 연계시스템 사용현황, 집행 증빙자료 관리, 통장 거래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음.

- 회계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 별도 계정 설정 및 구분 회계처리, 별도 계좌 사용 등을 점검하고 있음.

○ 또한, 보조사업자는 매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검사 실적보고(의무사항), 분기별 경영성과분석, 반기별 검사팀장 회의 등 자체 모니터링 제도를 통하여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석유관리원의 2018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시험기기의 도입과정에서 평가표 작성에서 문제와 첨단장비 운영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난 바 개선이 필요함.

- (지적사항) (시험실운영)매뉴얼은 시험기기 규격 검토기준 (요구조건)과 평가표를 정하여 항목별로 적합·부적합을 평가하여 부적합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구입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규격을 검토한 실무위원회에서는 한 차례도 평가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특이사항 없음' 또는 일부기능 등을 추가하는 사항만을 검토하였다. (중략) 평가표 등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점은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지적사항) 첨단장비 운영 관련 규정 미비로 구매, 수리, 이력관리 등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서별 첨단장비의 사용률이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매 분기 보조금 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현황 및 부정집행 발생 사항 등을 점검하였음.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으며 점검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음.

○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전용 최대한 억제, 불용액의 목적 외 집행 금지 원칙 등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집행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음.

- 사정에 따라 이·전용할 경우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하여 통제하고 있음.

* 주무부처(산업부) 담당과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관리감독 및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부처로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 미집행액 원금 및 발생이자는 반납하고 있음.

○ 동 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험기기 등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게 하는 등 시험실 운영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매뉴얼에는 시험기기 도입절차, 운용절차, 시험기기 유지관리방법 등 명시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수감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지급되고 정부의 위탁사업 수행 경비 (장비도입, 인건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로 사용되고 있어 부정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보조사업자는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계 및 예산부서 이외 감사실로 집행처리 내부시스템 및 계좌잔액 시스템 감시권한을 확대하여 월별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을 상시 감시하고 있음. 또한 시험기기 취득 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시험 실기술위원회를 거쳐 도입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부정수급 보다는 사업의 성격상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의 비리가 발생하기 쉬움.

- “2017년 경영평가에서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혁신적인 부패방지 시책 개발 및 추진 필요”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본재인 에너지 제품의 품질 보장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강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추진의 이유는 충분함.

○ 보조금 집행 관리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사업의 성격상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의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부패방지를 위한 강한 내부적 노력이 요구됨.

### 3-2 정책 제언

○ 일부 내역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집행방식 개선 노력을 요구함.

- 전산수급보고제도 내역사업에서 시스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주유소 사업자가 대거 이탈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원인을 점검하여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오피넷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홈페이지)에 전산보고 주유소 표시를 추가하는 등 개선노력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향후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추가적 개선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함.

○ 현행 검사 수수료율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함. 검사대상 업계는 품질검사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해당 비용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인상은 물가수준과 연관되어 있어 물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인상 추진은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하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수출경쟁력강화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2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을 제안함<br>·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에 대한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업 간 지원 수준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br>·각 사업별로 성과와 연동되어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나 일부 내역사업에는 성과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미흡함. 일부 지표의 경우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항목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br>·글로벌기술컨설팅 사업의 경우 국제공동기술개발과제 도출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나 이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중소 및 중견기업은 자체 재원능력이 상이하고 지원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 제8조에 무역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근거하고 있어 제시된 법령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에 대한무역투자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대외무역법 제4조는 무역진흥을 위한 대외홍보, 전시 등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하여 전시회와 글로벌기술컨설팅은 그 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제외교는 '13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KOTRA 추진이 결정됨

- 해외전시회 사업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사업 지원과 연계되어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 10조에 규정된 주요사업으로 전시회, 글로벌기술컨설팅이 포함되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중요함

○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심으로 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는 국정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됨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국정과제 40번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과 연관되고 경제사절단 파견지원은 국정과제 99번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 광범위 하나 직접적 수혜자는 일부로 한정됨

- 직접수혜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임
- 간접수혜자로는 관련 기관이 창출한 경제적 외부효과를 받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비교적 넓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수출경쟁력강화지원의 내역 사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확대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를 관리하고 있음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글로벌 기술컨설팅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 참가기업 수 및 프로젝트 계약 추진액도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17년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외교 추진이 부진함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연도별 성과지표로서 연도별 성과지표로서 수출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이용기업 수출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를 통해 경제외교 후속지원 성약건수, 신시장 개척 기업 수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그 목표치를 충실하게 달성한다고 보임

- 참가 기업수('16년 728개→'17년 475개), 계약추진액('16년 976백만달러→'17년 341백만달러)은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7년도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정상외교 추진이 어려운 점에 기인하였음
- 그러나 일부 전시회의 경우 계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참가 규모 및 계약실적이 감소. 지원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바우처 사업 등에 대한 예산 구조조정을 하였음(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 2017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 보고서)
- 해외전시회 지원지침을 개정('18.8.7)하여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성과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해외전시회는 지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지침 제 9조)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상세 자료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나도 판단됨

- 각 사업별로 성과와 연동되어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나 일부 내역사업에는 성과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미흡함

- 글로벌기술컨설팅 사업의 경우 국제공동기술개발과제 도출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나 이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여 민간이 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은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부처 및 국가 부역진흥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사법에 근거하여 세계적으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해외전시회 수행에 적합함
-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므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확대하는 지원사업은 그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그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사업이 폐지 될 경우 진행 중인 수출예정 중소 및 중견기업의 손실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며 그간 지원되었던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활용이 떨어져 재정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
- 사업이 폐지 될 경우 경제외교의 동력이 약화되며 수혜를 받았던 신시장 수출 등의 손실로 귀착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사업과 유사·중복의 여지가 없어 보임

-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유관기관의 유사중복사업 조정안에 대해 매년 협의 하게되어있음
- 글로벌기술컨설팅은 해외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국내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과는 협력파트너 및 수출시장 타기팅이라는 측면에서 차별된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으며 보조금 중 사업비가 대부임

- 세부사업비용은 약 35,585백만원으로, 해외전시회(단체) 21,145백만원, 해외전시회(개별) 9,120백만원,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 3,325백만원, 글로벌기술컨설팅 1,995백만원으로 구성됨

○ 전시회는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를 통해 정해진 보조율이 있으며 글로벌 기술컨설팅도 R&D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고 있음. 내역사업별로도 보조율이 각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비교적 재정규모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해외전시회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50%, 글로벌기술컨설팅사업은 25%정도로 매칭하여 지원함

- 다만 전시회 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재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 확대로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음'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공모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이 보조사업을 수행함

- 해외전시회 수행을 위해서는 해외인프라가 필수적이며, 기술컨설팅 사업은 관련 전문성이 필수적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가의 무역 및 투자진흥을 위해 설립 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해외무역관을 인프라로 보유하고 있어 보조사업에 적합한 사업자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가보조금 이외에도 자체수입이 있으므로 단체의 자부담 능력,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등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중임

- 이월시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명시함
- 외부 회계법인의 독립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며, 회계감사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공기관이므로 정산보고서는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신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전시회(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수출경쟁력지원 사업은 외부 회계법인의 독립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며, 회계감사 결과는 산업통장사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국회결산 보고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후 관리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통제를 받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수출경쟁력지원 사업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감사, 독립회계감사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음

- 국회결산 보고 및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통제됨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사례가 없었으며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다고 보임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은 인정되며 보조금지원의 성과를 비교적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로서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이용기업 수출액, 경제외교 후속지원 성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임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긴 하나 일부 지표의 경우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항목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의 관리방식 변경이 필요함

- 전시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해외전시회는 그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별로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충실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소 및 중견기업은 자체 재원능력이 상이하기 하고 지원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수출지원기반활용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9.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9.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해당 사업은 정상추진 사업으로 평가함<br>·해당 사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 구조를 감안했을 때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관련한 법적 근거도 명확한 것으로 평가함<br>·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누적되지 않았으나 현재의 수준에서는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바우처 방식의 사업도 사업수행기업 및 기관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편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함<br>·공모를 통한 사업수행기업 및 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이 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은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대외무역법> 제4조와 제8조는 각각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홍보, 전시, 연수, 상담 등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은 제10조와 제13조를 통하여 국가가 공사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내역 사업은 법률에 규정된 무역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해당 사업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구조에서 무역진흥, 해외투자진출, 해외시장 조사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 고부가가치 신산업 발굴 등의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함

○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원을 받는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판단되고 2019년 전시회(단체/개별) 예산 이관을 감안한다면 수혜기업의 수도 꾸준히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
| 사업참가기업 수(개사) | 7,503 | 7,598 | 5,570* | - |
| 수행기관 수(개사) | 555 | 932 | 1,200 | - |

-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등 간접수혜가 국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사업은 통합지원사업과 개별지원사업을 내역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통합지원사업은 ① 수출첫걸음 지원, ② 월드챔프 육성, ③ 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 ④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⑤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으로, 개별지원사업은 해외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내역사업별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예산설명서를 통해 사업 전체의 성과지표로 사업 이용기업 수출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이를 달성하였음

| 성과지표 | 구분 | '16 | '17 | '18 | '19 |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이용기업 수출액(백만달러) | 목표 | - | 5,238 | 5,345 | 5,537 |
| | 실적 | - | 5,281 | 집계중 | - |
| | 달성도 | - | 101% | - | - |

○ 수출지원기반활용 통합지원사업은 '수출바우처' 형태를 활용하여 급변하는 수출환경과 수출기업의 다양한 지원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목적 달성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의 경제구조를 감안하였을 때 해당 사업은 단기성 사업이 아닌 국가 발전전략을 지원하는 장기 지속 사업으로 국가 경제상황 및 발전전략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됨

- 사업의 지원형태로서 바우처 사업은 관리기관 - 운영기관 - 수행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 보조금 관리, 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함

○ 사업 방식과는 별개로 수출 장려 혹은 지원을 위한 유사 및 중복사업 존재의 가능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함

- 해당 사업은 내역 사업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과 수출바우처라는 지원형태는 동일하나 지원대상 기업 및 타겟 시장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평가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추계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단위: 백만원)

| 중기 재정계획 | '17 | '18 | '19 | '20 | '21 | '22 |
|---|---|---|---|---|---|---|
| '17~'21 | 63,815 | 62,715 | 62,715 | 62,715 | 62,715 | |
| '18~'22 | | 64,573 | 56,373 | 66,510 | 66,510 | 66,510 |

- 해당 사업 전체의 재정소요액 범위에서 내역사업의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내역사업별로 국고보조율이 설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수혜기업의 자체부담율이 30~50% 수준인데 이는 수혜기업의 사업추진의지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업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신규채용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가점 부여를 통해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수혜대상을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관련 법률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평가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자체적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의 선정 및 교부절차를 적절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련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역정책관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사업별 진행에 대한 상시 협의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또한 보조사업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은 외부 회계법인의 독립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회계감사 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는 등 집행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문제의 발생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감사원의 공공감사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감사규정 및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기본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독립 회계감사, 국회 결산 보고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해당 사업의 관리를 위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중재위원회 규정,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규정, 바우처 정산 및 대금지급 규정, 바우처 잔액처리 규정 등을 두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11조의3에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관리기관·운영기관 전·현직 임직원을 배제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결과 검증 및 정산을 제3자를 통해서 수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대폭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함

-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부정수급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 구조를 감안했을 때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관련한 법적 근거도 명확한 것으로 평가함

- 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누적되지 않았으나 현재의 수준에서는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바우처 방식의 사업도 사업수행기업 및 기관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편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함
-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기업 및 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이 됨

###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필요성, 법적 근거, 사업의 현재 성과,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 추진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

- 2017년 사업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2.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0.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2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부의 8대 핵심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상추진 필요<br>·다만, 본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이·불용액 규모 및 반납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br>·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노력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br>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br>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br>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br>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br>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 본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의 제4호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은 민간보조로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을 명시하고 있음으로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등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본 사업은 국정과제 제37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과도 연계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설비를 설치하는 소비자(민간, 지자체)이나 간접적으로는 수혜자 셀, 모듈 등 관련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등 산업계임

<연도별 수혜자 현황>

| 세부사업명 | 2016 | 2017 | 2018 | 계 |
|---|---|---|---|---|
| 주택지원(가구수) | 27,448 | 42,955 | 116,615 | 187,018 |
| 건물지원(개소수) | 534 | 457 | 959 | 1,950 |
| 융복합지원(개소수) | 1,765 | 1,483 | 8,507 | 11,755 |
| 지역지원(사업수) | 328 | 304 | 386 | 1,018 |
| 계 | 30,075 | 45,199 | 126,467 | 201,74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설치대상에 따른 특수성(용량, 소유주체)을 감안하여 다양한 내역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지원 사업, 주거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신규개발 기술의 시범보급을 위해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건물지원 사업,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지역지원 사업, 에너지원, 사업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간 융합사업과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 복합사업에 지원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별로 보급대상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보급지원사업 설치대상 분류>

| 세부내역 | 설치대상 |
|---|---|
| 주택지원 | 민간주택·공동주택 등 |
| 건물지원 | 주택이외의 민간 건물 |
| 융복합지원 | 신재생에너지원의 융합, 구역복합사업 지원 |
| 지역지원 | 지자체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

○ 보조사업은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치의 도전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성과지표 달성도>

| 성과지표 | 구분 | '16 | '17 | '18 |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천toe) | 목표 | 21.5 | 21.3 | 46.4 |
| | 실적 | 26.2 | 21.9 | 51.8 |
| | 달성도 | 121.9 | 102.8 | 111.6 |
|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보급실적(호) | 목표 | 2,096 | 12,271 | 37,511 |
| | 실적 | 17,426 | 36,300 | 96,147 |
| | 달성도 | 831.4 | 295.8 | 256.3 |

- 다만, 본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이·불용액이 17년 기준으로 각각 1.3%, 6.9%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최근 3년간 이·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5 | '16 | '17 |
|---|---|---|---|
| 불 용 | 348 | 378 | 1,283 |
| (비율 %) | (0.3) | (0.33) | (1.3) |
| 이 월 | 33,575 | 18,859 | 6,887 |
| (비율 %) | (28.3) | (17.0) | (6.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유망산업이나 아직 초기 투자비가 과도하여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통해 수요처(신청자)의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향상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을 통한 관련 산업육성(제조, 설치 등)을 위하여 일정부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이후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사업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과 통합 운영하고 있음

○ 사업신청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고려할 경우 사업의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수요 조사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을 것임

<최근 3년간 경쟁률>

| 사업명 | 기준 | | 2016 | 2017 | 2018 | 계 |
|---|---|---|---|---|---|---|
| 건물 | 건수 | 신청 | 646 | 1,058 | 1,070 | 2,774 |
| | | 선정 | 611 | 453 | 1,050 | 2,114 |
| | | 경쟁률 | 1.05 | 2.33 | 1.02 | 1.31 |
| | 금액 (백만원) | 신청 | 29,970 | 50,684 | 40,337 | 120,991 |
| | | 선정 | 21,928 | 21,999 | 34,903 | 78,830 |
| | | 경쟁률 | 1.36 | 2.3 | 1.15 | 1.53 |
| 융복합 | 사업건수 | 신청 | 26 | 37 | 111 | 174 |
| | | 선정 | 23 | 21 | 67 | 111 |
| | | 경쟁률 | 1.61 | 1.76 | 1.66 | 1.57 |
| | 금액 (백만원) | 신청 | 41,632 | 44,786 | 130,200 | 216,618 |
| | | 선정 | 21,000 | 15,000 | 57,500 | 93,500 |
| | | 경쟁률 | 1.98 | 2.99 | 2.26 | 2.32 |
| 지역지원 | 건수 | 신청 | 340 | 371 | 605 | 1,316 |
| | | 선정 | 324 | 301 | 386 | 1,011 |
| | | 경쟁률 | 1.05 | 1.23 | 1.57 | 1.30 |
| | 금액 (백만원) | 신청 | 29,751 | 36,158 | 59,400 | 125,309 |
| | | 선정 | 21,212 | 21,000 | 26,000 | 68,212 |
| | | 경쟁률 | 1.40 | 1.72 | 2.28 | 1.84 |

○ 사업 폐지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기업의 부품시장, 시공기업의 시장 및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며, 또한 자가용 부문의 대국민 참여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우려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정과제와 연계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목표상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전년도 사업신청현황, 설비가격, 보조율(50%이내) 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실 집행기관의 이·불용액 등에 대한 관리는 필요함

<최근 3년간 반납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5 | 2016 | 2017 | 합계 |
|---|---|---|---|---|
| 지역지원(지자체)<br>보조금 반납액<br>(발생율) | 1,092 | 1,378 | 940 | 3,410<br>(5.1%) |
| 융복합지원(민간사업자)<br>보조금 반납액<br>(발생율) | 187 | 2.7 | 15 | 204.7<br>(0.4%) |

○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보조금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원단가 산정하고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 '17년도 자가용 분야 계획 수립시 '30년까지 수요, 설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기재부에서 확정한 중기계획은 2,000억으로 고정되어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3년간 약 10만톤의 원유 절감 및 303천톤CO2 저감효과로 ⑨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은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에 의해 공모, 사업자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보조금 교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보조사업자 선정은 에너지원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신청사업을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사업비 교부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2차에 나누어 집행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는 공고, 접수, 선정(필요시 평가) 및 보조금 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8.1.13)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이·불용액, 반납액 등을 고려한 집행 점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점검 실시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던 바, 집행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에 사업비 정산, 설비의 사후관리, 설비의 처분제한, 보조금 환수, 사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사업의 지연 등으로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불용액의 규모가 '17년 기준으로 각각 1.3%, 6.9%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은 없었으나 '14년에 부정수급이 발견되어 6개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등을 보다 철저히 하여 향후에도 부정수급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임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에 의거하여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정부의 8대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상추진이 필요하나, 본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이·불용액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3-2 정책 제언

○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유망산업이나 아직 초기 투자비가 과도하여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통해 수요처(신청자)의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향상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을 통한 관련 산업육성(제조, 설치 등)을 위하여 일정부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다만,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은 없었으나 '14년에 부정수급이 발견되어 6개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등을 보다 철저히 하여 향후에도 부정수급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안전제도기반조성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1.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사업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역사업 들의 폐지 혹은 축소하는 한편 홍보 및 교육, 정보관리 등에 집중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약 5%(1억 원)의 예산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br>·시장상황 변화에 맞는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내용이나 '제품안전의 날', '제품안전 정책포럼',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등의 내역사업은 상위목표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됨<br>·예산투입의 결과로서의 산출지표가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세부사업의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의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내용을 보다 객관적·실증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br>·사업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역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일부 내역사업의 폐지 등을 통해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안전기준정비 및 정책개발, 제품안전관리제도 기반조성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제품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수행방식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제품안전기본법」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유통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은 아님

-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및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에 사업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음

- 다만,「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제품안전관리제도 연구, 개발 및 교육, 안전기준 관련 자료 발간 및 보급, 불법 및 불량제품 조사 등)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규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 제품안전 정보관리,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사업 등의 사업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과 관련 법령의 목적과 연계가 분명하나 의무규정은 아님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시장상황 변화에 맞는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됨

-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판매업자, 소비자 등 그 대상이 다양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소비자 제품안전 인식 제고 및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정책 공유 필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내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 특히 국내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이 제품안전 실무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본 사업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특성을 갖고 있음

- 다만,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 제품안전 정보관리를 제외한 내역사업의 경우 상위목표에 대한 기여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고 사업수행방식의 효율성의 제고를 통해 안전의식 확산 관련 정책 수립·집행·문화 확산 관련하여 전 국민으로의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설계가 요구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시장상황 변화에 맞는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내용이나 ‘제품안전의 날’, ‘제품안전 정책포럼’,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등의 내역사업은 상위목표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명확하며 내역 사업 간 연계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구성적 타당성이 낮은 편임

- 사업의 성과로 제시한 소비자의 안전의식 변화 및 관심(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자수)의 증가도 보조사업의 직접적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해당 사업은 상위목표를 달성하고자 구성된 개별 내역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체계 및 수혜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다만 구성적 타당성이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목표수준의 달성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주요 성과지표로 제품안전정보센터 일평균 접속자 수, 교육 횟수 및 대상 인원수, DB구축 및 활용 건수, 포럼 개최 횟수 등 투입 및 산출의 측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세부사업의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내역사업이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여한 내용을 보다 객관적·실증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

-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 제품안전 정보관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성과가 단순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보조사업을 통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라는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제품안전의 날', '제품안전 정책포럼',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등의 내역사업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같은 맥락에서,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 제품안전 정보관리 등에 보조사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경기악화로 기업의 제품안전에 대한 투자감소, 소비자의 저가 불법·불량 제품 구매 등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 의식제고 및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사업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만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은 아님

-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의 경우 제품안전 관리 및 소비자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기업이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업 혹은 협회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운영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함

- 다만,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의 주체를 기업으로 변경하고 의무화할 경우, 영세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점은 감안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사업의 효과성 유무와는 별개로 사업제품안전 정보관리, 제품안전 정책포럼,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등이 정부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기반조성 활동에 해당함

○ 시장상황 변화에 맞는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리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사업과 일부 중복의 소지가 있으나 제품안전에 관한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고유성이 인정됨

○ 최근 저가 수입제품 증가, 온라인 유통규모 확대,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수준 향상 등으로 제품안전과 관련된 불법·불량제품 단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 다만, 사업의 구성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개별 내역사업의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 및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보조사업의 추진의 시급성은 제한적임

○ 해당 사업 폐지 시 최근 중국산 저가수입제품과 온라인유통시장 증대 등으로 인해 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사고 증대가 우려됨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전적 예방정책인 제품안전홍보, 교육, 행사 등이 폐지될 경우 잠재적인 피해 및 추후 추가적인 인력·예산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 및 내역 사업 간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보조사업의 현재 예산규모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음. 실제 6개 내역 사업 경비로는 약 77%가 사용되고, 보조사업 유지를 위한 행정비용으로는 참여 전담인력 3명 인건비 약 21%와 운영비 약 2% 등으로 구성된 점을 볼 때 보조금의 규모 및 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악화로 기업의 제품안전에 대한 투자감소, 소비자의 저가 불법·불량 제품 구매 가 늘어나는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 증가의 필요성이 일부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홍보 및 교육, 정보관리 등의 내역사업에 상대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증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보조사업 이외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반적인 관리활동 및 기반조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사업비는 비교적 소규모이며 사업비의 구성에도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효과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내역 사업을 폐지 혹은 축소할 경우 보조금 축소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내역사업의 재검토와 목표 대비 사업비 증액의 적정성 검토, 사업수행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약 10%의 예산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일정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적절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선정 및 교부절차 등 보조사업의 추진절차를 적절히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관리대행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전, 매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교부하고, 중간점검 후 사업의 진행여건에 따라 최종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의 교부절차를 운용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규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등 제품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로 적격함

-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 등 생활안전 강화를 위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 소통 확대, 제품안전 정보공유, 제품안전 기술개발, 불법·불량제품 단속 등 국가에서 위탁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을 위한 규정 및 절차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포함시키고 있음

- 매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음(동 법 제16조)

-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①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②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③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조사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있음(동 법 제17조)

- 보조금 교부 시에는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함께 교부하고 있으며(동 법 제18조),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결정 내용(교부조건 포함)을 문서로 즉시 신청자에 통지하고 있음(동 법 제19조)

○ 해당 사업은 보조금 관리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품안전분야 보조금 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평가단”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보조금 사업의 단순 집행실적 확인 위주 관리·감독을 개선하여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수행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교부전 평가, 사업의 중간점검, 수시점검 및 완료보고 등에 맞춰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16년도부터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를 받아 사후관리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10에 의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 시행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정보 등을 e나라도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자산취득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없으므로 적용 대상은 아님

○ 보조사업 교부 전 평가, 사업의 중간점검, 수시점검 및 완료보고 등에 맞춰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에 배정하지 않으며 평가에 따라 년 2회에 걸쳐 차등 지급하고 있음

- ‘16년도부터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한 후, 정보공시 하고 있음

- 저탄소 인증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 없음

○ 보조금 관리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품안전분야 보조금 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과반수 이상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 운영위원회를”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간 부정수급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3조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여 관리활동을 제도화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규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 제품안전 정보관리,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사업 등의 사업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과 관련 법령의 목적과 연계가 분명하나 의무규정은 아니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소비자 제품안전 인식 제고 및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정책 공유 필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내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 특히 국내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이 제품안전 실무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해당 사업은 본 사업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특성을 갖고 있음

○ 시장상황 변화에 맞는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내용이나 ‘제품안전의 날’, ‘제품안전 정책포럼’,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등의 내역사업은 상위목표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명확하며 내역 사업 간 연계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구성적 타당성이 낮은 편임

- 목표수준의 달성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주요 성과지표로 제품안전정보센터 일평균 접속자 수, 교육 횟수 및 대상 인원수, DB구축 및 활용 건수, 포럼 개최 횟수 등 투입 및 산출의 측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보조사업을 통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라는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인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 제품안전 정보관리 등에 보조사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악화로 기업의 제품안전에 대한 투자감소, 소비자의 저가 불법·불량 제품 구매 등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 의식제고 및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사업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만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은 아님

- 다만, 최근 저가 수입제품 증가, 온라인 유통규모 확대,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수준 향상 등으로 제품안전과 관련된 불법·불량제품 단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 해당 사업 폐지 시 최근 중국산 저가수입제품과 온라인유통시장 증대 등으로 인해 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사고 증대가 우려됨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전적 예방정책인 제품안전홍보, 교육, 행사 등이 폐지될 경우 잠재적인 피해 및 추후 추가적인 인력·예산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본 보조사업의 현재 예산규모는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역사업 들의 폐지 혹은 축소하는 한편 홍보 및 교육, 정보관리 등에 집중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내역 사업 중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 제품안전 정보관리를 제외한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및 수혜범위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보조사업의 내용에서 제외하거나 수행방식의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목표수준의 달성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주요 성과지표로 제품안전정보센터 일평균 접속자 수, 교육 횟수 및 대상 인원수, DB구축 및 활용 건수, 포럼 개최 횟수 등 투입 및 산출의 측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개별 내역사업이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여한 내용을 보다 객관적·실증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

-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 제품안전 정보관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성과가 단순한 실적 건수 등 활동지표로만 제시된 점은 명확한 한계이며, 활동의 질도 함께 측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인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품안전 홍보 및 교육 사업, 제품안전 정보관리 등에 보조사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악화로 기업의 제품안전에 대한 투자감소, 소비자의 저가 불법·불량 제품 구매 가 늘어나는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 증가의 필요성이 일부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홍보 및 교육, 정보관리 등에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증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보조사업 이외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관리활동 및 기반조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에너지산업개발협력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0.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O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을 판정함.<br>·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동 사업을 추진·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나 이 비용이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진흥원은 해당 비용들을 각 프로그램의 행정비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음.이는 프로그램 추진 기업과 진흥원이 사용하는 비용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이 사업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의 정확한 파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저해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추진비를 내역사업으로 반영하는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br>·2017년 필리핀 배전승압 지원 사업 정산결과 1.55억원에 달하는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였음. 향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부가세 환급 규정 등 사업비 집행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br>·사업의 목표 달성도 측정 지표를 현행 만족도 조사에서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실가동률, 현지 에너지 수급 기여도, 후속 프로젝트 수주 여부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할 필요가 있음.<br>·다양한 기업이 동 사업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업과 경험은 없지만 역량을 갖춘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해당 부처는 동 사업의 법적근거로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11호와 시행령 제34조 제6호를 제시하고 있음.

- 법 49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를 나열하고 있는데 11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동 법에서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기타 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 34조 제6호는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기금 지원 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동 사업의 법적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 사업을 특정하여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음.

○ 법적 근거의 구체성 부족은 또 다른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와 그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동 법령은 산업통상산업부가 개발협력을 ODA사업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SDGs)의 이행노력 본격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제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만큼 지원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어 ODA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임.

- 다양한 ODA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ODA는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부상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개발협력의 적극적 추진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개발시장 진출 및 선점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됨.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대통령공약,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에너지개발협력의 중요성을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내역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해당 부처는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를 사업대상지 주민, 간접 수혜자를 해당 ODA사업과 연계하여 대상 국가에 진출하려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관련 산업단체로 설명하고 있음. 특히 직접 수혜자 규모가 2018년 기준 118만명 수준으로 수혜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함.

- 광범위한 수혜자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으로서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책임을 감안한다면 기여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현지 에너지 시설 설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임.

- 목표치는 만족도 조사 점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실 가동률, 현지 에너지 수급 기여도, 후속 프로젝트 수주 여부 등이 구체적 목표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임.

○ 내역사업인 프로젝트와 기간 등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각 프로젝트들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동 사업이 2017년에 시작된 바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음. 만족도 조사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고, 후속 사업 수주 실적도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주요국의 ODA 사업들이 사후 관리 부족으로 현지에서 비판받고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바 적절한 사후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목적은 무상원조를 통한 우리 에너지산업의 개도국 진출 기회 확대임. 무상원조를 보조사업이 아니고 다른 방안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동 사업의 목표가 무상원조 프로젝트가 해당 산업 대상국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참여기업들이 후속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기획단계부터 외교부·국조실 등의 중복성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수원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타 공여국의 기 지원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개도국의 경제개발 확대와 파리협정의 출범으로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개발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사업이 폐지될 경우 재정적 손실이 야기될 것 같지는 않으나 대 개도국 관계에서 신뢰 상실로 국익에 손상이 올 것으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각 프로젝트별로 예산은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동 사업을 추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선정·평가 등 관리비용과  기업 현지진출 연계 지원, 현지 정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전문가 활용, 출장비 등 추진비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항목이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추진비를 내역사업으로 반영하는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

○ 동 사업을 통해 수행기관에서 개도국 무상원조 사업 관리 및 행정 등 양질의 일자리 18명을 창출 ('18.8월말 기준)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국제개발협력 및 에너지 산업 분야로서 해외 커뮤니케이션 및 개도국 네트워크 확보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하겠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사업공고) 및 제15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등 보조사업자의 공모를 위한 절차를 마련, 세부적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은 공고문에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후 30일 이상 접수하는 등 통합관리지침의 보조사업자 선정절차를 준수하였음.

○ 또한 보조사업자 제안서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부조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함.

○ 타 공여기관 및 공여국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2년 전 기획 단계에서 수원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의 협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기 지원 사업 및 향후 2~3년 이내에 지원이 예상되는 사업까지 검토하는 등 중복 유사성 방지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엿보임.

○ 또한, 사업 추진 1년 전 예산심의 단계에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상원조사업간 중복방지 및 조정·통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공모 후 제안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최적의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 평가지표에 유사사업 수행경험, 참여인력의 전문성, 해당 개도국과의 네트워크 보유 등 사업 수행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종합평점 산정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우대 가점으로 산정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을 통해서 ①사업 공고(공개공모), ②사업자 선정(외부전문가 선정평가 위원회), ③보조금 집행 교육(외부 회계법인, 법무법인 활용), ④연차 평가(사업성과,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⑤회계정산(매년, 외부 전문회계기관), ⑥보조금 관리(e-나라도움 활용) 등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보조금 정산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보조사업 집행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지침, 부정집행 사례, e-나라도움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고 있음.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경과, 목표달성 여부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함.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함. 보조금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및 외부회계법인의 검증에 따라, 잔액 및 불인정 금액과 이자의 반환 등 사후관리를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음.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보조금의 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계정의 사용 및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조달청을 통한 기자재 조달 등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철저한 집행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필리핀 배전승압 지원 사업 정산결과 155백만원에 달하는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는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액 불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향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부가세 환급 규정 등 사업비 집행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및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잔액 및 불인정 금액과 이자의 반환 등 사후관리를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 및 부정수급의심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통해 개선조치 및 보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제34조(부정수급 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법적 근거가 포괄적이고 간접적일 뿐 아니라 내역사업과의 연계성도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타당성은 갖추고 있다고 하겠음.

○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동 사업을 추진·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나 이 비용이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추진비를 내역사업으로 반영하는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2017년 필리핀 배전승압 지원 사업 정산결과 155백만원에 달하는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였고, 예산 교부 전에 인지가 가능했던 사유로 보임. 불필요한 예산이 교부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만족도 조사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실 가동률, 현지 에너지 수급 기여도, 후속 프로젝트 수주 여부 등으로 지표를 구체화·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ODA 사업들이 사후 관리 부족으로 현지에서 비판받고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바 적절한 사후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 동 사업은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에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ODA사업 참여를 통해 향후 개도국 에너지 개발시장 진출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동 사업의 또 다른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각 프로그램을 보면 기술,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업과 경험은 없지만 역량을 갖춘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에너지진단보조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4.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7.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7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2.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2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단계적 폐지와 사업방식 변경을 판정함.<br>·2016년 보조금 사업 연장 평가 의견, 즉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와 다른 의견을 낼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 하여 직전 평가의견을 유지함.<br>·2018년 진단보조 지원 업체 중 8%는 천억원대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며 전체 87%가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들에게 진단보조 500만원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보조금 지급 대상 요건을 현재보다 더욱 구체화하여 매출액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추가하는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br>·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진단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30%까지 하락하였음. 영세한 중소기업의 의무적 에너지 진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지속되는 2021년까지 현재의 보조금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에너지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과 지원 대상기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보조금 지원이 의무사항은 아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제1항은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으로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으로 정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기후변화 대응과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특히 산업계의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우리 상황에서 자체적인 감축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도 부합함.

○ 2007년 동 사업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약 1,640개의 중소기업에 217억원의 진단비용을 지원하였음.

- 직접적 수혜자 규모에서 수혜의 범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만약 동 사업이 에너지 수요관리 즉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큰 기여를 하였다면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로 수혜범위가 확대될 수 있겠으나 동 사업이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임.

- 내역사업은 의무진단보조와 공통제조공정 에너지진단 보조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 대상 기업의 요건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2017년까지 진단 실시 절감 잠재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18년부터 개선이행 절감량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음. 2018년 15,200toe를 에너지 사용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목표가 에너지 사용 절감 잠재량의 발굴을 통한 실제 감축의 달성임.

- 2015년 진단결과 발굴된 잠재량은 32,759toe였음. 이 중 2016년에 11천toe, 2017년에 2.9천toe, 2018년 1.5천toe를 감축하여 47% 정도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현재 발굴된 감축 잠재량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매년 감축량이 발생하고 있어 목표 달성도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법으로 의무화된 에너지진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 사용 절감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의무진단 보조의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은 평균 500만원 수준임. 2018년 진단보조 지원 업체 중 8%는 천억원대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며 전체 87%가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들에게 진단보조 500만원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에너지진단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한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 등 다른 정책수단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절감이라는 동 사업의 최종 목표가 에너지 진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특히 기업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에너지진단 비용보다 에너지 가격 체계 등 여타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기업 당 5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임.

○ 보조금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2021년까지 지속한다면 보조금 지급 대상 요건을 현재보다 더욱 구체화하여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중소기업, 2,000~10,000 toe 에너지 사용,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매출액 등 재무상황에 관련된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

○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절감의 목적은 기업의 에너지 비용 감소에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해 에너지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동 사업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에너지공단과 뿌리산업진흥센터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에 의해 설립되었음.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의 추진이 그 설립 목적이고 해당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기관인 만큼 보조사업자로서 공인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4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 규정에 따라 국가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최종 집행 후 정산단계를 거치고 있음.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2017-11호) 제8조(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절차 등)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8조(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 절차 등) 제7항에 따라 진단보고서 평가, 현장점검 결과, 고객만족도 조사,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계획서 평가, 진단일정 사전통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집행함.

- 보고서 평가 및 현장점검자 풀은 매년 구성되며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4호)에 따름.

○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완료 시 발생하는 수익(이자)을 국가에 반환토록 조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에너지진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장점검, 진단보고서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2017-11호) 제8조(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절차 등)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진단보고서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다면적 평가기준을 통해 지원금 일부를 차등 지급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진단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한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 등 다른 정책수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2016년 보조금 사업 연장 평가결과에 따른 기존의 계획, 즉 2022년 폐지 의견을 유지하되 그 때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 요건을 현재보다 더욱 구체화하여 매출액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추가하는 사업병식 변경을 권고함.

○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진단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30%까지 하락하였음. 영세한 중소기업의 의무적 에너지 진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지속되는 2021년까지 현재의 보조금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에너지진단을 법으로 의무화시켰으면 이것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 등 벌칙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진단 이후 감축방안의 실행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7.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6.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사업의 관리운영 미흡.<br>·본 사업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저소득 가구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함. 그러나 부정,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사업현장관리와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업관리비 비율이 매우 적으며, 따라서 현장점검 등을 통한 부실시공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br>·사업관리비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이외에 기금이나 지자체, 민간 참여방식을 통한 보조비율 조정 등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에너지법 제4조 5항, 제16조의 2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명시됨

□ 에너지법
제 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2. 30.]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저소득 가구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함

○ 국정과제 37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의 실천과제인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내용에 부합됨

○ 본 사업은 전국의 에너지 빈곤층 가운데 매년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에너지 누출을 막고 국가전체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통해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로의 교체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시공지원과 물품지원을 통해 시공 후 연간 23%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나타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국가단위로 수행될 에너지복지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보장위원회를 통해 관련 유사중복사업의 연계와 조정이 완료되어 2015년부터 산업부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시공지원과 물품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균형적으로 지원하되, 사업관리비 지원 부담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민간의 자부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년 3만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지원단가 200만원 한도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관리비 등의 부족으로 부정,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사업현장관리와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바, 현장점검 등의 사업관리비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으로 하여 비용을 현실화하여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수혜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자체를 통해 추천받아 진단을 거쳐 최종 선정하는데, 특히 재정자립도와 사업성이 낮고 추천 가구수가 적은 지자체와 집중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단위의 균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보조사업자인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부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 고시함

- 산업부 고시 제2017-24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17. 3월 제정)에 근거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이 보조금법에 따른 절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적절한 집행을 하도록 점검함

- 상시 모니터링 점검, 문제발생시 즉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집행 점검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법에 따른 절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정산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부실시공 점검 및 관리와 관련해서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물량·견적내역 검토 및 시공 전·중·후 사진 등을 통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공중 또는 시공완료 후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사업관리비의 부족으로 부실시공 가능성은 여전함

- 사업관리비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이외에 기금이나 지자체, 민간 참여방식을 통한 보조비율 조정 등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관련 법적인 근거나 사업의 내용이 매우 명확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부정,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사업현장관리와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업관리비 비율이 매우 적으며, 따라서 현장점검 등을 통한 부실시공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됨

## 3-2 정책 제언

○ 적절하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이외에 기금이나 지자체, 민간 참여방식을 통한 보조비율 조정 등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전기차 산업기반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58.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34.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2.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4.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즉시 폐지를 판정함.<br>·본 사업은 전기차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적 수혜 대상으로 파악되나 그 규모가 연간 3~5개 업체로 매우 제한적이며, 2차적 수혜자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움.<br>·본 사업이 근거하는「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차충전서비스제공 사업자 96개 중 실제 해외진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은 30~40개에 불과함. 이에 따라 선정되는 기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br>·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가 원활해지고 있고 또한 수출기업에게 해외시장 타당성 조사나 바이어 상담회 등은 핵심 비즈니스 활동인 만큼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해당 기업이 당연히 수행하게 될 것인 바 폐지해도 무방할 것임.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전기사업법」,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남

- 「전기사업법」 제 49조(기금의 사용) 제2항 및 제 10항에 의거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이 가능한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지능형 전력망법」 제 14조(투자비용의 지원) 제 2항의 1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의 공공성, 안정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사업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근거가 존재함.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의 3(지능형 전력망 기술)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적시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은 본 사업과 대체적으로 일치함.

○ 본 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시행규칙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근거가 되지만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과 기업을 홍보하여 지원하여 해외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본 사업의 목적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지원 등이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움.

-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가 원활해지고 있고또한 수출기업에게 해외시장 타당성 조사나 바이어 상담회 등은 핵심 비즈니스 활동인 만큼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해당 기업이 당연히 수행하게 될 것임.

○ 본 사업에 선정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직접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매년 3~5개 업체로 제한적이며, 2차적 수혜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직접적 수혜자인 선정 기업들이 중심이 된 홍보활동이나 Knowledge Sharing 행사가 없다면 2차적 수혜자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2018년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1) 전기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 2018 EV 수출상담회 중 4개 기업이 중복 선정되는 결과가 나타남. 해당 분야의 해외진출 유망기업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와 평가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 분야 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 및 제주 국제전기차 엑스포 개최(2017년), 글로벌 EV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EV 수출상담회(2018년)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업의 목표에 있어서 기업의 수주실적을 제시하는 등 수치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조사업의 내용은 명확한 편으로 여겨짐.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2016~2017년 지원된 6개 과제 중 수출실적이 나타난 것은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 계약체결(총 190억원)이 유일함. 또한 2018년 3건의 과제 중 룩셈부르크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수주(150억원) 실적을 올림. 다른 과제는 협약(MOU) 체결이나 계약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선정된 과제가 후속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에 지원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사업의 경우, 접수한 6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2017년의 경우 접수한 4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선정되는 등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 해외진출타당성 조사에 대한 수요가 낮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선정된 업체 중 1개 업체는 2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아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목적은 정부의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회 등 민간의 지원 혹은 기업 자체 수행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짐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해외진출타당성 조사에 대한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여타 사업을 발견하지 못 함.

○ 전기차 충전인프라 분야는 글로벌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시장 선점효과가 클 것임. 따라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본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감안할 때 그리 큰 기여는 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비용구조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확함.

○ 본 사업은 국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100%는 민간경상 보조로 활용함.

○ 본 사업의 보조율은 「해외진출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운영지침」 제 16조(사업비계상)에 명시된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보조금법 시행령 상 해당 기준보조율은 없음.

○ 본 사업에 대한 중기(3~6년), 장기(7년 이상) 재정소요액 추계는 되어있지 않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 부처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 국제입찰 참여 및 사업수주 지원을 통해 2018년 총 4개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부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4개의 일자리가 동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신규채용인지, 장기 일자리인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사회적 가치실현이라고 하기에 창출된 일자리 숫자가 너무 적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4조에 따른 내역 사업별 공모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해외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기관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EV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의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기업당 3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평가절차를 구비하고 있다고 여겨짐.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1호) 제 5장(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준수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사업 집행·관리·감독, 단계 집행점검 등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기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의 경우,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 회계감사, 사후관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내역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며,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조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 수혜자 선정 공고 시 지원 제외대상, 참여제한 기준 등을 명시하고, 전기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내부 운영지침에서 사업비 관리 및 환수조건을 준수하도록 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1호)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없음. 2018년 9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함.

- 선정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를 재검토하며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음. 집행단계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여부와 보조금 집행기준, 교부목적, 교부조건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음. 정산단계에서는 보조금 정산서 등 적정 서류의 구비여부를 살펴보았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시행규칙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근거가 되지만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본 사업은 전기차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적 수혜대상으로 파악되나 그 규모가 연간 3~5개 업체로 매우 제한적이며, 2차적 수혜자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움.

- 본 사업이 근거하는「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차충전서비스제공 사업자 96개 중 실제 해외진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은 30~40개에 불과함. 이에 따라 선정되는 기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

○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가 원활해지고 있고또한 수출기업에게 해외시장 타당성 조사나 바이어 상담회 등은 핵심 비즈니스 활동인 만큼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해당 기업이 당연히 수행하게 될 것인 바 폐지해도 무방할 것임.

### 3-2 정책 제언

○ 전기차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일년에 한번 개회하는 행사(글로벌 EV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EV 수출상담회)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7.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7.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을 판정함.<br>· 본 사업은 국가적 관점에서 민간 전기차 충전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br>·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다른 보급대상과 지급대상, 설치방식과 운용방식으로 지원중인 상황임. 각 부처는 유사중복성에서 차이를 주장하지만, 최종 사용자인 전기차 이용자에게는 동일한 사업으로 체험됨.<br>· 향후 환경부의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원화하여 동 사업과 통합하고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법령에 따라 구체적이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5호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에 의거하여 사업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가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 49조(기금의 사용)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이 가능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에 제 3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국정과제 34번)'을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기반 확대, 전기차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 신산업 시장을 창출하므로 국가적으로 그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지급을 통해 민간 충전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장진입을 촉진하여 급속충전시장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민간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직접적 수혜자)가 육성되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서로를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되면, 전기차 이용자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보조사업의 혜택이 전달될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전기차 사용자) 생활반경 내 접근성이 높은 편의시설(마트, 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에서 30분 이내의 급속 차량충전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
- (전기차 충전사업자) 국비 50% 보조로 초기 투자비 부담이 완화되어 전국 단위의 고효율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산이 가능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구입·설치비용의 일부(50%)를 보조 및 지원하는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이행하도록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연도별 보조사업의 주요 실적은 공용 급속충전기 보급목표의 100%를 상회하게 달성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전기차 사용자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충전기 제작·서비스사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충전기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며, 보조금 미지급시 투자 회수기간으로 최장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수익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다만 「17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에 따르면, 2018년~2020년 3개년 동안 급속충전기 600기를 공급하려 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자료 없이 200기로 축소된 바 있음.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의 수요는 상존하는 데 비해 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업 정상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

○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사업은 산업부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나뉘어져 시행되고 있음.

- 위 두 사업의 내역사업 중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인 산자부와 환경부는 두 사업이 보급 대상 및 보조금 지급 대상, 설치 방식, 사업방식이 모두 상이하여 유사중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최종 소비자 관점에서는 동일한 결과물이 도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실제 두 부처가 내용상 동일한 사업을 각각 실시하면서 충전기 설치 지역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충전기 관리에 있어 산업부의 동 사업은 충전기 소유주가 유지관리와 고장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환경부의 급속 충전기 설치사업은 환경부가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환노위 송옥주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장 등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일한 급속 충전기 보급 대수에 따른 예산 비교>

| 정부부처 | 충전기 보급대수 | 급속 충전기 성능 | 1기당 필요예산 | 총액 |
|---|---|---|---|---|
| 산자부 | 1,420기* | 50kW | 2천만원 | 284억원 |
| 환경부 | | 100kW | 5천만원 | 600억원 |

* 2019년 산자부 보급계획 220기 + 환경부 보급계획 1,200기

## 1-5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 본 사업의 보조금 규모는 산업부에서 제공한 「전기차 충전기 수익성 분석 연구자료」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었음. 보조금의 규모는 행정비용을 감안해도 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50kW 급속충전기 1기당 충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충전기 설치 비용(평균 2,330만원)과 공사비(1,333만원) 포함 총 3,66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충전기 수익 정산과 충전기 원격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제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인건비 산출에 있어서 50kW 급속충전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1인당 4,215,200원/월)의 인건비가 발생하며, 1인당 최대 충전기 관리대수는 25기 이내로 가정하였음.
- 콜센터 운영시 발생되는 인건비는 연간 14,400만원(200만원*6명(2명3교대)*12개월)로 가정함.

○ 보조율은 50%로 보조금법 제 9조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민간 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사업자(전기차 충전분야) 등록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202명의 고용을 창출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장(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요구하는 공모절차 규정, 사업자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인력, 보조금 교부기준, 절차 등을 준수하여 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음.

○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공모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한 것으로 여겨짐.

○ 사업 평가기준에 사업 준비성, 설치장소 적정성, 보급효과, 신청자 타당성, 지원조건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충전기 설치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를 운영함.
- 설치 완료시 제출된 완료보고서 검토 후 설치 확인,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교부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장(보조사업 집행관리)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별로 내부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을 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집행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및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조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구비됨.

○ 보조사업 수혜자 선정공모 시 사업공고문 및 운영지침에 사업절차, 보조금 교부절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 조건, 보조금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보조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5장(보조금 반환 및 제재) 및 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에서 요구하는 사항별로 내부 운영지침상 보조금 반환 및 제재사항, 성과활용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장(보조사업 집행관리)에 준수하여 연도별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검증결과에 대한 오류 및 누락결과, 조치결과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에 있어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는 없음.

- 다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제도 운영 결과, 건설·토목 분야의 공사비 편취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 보조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인 전기차 충전사업의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을 위한 방지대책이 각 절차마다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운영의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지원대상자 및 지역과 무관한 전문가 위주로 섭외하고, 평가위원의 공정평가·심사서약서 작성 의무화 규정을 구비함.

- 충전기 설치점검 수행을 위하여 설치현장 점검 시 토지·건물 소유주와 면담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를 거침.

- 설치 완료된 충전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기차 실사용 일반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를 구성하여 거주지역 인근의 충전소를 점검하고 월별 리포트 제출하도록 함. 즉, 제 3의 이해관계자를 통한 객관적 사업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함. 또한 온라인과 SNS를 통해 개선의견을 상시접수하고 'EV Infra'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드백 조치를 실시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적 관점에서 민간 전기차 충전시장이 자생력을 가지고 운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본 보조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제시된 법령의 내용은 본 사업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나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속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됨.

○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관련한 보조사업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다른 보급대상과 지급대상, 설치방식과 운용방식으로 지원중이며 그 유사성과 중복성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충전'이라는 행위는 동일하게 체험되므로 행정적으로 구분지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여겨짐.

○ 향후 환경부의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민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동 사업과 통합하고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 3-2 정책 제언

○ 두 개의 부처에서 보조금 지급(산업부) 혹은 민간 위탁 방식(환경부)으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통한 충전을 수행한 결과,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여 특정지역으로 충전시설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충전기 및 충전소 관리비용 역시 중복되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도 발생함. 충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2.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7.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본 보조사업은 2016년도 평가에서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지적에 대한 조치로 전략물자관리원의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하고 실시함<br>· 본 사업은 전체 사업과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 목적과 내용의 연계성이 적절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어 정상추진으로 최종 판정함<br>· 본 사업은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 확산과 수출입물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함. 내역사업명과 사업내용의 부분적으로 불일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사업의 수혜범위, 외부효과, 사업성과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연장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 노력과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시됨<br>· 사업집행의 적절성에서 해당영역의 근거와 규정,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고 증빙자료 구비도 잘 이루어져 있어 사업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 제 29조와 제 46조에 사업내용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각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외무역법 29조 및 동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있음. 이 법적 근거 내에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과 연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은 공약사업, 국정과제, 계획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제시한 부연자료에 국정과제와의 연계성과 산업부의 업무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보조 사업으로서 타당함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의 무역거래자 및 기술이전 행위자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수혜대상 기업수와 기술수출 업체를 제시하여 1차적 수혜대상자가 확인 되었으며, 전략물자 개발 및 수출·이전관련 산, 학, 연 전체가 잠재 수혜대상자라고 볼 수 있음

- 수혜범위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효과와 외부효과를 제시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의 5개 영역의 내역사업별 내용과 구체적인 수행기간 등을 제시하였음

- 각 내역사업들의 사업내용과 사업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음. 전체 사업목적과 내부사업 내용간의 연계성이 높아 적절함

- 제시한 내역사업 내용 중 '온라인 시스템 안정적 운영'사업의 사업내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음.

- 해당 내역사업명이 주는 혼란감이나 전체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사업명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실적이 목표달성에 효과적임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연대별 내역사업별 변화 추이를 측정하고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내역사업별 연도별 실적 변화를 측정하여 환류하고 있음. 환류에 대한 근거 자료도 구비한다면 사업효율성이 더 증대할 것으로 보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은 국가 간 사업으로 민간이나 지자체 사업이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적절함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의 사업  중복성은 증빙자료로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의 긴급성이나 연장 필요성은 본 사업이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무역활성화와 수출입물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사업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이나 문제점에 대한 근거자료가 타당하여 향후 지속사업이 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하고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함

- 타 국가와 한국의 현황 자료를 제시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고,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알 수 있음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은 사회적 가치실현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의 주체가 되는 전략물자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는 앞서 제시하였고 공모사업의 성격은 아니지만 본원이 사업자로서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나 교부조건 검토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음

-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관련한 증빙자료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와 단계별 집행 점검 등 집행 전반에 대한 규정은 수행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보조금 운영과 관련된 관리 지침으로 확인함

- 사업집행과 관련계획 및 집행점검을 제시하고 있고 매년 실시한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현장 점검과 실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 문제발생시에 대한 개선 조치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 3조에 명시되어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규정은 수행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과 회계규정, 보조금 운영 관련 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사후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확인함

- 내역사업별로 사업집행의 관리, 감독이나 점검, 사후관리와 관련한 규정 준수에 대한 자료 확인으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 점검과 실태 점검을 실시한 증빙 자료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의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 발생하지 않아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 외부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매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됨

-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보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에 따르고 있으나 수행주체 기관의 정관에서도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있다면 부정수급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내역사업별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전체 사업의 법적 근거와 내역사업의 내용과 범위, 기간 등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사업내용과 목표설정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당해 연도 사업 성과만을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사업 변화 추이 등을 통해서 사업연장이 타당하다고 평가됨

○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명확하나 수혜자 확장성과 외부효과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고가 필요함

○ 전략물자관리의 정관 등 사업집행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명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효과성 면에서 내역사업의 변화 추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전력효율향상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0.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3.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이 필요<br>○ 해당 사업은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의 보급 촉진을 통한 전기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전력 피크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br>○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br>○ '17년 기준 120.2%의 달성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우수함<br>○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급한지와 지속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전력수요관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업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에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고효율기기 부하관리기기의 보급 촉진을 통한 전기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전력 피크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거 추진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직결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해당 사업은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의 보급 촉진을 통한 전기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전력 피크의 억제를 목적으로 함
-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 및 전력수요 절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공조 추진 필요

○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대체로 광범위함

- 전력효율향상사업(민간보조)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를 설치하는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음
- 취약계층에너지복지(자치단체보조)의 경우에도 전국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로 지원하므로, 수혜자의 범위가 광범위함
-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 보급 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LED, 인버터, 냉동기 등 국내의 관련 산업의 육성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이로 인한 외부성이나 누출효과의 크기는 논의가 필요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효율향상기기사업(에너지효율시장시범사업, 취약계층에너지복지, 기반구축사업)과 부하관리기기사업(축냉설비 보급, 냉난방기기 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역냉방설비, 가스냉방설비)으로 구성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보조사업의 정량적인 목표가 제시되었고, 목표달성 정도가 검토됨.

- '17년 기준 120.2%의 달성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우수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에서 수행하는 방법보다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는 일반 기기 대비 단가가 높아 비용부담 측면에서 수혜자의 자체 설치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보조금 형식이 적정함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예산 실집행률 95.3% (민간경상보조 97.4%, 자치단체경상보조 93.1%)

- 또한, 자치단체보조(취약계층 에너지복지)의 경우, 누적 지원율 저조하여 추가 지원 수요가 충분히 존재함

- 다만, 사업별 신청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이 추진이 시급함을 의미하진 않음.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급한지와 지속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불충분함

- 자치단체 보조사업도 현수준 국고지원 시 지원대상수 대비 전체의 60%를 보급 목표로 설정할 경우 저소득층은 2029년, 복지시설은 2033년 달성될 것으로 추정됨

○ '보조금법 시행령'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보조율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품목별 설치비의 평균 10~25%가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지원됨
- 전력효율향상(자치단체보조, 보조율 복지시설 50%, 저소득층 70%)의 경우, 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에 따름

○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중기사업계획에 해당 사업에 대한 소요금액이 계획되어 있으나, 추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 '18년 사업 추진시 사업별 중소기업 우대조항을 반영함으로써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 보급 추진시 중소기업의 참여율 제고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필요사항 검토 절차 마련 및 지침에 의해 시행중
- 지역형평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 내 대상자수(저소득층 및 복지시설)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근거가 적용됨

-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공단이 총괄하고, 지원품목별 효율향상분야(에너지공단, 한전)와 부하관리분야(한전, 에너지공단, 가스공사)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추진 중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보조사업자(에너지공단, 한전,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기관으로 판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및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 등 사업 추진 관련 규정이 기 마련되어 있음
- 월간 집행실적 점검, 분기별 사업진행현황 진도점검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 1회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관기관별 지원실적의 적정 여부 검토. 현장실태조사의 경우 연 2회로 빈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실태 현장점검, 보급사업 효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품목 설치 전·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부정하게 수급된 보조금의 경우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주관기관에서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외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서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함
-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환수 시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환수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기 반납하는 등 규정을 준수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았고,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12~'13)으로 LED조명을 교체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에서 약 20억원 규모 보조금 편취·유용사례 발생('14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지원대상 선정 시 각 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설치 전·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지원조건(고효율인증여부, 지원 대상 용량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해당 사업은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의 보급 촉진을 통한 전기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전력 피크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3-2 정책 제언

○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급한지와 지속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17년 기준 120.2%의 달성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우수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자원통상부 |
|---|---|
| 사 업 명 |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전시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해당되므로 국가수준에서 지원되는 것은 타당함<br>·사업수행기간동안 지원대상별로 국내전시사업의 수도권과 지방 전시회 비율 조정(신규무역전시회)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에 의거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 내역사업인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전시산업 기반구축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함

□ 전시산업발전법
제 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 2008.3.21><개정 2013.3.23., 2016.1.27.>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정과제, 공약사업, 계획사업 모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그러나 전시산업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를 고려할 때 국가지원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됨

- 전시산업은 수출기여도와 고용효과 차원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해당하므로, 국가수준에서 이행되는 것은 타당함

○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보조사업자나 전시회 참여한 국내업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바이어 유치, 지역의 관광활성화 등에서 잠재적인 수혜자에게 까지 혜택을 줌

○ 국내전시사업의 수도권과 지방 전시회 비율(78.8%:21.2%)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있음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의 목적이 국내 유망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전시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법이 제안됨

- 특히 초보전시회인 신규무역전시회 단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전시회 비율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제안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국내 유망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한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국내전시회개최지원)과 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시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전시산업기반구축) 등 내역사업의 목적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임

○ 보조사업의 정량적인 목표와 목표달성 정도가 제시됨

- 성과지표가 국고지원전시회를 통한 수출계약액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년도별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최근 5년 목표대비 평균 106.7% 달성)

○ '17 회계연도 예산예정처의 지적(일부 전시회에 대한 반복적 지원)과 관련해서, '졸업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과정이 나타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전시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음

○ 사업의 고유성에 근거해서 유사중복성 있는 지원사업은 없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행정비용 사용비율이 높지 않고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자료를 확인함
- 최근 5년 지원금액 : (실질지원액평균) 57.1억원 / (행정비용평균) 3.28억원

| 구분 | | '14 | '15 | '16 | '17 | '18 | 평균 |
|---|---|---|---|---|---|---|---|
| 보조금 지원총액 (백만원) | | 7,381 | 6,794 | 5,398 | 5,025 | 4,113 | **5,742.2** |
| | 실질지원액 (백만원) | 7,351 | 6,764 | 5,367 | 4,989 | 4,077 | **5,709.6** |
| | 행정비용 (백만원) | 300 | 310 | 310 | 360 | 360 | **328** |
| 행정비용/ 실질지원액 | | 4.0% | 4.5% | 5.7% | 7.1% | 8.7% | **6.0%** |
| 수출계약액/ 보조금지원액 | | 0.6억불 | 0.8억불 | 0.7억불 | 1.1억불 | 0.7억불 | **0.8억불** |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공헌에 기여하기에는 지방 전시회 비율(21.2%)이 매우 낮음

○ 전문전시장이 없는 광역 지자체에 대한 전시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방식을 연계하는 차원으로 사업구조의 변경이 필요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근거가 적용됨

- 보조사업자인 전시산업진흥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정부의 전시산업 관련 기구 설립 방침에 따라 설립되었고, '02년부터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시회 인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전시산업에 특화된 전시전문기관임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별로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관리에 대해 내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춤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산업부지침,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운영지침 등에 근거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보조사업자에 대해 독립된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거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전시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해당되므로 국가수준에서 지원되는 것은 타당함

○ 전시산업발전법(2008년 제정)과 제2차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2014년 발표)에 근거하여 전시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고 국내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목적이 명확함

○ 전시회의 지원대상별(특히 신규 무역전시회)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지방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기준 중 '관광연계 프로그램 포함여부' 또는 '지역특화산업 관련여부' 항목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5.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6.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1.7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4.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9.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5.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감축(250백만원)<br>·산업발전법 제 27조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의 참여 및 관련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사업 추진의 간접적인 근거가 됨<br>·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특정 지역 및 산업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br>·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사업은 보조금 폐지 시, 그간 동 사업을 통해 개발·보급된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인정됨<br>·제조협업관리의 경우 중소 중견제조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현재 지나치게 다양한 세부 내역사업을 추진 중이고, 예산 산출근거가 부족함. 또한 성과관리의 결과물과 사업수혜자가 모호한 세부 내역사업은 폐지를 권고함<br>·감축 및 폐지 권고 대상 세부 내역 사업<br>협업센터(50백만원 감축), BM개발(160백만원) 및 시장개척(40백만원)은 폐지 권고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산업발전법 제 27조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의 참여 및 관련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사업 추진의 간접적인 근거가 됨

○ 본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인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는 산업발전법 제27조에, '제조협업관리'는 본 내역사업은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촉진법 제15조, 제19조, 제24조,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에,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지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의거하여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특정 지역 및 산업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조기반설계기술 지원, 제조협업관리, 라이다 사업화를 통해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는 상용화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등을 받는 중소제조기업, 대학 연구소, 국내 라이다 양산 중견·중소기업과 제품성능평가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라이다 제품을 적용하는 시스템 기업 및 수요기업 또는 부품을 제공하는 부품기업이 해당함.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고용증대 등 파급효과등을 고려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제조협업관리, 라이다융합산업산용화지원,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조기반 설계기술고도화는 중소기업의 설계 역량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협업관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 모델을,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지원 사업은 라이다 원천기술의 제조현장 지원 및 국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역사업별 세부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사업별로 내용과 목표가 명확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제조협업관리의 경우 18년 성과도출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성과 파악이 어려우며, 국가 지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소 모호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 제조기업에 인터넷기반 IT융합 설계기술 활용을 위한 국고보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있는 라이다산업에 대한 활성화 및 신산업 창출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사업은 보조금 폐지 시, 그간 동 사업을 통해 개발·보급된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인정됨

○ 제조협업관리의 경우 중소 중견제조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현재 지나치게 다양한 세부 내역사업을 추진 중이고, 교육사업 등은 만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의 경우 16년 보조사업 평가로 인해 활용실적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사업이 가지는 민간 영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자구노력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IOT 협업센터에 대한 예산투입비중이 높으나, 이에 대한 성과관리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대기업 공유 자원 활용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비중이 높은 것은 합리성이 떨어짐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중소기업 및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가치에 대한 기여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움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에 맞는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공개 모집 절차를 갖추고 선정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대체로 확보하고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중소제조기업 생산성 향상 업무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정부출연연구소이며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기계업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제조기업을 회원사로 가지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지정사유로 합리성이 인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해당사업의 경우 주기적인 업무보고회의를 통해 수시로 목표/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별도의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용하여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 및 점검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 '보조금 집행·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 산업부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년도별 실집행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첨부자료와 같이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적절성이 인정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운영요령을 제정, 이를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정산 시에는 외부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정산을 시행한 후 정산보고서를 점검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징후 관리 외에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문제를 관리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산업발전법 제 27조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의 참여 및 관련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사업 추진의 간접적인 근거가 됨

○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특정 지역 및 산업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사업은 보조금 폐지 시, 그간 동 사업을 통해 개발·보급된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인정됨

○ 제조협업관리의 경우 중소 중견제조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현재 지나치게 다양한 세부 내역사업을 추진 중이고, 교육사업등에 대한 지속적인 만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IOT 협업센터에 대한 예산투입비중이 높으나, 이에 대한 성과관리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모호함. 특히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내역사업 중 제조협업관리의 세부 내역사업에 대한 외부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조협업관리의 경우 중소 중견제조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현재 지나치게 다양한 세부 내역사업을 추진 중이고, 예산 산출근거가 부족함. 또한 사업의 산출물과 결과가 모호한 세부 내역사업은 폐지를 권고함

※ 감축 및 폐지 권고 대상 세부 내역 사업 :
협업센터(50백만원 감축), BM개발(160백만원) 및 시장개척(40백만원)은 폐지 권고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2.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3.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9.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 추진.<br>·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둔 4개의 내역사업이 법적 근거 및 필요성 보유하고 있음.<br>·각 내역사업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효과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됨.<br>·향후,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센티브/패널티 등의 요소를 가미할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사전에 타당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사업은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동법 제3장(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4장의 2(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4개의 보조사업(내역사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및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제21조의3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인정됨(제21조의4 등).

- 4개 내역 사업은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위해도 평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국가 보조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인정됨.

- 국정과제인 '공산품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57-5)'중 보조사업과 연계된 연도별 주요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국가는 제품안전에 대한 책무를 가지며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법 제품 현장 조사, 위해 제품 감시 등 구체적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하여 외부효과(spill - over effect) 명백히 존재함이 인정됨.

○ 보조사업의 4개 내역사업별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평가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4개 내역사업별 내용과 수단적 방법, 기간 등이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사료됨.

○ 보조사업의 4개 내역사업별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평가됨.

○ 당초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왔는지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는, 2개 내역사업만 평가 가능한 실정인데(2개는 2019 신규), 이 중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 이행점검의 경우 접수 건수와 조치 건수 사이에 간극이 큰데, 당초 대처율이나 대처건에 대한 설정목표가 존재하지 않아, 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이 격차가 대처여건의 불충분 때문으로 사료되나, 목표달성과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가 보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품의 다양화 및 사회 안전의식의 향상으로 국민은 국민신문고,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해제품에 대한 시장퇴출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위해제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현장방문 등 제반조사업무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한 해 4천 개 이상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 조사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식약처(식의약품), 환경부(각종 유해물질)와 안전관리 점검이라는 시책에서 유사성 있으나, 각 부처별 법적근거 및 소관분야가 상이하고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이 상이하여 통합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 안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사전규제완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후관리의 핵심은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제품을 리콜 조치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불법 제품을 단속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 사후관리제도 사업이 폐지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이 불가능하여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 높아짐.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대체로 4개의 내역사업별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사업에는 행정비용 인정하지 않고, 대한상공회의소에 행정비용 일부 인정되고 있음.

○ 사업의 수행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장 조사 위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인건비(약 80%), 출장비(약 8.5%)가 전체 보조금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체로 적정함.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사업 內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내역사업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비를 결정하였으며, 업무위탁에 따라 사업비 정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인됨.

###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유해물질 함유 등 각종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유통 중인 제품들에 대해 리콜 조치를 통해 판매 차단
- 미인증, 도용, 허위표시 등 각종 불법 제품을 적발하여 시장으로부터 퇴출
-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 관리제품을 발굴 후 위해 정도를 분석하여 필요시 관리지대로 편입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 절차 준수 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마련한 사실 확인됨.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보조금 교부 전, 매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통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교부하고, 중간점검 후 사업의 진행 여건에 따라 최종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확인됨.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바코드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 동 사업을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어 보조사업자로 활용함이 인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집행의 적정성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1호, 2018.1.3.)에 따라 내부규정이 마련되어있음이 확인됨.

○ 집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불법·불량제품 신고접수 현황 및 조사실적을 매월 제출받고 있고, 제품리콜 이행점검 실적을 해당차수 종료 시 제출받으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인정됨.

○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니터링의 방법과 인센티브/ 패널티 등의 기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됨.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1호, 2018.1.3.)에 따라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보조사업의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에 의거하여 보조금 총액 3억원이 넘는 사업에 해당되어 회계법인의 감사를 수검하여 실적보고서와 함께 매년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음.

- 다만,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는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집행실적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보조금 총액이 3억원 미만(1.2억원)으로, 별도 회계감사 법정의무는 없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1호, 2018.1.3.)에 따라 부정수급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34조(부정수급 점검)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확인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둔 4개의 내역사업, 법적 근거 및 필요성 인정됨.

-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객관화, 강화하고 인센티브/패널티 등의 요소를 가미할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성과관리 구체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사전에 운용 가능한 지표로 성과목표를 설정, 운용 하는 것이 필요함.

- 당초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왔는지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는, 2개 내역사업만 평가 가능한 실정인데(2개는 2019 신규), 이 중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의 경우 접수건수와 조치건수 사이에 간극이 큰데, 당초 대처율이나 대처 건에 대한 설정 목표가 존재하지 않아, 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기존의 접수 건수에 대한 대처만으로 관리하던 방식에 주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개선을 관리할 방안 강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지역투자촉진(세종)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9.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판정함<br>·본 보조사업 목적은 지방투자기업의 입지 설비 투자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임<br>·기업의 지역 이전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이외에도 조세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의 정책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br>·2017년 불용이 발생한 바 있고, 2019년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기업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 수, 기업 당 지원규모 추계 등에 엄밀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9조의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9월21일 개정한 산업부 고시에서는 지방지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2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는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의 법 조항에 근거할 때 지역투자촉진 사업을 추진하되 세종시만의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임의 규정으로 의무규정은 아님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 목적은 지방투자기업의 입지 설비 투자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본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은 지방이전, 신증설투자, U턴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및 신규 고용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방투자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고용 및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전체가 간접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1개의 내역사업(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내역사업은 지방이전, 신증설투자, U턴기업 등 지방투자에 대해 투자지역 및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입지 설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내용으로 내역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양질의 기업선택을 위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타당성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보조금 수혜기업은 보조금 지원 후 3년 이내 투자 사업을 완료해야 하고, 투자 완료 후 5년 간 의무적으로 사업을 이행해야 함.

- 만일 사업 이행 기간 동안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성과목표는 투자 이행률과 고용창출 규모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7년 투자이행률 목표 84% 대비 실적이 98.5%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음.

- 다만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투자이행률 목표가 과소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어, 2018년부터 성과계획서의 투자이행률 목표치를 100%로 상향조정하였음. 이에 대한 목표 달성치는 아직 실적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

○ 2019년 예산 9,911백만원 중 이전보조금이 6,000백만원, 신증설기업보조금이 3,91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 초과 불가)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증설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예산 9,911백만원에는 설비보조금이 최소 6,911백만원으로 입지보조금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보조금 유형별로 볼 때 설비보조금의 비중이 높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음

- 산업연구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실태분석과 제도개선방향, 2014.5)은 '토지소유를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관리측면에서의 상대적인 용이성으로 인해 입지보조금에 대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책목표인 지방에서의 설비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의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게 하는 지자체 중심의 보조금 운용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입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방에서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업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이외에도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보조금이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본 사업은 사업 주체 및 추진목적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유사 중복사업은 없음

○ 2015~2018년 기간 중 20개 기업에 지방투자보조금 489억원 지원하여 5,068억원의 민간투자 유발 및 866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 폐지 시 기업의 지역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 그러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는 다른 조세감면 등의 정책수단이 존재함. 단, 다만 산업연구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실태분석과 제도개선방향, 2014.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이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의 정책수단에 비해 지방투자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보조금과 조세감면제도 간 지원대상, 지원방식 및 시기, 지원효과 및 사업 특성 등에서 일정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대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보완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구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이전 조세 감면 |
|---|---|---|
| 지원대상 | 지방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기업 중 일정기준(인원, 투자액, 업종 등) 이상의 기업을 타당성평가를 통해 선별한 기업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기업<br>(조특법 제63조2 규정을 만족하는 기업) |
| 지원 방식 및 시기 |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액을 지방투자 초기 단계에 현금으로 지원 | 지방투자 이후 기업 운영 단계에서 법인세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감면 |
| 지원효과 및 사업특성 | ○기업의 초기 자본 부담 경감을 통한 지방투자의 직접적인 유인 효과<br>* 지방투자지원 효과('14, 산업연구원) : 보조금(80.4%) > 세제감면(13.6%) > 저리대출(1.5%)<br>○지역별 특성, 발전방향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유치<br>* 지역별 주력산업·집중유치업종 유치 시 지원우대 등<br>○산업·고용위기지역, 상생형 일자리 등 정책수요를 탄력적으로 적시 반영 | ○이전기업의 경영 중 재정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의 122호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편성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에 따른 보조율에 근거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음

○ 2017년 3분기 이후부터는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보조금의 경우 신청 시 1차로 설비보조금의 70%만을 교부하고, 정산 후 지자체의 별도 2차 교부신청으로 국비잔액을 추가집행하는 방식으로 국비교부방식을 변경한 바 있음

- 이는 설비투자보조금 신청 시 국비를 전액 교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지자체는 설비보조금을 초기에 70%만 선지급하는데, 국비가 100% 교부될 경우 30%의 집행잔액을 투자완료기간까지 이월하는 부담을 지자체가 지게 됨. 또한 이는 지자체의 실집행 부진으로 이어짐

○ 2017년 세종시 소재 산업단지 분양 지연에 따라 유치 부진으로 150억 불용이 발생하였음.

○ 2019년 예산은 2018년 예산 18,000백만원대비 44.9% 삭감된 9,911백만원 규모로 결정되었음.

- 예산규모는 삭감되었으나, 2019년 예산 상 지원대상 기업 수는 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2019년 예산편성 시 이전보조금 7개사, 신증설보조금 7개사를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함.

- 이는 2017년 예산이 이전보조금 5개사, 신증설 보조금 6.8개사를 기준으로 편성된 것, 그리고 2018년 예산이 이전보조금 4.5개사, 신증설 보조금 4.8개사, U턴기업 1개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과 비교할 때 기업 수가 늘어난 것임.
- 이전 기업 수에 대한 예측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기업 당 평균지원금액은 2017년과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이전보조금은 2,377백만원*75%(국비매칭비)로, 신증설보조금은 10,800백만원(평균투자비)*24%(평균보조율)*75% (국비매칭비)로 산정되었으나, 2019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전보조금 1,220백만원, 신증설보조금 805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차이가 있었음.

-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 기업당 지원규모의 근거가 적절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등과 연계되어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기업유치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단계까지 각 단계별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및 사업 의지, 투자기업 적정성 등을 검증하여 추진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세종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는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집행 각 단계별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이행 및 예산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예측결과에 기반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 점검, 정산 및 환수계획을 관리함
- 지자체는 보조금 수요예측, 보조금 집행, 투자사업 이행실태 점검, 정산 및 환수계획을 보고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황을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단계부터 사업이행 종료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음

○ 세종특별시는 4~6월 기간 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시 점검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한 교차점검이 이루어짐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 사업이행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반환 및 정산단계에서 세종시의 검증, 위탁 회계법인 검증,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등 4단계 점검이 이루어짐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①보조금 신청시 사전타당성평가, 현장실사, 소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검토, ②보조금 교부 전 이행보증증권 확보, ③정산시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④정산 이후 매년 사업이행 점검, ⑤보조금 환수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중임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2018-11호) 제33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계획에 의거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적발사례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 목적은 지방투자기업의 입지 설비 투자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임

○ 2017년 불용이 발생한 바 있고, 2019년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기업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 수, 기업별 지원규모 등의 근거가 보다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는 다른 조세감면 등의 정책수단이 존재하나, 산업연구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실태분석과 제도개선방향, 2014.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이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의 정책수단에 비해 지방투자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2017년 실집행률이 31.7%에 불과함. 2019년 예산이 44.9% 삭감되었으나, 지원대상 기업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 수, 기업별 지원규모 등의 근거가 보다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지역투자촉진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7.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9.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판정함<br>·본 보조사업 목적은 지방투자기업의 입지 설비 투자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분명한 사업임<br>·기업의 지역 이전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이외에도 조세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의 정책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br>·지역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이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예산삭감 요인이 있으나, 최근 기업의 보조금 신청 증가추이, 2018년과 2019년 투자기업에 대한 정산지급 등으로 인해 예산삭감요인이 거의 상쇄되는 것으로 판단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9조의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9월21일 개정한 산업부 고시에서는 지방지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상의 법 조항에 근거할 때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임의 규정으로 의무규정은 아님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 목적은 지방투자기업의 입지 설비 투자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본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보조사업은 지방이전, 신증설투자, U턴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및 신규 고용규모를 고려하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방투자 기업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고용 및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전체가 간접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혜지역은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인 지방투자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이전, 신증설투자, U턴기업 등 지방투자에 대해 투자지역 및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입지 설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내용으로 내역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양질의 기업선택을 위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타당성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방투자지원은 보조금 타당성 평가, 합동현장실사, 만족도조사, 정산지원 및 시스템 운영, 지자체 교육 홍보 등 사업 보조 역할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성과목표는 투자이행률과 고용창출규모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7년 투자이행률 목표 84% 대비 실적이 98.5%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음.

- 다만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투자이행률 목표가 과소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어, 2018년부터 성과계획서의 투자이행률 목표치를 100%로 상향조정하였음. 이에 대한 목표 달성치는 아직 실적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이외에도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도 있음. 따라서 보조금이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본 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임.

- 현재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벤처촉진지구,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조세정책을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과 본 사업의 경우 정책수단 등이 다르나, 대부분의 특구가 지방자치단체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사업의 특성을 가짐. 따라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4~2018년 기간 중 총 1조 2,000여억원의 국비보조금을 지원하여 1,139개 기업의 21조 3,000여억원 투자 견인과 5만 6천여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 폐지 시 기업의 지역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 그러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는 다른 조세감면 등의 정책수단이 존재함. 단, 다만 산업연구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실태분석과 제도개선방향, 2014.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이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의 정책수단에 비해 지방투자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보조금과 조세감면제도 간 지원대상, 지원방식 및 시기, 지원효과 및 사업 특성 등에서 일정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대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보완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구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이전 조세 감면 |
|---|---|---|
| 지원대상 | 지방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기업 중 일정기준(인원, 투자액, 업종 등) 이상의 기업을 타당성평가를 통해 선별한 기업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기업<br>(조특법 제63조2 규정을 만족하는 기업) |
| 지원 방식 및 시기 |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액을 지방투자 초기 단계에 현금으로 지원 | 지방투자 이후 기업 운영 단계에서 법인세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감면 |
| 지원효과 및 사업특성 | ○기업의 초기 자본 부담 경감을 통한 지방투자의 직접적인 유인 효과<br>* 지방투자지원 효과('14, 산업연구원) : 보조금(80.4%) > 세제감면(13.6%) > 저리대출(1.5%)<br>○지역별 특성, 발전방향과 연계한 전략적 기업유치<br>* 지역별 주력산업·집중유치업종 유치 시 지원우대 등<br>○산업·고용위기지역, 상생형 일자리 등 정책수요를 탄력적으로 적시 반영 | ○이전기업의 경영 중 재정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5년 경기둔화로 457억원이 불용되었으나, 2016년과 2017년은 전액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8년은 본예산 편성 후 지방이전 및 신증설투자 추가지원(280억원), 산업위기 지역 구조조정 특별지원(257억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추가지원(30억원)등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567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212억원 약 16%가 불용처리되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은 2020년 4월4일로 모두 종료됨. 따라서 2020년 4월4일 이후에는 투자완료 후 지급되는 30%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이루어지면 됨. 따라서 2020년 예산에는 반영이 필요함

| 광역지자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고용위기지역** | |
|---|---|---|---|---|
| | 지역 | 지정 기간 | 지역 | 지정 기간 |
| 전라북도 | 군산시 | '18.4.5.~'20.4.4. | 군산시 | '18.4.5.~'19.4.4. |
| 울산광역시 | 울산시 동구 | '18.5.29.~'19.5.28. | 울산시 동구 | |
| 경상남도 | 거제시<br>통영시<br>고성군<br>창원시 진해구 | | 거제시<br>통영시<br>고성군<br>창원시 진해구 | |
| 전라남도 | 목포시<br>영암군<br>해남군 | | 목포시<br>영암군 | '18.5.4.~'19.5.3.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 2019년 예산은 지방투자 수요와 보조금 국비지원한도 및 신규고용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음. 2019년 예산규모는 1,481억원 규모로 2018년 본예산 765억원대비 716억원, 2018년 추경예산 1,332억원대비 약 149억원 증액되었음.

○ 2020년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할 때 지역산업구조조정 지원예산 13,000백만원, 개성공단 기업 대체투자 680백만원 등의 재정수요가 없어지면서 예산삭감요인이 발생하나, 2018년과 2019년 신청분에 대한 후 정산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예산감축요인이 대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파악됨

- 2019년 예산에는 2017년과 2018년 투자기업에 대한 정산지급액으로 총 19,700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 2020년의 경우 2019년 투자기업 중 20%가 정산을 한다는 가정 하에 약 11,000백만원, 2018년 투자기업 중 30%에 대한 정산 17,100원 등 2018년과 2019년 투자기업에 대한 정산금액으로 약 28,000백만원 이상의 정산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이로 인해 예산감축 요인 중 약 80억원 이상이 상쇄됨.

-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0.9%, 신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3%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2020년에 발생하는 예산삭감요인은 거의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의 122호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편성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에 따른 보조율에 근거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음

○ 2017년 3분기 이후부터는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보조금의 경우 신청 시 1차로 설비보조금의 70%만을 교부하고, 정산 후 지자체의 별도 2차 교부신청으로 국비잔액을 추가집행하는 방식으로 국비교부방식을 변경한 바 있음

- 지자체는 설비보조금을 초기에 70%만 선지급하는데, 국비가 100% 교부될 경우 30%의 집행잔액을 투자완료기간까지 이월하는 부담을 지자체가 지게 됨. 또한 이는 지자체의 실집행 부진으로 이어짐. 이와 같이 설비투자보조금 신청 시 국비를 전액교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1차로 보조금 70%만 교부하도록 하였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여경제 공헌 등과 연계되어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기업유치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단계까지 각 단계별 검증을 수행함으로서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및 사업의지, 투자기업 적정성 등을 검증하여 추진되고 있음

○ 본 사업의 민간 경상보조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현장조직을 갖추고 산업단지 관리, 공장설립 무료대행 및 기업성장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적절한 조직 체계와 기능을 갖추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집행 각 단계별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이행 및 예산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산업부는 수요예측결과에 기반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 점검, 정산 및 환수계획을 관리함

- 지자체는 보조금 수요예측, 보조금 집행, 투자사업 이행실태 점검, 정산 및 환수계획을 보고함
- 산업단지공단은 투자사업 이행실태확인, 정산지원,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회계법인은 투자 및 고용이행 결과를 검증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황을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단계부터 사업이행 종료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기초 및 광역지자체는 2~7월 기간 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한 교차점검이 8~10월에 이루어짐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 사업이행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반환 및 정산단계에서 세종시의 검증, 위탁 회계법인 검증,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등 4단계 점검이 이루어짐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①보조금 신청시 사전타당성평가, 현장실사, 소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검토, ②보조금 교부 전 이행보증증권 확보, ③정산시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④정산 이후 매년 사업이행 점검, ⑤보조금 환수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중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2018-11호) 제33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계획에 의거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적발사례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보조사업 목적은 지방투자기업의 입지 설비 투자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분명한 사업임

○ 본 사업 폐지 시 기업의 지역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 그러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는 다른 조세감면 등의 정책수단이 존재함. 단, 다만 산업연구원(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실태분석과 제도개선방향, 2014.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이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의 정책수단에 비해 지방투자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보조금과 조세감면제도 간 지원대상, 지원방식 및 시기, 지원효과 및 사업 특성 등에서 일정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대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보완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3-2 정책 제언

○ 지역산업구조조정 지원이 2019년에 종료되면서 2020년 예산편성 시 예산 삭감 요인이 있으나, 최근 기업의 보조금 신청 증가 추이,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정산금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예산삭감요인이 거의 상쇄되는 바, 본 사업을 정상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산업통상자원부 |
|---|---|
| 사 업 명 |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0.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3.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감축(2019년 예산 152백만원 감축)<br>·노후화된 폐태양광 폐모듈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 질 것임을 예상할 때, 동 사업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수요예측의 실패와 이에 따른 정상적 운영 차질 등, 다수의 공공시설 건립 이후 발생했던 문제점 직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동 시설도 건립 이후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br>·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이 완료되고 난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br>·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재활용 태양광 패널로부터 판매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자체와 동 시설 운영기관에 귀속될 것이므로 국고 보조를 삭감하는 것이 필요함. 사전타당성보고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행)에서 산정한 순편익(운영비-판매수입)에 해당하는 152백만원 감축을 권고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 11항 >**

11. 신지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78호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조성 사업』에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과 일치함.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발생 가능한 폐모듈의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폐태양광 설비의 수거·분리·분해·재활용에 대한 관리·기술지원을 담당하기 위한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태양광모듈 단순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태양광 재활용기술 국산화 추진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태양광재활용센터 건축
* 태양광 재활용센터 장비·공정 구축

○ 사업 내용과 목표가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태양광 모듈 재활용센터 설계·건축 (국비, 지방비)
* 재활용 기술・장비・공정 구축 (국비)
* 폐모듈 신고・수거・운반체계 구축, 재활용 의무화 제도 마련 (지방비)
* 재활용 센터 시범운영・개소, 기반구축 종료 후 센터 발전방안 수립 등 (지방비)

○ 구체적 사업효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국비보조사업의 내용이 센터 시설 건립과 장비 구축이어서 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재활용 실적이 나타났는지는 평가하기에 시기상조임.

○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이 완료되고 난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민간에서는 이윤동기로 태양광 폐모듈사업을 수행할 인센티브가 부족함(산업연구원(2017)의 보고서에 따르면 B/C 분석결과 0.58 수준).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소지는 없음.

○ 2004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20년 후인 2023년 이후부터 폐모듈이 급격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폐모듈 재활용이 추진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 될 것이므로 동 보조사업은 시의성이 인정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준 준용)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율이 산정되었다고 밝힘.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1,500백만원 | 1,875백만원 | 3,225백만원 |
| | 31.9% | 42.9% | 78.2% |
| 자치단체부담 | 3,200백만원 | 2,500백만원 | 900백만원 |
| | 68.1% | 57.1% | 21.8% |
| 민간단체부담*<br>(자부담) | 0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합계 | 4,700백만원 | 4,375백만원 | 4,125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동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재활용 패널 판매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야 함.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 5조 (보조사업 선정기준)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공모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 규정에 따라 선정 및 교부절차 운영하고 있음.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있음.
-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점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내역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보조사업비 집행은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 ~ 제31조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2조 ~ 제41조에 해당하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 전문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실시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적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노후화된 폐태양광 폐모듈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 질 것임을 예상할 때, 동 사업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수요예측의 실패와 이에 따른 정상적 운영 차질 등, 다수의 공공시설 건립 이후 발생했던 문제점 직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동 시설도 건립 이후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2 정책 제언

○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이 완료되고 난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동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재활용 패널 판매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야 함.

- 사전타당성보고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행)에서 산정한 순편익(운영비-판매수입)에 해당하는 152백만원 감축을 권고함.

#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고령친화산업육성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국가결핵예방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가보건의료표준화
국가암관리
국가예방접종실시
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나눔문화확산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농특)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사회복지사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회복지정책수립및관리활동
신종감염병대응대책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아동정책조정및인권증진
에이즈및성병예방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지원
응급처치활성화지원
의료관련감염관리
의료기관진료정보교류기반구축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장기및인체조직기증관리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지원관리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국민인식개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및관리체계구축
정신질환인식개선및정신의료기관평가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질병조사관리및실험실감시망운영

#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체계구축
한센병환자관리지원
한의약산업육성
혁신형건강플랫폼구축지원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감염병예방관리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9.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8.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br>· 본 사업은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2차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세부 내역 사업들 역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감염병 교육 홍보 사업 등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2차 전파 방지에 기여하여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높음

○ 본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내역사업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높음

-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드는 경비, (4)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등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2차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높음

○ 본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관 및 대상자들이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전 국민이 최종 수혜자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자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는 다음과 같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지자체경상보조는 (1)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2) 시·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비 지원, (3)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 (4)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5)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6)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6가지로 구성

- 민간경상보조는 (1) 공중보건전문가 고위정책자 과정, (2)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 실태조사, (3) CJD 부검센터 운영 지원 등 3가지로 구성

○ 본 사업은 지자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내역사업들은 예산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지자체경상보조는 총 49.13억 원으로 (1)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2.29억원, (2)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비 지원 30.57억 원, (3)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 8.58억 원, (4)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 지원 1.71억 원, (5)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0.8억 원, (6) 말라리아 박멸사업 5.18억 원 등으로 구성됨
- 민간경상보조는 총 4.1억 원으로 (1) 공중보건전문가 고위정책자 과정 1.1억 원, (2)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 실태조사 2.0억원, (3) CJD 부검센터 운영 지원 1.0억 원 등으로 구성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조금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본 사업은 유사·중복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감염병 예방이 하락하고 확산을 방지하지 못해 감염병 발생 시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들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각 내역사업들 예산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자체경상보조는 보조율이 50%이고 민간경상보조는 보조율이 100%로 적정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지자체경상보조는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지자체들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지자체경상보조는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함

○ 본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의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적법하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국고보조금 집행정보관리지침' 등과 같은 국고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사후관리 절차 규정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장산보고서를 제출 받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통해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2차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세부 내역 사업들 역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5.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본 사업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br>·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br>·연간 혹은 중기(3년-5년)시계에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확인 등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중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병원체자원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강제성이 높지 않음

- 「병원체자원법」 제9조에 지정된 전문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나 강제성이 높지 않음

○ 「병원체자원법」 제9조에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과 업무수행범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과의 연계성이 있고 구체적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병원체 자원·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높음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1) 의진균·바이러스 분야에 대한 신규 자원 수집 및 자원화 (2) 정보시스템 연계로 국내 병원체자원 정보 체계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의 필요함

- 나고야의정서 발효(2014.10)로 생명연구자원의 국가자산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은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지정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참여기관이고, 2차적 수혜자는 병원체자원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 연구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발전과 국민 건강보호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의진균 1개소(2억 원), 바이러스 2개소(각 1억 원, 총 2억 원)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의진균과 바이러스 분야의 전문은행을 지원하는데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음

- 바이러스 전문은행은 (1) 임상시료 확보 및 일차 배양, (2) 확보된 시료를 이용한 특성분석 등 자원화 등으로 분업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구성

○ 본 사업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전문은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본 사업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나 향후 연간 단위로 보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

- 2018년 기준으로 의진균 병원체는 병원체자원 자원화가 50종 300주 이상 이루어지고 사상균 병원체 균주 확보율이 100주 이상으로 확대, 항진균제 감수성 데이터가 확충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바이러스병원체에 대해서도 수집과 수탁, 바이러스병원체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분리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구축 등이 이루어짐

- 그러나 각 병원체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목표달성여부를 점검하는 성과평가 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구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현재 병원체자원 확보나 병원체자원은행 운영이 초기 단계이고 수익이 창출되기 어려우며 민간 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생명연구자원의 국가자산화가 시급해졌으나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병원자체원의 수집·관리 및 분양이 공익적 측면도 가지고 있어서 국가적 지원이 인정됨

- 추후 병원체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 점진적으로 민간 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병원체자원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분야별병원체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현재 일부 마련된 병원체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추후 관련분야의 실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 등이 있음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자원 이용 시 사전허가 및 이익공유가 법적으로 의무화됨
- 한국은 생물자원 해외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병원체자원의 국산화가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전액 민간경상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행정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내역사업의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1)인건비(책임연구원, 박사급 및 학사급 연구원 각 1인 이상) 1억 원, (2) 재료비(병원체 자원화 및 1000건 관리 및 보존비용) 0.8억 원, (3) 운영비 0.25억원, (4) 여비(0.1억 원) 등으로 구성됨

○ 현행 보조율 100%는 「병원체자원법」 제9조 4항에서 “지정한 전문은행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수한다고 판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질병관리본부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 편람을 통해서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질병관리본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해당 은행에 대한 공개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국고보조금 집행정보관리지침' 등과 같은 국고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연차 평가 결과를 통해서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해당 선정업체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하는 등 집행 점검과 패널티 적용,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통해 예산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요 재산 취득 관련해서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병원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별도의 부정수급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등의 성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

- 사업 특성상 연간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3년-5년 정도 중기시계에서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1.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2.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3.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3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신축보다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방식 변경 필요함.<br>·소생활권 단위에는 건강 사업을 지원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br>·소생활권 단위에 다양한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주민건강센터를 신축 하고 있어 건강서비스 접근성 확대도 더디고 사업 효율성도 높지 않음.<br>·지자체가 신축보다는 기존의 지자체 시설을 활용하여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별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방식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련자원 연계·협력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토록 지원하기 위해 시설비, 장비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제2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음.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시행·일부개정 2017. 9. 19.)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시행·일부개정 2017. 9. 19.)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 사업의 내역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역략강화 기술지원) 모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내역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민간경상보조) 사업이 '19년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본예산으로 이관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은 국정과제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17-3)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를 확대하고, 운동, 식생활 지도 등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을 도모하는 등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 단, 수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맞춤형·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해 질병이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수혜자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내로 제한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행정구역상 洞 지역에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신축·증축·개보수비와 보건의료장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주민밀착형·맞춤형 건강증진 인프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본사업 중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효과가 있음.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만족도로 사업 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년도별 만족도가 개선되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 후 건강상태 변화로 '좋아졌다'가 89.4%, 지역주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가 92.4%로 나타남(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단, 2013년부터 확산추진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에서 만족도 이외의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 만족도 이외의 사업 효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없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사업은 공공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자체수행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이외에 공공보건사업이나 중소도시보건소 신축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임.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유무와 무관하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님.

-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도 기본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기본사업 중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자율적 추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수행하는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 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역보건법」에서 기준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보조율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될 필요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지만,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이 신장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 선정하고 있음. 해당 절차 및 상세 내용을 2019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안내서에 제시하고 있음.

- 중앙평가위원회의 사업신청서 평가, 현지조사, 예산배분 방향 설정 등을 통한 사업대상 평가 및 선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서를 통해 보조사업 집행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매월 사업 실집행실적 점검 및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제외기준 등을 안내서에 적시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 집행 실적 및 정산보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시 교부조건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교부 결정 취소사항에 대한 내용 명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안) 제5장, 제33조부터 제43조에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가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면적(최대 825㎡까지 가능)에 대한 총 건축공사비의 2/3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년 8-10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축, 개보수 또는 장비 지원되었음.

- 소생활권 단위에는 건강 사업을 지원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 주민건강센터를 신축하기보다는 개보수 사업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필요 있음.

## 3-2 정책 제언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의 효과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 만성 질환 예방 등에 있으므로 (현행)일반적인 만족도 측정을 통해서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세분화된 건강 개선율 등으로 사업 효과를 측정할 필요 있음.

- 농어촌 보건소 이용자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이용자 평가지표 차별화 필요

○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던 건강생활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이관되었으나, 동 사업이 적절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계 필요함. 지역 주민의 건강 수요를 진단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별하는 것이 연계되지 않는 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이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연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고령친화산업육성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2.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6.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2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5.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4.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2.8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5.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내역사업인 고령친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예산 12억 중 50%인 6억 감축하고,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함.<br>·고령친화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업 방향은 수립하였으나 양성 프로그램 설계 등의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짐.<br>·고령친화산업 품질경쟁력 강화와 기술·제품의 상용화 촉진 등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체계적인 사업 운영 지침 마련과 세분화된 시장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9조(고령친화산업의 육성)가 산업 육성 기반 구축, 고령친화 용품 의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있음. 하지만, 해당 사업에 예산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할 수 있고,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제2항의 업무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기술 및 표준화 연구,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등임.

- 친고령 연구·산업 전문 인력 양성(특성화대학원 운영지원) 및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운영, 사용성 평가시스템 운영, 고령친화산업 정책기반강화, 국내외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시장 활성화 등의 내역사업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노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의 생산과 인적자원 육성 및 해당 산업 발전은 고령화 사회에 비추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고령자가 조작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우수한 고령친화제품 선정 및 지정제도, 고령친화제품 제조 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개선 및 디자인 개발 지원품목별 사용성 평가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자금력 등이 어려운 산업체에 맞춤형 전주기 지원프로그램(개발→제품화→시장 활성화)을 운영하여 융복합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품질개선(우수제품지정제도) 지원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를 성장시키는 데에 다소 기여하였음.

- 복지용구 사업체 판매계약 체결, 보건신기술 인증, 지자체 복지관 제품 배포 등을 통해 직·간접적 고령자 편의나 편익을 도모한 사례가 있음. 고령친화산업 기술·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매년 꾸준히 사용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고, 제품 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친고령 산업 특성화대학원 운영으로 고령친화산학협력네트워크(Institute of Gerontology, IOG)를 출범시켜서 국내·외 약 44개 이상의 고령친화기업과 파트너십(공동연구, 자문,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근감소증 제품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매일유업), 노화예방 제품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 등의 성과가 있었음. 또한, 특성화대학원 운영('15.9월~'18년)을 통해 배출된 53명의 석박사 중 67.9%가 취업과 진학을 하였음.

○ 하지만, 사업 효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매년 변경하는 등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음. 개별 내역 사업이 매년 집행되었으나,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 '17년 성과지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및 인식개선도로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하였으나, '18년 성과지표를 고령친화산업 내수시장 기반 확대로 적절하게 변경하였음. 하지만, '18년 성과지표는 신규 지표로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고령사회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육성과 진흥 차원의 과제이며, 매우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다른 산업(연평균 4.7%)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이 급성장(연평균 12.9%)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 산업시장이 2020년 약 72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생산규모 및 기술수준이 취약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설정 근거 없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국고보조금 100% 지원되고 있음.

○ 사업비 규모에 비해 다양한 내역사업이 추진되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체계화가 요청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 영세한 고령친화산업체가 금형제작 지원을 받았으나, 해당 실적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영세업체 근로자 및 고령자의 편익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증빙된 것은 아님.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지정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매2년마다 지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고령친화산업육성 사업계획서 수립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수시로 집행 점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집행 점검의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음.

- 사업 운영 지침은 부재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참석, 고령친화산업체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 참석, 친고령특성화대학원 평가위원회 참석, 정책포럼 개최계획 수립 시달, 고령친화유공자 표창 실시계획 시달 등으로 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2016년 2월 12일 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년 2~4회 보조금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며, 회계감사를 통해 교부금을 관리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내부 규정 및 지침은 마련되지 않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소규모 내역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높지 않고,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품질개선 사전평가 제도 운영(사용성 평가), 고령친화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지원과 고령친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간 연계 정도가 높지 않아 사업성과의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음.

○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선정·운영(2개 대학)의 경우 지원기간이 2019년에 종료되므로 2015년 입학 이후 배출된 전문 인력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5년 2학기 시작된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선정·운영(2개 대학)사업은 최대 5년간(1단계 : '15~'17년, 2단계 : '18~'19년) 지원 이후 2020년부터 대학원이 자립화 단계에 들어감.

- 현장중심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업 방향은 수립하였으나 양성 프로그램 설계 등의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합리적인 예산 계획 수립 또한 요청됨.

○ 고령친화산업 정책 기반 사업은 기초자료 수집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고령친화산업 품질경쟁력 강화와 기술·제품의 상용화 촉진 등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체계적인 사업 운영 지침 마련과 세분화된 시장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또한, 사업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함.

○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과 고령친화산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9.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8.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5.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DB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방식 변경 필요함.<br>·동 사업은 기증희망자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증 가능한 조혈모세포에 대한 정보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함.<br>·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정보는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되지만, 해당자에 대한 사후관리(기증의사 및 연락처 유지 등)는 모집한 등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통합적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br>·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DB 관리를 위해 공통의 사후관리 지침 마련과 등록기관 실무 종사자 정기적인 교육 및 체계화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골수기증 희망자에 대한 HLA 검사비 및 사전·사후 관리비 지원 사업임.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지급 근거를 암관리법에 마련하고 있음.

> **「암관리법 제46조(비용지원)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
>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장기이식 등록기관)**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골수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증용 세포 등록을 위하여 공여자의 적합성(HLA typing test)을 알아보는 검사를 추진함으로서 국민보건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동 사업은 기증이 성사되기 이전에 조혈모세포 등록을 하는 사업이지만, HLA형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 실질적인 사업수혜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이지만, HLA 검사는 국민의 암 부담 감소 및 암 치료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골수이식 대기자들이 비혈연 골수 기증자의 골수를 적기에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를 모집하여 골수기증희망자에 대한 조직항원적합성(HLA) 검사비 및 사전·사후관리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임

○ 5개의 등록기관이 모집 가용범위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후 복지부에서는 등록기관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 내부평가를 통해 가감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집행되었음.

※ 등록기관은 헌혈의 집(대한적십자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톨릭),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서울성모병원), 생명나눔실천본부(불교 조계종 재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 5개임. 5개의 등록기관은 각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목표 달성(적십자사는 헌혈의집,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대학교 및 병원과 교회연계캠페인 실시, 한마음한몸본부는 성당과 기증센터 운영,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전국생명운동지역본부 연결 캠페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대학교, 기관단체 연계 캠페인 실시중)

※ 사업수행결과(실적점유율 75%, 기증동의율 15%)를 바탕으로 1차 모집건수 산출 후, 1차 모집건수와 사전에 제출한 기관별 '18년도 희망모집건수 차이율 고려하여 지원액의 15% 배정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증자 검사 정보를 DB화 하는 사업으로 장기기증등록기관이 혈액 채혈과 HLA 검사 및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정보 등록 등은 민간이 추진하기는 적합하지 않음. 매년 17,000개의 DB를 확대하고 있으나, HLA 항원은 비혈연간에 일치 확률이 매우 희박하여 지속적인 DB 확보가 요청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 관련 법령 또는 보조율 설정 근거는 없음.

○ 현행 보조율은 국고 100% 지원사업이며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조건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동력이 저하되고, 국민건강을 담보할수 없어 국가 전액 지원의 현행 보조율이 사업목적에 적합함.

○ 보조금은 사전관리비 5.7%, 검사비용 56.7%, 사후관리비 37.6%로 구성되어 있음. 검사비 기준은 명확하지만, 사후 관리비는 전체 보조금 중 검사비와 사후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바, 합리적 사후 관리비 책정 필요함.

※ 검사비 1인당 14만원, 사전 관리비 1인당 14천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음. 매년 17,000명에 대한 검사비 및 사전관리비의 보조금 규모는 약 26억원이며, 전체 보조금 중 나머지는 사후 관리비로 사용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사업 수행 기관의 자격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

- 공개모집,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통해 조혈모세포 검사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점수에 따라 기관별로 검체량을 차등배분 하는 등의 질 관리 체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사업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적정성 평가에는 사업 성과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음.

- 예산 집행 적절성 평가는 사전·사후 관리비 집행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비목별 계획 대비 집행실적 점검도 포함되어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현장점검 및 실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회계정산 실시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통해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담당자는 정산보고서에 의해 정산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확약서 제출 받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 집행실적 작성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기하고 있음.

- 조혈모세모기증사업 안내 책자에 사업에 필요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요구되는 자료 제출, 결과보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 기타 사유로 사업기관에 더 이상 사업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등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증자 검사 정보를 DB화 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암 치료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고 치료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보조율 설정 근거 없이 전적으로 국고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된 수행기관에 의해 검사비와 부대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3-2 정책제언

○ 검사지원 기관은 민간 자원 활용가능한 검사지원 사업수행기관 들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대한 실기증자에 대한 성과와 통계는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 있음.

- 장기이식관리센터는 각 등록기관이 통합된 사후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사후관리 공동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록기관의 실무 종사자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국가결핵예방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2.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5.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사업의 관리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함<br>·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정감염병인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년 국고비 지급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일부 내역사업의 보조율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함<br>·결핵환자관리 담당 간호사의 인건비를 현재 국비 100%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방안 검토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결핵예방법 제3조, 제7조, 제 20조, 제28조 등에 의거해서, 국가는 결핵예방과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정감염병인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본사업의 목적은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두어야 함. 특히 법에 기반한 다음의 결핵관리 사업에 집중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등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

○ 결핵예방관리를 위해 역학조사 및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등 운영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법정감염병인 결핵 퇴치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함.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사망률이 압도적 1위로, 2위 국가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보조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설정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결핵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의 사회적 가치를 제시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담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함

○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리지침 등에 의거해서 자격요건과 선정방법 등을 준용하고 있음

○ 2017년도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출장비 과다 지급)된 대한결핵협회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마련됨

- 예산의 집행 기준 등을 포함한 집행관리 규정으로 '2018 결핵관리지침' 및 '2017 결핵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집행 실적 관리, 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관리·감독 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 마련됨

- 집행잔액 반납, 정산, 회계감사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2017 결핵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 및 '2018 결핵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민간보조사업·지자체 보조사업별로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토록 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자체점검을 통해 2017년도 민간사업자인 대한결핵협회의 여비 과지급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해당 비용에 대해 국고 환수 조치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정감염병인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매년 국고비 지급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일부 내역사업의 보조율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함

○ 결핵관리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

## 3-2 정책 제언

○ 결핵환자관리 담당 간호사의 인건비가 현재 국비로 100%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방비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9.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8.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사업방식의 변경이 요구됨<br>·2016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50% 감축) 미이행(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br>·동 사업은 1) 내역사업 구성면에서 유기적 연계성이나,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성 및 체계성이 높지 않고, 2) 성과관리체계, 성과지표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성과가 뚜렷하지 않음<br>·세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각 내역사업별 목표 명확화,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내역사업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 전체 세부사업 로드맵 작성, 성과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 2) 특히 2016년 평가결과 미이행 사업(‘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군의경 금연지원’)과 실적감소 사업(‘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3) ‘군의경 금연지원서비스’는 2016년 감축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폐지여부를 검토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국민건강증진법」과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됨

○ 내역사업별로는 보건소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센터, 저소득층금연치료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와 제25조에, 학교흡연예방사업은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2010.1.18., 2011.6.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정과제 연관성이 없고, 대통령 공약사업은 아니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흡연에 의한 건강보험진료비용 연간 약 2조4천억원)과 사망자 규모(연간 5만8천명), 성인남성 흡연율 문제('17년 38.1%, OECD 국가 중 4위) 등을 고려하고, 2005년 우리나라가 국제적 금연사업에 대한 협약(WHO FCTC)에 비준한 점을 볼 때, 사업내용이나 성격상 국가적 차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됨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2019년의 경우 민간보조사업 20개 기관, 자치단체보조사업24,587명이며, 잠재적으로는 일반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외부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세부사업의 목적은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임

○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내역사업은 1) 사업목적(흡연예방 및 교육, 금연지원, 금연치료, 정책기반 구축 등), 2) 연령 및 세대(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군인, 성인), 3) 흡연수준정도(경도 흡연자→중증고도 흡연자)을 기준으로 4개 내역사업, 12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다만 내역사업별 유기적 연계성이나,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성 및 체계성이 높지 않음

| 구분 | | 목적 및 사업 대상자 | 보조사업자 |
|---|---|---|---|
| 흡연예방 및 교육 | 학교흡연예방교육 | 초중고등학생 | 지방교육청 각급 학교 |
| | 금연홍보 | 전 국민 | 복지부 |
| 금연지원 서비스 | 군의경 | 군인의경 | 한국건강관리협회 |
|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위기청소년,여성,대학생, 장애인,소규모사업장근로자 | 가톨릭대학교 등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
| | 금연캠프 | 중중고도흡연자 | 가톨릭대학교 등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
|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금연클리닉) | 흡연자 | 시·군·구 보건소 |
| | 금연상담전화 | 흡연자 | 국립암센터 |
| |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 흡연자 | 국립암센터 |
| 금연치료 | 저소득층 흡연치료지원 | 전문적치료가필요한흡연자 중 저소득계층 | 시군구 |
| 정책기반구축 및 사업 지원 | 금연정책개발 및 정책지원 | 정책개발 | 복지부 |
| | 금연사업 운영 | 사업운영 | 복지부 |
| |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지원 | 금연사업지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분을 금연지원사업에 투입한다는 정부 방침과 WHO 비용효과적 담배규제 정책 이행을 위해, 사업 예산이 '14년 113억원에서 '15년 1,475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며(전년 대비 1,200% 이상), 그 결과 기존 내역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거나 신규 내역사업이 다수 도입되었음

○ 부처에서는 담배사용 및 흡연율 조사,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도를 조사하는 등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로 만족도, 인지도, 운영 조사와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체계, 성과지표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담배반출량(백만갑)'과 '중고등학교흡연율(%)'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담배반출량(백만갑)'의 경우 최근 3년간(2016~2018년), '중고등학교흡연율(%)'의 경우 2018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구분 | 구분 | '15 | '16 | '17 | '18 |
|---|---|---|---|---|---|
| ○ 담배반출량(백만갑) | 목표 | 4,295 | 3,330 | 3,300 | 3,214 |
| | 달성 | 3,115 | 3,724 | 3,478 | 3,439 |
| | 달성율 | 137.9 | 88.2 | 95.6 | 93 |
| ○ 중고등학교흡연율(%) | 목표 | 9.7 | 7.8 | 6.7 | 6.3 |
| | 달성 | 7.8 | 6.3 | 6.4 | 6.7 |
| | 달성율 | 124.40 | 123.80 | 104.50 | 94 |

○ **내역사업별 실적**

-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내역사업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의 4개 사업은 2015년 대비 2018년 11월 현재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명 | | 2015 | 2016 | 2017 | 2018.11월 |
|---|---|---|---|---|---|
| 보건소 금연클리닉(등록자) | | 574,108 | 411,677 | 424,636 | 343,011 |
| 금연상담전화 (월평균금연상담 제공건수) | | 15,823 | 22,763 | 24,410 | 15,246 |
|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일평균방문건수) | | 5,056 | 4,500 | 3,424 | 1,588 |
|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 | 방문클리닉 (실시인원) | 13,267 | 10,936 | 11,493 | 11,048 |
| 금연치료지원사업 | | 228,792 | 358,715 | 408,097 | 269,736 |
| 금연캠프 | | 5,452 | 5,676 | 5,896 | 6,224 |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 15,105 | 17,452 | 21,780 | 20,822 |

○ **내역사업별 효과**

- 담배반출량 지표로는 내역사업별 효과를 알 수 없으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6년 감축판정을 받았으나, 감축이 이행되지 않은 내역사업('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군의경 금연지원')과 최근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내역사업('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중복)')의 경우 반드시 성과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민간단체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의경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예산감축판정을 받았을 뿐아니라 그 후에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폐지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금연서비스지원 사업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아니며,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기에도 부적절하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분을 금연지원사업에 투입한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 유사·중복사업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이 사회적 비용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가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려움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6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 단기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군의경 금연지원의 경우(특히 단기 금연캠프), 2018년에 50% 예산 감축(약 100억원, 전체 사업비의 약 10%)하도록 최종적으로 판정받음. 이에 2018년 134억원 감액편성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4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감축을 이행하지 못함

**[2016년 보조사업평가 최종 판정결과]**
1인당 지원금액(2015년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단기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군의경 금연지원의 경우(특히 단기 금연캠프)는 과도한 지원으로 판단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의 부담 강화 혹은 사업의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해당 사업에 대해 자부담 강화 혹은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 등의 마련으로 현재 지원의 약 50% 예산 감축(약 100억원, 전체 사업비의 약 10%)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 2015년부터 실시된 신규 사업이 2017년 1단계 완료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에 사업비 감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 조치사항]**

- 1인당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사업의 1인당 지원금액을 1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절감하였고 적극적 사업 수행으로 참여자를 확대하여 참여자 대비 예산액을 절감하였음
- 2016년 보조사업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정부안을 2017년(1,468억원) 대비 134억원 감액한 1,334억원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였음(국회를 거쳐 1,438억원으로 확정)
- 20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78억원 감축한 1,360억원으로 확정

○ 동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6년 156,198백만원, 2017년 156,018백만원, 2018년 149,513백만원으로 뚜렷한 증감은 없음(*기초보고서 기준, 자치단체보조와 민간단체보조의 합)

- 실집행율은 내역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과 '폐암검진시업사업'의 실집행율이 70~80%대로 낮음('19년 실집행율을 반영하여 7.9% 감축). 전체예산의 실집행율은 95% 수준임

※ 폐암검진사업은 '19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이관

(단위 :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5 | | | 2016 | | | 2017 | | |
|---|---|---|---|---|---|---|---|---|---|
| | 예산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예산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예산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학교흡연예방사업 | 44,415 | 43,155 | 97.2 | 33,311 | 32,538 | 97.7 | 33,311 | 32,550 | 97.7 |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 26,153 | 24,912 | 95.3 | 32,984 | 32,538 | 98.6 | 38,548 | 37,858 | 98.2 |
|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 4,172 | 3,428 | 82.2 | 8,108 | 5,813 | 71.7 | 8,108 | 7,020 | 86.6 |
| 금연상담전화 | 1,873 | 1,866 | 99.6 | 1,873 | 1,873 | 100 | 1,873 | 1,867 | 99.7 |
| 온라인금연 지원서비스 | 376 | 375 | 99.7 | 376 | 376 | 100 | 376 | 376 | 100 |
|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 | 5,000 | 5,000 | 100 | 4,900 | 4,900 | 100 | 4,900 | 4,899 | 99.9 |
| 금연캠프/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 18,670 | 18,302 | 98.0 | 17,307 | 17,282 | 99.9 | 20,323 | 19,469 | 95.8 |
|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지원 | 7,411 | 6,824 | 92.1 | 7,311 | 7,157 | 97.9 | 7,311 | 7,113 | 97.2 |
| 폐암검진시업사업 | | | | | | | 2,900 | 2,603 | 89.8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12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본 대상사업의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국비100%, 50%)

○ 중기재정추계('18~'22년)가 되어있음

(단위 : 백만원)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43,787 | 144,490 | 148,824 | 153,288 | 157,886 |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이 인정됨

- 국민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려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사업 등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여성,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사업은 전국 모든 학교, 보건소,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따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보조금 교부 시 지역별 흡연율, 인구수,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집행함.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 재원을 교부

○ 민간경상보조사업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금연지원센터, 국립암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으로 국립암센터를 제외하고 3년 단위 공모절차 진행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보조사업의 수행), 동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의거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2016년 보조사업평가 결과 자체적인 보조사업 집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 등 내역사업별 사업지침 및 안내서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성과관리, 사업수행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

○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상시운영체계로 관련 규정 준수 등을 확인하고 실적 및 정산보고 등을 하고 있으며 회계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안) (복지부 훈령)에 해당 내용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사업수행 및 집행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등을 통해 재확인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이 발생한 적이 없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가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안) 제33조부터 제43조에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가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목적은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사업수혜 범위가 비교적 넓으나, 사업의 외부효과 입증 자료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사업내용이나 성격상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사업은 4개 내역사업, 12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다만 내역사업별 유기적 연계성이나,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성 및 체계성이 높지 않음

- 세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내역사업별 목표 명확화,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내역사업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 전체 세부사업 로드맵 작성, 성과관리 강화 등 사업 방식변경이 요구됨

○ 성과관리체계, 성과지표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1) 성과지표 '담배 반출량'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중고등학교흡연율'은 2018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2) 내역사업 중 4개 사업이 2015년 대비 2018년 실적이 감소함

- 담배반출량 지표로는 내역사업별 효과를 알 수 없으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6년 감축판정을 받았으나, 감축이 이행되지 않은 내역사업('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군의경 금연지원')과 최근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내역사업('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중복)')의 경우 반드시 성과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민간단체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의경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예산감축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폐지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함

○ 2016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 단기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군의경 금연지원의 경우(특히 단기 금연캠프), 2018년에 50% 예산을 감축(약 100억원, 전체 사업비의 약 10%)하도록 최종적으로 판정받았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4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감축을 이행하지 못함. 다만 2019년 79억을 감축함

○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과 '폐암검진시업사업('19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이관)'의 실집행율이 70-80%대로 낮음. 다만 2019년 실집행율을 반영하여 7.9% 감축함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서류를 확인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국가보건의료 표준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8.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세부과제는 '정상 추진'이 필요함<br>·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하며, 내역사업별 예산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br>- 보건의료정보 표준개발 및 위원회 운영 등 모든 내역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예산규모가 적정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간 상호 연계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표준사업'과 국내·외 표준간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WHO 내 표준화 선도국 입지 마련을 위한 'WHO-FIC 한국협력센터 운영 및 국제협력'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사업내용과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법령 명 및 조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제③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2개의 내역사업 중 국가보건의료 표준화사업은 사업내용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하나, WHO-FIC 한국협력센터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45번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성이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국내표준의 국제화 및 WHO-FIC 한국협력센터 운영을 통한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평가됨

○ 본 세부사업의 수혜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은 전 국민 전체에 해당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의 주요 목표는 국내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여 의료시스템간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보건의료표준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며, 2개의 내역사업이 사업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사업의 성과지표는 보건의료용어 표준개발 건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17년까지 당초 계획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 및 달성도

| 성과지표 | 구분 | '15 | '16 | '17 | '18 | '19 | '19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보건의료용어표준 개발 건수 (단위: 개소) | 목표 | 신규 | 50,000 | 55,000 | 16,500 | 16,995 | '18년 목표치 대비 3% 상향하여 설정 | 전년대비 보건의료용어표준 개발 건수 | 고시 개정 건수 |
| | 실적 | 신규 | 51,067 | 62,791 | - | - | | | |
| | 달성도 | - | 102.1 | 114.2 | - | - | | |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내역사업인 국가보건의료 표준화사업과 WHO-FIC 협력센터 운영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보건의료 분야 표준화사업이며, WHO-FIC 협력센터는 WHO에서 국가 당 1곳만 지정하여 운영하므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될 가능성은 없음

○ 국가보건의료 표준화사업과 WHO-FIC 한국협력센터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단,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사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상이 감소될 소지가 있으나,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사업이 폐지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용어/서식/시스템의 표준화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의료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보건의료표준 마련 및 국제분류체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행정비용(인건비, 운영비)이 '19년 예산 기준 376백만원(인건비 251백만원, 운영비 125백만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902백만원 중 41.6%를 차지하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민간경상사업으로 표준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이 불가피함

○ 2개의 내역사업 중 보건의료정보표준개발 및 운영은 452백만원, WHO-FIC 한국협력센터 운영 및 국제협력은 450백만원 예산이 구성되어 있음

- 세부 내역사업별 예산규모를 검토한 결과, 적정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며, '18년 대비 '19년의 내역사업별 예산 규모가 적절히 조정됨

○ 본 세부과제는 민간경상사업으로 100% 국고보조사업이며, 기준보조율을 준수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시행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의료표준을 전담하기 위해 보건의료본부에 '표준화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간호·의무기록 등 의료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국가보건의료표준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술표준인 ISO/TC 215 전문위원회 간사기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함

○ 전문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 적절한 보조사업자에게 재원을 집행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

- 매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내용에 대한 승인을 완료한 후 예산을 집행하며,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시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내용을 담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항상 함께 붙여서 통보하고 월별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월별 점검회의를 통해 보조사업 실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8장(보조사업 사후관리)에 근거하여 보조금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수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음

○ 국고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간 상호 연계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표준사업'과 국내·외 표준간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WHO 내 표준화 선도국 입지 마련을 위한 'WHO-FIC 한국협력센터 운영 및 국제협력'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본 세부과제의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하며, 내역사업별 예산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이 필요함

- 보건의료정보 표준개발 및 위원회 운영 등 모든 내역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예산규모가 적정함

### 3-2 정책 제언

○ WHO 요청과제('19년 200백만원, ICD-11 개정판) 이후의 후속사업 개발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1.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4.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7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보조사업은 '정상 추진'이 필요함<br>·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며, 성과관리가 철저히 수행되고 있음<br>·현재 5년 단위의 국가암관리종합계획('16~'20)을 수립하고 있으나, 암등록통계사업 및 암환자 코호트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적절한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br>-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미지급금 해소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암 예방, 조기발견, 치료, 말기암 관리를 포함하는 암 진행단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국가 암관리 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암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암등록 통계 관리 및 홍보, 암검진,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지역암센터 지원,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암연구국제협력, 암역학조사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암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에 사업내용과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법령 명 및 조항>**

-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암관리법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암관리법 제46조(비용지원),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호스피스사업),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 7개의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암관리법' 및 '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암은 질병에 의한 사망원인 1위로, 17년 기준 암 사망자는 27.6%를 차지하며, 조기발견, 치료 기술의 향상 등에 따른 암 경험자의 증가, 그리고 암예방 노력, 조기검진 및 암 치료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암생존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의 암예방, 조기 발견, 치료, 말기암 관리 등 전주기적 암관리를 수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암환자로 한정할 수도 있으나, 암예방 및 조기발견 등의 사업취지를 감안할 때 전 국민이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암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 대상 국가암진단 지원 등 국가차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의 7개 내역사업은 암예방, 조기 발견, 치료, 말기암 관리 등 전주기적 암관리라는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됨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계획서 수립에 있어서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사업의 성과지표는 국가암검진 수검률, 연령표준화 암사망률, 호스피스 이용률 3개로 설정하고 있으며, 18년에 당초 계획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 및 달성도

| 성과지표 | 구분 | '17 | '18 | '19 |
|---|---|---|---|---|
| 국가암검진 수검율(%) | 목표 | 36.4 | 39.0 | 40.0 |
| | 실적 | 39.7 | 32.8 | |
| | 달성도 | 109.1 | (11월기준) | |
| 연령표준화암사망률 (인구10만명당 암사망자수) | 목표 | 87.3 | 80.3 | 79.3 |
| | 실적 | 82.0 | 78.7 | |
| | 달성도 | 106.0 | 102.0 | |
| 호스피스이용률(%) | 목표 | 신규지표 | 21 | 23 |
| | 실적 | | 22 | |
| | 달성도 | | 104.8 |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가암관리사업은 암 발생율 및 암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암예방, 조기 발견, 치료, 말기암 관리 등 전주기적 암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내역사업 중 호스피스 영역은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민간의료기관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분야로 공공성이 강하며, 지역암센터는 지역거주 암환자들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암관리사업 운영 및 연구, 진료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암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차원의 보조금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될 가능성은 없음

○ 국가암관리의 모든 사업들은 국민들이 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암의 말기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주기적 암관리 사업으로, 본 사업추진으로 인한 최근 암발생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령표준화암발생률(인구 10만 명 당 표준인구로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사용) : '12년 324.6명 → '13년 315.8명 → '14년 292.5명 → '15년 278.2명 → '16년 286.8명

○ 사업이 폐지될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암검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며, 그 동안 투입된 예산이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매몰비용으로 발생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암등록통계 및 홍보, 암검진, 지역암센터 지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지역암센터지원,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지원, 암역학조사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재정지원규모의 변화는 19년 예산은 52,996백만원으로 18년 대비 약 54%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암검진 미지급금의 증액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지자체보조('17년 47,154백만원 → '18년 23,474백만원 →'19년 37,270백만원), 민간보조('17년 8,681백만원 → '18년 10,055백만원 → '19년 14,950백만원)

○ 본 세부과제는 지자체보조 및 민간단체보조로 구성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본 세부과제는 전주기적 암관리를 수행하는 대규모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기반한 5년 단위의 재정추계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수행하는 암통계 및 코호트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사업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민의 암부담을 줄이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고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의 내역사업은 암검진, 암역학 조사, 지역암센터 지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의 특성별로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함

○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암관리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국립암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호스피스전문기관은 각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암관리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년도 집행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 배정 시 확인하며, 예산집행 현황 등 수시로 모니터링을 수행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가암검진사업은 ‘국가암검진 사업안내 지침’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하며, 지역암센터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지역암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며, 암생존자통합 지지센터 지원사업은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국가암관리 보조사업의 반환, 정산 등은 사후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수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까지 부정 수급사례는 없으나, 의료기관 검진비용 청구 시 착오에 의한 오지급으로 환수사례 발생함

○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에 검진비용의 환수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안내 시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암 예방, 조기발견, 치료, 말기암 관리를 포함하는 암 진행단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국가 암관리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암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암등록통계 관리 및 홍보, 암검진,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지역암센터 지원,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암연구국제협력, 암역학조사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 시행효과도 우수함

- 단, 전주기적 암관리를 수행하는 대규모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부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17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해 추경 편성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음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에서 수행하는 암통계 및 코호트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사업예산 추계액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국가예방접종실시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1.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5.4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사업의 관리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필요함<br>·본 사업은 국가 단위의 전국적 예방접종관리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성이 높으며, 내역사업의 구성이나 보조사업자 및 기준보조율 지정이 법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연중 집행실적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도간의 과부족액이 발생함.<br>·시도간 예산액 조정과 집행과 관련하여, 연중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필요시 재조정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명확함

- 경비지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보조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관련조항 제64, 65, 66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근거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 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
|---|---|---|
|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 서울: 30<br>지방: 50 |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보조사업으로 타당함

○ 본 사업은 국정과제의 44-3번 실천과제인'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에 부합됨

○ 본 사업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은 개인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으로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전국적 예방접종관리로 이루어져서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필수예방접종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되 수혜자의 연령 및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업무성격에 따라 세부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됨

○ 국가예방접종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및 인프라구축, 사업 목표 및 전략수립은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접종 시행 등 세부적인 사업은 기준보조율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각 지자체를 기반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음

- 내역사업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실시, 성인 국가예방접종실시(노인, 고위험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지원 등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국가예방접종사업 기반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목표 및 전략 수립 등은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접종의 시행 등 세부적인 사업의 실시는 각 지자체(시·군·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기준보조율에 근거하여 재원분담을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서울 30%, 지방 50%)함으로써 재원분담의 적정성을 기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 내 예방접종 등록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업대상을 정확히 추산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측면에서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지자체별 사업대상자수 접종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며, 연중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과부족액에 대한 시도 간 예산액을 조정하여 집행함

- 2018년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변경이 3차(1차: 2018.5.16., 2차: 2018.9.5., 3차: 2018.9.14)에 걸쳐 진행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목표 및 전략 수립 등은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접종의 시행 등 세부적인 사업의 실시는 각 지자체(시·군·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가 단위의 전국적 예방접종관리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성이 높으며, 내역사업의 구성이나 보조사업자 및 기준보조율 지정이 법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지자체별 사업대상자수 접종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연중 집행실적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도간의 과부족액이 발생되므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재조정 노력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시도간 예산액 조정과 집행과 관련하여 연중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거나 재조정할 필요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9.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2.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br>·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나,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성과 평가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br>·사업 목표의 설정 및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보완적인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은 「장애인복지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은 6개 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활의료 및 재활·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가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은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은 민간 시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타당성이 있음
- 국정과제 42-5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과 관련된 사업임
- 장애인 및 잠재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수혜대상이 광범위하고 혜택이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나, 목표의 설정과 성과 평가에 문제가 있어 효과가 불분명하게 나타남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명확한 편이나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사업효과 성과지표는 공공재활프로그램 이용자의 사회복귀율인데 목표치의 산정은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설정하는 대신 국내 민간 재활프로그램이나 해외 공공 재활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사회복귀율은 프로그램의 품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장애 정도 등 사업 외적인 요인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의 취지에 맞추어 공공재활프로그램 수요 대비 공급 비율, 이용자 만족도 등 보조 성과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재활의료가 민간 시장을 통해서는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활의료는 민간 시장이나 자치단체의 투자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며,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요에 맞추어 재활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6개 권역재활병원에서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 이외에도 민간 병원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함

- 권역재활병원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이나 권역재활병원의 프로그램 운영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재활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민간 보조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행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은 불분명하며, 보조율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경비는 강사비 등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운영비가 인건비의 약 세 배 정도 규모인데 사업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고,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도 불분명함

- 현행 보조율은 80%로 일괄 적용되는데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할 경우 재원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권역재활병원 이용자들에게 재활의료 및 공공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6개 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보조사업자를 새로 선정하지는 않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함

- 보조사업 집행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공재활운영단을 구성하고 전담 사회복지사 1인이 상근하며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추진함

- 보조금 부정사용 등의 경우 환수조치 등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예산 및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운영지침에 규정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실시함

-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은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침에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실적 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체감사 후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은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나,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성과 평가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업효과 성과지표는 공공재활프로그램 이용자의 사회복귀율인데 목표치의 산정은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설정하는 대신 국내 민간 재활프로그램이나 해외 공공 재활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치마크를 설정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사회복귀율은 프로그램의 품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장애 정도 등 사업 외적인 요인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의 취지에 맞추어 공공재활프로그램 수요 대비 공급 비율, 이용자 만족도 등 보조 성과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성과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 목표는 과거 실적의 평균이 아니라 적절한 비교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성과 평가는 사회복귀율 이외에도 수요 대비 공급 비율, 이용자 만족도 등을 지표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나눔문화확산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9.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2.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감축(‘20년 예산부터 1억원 예산 감액) 및 사업방식변경<br>·일부 내역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br>·나눔교육 인프라구축 중 나눔포럼 개최(내내역)의 효과성이 불분명하여 해당 예산액 1억원을 감축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지원사업에서 수혜단체의 자부담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함<br>·나눔단체의 객관성, 투명성 관련 역량 수준을 아직 미흡한 수준인 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①나눔문화확산을 위한 실천(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지원), ②나눔교육 인프라구축(나눔교육 실시)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역 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는 각각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3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나눔교육 환경조성, 나눔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 역량강화, 나눔축제지원 등 나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참여유도, 나눔실천 프로그램의 다양한 제시를 통해 국가사회를 '나눔사회'로의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 타당하며 명확함

- 세금만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실천 활성화, 나눔 인식 개선을 위한 나눔교육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의 관점에서 중요함

○ 동 보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나눔단체 종사자, 지역축제 관련자 등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간접적인 수혜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함

- 나눔교육 지원 및 지역축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나눔 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민간재원 규모의 총량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저소득계층 및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보조사업은 나눔문화 확산 및 생활속 체험을 위하여 '나눔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에 경비를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처에 보급하며, 나눔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나눔단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나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하고 있음

-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실천(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지원), 나눔교육 인프라구축(나눔교육 실시) 등 두 개의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된됨

○ 나눔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눔교육 강사 양성교육, 4개 권역별(대상별) 나눔교육, 나눔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이 계획대로 실시되어 왔고, 기존 활성화된 지역축제 기간 중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집행하여 나눔문화 전파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였음

○ 나눔문화 참여도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나눔문화 선진국의 수준을 준거로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의 설정이 필요하고, 나눔단체의 객관성, 투명성을 포함한 역량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내용의 보강 및 그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경제적·사회적으로 척박한 나눔환경 속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민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조금을 통한 국가의 지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됨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나눔교육 인프라구축 및 지역축제 나눔 관련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음

○ 나눔문화는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사회적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소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직접적인 사업비로 집행되고 행정비용의 비중은 높지 않아 보조사업 목표 달성에의 실효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내역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예산 실집행률 또한 양호한 편임

○ 근거 법령에 따라 보조율 100%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지원사업에서 수혜단체의 자부담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효과성이 불분명한 나눔포럼의 폐지를 통해 '20년 예산부터 1억원 예산 감액이 필요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기부금의 규모도 2007년 8.8조원에서 2016년 12.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보건복지부 VMS(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를 이용한 자원봉사수도 8백만명으로 나눔문화 확산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객관적인 공모절차 및 외부위원을 포함한 투명한 심사과정 등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한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른 공모 및 사업수행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해 사업내용, 예산규모,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월별 예산액 산정 및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며, 교부 시 교부조건을 안내하고 있음

○ 나눔교육, 나눔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 및 나눔문화 확산 등으로 공모 분야를 세분화하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나눔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 전국 단위 나눔문화·교육 확산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으로 응모자격을 한정하면서 전국단위 추진역량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를 통해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며,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함

- 사업수행 중 사업 추진내용이나 예산 집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전허가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집행현황 점검 등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함(국고보조금 교부 시 점검계획을 수행업체에 미리 통보함)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집행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수행 중에도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부적절한 집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 공모 사업 지정 불가 등 적정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관련 절차 등 관련 규정을 통보하고 있고, 사업 완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정산 및 회계감사 실시, 중요재산 관리,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나눔교육 기자재를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목록을 작성·비치하도록 사후 관리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체계를 통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대체로 낮음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현황 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명확히 통보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 다만, 나눔단체의 객관성, 투명성 관련 역량 수준을 아직 미흡한 수준인 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보조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내역 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3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실천 활성화, 나눔 인식 개선을 위한 나눔교육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직간접적인 수혜범위는 국가적으로 광범위함

○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지원, 나눔교육 인프라구축 등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된되고, 나눔문화 참여도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

- 다만,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의 설정이 필요하고, 나눔단체의 역량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내용의 보강 및 그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나눔문화는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하므로 동 보조사업의 사회적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됨

○ 각 내역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예산 실집행률 또한 양호한 편이나,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지원사업에서 수혜단체의 자부담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성이 불분명한 나눔포럼의 폐지로 '20년부터 예산 1억원 감액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나눔단체의 객관성, 투명성 관련 역량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 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3-2 정책 제언

○ 나눔문화 선진국의 수준을 준거로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의 설정이 필요하고, 나눔단체의 객관성, 투명성을 포함한 역량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내용의 보강 및 그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농특)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2.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6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br>·보조사업 시행 기간이 오래되었고 시설개선이 높은 수준으로 진척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br>·신축사업은 시급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증축과 개보수를 통해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적 근거는 명확함

- 지역보건법 제24조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에서 국가·도 및 특별자치도는 시·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보조가 포함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함

-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지역보건법 제2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에서 명시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농어촌지역은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료서비스의 시설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보조사업의 일차적 수혜자는 신축, 증축 또는 개보수가 이루어진 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으로 범위가 넓으며 2차적 수혜자는 없으나 일차적 수혜자의 건강 개선을 통해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일차적 수혜자는 건강 증진 이외에도 지역 보건기관의 신축으로 공공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져 방문 시간 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시설현대화를 통해 개선된 의료서비스 시설을 이용하여 이용의 편의성과 제고되는 혜택이 존재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개선사업과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사업은 농어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보조사업 목표와는 거리가 있음

-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사업에는 보건기관 시설 신축·증축·개보수비 지원, 보건의료장비 지원, 보건사업 차량 지원, 병원선 수리비용 지원이 포함됨
-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 사업은 19년도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본 예산으로 이관되어 내역사업에서 제외되었음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임

- 사업목표는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기능보강을 통해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임
- 보건기관별 시설과 장비·차량을 지원하며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경우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보조사업의 성과지표인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성과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보건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시설개선 전·후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만성질환 관리, 정신보건 이용자 증가가 뚜렷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사업비의 2/3를 국고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책임성을 부과하고 있음

- 국비 지원 면적에 대한 총공사비의 2/3를 국고보조하고 설계비·감리비 등 부대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20%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부대비용 역시 국고보조함

○ 유사·중복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은 낮음

○ 국고로 지원받은 보건기관의 순수 신축에 대한 시설개선율이 70%를 상회하며 증축 또는 개보수에 대한 개선율과 지자체 자체수행한 시설개선을 포함하면 실제 시설개선율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보조사업 종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함

- 2018년 보건소 신축을 통한 시설개선율은 92.7%, 보건지소 신축을 통한 시설개선율은 86.6%로 대부분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이 이루어진 상황임

- 신축에 대한 사업 잔여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설개선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낙후시설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오지·도서 지역 등에 대한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초기 사업이 진행되어 건축 연한이 오래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개보수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준보조율 2/3를 적용함

○ 중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사업 성과와 수요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농어촌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보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의 인권의 보호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을 평가하며, 서류평가,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계수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함

- 시설부문은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목적의 적절성, 시설개선의 적절성, 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 절차 준수 여부, 지역참여 의지 등의 항목을 평가함
- 보건의료장비 부문은 장비 필요성 및 타당성, 활용도, 인력 안정성, 행정절차 준수도, 형평성 등의 항목을 평가함

○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에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지방비 매칭을 확인한 다음 국비를 교부하는 절차를 따름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심의하고 부처와 관련 기관이 사업 수행 단계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집행을 관리함

- 매월 사업 실집행실적 점검 및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을 시행함

○ 사업집행 점검을 통해 부진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평가에 환류함

- 각 부문별 집행현황 점검 결과를 차차기년도 시설사업 선정 평가항목에 평가함
- 보조금의 전용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지원을 제외하고 차기년도 지원대상 신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가 취합·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함

○ 중요재산 관리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높고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1994년에 시작된 사업이며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거나 오지·도서 지역과 같이 의료시설 접근도가 취약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신축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함

-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이 열악한 오지, 도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사업 시행 초기 지원받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건물의 안정성이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함

○ 신축사업보다 예산 소요가 적은 증축, 개·보수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동일한 비용으로 수혜 대상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3-2 정책 제언

○ 농어촌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기관 이용행태와 의료사업 수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장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9.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정상추진함.<br>·본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다양한 복지자원 지원을 활성화하는 활동과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사업지원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효과성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재원관리의 적절성도 인정됨.<br>·사회정책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예산사업의 재정규모가 매년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성과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정부지원의 비용-효과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운영 접근이 요망됨.<br>·사업의 운영주체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로 한정되어 있음. 장기간 두 기관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민간복지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활성화 여건이 성숙될 경우 사업수행 기관의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9조(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기부식품 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국가 등의 지원) 등에서 민간복지자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육성을 통해 공공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부의 표준화된 기준에서는 불가피하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여적 복지정책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사회연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민간복지자원의 육성을 통해 의미있는 매년 복지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의 경우, 복지분야 자원봉사자 135만명이 2,720만시간의 복지봉사를 제공하였음.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2015년도 2개소에서 2017년도 50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창출되어 2017년 기준으로 173개 민간기업에서 2.4조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세부 내역들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회복지자원봉사, 휴먼네트워크,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육성지원, 사랑나눔실천운동, 기업사회공헌활동지원,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육성) 및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서는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7조에서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 민간복지자원 육성과 관련한 사업들은 매년 세부 내용이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음. 지역단위별로 민간복지자원 활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인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기 보다 (현재와 같이) 민간기관에 기능을 위탁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사업에서 정부지출의 적정 규모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점증적인 증감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절대적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재정지출 규모는 점증적으로 증대하는 경향이 있음. 재정투입 대비 비용-효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지원규모의 적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 따라서 사업의 성격과 상관없이 보조사업의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것은 제한적임.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제52조,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업무의 위탁·지정을 통해 수행함. 보건복지부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영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됨.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경우는 업무를 위탁·지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로 선정하였음. 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 수행의 기능에 대한 위탁임. 유사 복지사업이 확대될 경우 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를 통해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관리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를 통해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며,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함.

○ 국고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관련 절차 및 규정을 통보하고 있고, 사업계획서, 사업 완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음.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후관리 절차 마련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없으며,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별 서비스 지원에서 부정수급 관리에 유의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정부의 공식적인 표준화된 복지서비스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복지자원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인정됨.

○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민간복지자원 육성 성과가 인정되며 보조사업관리와 재정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민간부문의 복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별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민간복지자원들의 균형있는 육성 접근이 필요함.

○ 2019년도 예산의 세부내역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67백만원)은 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조사연구 사업비에 지출되는 경비임. 해당 사업비가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게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함. 세부내역사업이 종사자 교육과 조사연구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내용 중심으로 예산사업의 명칭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관련 예산규모와 사업내용이 확대될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사회복지사관리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8.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0.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br>· 사업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역사업을 수행하기에 예산규모가 적정함<br>· 2019년 사업예산은 노후화된 자격관리 통합시스템의 교체비가 포함되어 2018년 사업예산과 대비하여 100% 포인트 이상 대폭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음<br>· 2020년 보조사업 예산은 2019년 사업예산이 아니라 2018년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사회복지사관리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타당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46조 >**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관리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이 타당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2조, 제25조 >**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권한의 위탁)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통해 각종 국가 복지 시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국가 사무를 민간단체(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탁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국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의 1차 수혜자는 사회복지사이고, 사업내용과 수혜자 간의 연계가 분명하며,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국민 복지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2차 수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2018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1,017,553명으로 1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2017년 현재 66,280명임으로 매년 6만여 명의 보수교육 대상자들이 각 시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 보수교육 운영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제공지원, 보수교육관리운영을 내역사업으로 합리적으로 구성하였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은 -자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제공지원, 보수교육관리운영 등은 사업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자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 관리를 수행함

- 정보제공지원은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질적 향상 도모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및 실습 관련 등의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상담원 활용 및 전문상담 교육, 주요문서(자격증 신청서류) 전자화, 실습 교육 매뉴얼 보급 및 실습기관 현장점검을 진행함

- 보수교육관리운영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집합보수교육 및 사이버 보수교육)과 실시기관 간담회, 강사양성워크숍,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수교육 수준 및 질 제고를 도모함

○ 사회복지관리 사업은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

- 예산 집행률은 '15년 85%, '16년 100%, '17년 100% 로 3년 평균 95%를 기록하여 양호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능력의 관리는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민간단체(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위탁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 보수교육관리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없음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사무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사업'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는 한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인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교부가 불가피하며,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므로 민간단체(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해 계속된 정부위탁사무 운영이 필요하고 연장이 불가피 함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이 중단될 경우 각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어려워지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의 관리 및 수행이 곤란해지고, 결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사회복지사관리 업무 이관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인력, 시간 및 이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은 자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제공 지원, 보수교육 관리 운영, 사회복지사 정책조사 연구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각 사업비는 사회복지사 자격정보 관리(약 1백만 건)와 새로 등록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정보 관리(매년 7만여 건 이상)를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비용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음

- 2018년 보조금 예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772백만 원의 보조금 중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15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372,750,000원으로 보조금의 48.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배분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상시 인력 인건비 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하고 연간 1억 3천5백만 원 가량을 인건비로 자부담하고 있음

<사업예산 현황>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713백만원 | 772백만원 | 1,605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민간단체부담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합계 | 713백만원 | 772백만원 | 1,605백만원 |
| | 100% | 100% | 100% |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에서 시행하는 내역사업에서 대한 사업비는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2019년 사업예산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예산이 포함되어 보조금 규모가 전년도 대비 100% 이상이 급증하였음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은 민간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 보수교육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 보조율 100% 가 적절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은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1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회복지관리 사업은 공모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한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 및 보수교육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보조사업자라고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에서 보조금 집행관리체계 및 규정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사업결산 내용을 보고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국고보조 예산을 포함한 협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법」 제27조제2항(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에 따라 보조금 정산 및 회계감사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보조금의 반환사유가 생겼을 시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절차와 규정을 두고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2개월 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증 받아 검증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짐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례가 없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으로 보조사업 집행 단계별로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전용계좌, 보조금 별도계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을 명시하여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회복지사관리사업은 사업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는 내역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사회복지사관리 사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2020년 사업예산은 '19년 예산이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예산이 포함되어 보조금 규모가 전년도 대비 100% 포인트 이상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18년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옹호하고,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회원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연회비 납부율(9.7% 수준, 사회복지사 1급 한정 시 15.8%)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 등록비 인상,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 요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서비스 확대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기 바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운영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9.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2.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6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회보장관련 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이 요구되므로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 이 사업은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세부사업과 동일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예산항목 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지자체 및 시설방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재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이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이 사업은 개별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기 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더 적합함.

○ 사업수혜자의 주된 범위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한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지자체 및 시설 방문으로 되어 있음. 이 중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비표준기술제거, 안전점검 관리 등이 포함됨.

○ 보조사업 내용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뚜렷함.

○ 100% 보조사업이나 2017년 집행률, 2018년 집행률 낮은 편이고, 사업의 이용자만족도 역시 하락하고 있어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보기 다소 어려움.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보다는 국가가 하나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또한 융자, 출연보다는 보조방식이 적합함.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운용하고는 있지만, 사회복지법인 회계시스템과는 내용이 차별되고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범부처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수급이력 정보의 통합관리 및 적정수급관리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업무처리 지원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등 3개 부처 13종*의 바우처 사업의 신청, 이용, 비용지급, 정산 등의 업무 처리
  * 복지부 11종, 산업부 1종, 여가부 1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료 지급·정산 및 자금관리와 어린이집 등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 운영·관리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보건사업 및 진료업무 처리 지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회계, 인사, 입소자 및 서비스 관리 등) 처리 지원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노인돌봄(기본)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지원

- 보건·복지포털: 보건복지 관련 정보·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그림. 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 업무 요약

○ 사회보장분야가 확대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대상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지출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회계시스템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 지출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됨.

○ 기 투입된 재정에 대한 재정적 손실은 아니지만, 향후 행정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구축비 이외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억 17백만원의 경우, 이 시스템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스템 활용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사회복지관련 법인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연구수행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정 부분 인정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사회보장정보원은 법률에 의해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되었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복지부 별도의 지침을 통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 자체 규정 등을 통해 상호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 주간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전 승인한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회보장정보원 자체규정 및 복지부 보조사업관리지침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

○ 사회보장원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를 수행함으로써 적정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낮고 위반 시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회보장관련 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이 요구되므로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사회복지정책수립및관리활동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2.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2.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0.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7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2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br>·동사업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체결된 '사회복지분야 협력 양해각서(MOU)'의 구체적 실행조치로, 개도국 사회복지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전문가 대상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음<br>·보조사업인 '사회복지 국제교류 협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이라는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데, 서로 간에 연계성이 낮아 보조사업을 현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br>·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을 도전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br>·동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의 법적 근거는 없음

○ 다만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체결된 '**사회복지분야 협력 양해각서(MOU)**'의 구체적 실행조치로, 개도국 사회복지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전문가 대상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참고] 사회복지협력 MOU 주요내용**
- **협력분야** : 연금정책,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정책, 영·유아 및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정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 **협력형태** :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경험교류,** 회의 및 기타 행사 참석, **양국 관심분야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 및 인력 훈련** 등

* 사회복지분야 협력 **MOU 체결현황**
- 한-우간다 사회복지분야 협력 MOU('16.5월)
- 한-에티오피아 사회복지분야 협력 MOU('16.5월)
- 한-몽골 사회복지분야 협력 MOU('16.7월)
- 한-라오스 사회복지분야 협력 MOU('16.9월)
- 한-러시아 사회복지분야 협력 MOU('18.6월)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사회복지분야 최초의 무상원조 ODA 초청연수(정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문가 대상)를 추진하여 수원국 아동·노인·장애인 등 빈곤·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개도국 빈곤감소 및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국정과제인 「5-3-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

- 19년 보조사업의 대상국인 라오스 및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정부 국정과제 신남방 정책의 중점 협력국

- 몽골의 사회복지 공무원·전문가 대상 2년차('17~'18년) 맞춤형 초청연수 추진완료

○ 동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동 보조사업 참가자인 개도국 사회복지 공무원·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나 2차적 수혜자의 범위는 모호하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이라는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사회복지 국제교류 협력지원'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공무원·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지식전수를 진행, 개도국의 중장기 사회복지 정책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국제개발을 매개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내역사업은 세부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내주요 국제협력 초청연수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수성취도·만족도를 활용(예.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등)하여 성과 측정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사례 및 동 사업 추진목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연수성취도·만족도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다만 목표 수준의 설정 등이 도전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보조사업은 G2G성격으로 보건복지부와 대상국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MOU에 근거하며, 무상원조시행계획을 매년 제출하는 ODA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간 협력사업의 추진배경을 이해하면서 교육인프라 및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매년 초 공모·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17년 및 '18년 수행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동 기관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포함 국가 보건복지 인재양성 중추기관임

○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승인하는 ODA 사업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양국간 체결된 MOU 후속사업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기반 공고화를 위해 민간의 자원보다는 보조금 지원이 더욱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됨

○ '17년 신설된 중앙부처 최초의 사회복지분야 ODA사업(사업명: 복지분야초청연수 Welfare Korea Academy)으로, 개도국 중앙부처 공무원·전문가 대상 사회복지정책·제도 전반을 전수하는 유사·중복사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8년 기준, 수혜자 1인당 실질적 지원규모는 약711만원(연 총 수혜자 20명 기준 142백만원)으로 이는 행정비용 규모(4,780만원) 대비 약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18년 보조사업 규모는 190백만원으로 4개 항목으로 구성(①인건비 25%, ②교육훈련여비 27%, ③과정운영비 47%, ④일반관리비 1%)

- 초청연수 참가자를 위해 집행되는 직접비용, 즉 과정운영비와 국외여비의 총합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비 구성이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별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장>**

| 절차 | 주요내용 발췌 |
|---|---|
| 보조사업자 공모 |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 게시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함(사업기본방향, 대상기관, 응모방법, 선정·지원절차, 수행일정 등을 포함) |
| 선정기준 |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중복·편중 여부 등 검토 |
|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15인의 위원으로 구성(소속 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성·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 포함) |
| 보조금 교부기준 및 절차 |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2회부터 전회 교부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

○ 매년 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위탁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교부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 5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 대상 심사위원의 총괄 심사의견으로 결정

○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사업자 선정은 대체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보조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집행내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음

- 특히,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절차를 통해 전회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재점검하고 있음
- 이외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의 세부내역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보조금 실집행 및 단계집행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점검하고 있음

- 예산전용 등의 변경사유가 있을 시 공문으로 요청한 후 승인처리(기타 집행관련 지적사항 없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사업 집행은 대체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보조금관리규정'에 준하여 보조금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장>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 --- |
| 보조사업 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 또한 보조금관리법 및 방발기금 관리규정에 따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분요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하는 등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내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실집행 및 단계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가 예산집행 계획을 포함한 보조사업계획안 제출한 후에는 보조사업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예산집행 계획에 변경사유가 타당하여 예산 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선 공문 발송을 통해 승인 처리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사업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체결된 '사회복지분야 협력 양해각서(MOU)'의 구체적 실행조치로, 개도국 사회복지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전문가 대상 초청연수 추진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이라는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 '사회복지 국제교류 협력지원'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공무원·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지식전수를 진행, 개도국의 중장기 사회복지 정책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국제개발을 매개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역사업은 세부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성과지표로 연수성취도·만족도 등을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목표 수준의 설정 등이 도전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3-2 정책 제언

○ '사회복지 국제교류 협력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인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이라는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인데, 서로 간에 연계성이 낮아 보조사업을 현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을 도전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동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1.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70.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본 사업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여 지자체 보건관계자들에 대한 사전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여 시·도 보건관계자의 신속·정확한 대응 태세 완비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높음

○ 본 사업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위해 지자체경상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34조에서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높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신종·재출현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해 지자체 보건당국의 대비 능력을 향상시켜 해당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높음

○ 본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각 지자체의 보건관계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전 국민을 신종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17개 시도에 대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지자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신종 감염병 유입·확산 시 지자체 보건관계자들의 초동 대응 능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본 사업은 훈련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 지식도 향상 여부를 평가하여 훈련성과를 측정하고 있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함

- 훈련 전후 평가점수를 측정하여 향상도를 측정한 결과 2017년과 2018년 모두 20% 이상 향상 된 것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훈련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높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대응 교육을 통해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초동대응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과적임

○ 본 사업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해 지자체 보건소 등 보건당국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여타의 사업들과 유사·중복성이 없음

○ 본 사업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된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높음

○ 본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지자체의 대응능력이 떨어져 신종 감염병 출현 시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MERS 발생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약 6.4조 원 정도 발생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모두 지자체 훈련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높음

○ 본 사업은 지자체 훈련 예산으로 모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보조율이 50%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음

| 구 분 | A | B | C | D | E | 계 |
|---|---|---|---|---|---|---|
| 계 (만원) | 1,500 | 1,300 | 1,650 | 1,350 | 2,100 | 7,900 |
| 각 보조금(만원) | 750 | 650 | 550 | 450 | 350 | |
| 대상도시 | 서울<br>경기 | 부산<br>전남 | 인천충남<br>(세종포함)<br>전북 | 강원<br>충북<br>경북 | 대구, 광주<br>대전, 울산<br>경남, 제주 | 17개 |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지자체의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조 사업자 선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선정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재원을 집행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 체계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훈련성과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차등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사업 종료 후 각 지자체로부터 장산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시행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별도의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여 지자체 보건관계자들에 대한 사전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5.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4.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본 사업은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 사업단 운영에 관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민간보조사업자인 한국건강개발원의 전문성이 인정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중앙-지자체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보건 자원 조직화 및 지역사회 현장 대응역량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 강제성이 있고 위탁기관 지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함

○ 본 사업은 내역사업 중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 사업단 운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6개의 세부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로 구성됨

- (1)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시행 및 평가, (2) 감염병관리기관 평가 및 음압격리병상 기술지원, (3)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 교육, (4) 지자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구축, (5)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인식제고 홍보활동, (6) 기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높음

○ 본 사업은 지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업이므로 1차적 수혜자는 사업주체인 한국건강개발증진원이고, 2차 수혜자는 해당 지원을 받는 유관기관 담당자이나 최종수혜자는 신·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받는 전국민으로 볼 수 있어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다고 판단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음

- 인건비는 보건 분야의 전문가적 지식을 갖춘 인력(석·박사의 책임급)에 대한 것으로 박사급 2인, 석사급 2인, 학사급 2인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되어 이고, 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편성됨

| 내 용 | 예 산 | 전체예산 중 비중 |
|---|---|---|
|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시행 및 평가 | 0.2 억 원 | 2.4% |
| 감염병관리기관 평가 및 음압격리병상 기술지원 | 2.51억 원 | 30.6% |
|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 교육 | 0.67억 원 | 8.2% |
| 지자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구축 | 0.24억 원 | 2.9% |
|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인식제고 홍보활동 | 1.38억 원 | 16.8% |
| 사업단 운영 및 인건비 | 3.2 억 원<br>(인건비 : 3억 원,<br>운영비 0.2억원) | 39.0% |

○ 본 사업의 목적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대비 위기 대응 훈련 시행과 인프라 평가, 지역보건자원 조직화로 세부 내역사업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성과지표들을 갖추고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성과지표들을 달성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지자체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 수행이나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공중보건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 위기 대응 능력이 하락하여 더 국가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사업이 폐기되는 경우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시 위기 상황 대응력이 떨어져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소요와 국가 경제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총사업비 8.3억 중 기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3.0억 원으로 책정되어 인건비 비중이 다소 높지만 사업 특성상 보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내역사업의 대부분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세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보조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신종·재출현 감염병은 전파가 용이한 반면 치명율이 높고 치료가 조기 발견 및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중앙-지자체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능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자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보조사업자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회계규정, 회계처리규칙, 예산집행지침 등 집행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을 통지하고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으면 보조사업자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자체적으로 보조 사업비 예산집행 기준을 바탕으로 기준 외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토록 관리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교부조건과 정산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민간보조사업자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자체적으로 회계규정과 물품관리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예산집행 및 사업성과 관리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정산을 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관리 규정 내에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자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체적으로도 임직원 행동 강령 등과 같은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 사업단 운영에 관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현재 민간보조사업자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주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사업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3.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7.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2.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6.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실종아동전문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실종아동가족지원서비스(심리정서서비스)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교육, 홍보, 키트개발 등의 내역으로 전환하거나 감축하여 전체 규모 3% 감축(1억1천만원에서 50%정도 감축)<br>·사업수행방식이 수혜자의 관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사업방식에 대하여 보다 많은 예산과 활동이 실종아동예방홍보 사업방식변경하여 집중해야 할 것임.<br>·본 사업은 실종아동의 범주에 유괴 등의 원인과 가출의 원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두 경우가 원인과 결과, 대처방안이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대체로 미아, 유괴 등에 의한 실종에 대한 예방교육 등이 주된 내용이나 상담 등 가출을 원인으로 한 상황도 포함<br>·가족 심리정서서비스는 실종아동예방에 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면에서 떨어지므로 사업규모 축소하고 실종예방교육 등의 활동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반활동에 대한 근거규정 있고 의미 명확함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인정하는 것임

- 사회의 보호를 위한 실종아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수혜의 범위는 1차적으로 실종아동이 되겠으나 실종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험과 가능성은 넓음으로 사실상 전사회공동체에 해당되는 문제이자 수혜의 범위가 될 것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노력, 실종예방 교육홍보에 대한 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인 사업내용이 구성됨

- 심리상담, 심리정서프로그램, 사례관리전문화, 상담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업내용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현재 사업규모의 확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실종아동 예방 및 홍보, 교육 분야가 주가 되어야 하며 가족을 대상을 한 심리정서프로그램의 경우 효용성이 다소 낮을 것임

○ 실종아동의 원인이 유인, 납치 등 비자발적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자발적인 가출의 경우 다른 정책프로그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개입 초기 단계에서 자발적 가출과 비자발적 실종을 구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초기 개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참가자수와 같은 투입지표보다 시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종발생시부터 발견 및 가족인계시까지의 평균 시간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산출지표를 통하여 관리활동을 해야 함

| 성과지표 | 지표유형 | 단위 | 실적 및 목표치 | | | | |
|---|---|---|---|---|---|---|---|
| | | | 구분 | '16 | '17 | '18 | '19 |
|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단위: %) | 결과 | 점 | 목표 | 99 | 99.2 | 99.3 | 99.4 |
| | | | 실적 | 99.2 | 99.5 | 99.5 | - |
| 실종아동예방교육참여자수(단위: 명) | 산출 | 명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12,900 |
|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실종아동 발견과 원인행위에 대한 수사 등은 국가의 고유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하겠음

-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 등의 활동이 긴요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은 없음

○ 도시화 진전으로 실종아동의 발생가능성 상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지속적으로 존재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가 19년도 대폭 확대됨

-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매년 실종사건 발생규모,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내실화, 가족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보조금 지급규모 증액

- '18년도 보조사업자 변경으로 기부금등 보조금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점 및 실종아동 예방 및 찾기를 위한 홍보,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이 증액 편성 반영하였다고 함
- 전문기관 인건비, 사업운영경비에 대한 일부 감축 가능성 있음
- 실종아동가족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의 확대보다는 실종아동 발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00% 보조율로서 보조사업단체가 일부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 또는 출연, 출자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형식의 변경 고려할 필요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중앙입양원을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운영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가 변경된 바 있는데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였음
- 중앙입양원의 성격, 거버넌스 등 확인 필요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 일반적인 규정을 활용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관련 일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실종아동의 범주에 다양한 원인과 가출의 원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발적 가출과 비자발적 실종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사업내용을 구성. 실종아동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음

○ 실종가족지원서비스의 사업 내용 중 심리상담 등 다소 우선순위가 낮은 내역사업은 감축하거나 교육, 홍보, 인식개선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할 필요

### 3-2 정책 제언

○ 19년도 예산규모가 대폭 확대된 바 있음

- 19년도 실종아동전문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실종가족지원서비스 심리지원에 대한 일부 사업조정 및 예산규모 조정 필요(전체 예산의 3%에 해당)

○ 이를 바탕으로 감축 3% 권고함

○ 사업방식에 대하여 변경을 통하여 보다 많은 예산과 활동이 실종아동예방홍보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5.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6.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동사업은 사업방식변경으로 판정함<br>·동사업의 목적은 아동, 부모, 교사,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대체로 높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세대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의 실천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br>·다만 동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동사업이 과연 효과적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4조, 제31조

제4조(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은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사업이라는 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의 법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사업의 목적은 아동, 부모, 교사,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대체로 높다고 판단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세대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48)의 실천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

○ 1차적 수혜자는 아동안전 교육대상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광범위하며, 아동 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 학부모 등에게 안전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대상자 이외에 시설종사자, 학부모 등에게도 이익을 발생시켜 2차적 수혜자도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아동안전 교육컨텐츠 개발·보안 및 교육·홍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체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아동안전에 대한 5대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과 보급으로 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 ①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②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③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④재난대비 안전교육, ⑤교통안전 교육

○ 보조사업의 목표는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 등 아동안전사고예방 사업을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감성 확대 및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음

| 성과지표 | 지표 유형 | 단위 | 실적 및 목표치 | | | | |
|---|---|---|---|---|---|---|---|
| | | | 구분 | '16 | '17 | '18 | '19 |
|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 | 결과 | 점 | 목표 | 92 | 92 | 93 | 94 |
| | | | 실적 | 90 | 93.8 | 94 | - |
|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참여자 수 (사이버교육포함) | 산출 | 명 | 목표 | 33,000 | 55,000 | 72,500 | 75,000 |
| | | | 실적 | 67,531 | 50,538 | 74,276 | - |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참여자수의 경우 2018년에는 목표달성을 하였으나 2017년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지표들만으로는 동사업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31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으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아동안전 교육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6)

| 구분 | 1.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2.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3.약물의 오남용 예방등 보건위생관리 | 4.재난대비 안전교육 | 5.교통안전 교육 |
|---|---|---|---|---|---|
| **연44시간** 이상 | 6개월 1회이상 (연**8시간**) | 3개월 1회이상 (연**10시간**) | 3개월 1회이상 (연**10시간**) | 6개월 1회이상 (연**6시간**) | 2개월 1회이상 (연**10시간**) |

○ 또한 안전영역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안전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이나 체험용 교육자료 등의 제반 콘텐츠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하여 안전교육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협력의 방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아동 사망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사회환경등의 변화로 아동의 손상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으로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사고건수: '09년 11,427건 → '15년 25,152건 → '17년 25,699건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사업의 '18년 예산은 30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309백만원(5대주제×61.8백만원)
- 사업운영비: 29백만원(수용비 24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국외여비 3백만원, 사업추진비 1백만원)

○ 이상과 같이 재정지원 규모는 대체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장에 따르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절차는 다음과 같음

-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 공모결과에 따른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계획 수립 · 심사 → 보조사업대상자 지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이상과 같이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수행 가능성, 중장기적 사업체계성 및 신뢰성 향상 등 사업능력 및 법적기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장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시 탄력적 교부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사업종료 후 회계정산 실시(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 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보조금 교부시 부정수급 대응 등의 조치내용 명기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의 집행은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7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및 8장(보조사업 사후관리),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장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시 사후관리등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 관리대장 비치 및 변동현황 주기적 보고등 중요재산 관리
- 사업종료 후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등 명기하고 있음

○ 연도별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재산관리보고를 받고 있음

-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 국고 반납 조치토록 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음

○ 사업종료 후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음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 집행실적 작성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기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도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사업의 목적은 아동, 부모, 교사,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높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세대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48)의 실천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

○ 수혜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의 관리도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동사업의 경우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수를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성과지표들만으로는 동사업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3-2 정책 제언

○ 동사업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4.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0.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1.7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2.4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내역 사업인 아동인권증진지원 사업방식 변경 필요<br>·아동인권증진 사업은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며,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지 않음.<br>·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동권리 주간, 아동권리포럼 등의 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1회성 행사 등으로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필요<br>·국제 기준(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적합한 아동인권 사업 개발 필요하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검증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인권증진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의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개의 내역 사업 모두 포괄적인 사업 근거는 있으나, 개별 내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근거는 없음.

- 아동 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역사업인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 보조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아동인권증진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이 다소 떨어짐.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일부가 국가 정책 수행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학대 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은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48-5)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

- 아동 학대 근절 신고의무자(교사·의료인 등)를 위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은 국정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 명시된 사업은 아니지만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임.

○ 아동인권증진지원 사업은 아동 권리주간과 아동권리포럼,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 5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부분적으로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회문제·정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사업이나 부분적으로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혜택이 불명확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아동 인권 사업과 학대 예방 사업으로 구성됨. 이 중 어린이날,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포럼, 아동권리주간 등의 내내역 사업은 1회성 행사로서 아동인권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18년 아동인권증진 활동참여 아동 수는 목표 대비 실적이 88.5%에 그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소규모의 행사에 그치고 있어 아동 인권 강화 사업의 효과를 적절히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1회(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5개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에서 모든 신고의무 자(총 25개 직군)로 확대되어 '17년 4개의 대표적 직군(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등 적정 사업 추진하였음.

○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드림스타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표가 명확하며, '18년 기준 숨어있는 위기아동 55,364명을 발견하여 조치하였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포럼이나 어린이 날 같은 행사 추진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재검토 필요함.

○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개발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양질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영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추진 또한 필요함.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과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s://www.gseek.kr/)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게 하여 사업 효과성 높임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없음. 불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짐

○ 소액의 상호 이질적인 다양한 내내역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 비용 보다 사업 실효성이 크지 않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학대 아동 신고와 서비스 연계 실적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18.3)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인권증진지원 사업만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을 지정하여 사업 수행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역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2~3차로 분할하여 교부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 및 교부조건에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수행제한 등) 명시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정산하고 있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는 ‘아동인권증진지원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에 분기별 사업보고(서면), 중간 및 완료보고(대면)토록 명시되어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내역사업별 예산 규모 및 사업 수행일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2~3회 분할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 및 교부조건에 부정수급에 대한 사항(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수행제한 등) 명시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아동인권증진지원 사업은 소액의 이질적인 내내역 사업들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아동권리주간, 아동권리포럼 등의 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1회성 행사 등으로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필요 있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비용보조 근거 이외에는 아동 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제반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수준의 책무 규정이 있어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 있음.

### 3-2 정책 제언

○ 국제 기준(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적합한 아동인권 사업 개발 필요하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검증 필요.

.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1.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0.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이 대체로 인정됨<br>·또한 본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의 적정성도 대체로 인정됨<br>·제도개선방안: 성과지표의 세분화, 지표의 도전성 강화 등 본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중 에이즈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서 보조 지원을 기속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병에 대한 사항은 보조지원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2조 및 23조 >**

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비용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용
7.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및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비용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라는 목적에서 국가적 지원이 타당하며, 감염병의 특성상 한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고, 산발적 발생 및 전국적으로 전파·확산이 가능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및 표준화된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함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지원 민간보조 및 지자체보조사업의 수혜자는 감염인과 그 가족 친지 등으로 광범위한 수혜자가 존재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은 동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임

-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은 검진 시약비, 등록관리비, 진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에 대체로 적절함

-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취약집단 및 전국민 대상 교육 및 홍보, HIV/AIDS 감염인 취약집단 지원, 고위험군 검진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상담사업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 달성에 대체로 적절함

○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이 민간경상보조 99%, 지자체보조 99%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에이즈 발생률 및 감염 치료율 등을 볼 때 성과는 높다고 여겨짐

- 국내 HIV/AIDS 신규 감염이 연간 1,000여명 발생하고 있으나 인구 10만명당 HIV 감염률은 2.1명, AIDS 발생률은 0.4명으로 OECD 평균(HIV 감염률 6.9명, AIDS 발생률 1.5명)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감염인의 최근 3년 평균 치료율은 94%로 이는 HIV/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국비 50%)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감염 전파방지 및 치료 지원, 편견차별 개선 등 감염인의 건강보호를 통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염인 신고·보고체계 운영, 감염인 지원 및 관리, 실험실 진단 및 검사 관리 등 사업 총괄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보조사업(고위험군 검진·상담 등)과 지자체보조사업(대상자 검진,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을 예방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가 대체로 낮고, 에이즈 신규 감염인은 매년 1,000여명씩 발생하고 있고, 의·과학의 발달로 생존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어 매년 관리해야하는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기 검진, 치료 지원 등을 통해 전파 확산 및 감염병의 유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사업이 폐지되어 감염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된다면 고가의 치료제 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져 감염인의 건강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타인으로의 전파가 확산되어 국민건강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에 대체로 적정하며, 사업비가 대체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보조율 [별표1]의 122에 해당하여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부처는 본 사업을 통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사회적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대체로 마련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은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대체로 마련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대체로 마련되어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를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결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HIV 감염인에게 지급되는 진료비의 경우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방법을 전산화하였고, 이를 통해 중복, 과오지급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을 통해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이 대체로 인정됨

○ 또한 본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의 적정성도 대체로 인정됨

### 3-2 정책 제언

○ 다만, 성과지표의 세분화, 지표의 도전성 강화 등 본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사업방식변경)을 모색할 필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5.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5.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본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판정함<br>·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보조금으로 법적근거가 분명하고, 사업의 목적이 분명함. 사업의 필요성 역시 있음<br>·본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은 보건산업육성을 위해 보건관련 국책기관이 모여 있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이 본 보조사업의 목적인 보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따라서 현재와 같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보육'이라는 본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거나, 청사관리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 등과 통합하여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영유아 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5조(사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 법 제14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25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의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 보육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국가의 사업주로서 경비의 50% 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확충하는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등 사업목적이 매우 명확하고 타당함

○ 본 사업의 일차적인 수혜자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근무하는 '영유아를 가진 직원'과 그 직원의 '영유아'가 직접적인 수혜대상으로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다고 보기는 어려움.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은 세부사업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본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의 2018년 예산은 296.1억원, 2019년 예산안은 323.2억원 규모임. 본 보조사업은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1,380백만원, 2019년 예산은 1,636백만원임

○ 본 보조사업은 법적근거가 분명하고, 그 목적이 타당하나 현재와 같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의 내역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은 식약처 등 6개 국책기관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분류상 프로그램 기준 보육지원강화(3100)가 아니라, 보건산업육성(3000)에 포함되어 있음

- 즉 본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은 보건산업육성을 위해 보건관련 국책기관이 모여 있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이 본 보조사업의 목적인 보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따라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보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의 내역사업으로 본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보육사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혹은 행정안전부(세종, 서울 등 일반청사의 직장어린이집), 보건복지부(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직장어린이집) 등에서 청사 혹은 행정타운 관리운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구성한 후 추진하는 방안 등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보조사업 만을 볼 때, 본 보조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보조금으로 예산총괄과 세부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국가가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식임

○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 유용한 정책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공공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여 보육을 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적 달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해 보조금 예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25조에는 사업주가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각각 47.2%(결산기준)와 45.9%(예산기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50%에 미달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바가 있음.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 2019년에는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50%가 되도록 예산이 책정되었음

○ 직장어린이집 규모, 전 년도 집행실적 및 추진계획 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가 정해지며, 인건비를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전체 운영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재정지원하고 있어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가 합리적이고 적정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일가정 양립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호제공과 사회통합, 그 밖의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과 관련되어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등에 따라 선정기준 등을 제시, 공모를 거치는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3년 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를 위해 교부신청을 받은 후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교부·통지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부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e 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등 규정을 따르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 중 집행실적을 매년 보고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음.

- 매년 초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자체 점검과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교부, 부정수급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 규정을 따르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금 반환, 중요 재산 관리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 지도점검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후, 이를 근거로 실지 점검 및 외부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가 이루어짐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 종료 후 직장어린이집 세입 세출예산서, 월계표 등을 매년 제출받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 보육사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매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 감사 등을 받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낮음

○ 지난 3년간 부정수급 보고 사례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보조금으로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사업의 목적이 분명함. 사업의 필요성 역시 있음

○ 본 보조사업은 세부사업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의 내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은 보건산업육성을 위해 보건관련 국책기관이 모여 있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이 본 보조사업의 목적인 보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따라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보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본 보조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의 목적과 본 보조사업의 목적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본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의 내역사업으로 본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보육사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혹은 행정안전부(세종, 서울 등 일반청사의 직장어린이집), 보건복지부(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직장어린이집) 등에서 청사 혹은 행정타운 관리운용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지원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9.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9.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으며, 일부 사업추진방식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br>·원폭피해자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 사업은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 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br>·진료보조비 지급 사업은 의료비 중 비급여부담액을 실수요에 맞추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함

- 원폭피해자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 사업은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 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 내역사업은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진료소 약제비 지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사업관리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함이 타당함

- 본 사업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일 양국 정부간 협정 및 업무계약에 의거 일본 정부 출연금과 지원금, 한국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함이 타당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각 내역사업은 보조사업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사업의 4개 내역사업은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복지증진 도모라는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원폭피해자 지원건수와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운영지원 만족도조사 결과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회관 입주자 만족도는 상승중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원폭피해자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 사업은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함

- 본 사업은 1990년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각 40억엔씩 출연하여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키로 합의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당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금 출연 대신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 본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기 곤란하고, 유사 및 중복사업이 없음
- 원폭피해자는 2018년 10월 31일 기준 2,274명으로 평균연령이 2017년 12월 31일 기준 79.2세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고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원폭 진료소 약제비 지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사업관리 등의 내역사업을 통한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내역사업 중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에 가장 큰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으며, 원폭피해자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건강검진비,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운영비, 원폭피해자협회 운영지원비, 대한적십자사 운영지원비 등이 집행됨
- 이외에도 원폭 진료소 약제비 지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사업관리의 내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원폭 진료소 약제비 지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사업은 국비 100%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행 보조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임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도 관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경남 합천군과 대한적십자사이며, 보조사업자로 적절히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 합천군은 1973년 국내 최초로 원폭진료소를 설치한 이래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위치해 있으며, 지자체 선정 보조사업인 원폭 진료소 약제비 지원 사업의 비용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추진의지가 뚜렷함
-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는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 및 업무위탁계약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의 보조사업자로서 적절함
- 경남 합천군과 대한적십자사는 공모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특수성을 갖추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위탁 보조사업자인 대한적십자사는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사업 운영내규('17.9.)'를 제정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조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내규 등에 의해 거짓·부정 수급자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관련법 및 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 사업지원 대상자는 법정 '원폭피해자'로, 일본 정부로부터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받아 소지했거나 일본정부로부터 인증 받지는 못했으나 1994년 이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원폭피해자로 등록한 피해자, 또는 건강 등의 문제로 일본을 방문할 수 없어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한 자에게 일본정부가 발급한 '피폭시 상황확인증 소지자'로 한정됨
-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원폭피해자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 사업은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 원폭피해자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 사업은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 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 3-2 정책 제언

○ 진료보조비 지급 사업은 의료비 중 비급여부담액을 실수요에 맞추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진료보조비 지급은 건보료 납부 지원 및 의료비 본인부담액 등 실소요비용 지원을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합천군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월 부과금액 1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대상)을 실시중이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 중 비급여부담액을 실수요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 개선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응급처치활성화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0.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2.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br>·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의 양적 규모에 비해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 응급처치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방식변경 필요함<br>·심폐소생술 교육인원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교육이수자의 실습 강화 등 응급처치교육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며, 아동 응급처치 교육은 부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응급처치활성화지원 사업은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민이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국가가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국가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아동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의 목적은 응급처치 교육과 장비 지원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 특히 국가와 사회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아동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통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함
- 응급처치 교육, 응급처치 장비 지원과 같은 예방적 조치에 대한 투자는 과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일차적 수혜자는 해당 교육의 수료자와 장비를 지원받는 기관으로 범위가 넓지는 않으나, 위급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와 장비의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잠재적 수혜자의 범위가 전 국민으로 파급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하며 내역사업은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17년 응급처치 교육 수료 인원이 67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법정교육 의무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포함됨

- 아동 응급처치 교육 사업의 실적을 보면 영유아에 대한 교육 인원이 7만 명에 달하고 종사자 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 인원은 17년 266명, 18년 654명에 불과하며 아동안전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생활 안전 교육 수강생은 18년 9,851명임

○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집행하였으나 일부 성과지표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응급처치 교육사업의 경우 교육 훈련의 특성상 성과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아동 안전사고예방 교육 참여자 수는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응급의료교육과 장비 지원은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보다 높아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한편,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비용 부담 유인이 낮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민간영역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타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은 낮음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을 응급처치활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함

○ 응급처치교육 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급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요가 존재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이 교육과 장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사업이며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실효성은 있으나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응급처치 교육사업의 일반인 대상 비중이 작고 아동 응급처치 교육사업의 경우에도 종사자 및 부모 대상 교육 인원의 수가 적으므로 종사자 및 부모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함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공동주택, 상업 시설, 종교시설, 기타 민간시설 중에서도 소유권이 명확하고 소유·운영자가 일차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사업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50%, 아동 응급처치 교육은 국비 100%로 추진되며 보조금법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을 준수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에 기여하며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에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제출받고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 사업추진 의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
- 개별사업에 대한 지역의 제반 여건, 과거 집행 실적, 심폐소생술 실시율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함

○ 아동 응급처치 교육의 보조사업자 선정은 보조금 관리규정의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규정을 준용함

- 3년마다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장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의 집행을 관리함

- 사업내용, 예산집행기준, 보조금집행 규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
- 집행률 등의 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함

○ 보조금 지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용함

- 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규정을 마련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통하여 응급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아동과 성인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잠재적 수혜자가 광범위하며 국가적 수행이 타당함

○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 일반 국민 대상 교육 인원의 규모는 크나 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수강자 1인당 실습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유아 관련기관 종사자 및 부모에 대한 교육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교육의 규모와 지속 기간에 비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므로, 좀 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집단의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시도별로 교육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있으나 교육계획에 대한 부처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관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등 현장밀착형 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나 교육 장소는 주로 보건소, 의료센터, 적십자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육대상을 학교,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의료관련감염관리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효과성 인정됨,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br>·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의료기관의 자기책임 강화 노력 병행. 사업내용 중 감염병 표본감시활동 등의 내용은 확대하되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는 감축해나가는 방식의 사업방식 변경<br>·감염병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으로 인정됨<br>·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기본적 책무인 성격이 강하므로 의료기관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노력할 필요. 본 사업 지원규모는 당분간 유지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이 규정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사업의 목적, 제2조 대상 감염병, 제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11조 감염병 신고, 제16조제4항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중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및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제16조제4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 의료기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17개 시·도 운영비 및 참여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185개소)

- '부담한다'라는 국가지원의 의무를 부여함.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인 예방관리사업 관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규상 국고부담의 내용과 괴리가 존재함

○ 보조사업의 지급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라는 목표, 이를 위한 사업비로 법규에 명확히 규정 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의료감염관리 대한 관리체계구축은 정부주도의 필요성 높음

- 의료의 공공성, 의료감염의 파급은 외부성이 크고 네트워크효과도 높아 정부개입이 요청되는 대표적인 분야임

- 의료감염 발생에 따라 환자, 의료인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피해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가차원의 체계로 추진할 필요성 인정

- 예방관리사업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의료기관에 수혜가 집중되는 면이 있으나 의료활동에 의한 연관 산업에도 피해가 미치고 의료인, 환자 등 사회,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인정됨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은 전국단위에 효과가 파급된다는 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인 개입이 필요

-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이를 방지함에 따른 혜택은 우리나라 전체, 지역 모두에 공유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이 필요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국고부담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이 부담하고 있음

- '국가의 부담'에서 중앙정부의 부담에 한정할 이유는 없으며 지자체의 역할 강화할 필요

- 사업 내용 중 사업을 위한 간접비 중 국가의 부담이 예정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의 의무에 대한 경비지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에 따른 예방관리,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성과지표 | 목표치 '18 | 달성치 '18 | 성과지표 산출방식 (또는 측정방법) | 선정이유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율 | 80% | 80.4%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참여기관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수)*100<br>-표본감시기관수: **230**개<br>-예방관리사업 기관수: **185**<br>-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율<br>•185/230*100=80.4% | 의료관련감염병의 지속적 증가로 예방관리의 필요성 증대 | 예방관리사업 모집결과 메모보고 또는 공문 |

○ 여기서 성과지표가 사업에 참여기관비율로서 투입지표에 머물고 있음

○ 사업에 의한 영향지표,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사업의 활동이 감염병 예방성과를 달성하는가 하는 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될 것임

○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 어느 정도 성과관리가 되고 있음

○ 다만, 결과지표, 영향지표, 만족도지표 등을 볼 때 사업의 효과의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감염병 관리에 관한 의료기관의 일차적인 책무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중임(150병상 병원으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의무 기준 강화

-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예방활동이 필요
- 감염병 예방활동은 외부성에 의하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어려움

○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고유한 특성이 있어 사업주체와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

○ 본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 감염병 예방활동 필요성이 인정됨

- 감염원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계속되므로 사업을 연장 지속해야 할 필요 인정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참여의료기관의 증가에 따라 예산규모의 증가가 필요하나 국고지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규모를 유지해야 함

- 국고보조의 인센티브와 함께 의료기관 자율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의무부과형식의 정책수단도 동원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사회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사업구성으로 파악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 질병 발생시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활동에 사회적 가치구현의 의미가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사업]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 따름

- 이에 따라 17개 시도 18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지자체사업만 대상]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하였는지를 고려

-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적절함

- 전년도 실집행률 및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음

- 현장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통하여 관리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감염병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조사업을 통하여 운영비지원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됨

- 감염병예방조치에 대한 의무와 적절한 처벌조치도 병행해야 하겠음
-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규정한 법규에 내용적으로 연관성은 있으나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는 않음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기본적 책무인 성격이 강하므로 의료기관의 자기책임을 강화하여 국고보조비율 조정할 필요

- 장기적으로 현재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당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3-2 정책 제언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효과성 인정됨

-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으로 인정됨

○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법규 재정비를 통하여 본 세부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보조사업의 내용 중 표본감시활동 사업을 확대하고 감염병예방을 위한 활동은 의료기관 자체의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점진적으로 사업방식의 변경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율 상향 조정 및 의료기관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액에 대한 조정노력 필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1.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0.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이 대체로 인정됨<br>·또한 본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의 적정성도 대체로 인정됨<br>·제도개선방안: 본 사업의 성과지표 세분화, 성과지표의 도전성 강화 등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의료법」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을 보내는 방법'으로 '송부 또는 전송'을 규정(제21조의2 제1항)하고있고, 진료기록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는 전자정보시스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제3항),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제4항)

○ 본 사업은 총 3개의 내역사업(①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②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 ③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구성되는데, '①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은 교류되는 진료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문서저장소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②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은 위에 구축한 문서저장소와 중앙연계시스템의 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및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의료법」 제21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③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은 문서저장소와 중앙연계시스템에 저장되는 정보의 보안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의무적 조치사항임

**< 의료법 21조의2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중략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료법시행령 10조의4 >**

①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의 개발·관리
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7.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등의 설치·갱신
8.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의 마련·실시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보유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병의원 간 의뢰·회송을 원활하게 하여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지원하며, 국정과제 45번 실천과제(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로 포함되어 있음

- 본 사업의 편익은 일반국민 및 의료인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나, 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민간에서 추진할 경우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대체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편익은 일반국민 및 의료인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교류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은 국가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추진할 경우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자체보다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대체로 적절할 것으로 판담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총 3개의 내역사업(①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②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 ③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전국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의료기관 진료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임

○ 그 간 사업도입을 위한 일련의 단계(사업계획 > 시범적용을 통한 효과성 확인 > 법적근거 마련 > 본 사업화)에 따라 매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고 계획한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편익은 일반국민 및 의료인 등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교류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은 의료기관의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자체보다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함.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에서 보관하는 것에 대해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료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타 부처 및 기관에 유사·중복사업이 없으며,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국정과제 추진 및 의뢰·회송에 대한 수가가 지원됨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와 환자편의를 위한 전자적 전송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만약 사업이 폐지된다면, 재정적 손실은 크지 않겠지만,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선 비용 발생 및 진료기록 사본 수수료 등 수입 감소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중앙시스템과 12개 거점저장소, 4천여 개 병의원('19년 기준)의 관리를 행정인력 4명과 전산인력 4명이 담당하고 있어 투입되는 행정비용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보조사업의 규모는 사업 목표 달성에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는데, 사업위탁기관(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비 100%를 지원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의 비용부담능력의 적정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대체로 마련하고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은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대체로 마련되어 있음

○ 부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 실시여부를 대체로 집행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음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결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현물지원 방식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위탁계약서 제4조(수행기관의 의무)에 목적 외 보조금의 사용, 권리 양도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제16조(계약해지)제2호에 따라 제4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복지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대체로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이 대체로 인정됨

○ 또한 본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의 적정성도 대체로 인정됨

### 3-2 정책 제언

○ 다만, 본 사업의 성과지표 세분화, 성과지표의 도전성 강화 등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사업방식변경)을 모색할 필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사업의 관리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함<br>·본 사업이 지역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의 대표 내역사업내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 뿐 아니라 전국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타당함. 그러나, 세부사업단위-자살예방사업과 지역정신보건사업-에 정책연구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으며,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지적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부담이 확대되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이 제안됨<br>·정책연구비 예산 통합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사업방식 변경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이 사업은 정신보건법, 자상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는 명확함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정신보건센터 및 자상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명시됨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국정과제 44-4-1, 4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의 세부이행과제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에 부합됨

- 범부처 합동 '자상예방 행동계획'('18~'22) 마련을 통해 실제적인 사업추진의 계획 마련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자살, 정신질환, 중독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하나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지자체 역할 확대 가능

○ 본 사업의 수혜자는 1차적으로는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이나,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예방대책 수행과 관련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이 지역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의 대표 내역사업내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단위사업의 목적달성을 대표하는데 적절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증 정신질환자 뿐 아니라 전국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공공정신보건의 필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역사회 단위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국비:지방비=50:50) 하는 보조율 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추구하고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의료 및 회복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에 기여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지자체와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시 시행공모, 선정기준 공모, 위원회 구성, 적격성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후 지방비 부담이 60% 이상 매칭되고 있음

- '16년 국비(38%) : 지방비(62%) → '17년 국비(40%) : 지방비(60%)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한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규정을 확인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규정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지역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 등 세부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증 정신질환자 뿐 아니라 전국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공공정신보건의 필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2016년 보조사업평가에서 지적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부담이 확대되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도입해야 함

## 3-2 정책 제언

○ 자살예방사업과 지역정신보건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는 정책연구비를 향후 세부사업 단위로 통합하여 편성하도록 함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사업방식 변경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장기및인체조직기증관리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8.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으며, 일부 사업추진방식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br>·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관리 사업의 평가대상 내역사업들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타당성이 있고, 혜택이 전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돌아감<br>·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추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관리 사업의 보조사업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수행함

- 평가 대상 보조사업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홍보” 사업과 “장기이식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사업으로 이 사업은 장기 등 조직 기증 활성화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며 장기매매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장기매매를 예방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올바른 사회 인식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의 기증과 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관리 사업의 평가대상 두 내역사업은 모두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타당성이 있고, 혜택이 전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돌아감

-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국가에서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운영함이 타당함

-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과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올바른 사회 인식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의 혜택은 전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돌아감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평가대상 내역사업의 구성과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의 사업내용은 대국민 청소년 교육 홍보, (예비)의료인 교육 홍보, 문화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확산, 장기 인체조직 등 기증활성화 교육, 기증자 이송 및 유가족 예우 등임
- 장기이식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사업은 장기이식관련 불법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유해홍보물(스티커) 등을 제거하고 관련하여 고발 및 계도 조치 등을 취함

○ 평가대상 내역사업이 보조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 사업의 경우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건수와 기증자 이송사업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기증 인지도 및 장기기증의향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장기이식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사업규모가 협소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와 장기이식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와 장기이식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타 사업이 없음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와 장기이식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은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며 불법 장기매매를 예방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올바른 사회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규모를 증대하고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추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함

- 현재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할 경우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와 장기이식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규모를 증대하고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인식 제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 올바른 사회인식 형성이 달성될 경우 추후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대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임

- 장기·조직기증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증진시키며, 공동체적 나눔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과 사회 공동선을 증진시키고, 생명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행위로써, 이러한 장기·조직기증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교육사업과 불법 장기매매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회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은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임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규정 및 질병관리본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통해 수행하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홍보 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은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음

- 매월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주기적 관리(월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간점검을 7월에 실시함

- 중간점검(7월)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하반기 사업추진 독려 및 수정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시기 등을 조정하여 사업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하며,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2개년 연속 “미흡”을 받는 경우 보조사업 응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2개년 연속 “보통”이하의 경우 전년도 지원 총사업비의 10~30% 감액하는 등 사업수행 및 집행 결과를 다음해에 환류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내역을 검토하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사업자 모집 시 반영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3년간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가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홍보” 사업과 “장기이식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홍보와 장기이식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혜택이 전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돌아감
- 홍보 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인식이 보조사업의 결과로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장기이식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불법게시물 적발, 제거, 고발, 계도 조치 건수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업 추진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추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함

- 홍보 사업이 전반적인 사회인식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와 모니터링 사업이 불법장기매매 관련 행위 방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장래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8.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7.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보조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함<br>·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적 수행의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불용이 나타남<br>·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예산 불용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 수요의 파악 및 사업내용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장애등급심사, 저소득 장애인의 진단비·검사비 지원,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장애등록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적근거는 명확함

- 장애인복지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는 국가가 장애인에게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진단비·검사비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으며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와 관련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가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장애등급심사를 전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장애등록제도의 효과성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임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진단비·검사비를 지원하여 장애등록을 위한 비용을 절감함

○ 보조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장애인, 진단비·검사비를 지원받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경험한 장애이며 2차적 수혜자에 대한 파급효과는 적음

- 연구사업, 제도개편 사업 등의 일차적 수혜자는 연구수행자, 사업수행자이며 그 성과가 명확할 경우 2차적 수혜자가 등록대상 장애인이 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은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과 등록장애인 지원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며 내용이 구체적임

- 장애등급심사, 심사자료 직접확보,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등록제도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심사결과를 도출하며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함

- 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은 등록장애인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 장애등록제도 개선연구,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이 포함됨

○ 장애심사 적기판정률의 증가, 이의신청률 감소,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지원 규모 증가,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한 서비스참여율 증가 등 사업이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 다만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대비 실집행액 비중이 50%를 밑돌고 있으므로 저조한 사업 수요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공공부문의 영역이며 특히 장애등급심사와 같이 심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가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사·중복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은 낮음

○ 2018년 현재 장애인등록 규모 258만 명으로, 장애인등급심사를 통한 장애인등록은 장애인 관리사업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는 대체로 적정하나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예산 대비 사업 실집행 규모 비중이 작아 사업구조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간 총 심사 건수 20만 건 이상, 신규등록장애인 연계서비스 1만 명 이상임
-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 지원을 받은 인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현행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자체 보조는 서울 30%, 그 외 지역 50%를 따르고 있으며 민간보조의 경우 보조율 100%임

○ 5년 중기 예산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의 제공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이기는 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선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교부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

○ 장애등급 심사, 심사자료 확보,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수행 중이며 별도의 사업자 선정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나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부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자인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경상보조와 지자체 경상보조를 위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민간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지출 내역과 수행사업에 대한 자료가 부재함

- 국민연금공단은 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약 1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명, 사업 내역, 사업실적 등의 자료가 없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명시된 일반적인 관리규정을 따름

○ 정기적으로 집행점검을 시행하며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조치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집행점검의 구체적 실적이나 점검 내역의 환류 조치 실적이 없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마련된 일반적인 사후관리 절차를 준용함

○ 사업종료 이후 집행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따르며, 부정수급방지를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장애등급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심사비용을 경감시켜 장애등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도모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해당 내역사업의 전체 보조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의 감축보다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식 개편을 제안함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객관적이지 않고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 선정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 3-2 정책 제언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수혜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액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잠재적 지원대상의 규모를 파악하여 예산 대비 실적 부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8.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6.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2.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8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이 필요<br>○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책무, 장애인 구강진료의 특수성,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민간에 맡겨질 경우의 시장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br>○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크기를 측정하고 본 사업 전체의 효과성 측정을 엄밀하게 하여야 함<br>○ '긴 치료대기 시간', '치료수준과 치료내용을 감한한 진료비의 적정성' 부분에서의 낮은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동법 제17조(의료비 지원)에 근거함
- 위 법에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내역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는 명확하고 타당함

- 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 센터 방문 장애인 진료비 지원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료비 지원)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전국 250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음

○ 장애인은 행동제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음.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본 사업의 수혜자는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지역 장애인 및 시설/재가 장애인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또한 구강진료서비스와 진료비 경감으로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아래는 각 내역사업별 목표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전국 250만 장애인이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 각 지역에 설치(중앙센터 및 권역센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인 진료 기회비용 보상을 통해, 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 도모
- 장애인 환자 진료비 지원: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제한의 주된 요인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들의 센터 방문 및 구강진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장애인 수는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음. 다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장애인의 사업 만족도가 80% 정도에 머물고 있음

- 센터로부터 받는 구강진료서비스와 일반 병원에서 받는 구강진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즉, 비용보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80% 정도로 머무는 이유 중 주요한 요인으로 '긴 치료대기 시간', '치료수준과 치료내용을 감한한 진료비의 적정성' 부분에서의 낮은 만족도를 들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권역센터에서는 센터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 센터방문이 어려운 시설/재가 장애인들을 위하여, 방문 무료진료 사업도 함께 시행중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은 행동제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진료에 더 많은 인원 및 시간이 소요됨. 또한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전문센터가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와 지자체, 민간병원 간 협력을 통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바,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통해 민간병원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는 사업을 지속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하며, 그 추진 또한 시급함

○ 본 사업이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예산은 내역사업별 단가와 수요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책정하고 있음

○ 장애인 환자 진료비 지원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정도·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지급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국비 50%, 지자체 5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사업의 혜택이 해당 지역의 장애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50%의 보조율은 적정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의 내용에 기초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동 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지자체 및 신청기관의 비용부담 능력, 사업 추진의지, 재무적 안정성 등이 세부 평가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계획, 단계 집행점검 등 적절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로부터 진료실적, 진료비 지원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받고 있으며, 연말에는 최종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받고 있음

○ 본 사업은 주기적 실적 보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내에 '보조사업자의 일반 의무사항,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의무사항, 의무사항 위반시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음

- 본 사업은「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동 규정에는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집행기준' 내에 사업비 정산은 센터(병원)는 사업 종료 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내역을 지자체로 보고하고 지자체는 사업 종료 후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정산내역을 보건복지부로 보고함
- 연도별 정산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 정산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에서는 그 동안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며 각 센터에 교부한 장애인 진료비 지원예산이 소진될 시에는 센터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진료비 지원예산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보조사업자인 센터가 도덕적 해이 및 부정 집행을 할 가능성은 낮음

○ 본 사업은「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동 규정에는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에 대한 제반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음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책무, 장애인 구강진료의 특수성,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민간에 맡겨질 경우의 시장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크기를 측정하고 본 사업 전체의 효과성 측정을 엄밀하게 하여야 함

○ 비용보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80% 정도로 머무는 이유 중 주요한 요인으로 '긴 치료대기 시간', '치료수준과 치료내용을 감한한 진료비의 적정성' 부분에서의 낮은 만족도를 들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장애인지원관리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8.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수혜자 규모대비 기존 재정지원규모가 과다했고, 이를 반영하여 예산감축이 이미 이루어짐<br>·장애인 법률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br>·최근 2년 동안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9년 예산을 2018년 대비 152백만원 감축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장애인지원관리의 내역사업 장애인 법률구조 사업은 장애인 법률구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구조법」에 근거함

- 「법률구조법」 제2조의2는 국가가 법률구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 책무가 있음을, 제4조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제7조는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포함됨을 규정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법률구조법」에 규정된 법률구조사업 대상으로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 장애인 법률구조 사업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다가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금 감소로 인하여 2016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중임

-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이고, 중증인 장애인(1~3급)은 전액 무료, 이외의 장애인(4~6급)은 일부 유료로 지원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장애인 법률구조사업은 사업내용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표가 명확하지만,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9년 예산을 감축함

- 본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등을 진행함

- 장애인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 소송 중 승소율이 97% 이상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29.2% 불용액이, 2017년에는 22.7%의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예산액을 기존 669백만원에서 517백만원으로 감축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법률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은 현재의 추진방식 이외의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타 사업이 발견되지 않음
- 장애인 법률지원사업은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계획 대비 이용률 저하에 따라 최근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고 이는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됨

- 장애인 법률지원사업은 변호사 보수비용 및 소송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사업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의 과다지출로 인해 보조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줄어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2016년과 2017년에 연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예산액은 기존 대비 22.7% 감액되었으며, 계획 대비 이용률 저하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줄인 결정은 타당하였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임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직접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장애인 법률지원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수행중이며, 사업자 선정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음

- 법률구조사업 추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장애인 법률지원사업의 집행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음

- 사업추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집행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배정 시 참고자료로 확인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장애인 법률지원사업의 사후관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수행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법」에 따라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인 법률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는 발생한 바 없음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부 시 안내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장애인 법률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법률구조법」에서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고, 해당 사업추진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함

## 3-2 정책 제언

○ 사업수요에 맞도록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2016년과 2017년에 예산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예산을 감액한 결정은 타당하였고, 앞으로도 사업 수요에 맞추어 적정한 사업규모를 유지함이 바람직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0.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2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동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br>·지난 사업추진 평가를 토대로 내역사업 및 프로그램 개편을 도모하는 등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향후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 체감도 높은 내역사업 운영 등 사업방식의 변화는 필요함<br>- 동 사업 내에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세부내역사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구조 개편 등도 요구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5조, 제8조에 근거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을 두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이의 일환으로 볼수 있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발표를 계기로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국가와 지자체의 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매칭(국가 70%, 지방 30%)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수혜자는 전국이 해당되며, 사업수혜의 범위가 광범위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대국민 정책홍보, 인식개선사업, 민간·지자체와 함께하는 출산인식 전환사업 등 3개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국민 정책홍보와 인식개선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며, 민간·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출산인식 전환사업*이 지자체 경상보조로 수행되고 있음

  * 지역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 지역 현장캠페인, 지역매체 활용 홍보,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 동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저하와 결혼기피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제시·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저출산 극복의 시급성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캠페인, 홍보 등으로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결혼하기 좋은사회, 출산·양육하기 좋은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수단의 발굴과 집행이 필요함

-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통계청): 64.7%(2010) → 51.9%(2015) → 48.1%(2018)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회연대회의 운영과 관련해, 행정비용은 최소화하도록 운영비(인건비 등)는 총 예산의 15%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음

- 17개 지자체별 캠페인·홍보 보다 자율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시너지를 높이도록 함

  * 지자체별 출산보조금 등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연계하여 효과를 도모할수 있도록 검토

○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국비 70%, 지방 30%)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됨

- 정부혁신 종합계획 상의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이외의 사회적 가치와 연관됨

  * 인구지진(Age-Quake) 현상 및 및 무거주지역화 증대에 대비,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 대응 필요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과제임

- 중앙-지방의 예산매칭을 통해 지자체의 주도성 및 책임성을 강구하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별 저출산 추세나 특성이 상이하므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집행·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국회나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낮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방식 변경

- 동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지난 사업추진 평가를 토대로 내역사업 및 프로그램 개편을 도모하는 등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향후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역주도 방식으로의 전환, 체감도 높은 내역사업 운영 등 사업방식 변화는 필요함

- 동 사업 내에 동일한 사업효과를 거둘수 있는 세부내역사업이 구성·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방식 개편이 요구됨

## 3-2 정책 제언

○ 지역 주도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

- 우수사례 공모·발굴, 기업·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인식 개선성과 공유·확산 방안 마련

○ 결혼하기 좋은사회, 출산·양육하기 좋은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수단의 발굴과 집행이 필요함

* 저출산 정책패러다임 전환: 출산장려 → 삶의질 개선(2018년, 문재인정부 저출산정책추진 로드맵)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3.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6.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5.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2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6.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9.3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 및 감축(2.48억원)<br>·동 사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br>·담당조직의 변화와 정책방향의 변동에 따라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민간경상보조 사업(2.48억원)은 보조사업 방식 보다는, 해당부처의 정책연구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br>·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 전환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 및 내역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9조, 제30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3.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저출산 대응은 국정과제(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해당함

○ 동 사업의 수혜범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포괄함

- 노후준비교육서비스는 40세 이상 전 국민이 수혜대상임

- 노후준비교육서비스(체류형 교육프로그램)는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예정

  * 2017 회계연도 국회 결산시 특정 자치단체에 다년도 보조사업 시행이라는 지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전환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민간경상보조)과 노후준비 지원서비스(지자체 경상)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담당조직의 변화와 정책방향의 변동에 따라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점, 국고지원방식으로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정책개발 관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노후준비교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적인 효과는 파악하기 어려움

- 부처에서 제시한 사업효과(성과목표)가 교육, 홍보횟수 등 투입지표 성격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민간 경상보조) 동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방식 보다는, 해당부처의 정책연구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는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연구를 취합한 수준으로 사료되며, 유사·중복성 여지가 발견됨

- 사업 연장을 통해 현재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응방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듦

○ (지자체 경상보조) 동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자체 위주의 계속 지원방식에서,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2019년)

- 사업방식을 공모로 전환하여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 적절하며, 지자체 맞춤형 노후준비교육이 될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2019년도 지자체 보조사업(노후지원교육서비스)은 시행 초기이므로 집행에 대한 효과를 토대로 하여 이후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필요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는 100%, 지자체경상보조는 국비:지방비=50:50을 따르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경상보조)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민간경상보조)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업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선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음

- 주기적으로 사업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수시 진행상황 점검 및 의견교류를 함으로써 문제점 발생시 즉각 대응체계를 확립할수 있고, 정책설정을 위한 근거 기반 마련에 기여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사업수행 및 집행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상시운영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통해 재확인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해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를 규정하고, 이를 상시 준수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방식 변경 및 감축(2.48억원)

- 동 사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담당조직의 변화와 정책방향의 변동에 따라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민간경상보조 사업(2.48억원)은 보조사업 방식 보다는, 해당부처의 정책연구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3-2 정책 제언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 전환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 및 내역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4.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4.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br>·현재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검증할만한 적절한 성과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br>·신뢰성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70조(인권교육)에 사업 근거가 있음

**<정신건강복지법 31조 및 70조>**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평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규정함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의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사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관 및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간 상호경쟁 유도 및 자발적인 정신의료 질 관리 문화형성으로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수행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 약 7.7만명('17년말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 및 정신의료기관 진료자 약 300만명('1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됨

-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6년 기준 22.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방문 비율은 16.6%로 본 사업의 잠재적 수혜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정신의료기관 평가사업은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간 상호경쟁 유도 및 자발적인 정신의료 질 관리 문화형성으로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조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일상적 수용도,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시행률,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교육생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운용중임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에 대한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정신의료기관 평가는 정신병원에 대한 인증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및 정신과 의원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되며, 평가항목은 정신의료기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사업은 교육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사업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100%로 되어 있는데 평가를 받는 정신의료기관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보조사업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100%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적·제도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수행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에 기여하여 국민의 정신보건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시행공고,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관리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평가사업 수행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자 확보, 교육체계 등 평가사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정신의료기관 평가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본 사업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사업수행에 법령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및 집행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실집행 현황 점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실집행 현황 및 부정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집행시의 준수사항을 수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사업실적 보고서를 통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보조금 반환 및 정산 등을 명시하여 교부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보조금 정산 및 반환 등 사후관리 규정을 이행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발생이 없음

- 사업수행기관이 공공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국고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5배 이내)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70조(인권교육)와 의료법 등에 의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간 상호경쟁 유도 및 자발적인 정신의료 질 관리 문화형성으로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3-2 정책 제언

○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에 대한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개선을 통한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2.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8.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3.3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사업의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함<br>·정부에서 수립하는 응급의료정책의 파급과 응급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국가 보조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사업의 성과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성과지표에 포괄되어 평가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려움<br>·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 보조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조사업의 규모 자체가 작고 17개 광역 지자체에 배분되는 개별 금액이 지자체당 약 1억7천만원 정도로 행정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근거가 명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조사업은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라는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 법령에 법적 근거를 가짐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내 응급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지원센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함

○ 보조사업의 일차적 수혜자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이며, 2차 수혜자는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임

- 1차 수혜자의 범위는 넓지 않으나 2차 수혜자의 규모가 충분히 크고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민이 잠재적 수혜자인 점을 고려해야 함
- 17년 응급실 이용자는 1,045만 명이며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는 약 202명에 달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해당 보조사업은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 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용이 구체적임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충분하지 않고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하부조직으로 별도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에 포함된 응급의료종사자 재난 의료 교육 이수율이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편이나 보조사업의 포괄적인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응급의료는 시장성이 낮아 민간영역에서 수행되기가 어려우므로 국가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있으나, 예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중앙-지방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유사중복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은 낮음

○ 응급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고령 인구의 증가와 환경 변화로 인해 응급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개별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가 작아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은 낮은 편임

- 사업비는 17개 시도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개 센터당 지원 비용이 운영비 5천만 원과 직원 2명 이내에 대한 인건비 약 1억2천만 원을 더해 개별 지자체당 지원 규모가 1억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내 응급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에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광역단위별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통지의 절차를 수행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분기별 예산집행을 통해 사업집행 내역을 점검하며 지자체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함

○ 연간 사업비 교부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집행실적과 지자체 소요 예산을 반영하며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상·하반기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수시 점검하여 집행률을 제고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산 등 사후관리 규정을 따름

○ 전문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검사를 시행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응급의료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적정 집행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와 주요 부당지출 유형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등 부정수급방지대책을 마련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응급의료서비스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우며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이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타당성을 가짐

○ 17개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에 배분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작으므로 보조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 사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3-2 정책 제언

○ 현행 사업체계 하에서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응급의료지원센터 고유 업무의 성과목표를 개발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중앙-지역, 지자체 응급의료 관련 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등 권역내 연계·협력의 구심점으로 역할 강화가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7.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6.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사업은 정상추진을 권고함<br>·동 사업은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 유기적으로 설정되어있음. 외부효과에 대한 수치화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 국민으로 볼 수 있음<br>·'지역거점센터장비비 등 지원' 사업은 BL3 건축의 계획대비 지연의 이유로, 최근 3년간 실집행율이 74.2%에 그쳐 사업실적이 부진함. 다만 BL3 건립지원 사업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집행율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세부사업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의 내역사업 중 국고보조로 수행되는 사업은 내역사업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지역거점진단 센터'로,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보조사업자로 지정됨. 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근거규정을 둠

○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운영과 연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법」제9조(국고보조)와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제4조(국고보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고보조는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강제규정이 아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3.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4조(국고보조)**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원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사업의 목적은 '지자체 발생 감염병의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제제 보급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통하여 지역 발생 감염병의 조기진단 및 전파확산 방지'로, 대통령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와 연관되지 않으나,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 보조사업의 1차 수혜자는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며, 외부효과에 대한 수치화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신속한 감염병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발생 감염병 신속 대응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 국민으로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세부사업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의 내역사업은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세계보건기구 표준시험실운영', '백신인프락구축'의 3개 이며, 이 중 국고보조로 수행되는 사업은 내역사업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등 지원'(지자체 경상보조)과 '지역거점진단센터 장비 등 지원'(지자체 자본보조)임

-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 유기적으로 설정되어있음

**(세부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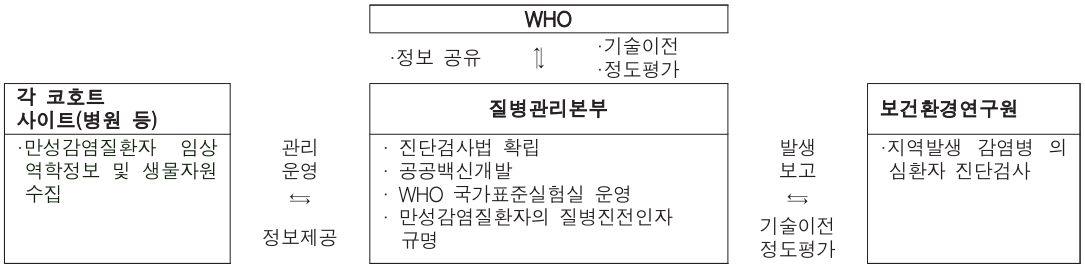


**(내역사업 구성과 내용)**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내용 |
|---|---|---|
|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 1군 법정감염병 진단제제 보급 | |
| | 신증후출혈열 리케치아 감염병 진단제제 보급 | |
| |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등 지원 [지자체경상보조] |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확인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br>- 인건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BL3 운영비 |
| | 지역거점센터 장비 등 지원 [지자체자본보조] |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확인 진단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생물안전밀폐시설(BL3), 연구원 신축 건축비 지원<br>- 자산취득비, 건설비 |
| 세계보건기구 표준시험실 운영 | | |
| 백신인프라구축 | | |

○ 성과지표, 성과관리체계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대체로 적정함

- 성과지표는 '확인진단 표준화 지원건수(~'17년)'와 '지자체 검사 가능 감염병 평균수('18년~)'로 2017년까지는 성과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음

| 구분 | 구분 | '16 | '17 | '18 | '19 |
|---|---|---|---|---|---|
| 확인진단 표준화 지원건수(%) | 계획 | 80 | 83 | 종료 | |
| | 달성 | 80 | 89 | 종료 | |
| | 달성율 | 100 | 107.2 | 종료 | |
| 지자체 검사 가능 감염병 평균수 증가율(%) | 계획 | 신규 | 신규 | 10 | 11 |
| | 달성 | 신규 | 신규 | 10.5 | - |
| | 달성율 | 신규 | 신규 | 105 | - |

- 성과지표 이외 사업실적은 '지역발생 법정감염병 의심환자 진단검사 수', '감염병 검사확대'로 확인 가능함. 또한 국비보조 내내역 사업별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고서 실적을 차년도 예산 배분에 반영함

- 동 사업은 2017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실집행 기준 70% 미만 등의 이유로 '보통' 판정을 받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 면에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감염병은 발생·유행시 국가적 수준의 외부파급효과가 크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민간투자가 어렵고, 확인진단 능력 확립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진단제 보급 및 기술이전과 더불어 예산지원이 필요함

○ 동사업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에 해당되지 않음

- 유사중복과 관련된 외부지적이 없음

○ 지역별 감염병 대응능력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폐지시 자자체에 감염병 검사수준 및 연구시설 등 연구 인프라 손실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기금사업으로(국민건강증진기금)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7년 3,088백만원, 2018년 4,125백만원, 2019년 2,865백만원임

- 지역거점센터 운영비지원 사업(지자체경상)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지원비로 구성되며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지역거점센터 장비 등 지원(지자체자본)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지원과 시설건립지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시설비 지원비의 증감폭이 큼

※ 지역거점센터운영비 지원: '16년 1,084→'17년 1,084→'18년 1621→'19년 1,771백만원

※ 지역거점센터장비비 등 지원: '16년 1,414→'17년 2,004→'18년 2504→'19년 1,094백만원

○ 3년간(2015~2017) 실집행율을 보면 '지역거점센터장비비 등 지원' 사업의 경우 74.2%로, BL3 건축의 계획대비 지연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여 집행이 부진함. 다만 BL3 건립지원 사업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집행율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명시한 [별표 1] 따라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진단검사에 필요한 경상보조, 자본보조를 40% 정율 보조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에 간접적으로 기여함이 인정됨

- 지자체 발생 감염병의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해 진단제제 보급과 운영 지원

-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한 진단검사 기술 이전을 수행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 능력 확대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등 법령상 근거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함

○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가 적정하며, 관련규정과 집행서류를 확인함

| |
|---|
| ○ 배정기준<br>- (경상보조) 인구수, 검사건수, 시도의 재정자립 도 및 정도관리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 차등 배정을 원칙으로 함.<br>- (자본보조) 각 시·도로부터 장비구매계획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경상보조와 연동하여 배정함.<br>○ 배정일정<br>- 경상보조는 1/4분기 및 3/4분기로 나누어 배정<br>- 자본보조는 1/4분기 배정<br>○ 교부신청<br>- 보조금의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7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교부기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br>○ 교부결정<br>- 「보조금의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보조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을 교부결정통지서에 명시 함.<br>○ 교부방법<br>-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점검을 통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함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집행절차가 적정하며 감염병진단검사 국고보조사업 운영지침등 관련규정과 집행서류를 확인함

○ 분기별 1회 집행점검을 수행함(상반기 중간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집행점검, 하반기 e나라도움 상 집행실적 미흡 기관 현장점검 및 화상회의 개최)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중요재산 취득 및 재산 처분의 제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 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으며,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e나라도움 전산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후 정산반납 진행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 회계시스템(e호조),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중앙부처 회계시스템 d-brain 상호 연계로 부정 수급 발생이 낮으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없음

○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 조항 마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사업의 목적은 '지자체 발생 감염병의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제제 보급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통하여 지역 발생 감염병을 조기진단하고 전파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상 국가적 지원이 타당함.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연관규정을 찾을 수 있으나, 재정적 지원은 강제규정이 아님

○ 외부효과에 대한 수치화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신속한 감염병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발생 감염병 신속 대응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수혜자를 일반 국민으로 볼 수 있음

○ 동 사업은 내역사업 및 내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 유기적으로 설정되어있음

○ '지역거점센터장비비 등 지원' 사업은 BL3 건축의 계획대비 지연의 이유로, 최근 3년간 실집행율이 74.2%에 그쳐 사업실적이 부진함. 다만 BL3 건립지원 사업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집행율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부정수급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규정 및 점검 추진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7.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4.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0.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3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2.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함.<br>・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은 전국 3,500여개소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보건행정, 보건사업 및 진료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임.<br>・동 사업은 사업 효과가 명확하며, 재정지원 규모가 적정하며 사업 관리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지역보건법 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내역사업인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재해복구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광의로 해석할 수 있음.

지역보건법 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 전자화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보건소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지원하므로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보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 재해복구센터 운영은 업무 전자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의 일환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재해복구센터 운영은 장애·재해 등으로 주 시스템 장애발생 시 재해복구 시스템을 통한 운영전환으로 서비스의 중단 없이 안정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하도록 하였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장애·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국민서비스 연속성 제공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할 수 있음.

○ 재해복구센터 운영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전국 3,500여개소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보건행정, 보건사업 및 진료 등 기능수행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사업 수행은 적절하지 않으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및 통합 가능성이 없음.

- EMR, 청구, 검사 등 진료기능 장애 발생 시 전산시스템 마비로 지역주민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령상 기준 보조율이 산정되지 않은 사업임.

○ 재해복구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 공동재해복구센터'의 공동운영비 및 유지보수 비용을 기관 분담하는 형식으로 **전산장비 구축규모에 따른 분담률(20%)**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음.

- 세부사업비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적정하게 구성되었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시스템은 '보건복지 공동재해복구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4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19년 예산편성 기준 보건복지부 20%, 건보 48%, 심평원 27%, 적십자사 5%).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관련 법령인 지역보건법에서 보조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는 보조사업 수행과 정산 등의 업무를 명시한 교부금 교부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 검토·승인에 의하여 분기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인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립된 산하 전문기관이며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복지부 훈령)에 따라서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수행 및 집행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면회의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복지부 훈령)에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안) 제5장, 제33조부터 제43조에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가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시스템은 '보건복지 공동재해복구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4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전산장비 구축규모에 따라, 동 사업은 20%를 분담하고 있음.

○ 전국 3,500여개소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보건행정, 보건사업 및 진료 등 기능수행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에 기여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지역복지사업평가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6.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2.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1.7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3.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6.3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내역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 방식 변경 필요.<br>·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의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필요.<br>· 행사성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 집행에서도 '시도 내 시군구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 목표 달성을 제해할 여지가 있음.<br>· 주제발표·토론회·사례 공유·컨설팅 등의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 필요하며, 시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수준을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자체 역량강화 확대 유도할 필요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미비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운영의 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1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지역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함.

○ 내역 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음.

- 설치·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은 업무와 위탁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급여법 제46조 제2항과 3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민간부문의 복지자원 발굴·연계를 통하여 가용 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볼 합리적 근거는 없음.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지여하는 바가 있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의 시행결과 평가,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회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 대회 사업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사업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의 합리성이 부족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집행 필요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으며 지역의 사회보장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사업을 추진함.

-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원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법 시행령 상 기준 보조율이 정의되지 않은 사업이며 지자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100% 보조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소액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지역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부족함

※ 전국대회 국고보조금(7.2천만원)을 229개 시군구에 1개 시군구 당 31만원, 지역대회 국고보조금을(1억 7천만원)을 1개 시군구당 약 65만원 수준으로 지원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주민 참여형 사회서비스 생산·전달체계 구축 기반 마련함으로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음.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지원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를 검토하는 등의 절차 없이 모든 시·도에 일괄지원 하고 있음. 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통지의 절차는 수행하고 있음.

○ 예산 수립시부터 예산설명자료에 사업수행기관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한 이후 사업계획서 확정 승인 후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결정 통지. 보조율 100%로 집행함에 따라 자부담 능력 검토는 해당사항 없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별 상시 지역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 일시,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면 또는 유선 관리하여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사업비 집행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배정 시 참고 자료로 확인하고 있으며, 동 사업 목적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 및 종료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회계규정, 회계처리규칙, 예산집행지침 등 집행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보조금 정산, 결산 및 실적보고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 예산집행 및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로부터 실적보고서 및 예산집행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모니터링 실시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내에 부정수급 대응 및 방치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대책을 마련함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부 시 안내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1회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함.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의 사회보장 비교 분석을 통해서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업임. 장기적으로는 부처 일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집행 필요

- '기관장 관심 및 위상 제고' 위주의 기능에서 '역량강화 기능'을 강화하고 주제발표·토론회·사례 공유·컨설팅 등의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시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수준을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자체 역량강화 노력 유인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5.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2.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3.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8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본 사업은 정상추진 할 필요<br>·본 사업은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비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력 소요의 정확한 추계와 더불어 사업관리비 등 행정비용 등에 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br>·예산 배분 반영을 위한 정량 및 정성지표 평가비율이 정성 90%, 정량 10%로 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임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국민건강증법, 지역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가 법령에 의거하고 있음

| |
|---|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br>(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기금의 사용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함<br>(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br>(지역보건법 제24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br>(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br>(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하고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음<br>(국민영양관리법 제24조,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

○ 본 사업은 지자체(보건소)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 비만예방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민간보조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보조사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의 지자체 보조는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은 국가단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보조인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은 고도 비만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르고,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15년 기준 9.2조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수명 향상 위하여 적극적인 비만관리가 필요하다 여겨짐

- 또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영양사 자격('10년 신설)을 관리 및 교육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에 일정부분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만성질환자는 全인구의 33.6%(약 1,730만명), 전체 사망의 81%가 만성질환('15.통계청)
  건강수명(73.2세)과 기대수명(82.4세) 간 격차로 길고 아픈 노후에 직면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보건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자의 범위는 일차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이나 영양·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침

- 민간보조사업인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의 수혜자는: 관련부처, 시도 및 시군구 등 비만관련 사업 담당자, 사업 참여 아동 및 학부모이며, 임상영양사 자격 운영관리 사업은 배출된 임상영양사이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표는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요에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건강지표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 내역사업은 전국 지자체(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비만예방관리 확대 등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구성되어 있으나 임상영양사 자격 관리는  사업의 목표와 잘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자체(보건소)가 주도적으로 기획·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인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생활습관 환경조성을 통한 비만예방관리 실현 및 관계기관, 시도 및 시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대상 비만예방 홍보·캠페인 추진하는 것이나, 임상영양사 자격 운영관리는 국가자격시험을 위한 문항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 본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임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건강증진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공익성이 강하며, 건강관리의 높은 공익적 효용성에 비해 주민의 낮은 지불용의로 자율적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보다 적극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위한 교재, 지도자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사업운영·지원, 홍보·캠페인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운영규모가 작아 민간에서 자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자격시험 운영은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시행 현황>

| 구 분 | 제1회 ('12.4.29.) | 제2회 ('13.4.28.) | 제3회 ('14.4.20.) | 제4회 ('15.6.14.) | 제5회 ('16.4.17.) | 제6회 ('17.4.23.) | 제7회 ('18.4.22.) |
|---|---|---|---|---|---|---|---|
| 응시자 수 | 3,751명 | 631명 | 123명 | 118명 | 145명 | 165명 | 152명 |
| 합격자 수 | 3,459명 | 394명 | 27명 | 87명 | 93명 | 94명 | 125명 |
| 합격율 | 92.2% | 62.4% | 22.0% | 73.7% | 64.1% | 57.0% | 82.2% |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사업 예산 배분, 영역간의 통합운영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81%를 차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매년 8.1%씩 증가하는 추세(건강보험공단 자료)이며, 만성질환(39.4%), 건강증진(24.2%)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수요에 대응이 필요함

※ 고혈압·당뇨병 진료비(건보) 1조 1,226억원('07) → 5조 3,363억원('17)

-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며 임상영양사 자격 운영관리는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시험의 문항개발 및 교육기관 운영 지침 등 매년 업데이트 필요성이 있음

○ 사업 폐지로 지자체의 자율에 맡길 경우,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의지 등 지자체 여건에 따른 예산 편차가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한 건강증진사업 축소 및 폐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미비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건강지표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사업의 폐지는 비만과 관련된 건강문제 심화,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규모(약 150명/연)를 고려할 때 시험응시료만으로는 자격시험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일정부분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비만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사업은 '18년 기준, 지원규모 대비 행정비용은 약 35%정도이며, 임상영양사 자격 운영관리는 '17년~'18년 매년 30백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였고, 지원규모 대비 행정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은 15백만원(50%)으로 나타나 수요가 작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보조사업은 '18년 시군구당 국비 평균 지원액은 2.8억원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의 제122호에 따라 국비 50%, 지자체 5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3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중기재정 계획(5년)을 수립하여 중장기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재정추계에 보다 정교성을 기할 필요는 있을 것임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금연, 신체활용, 영양 등 분야의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흡연율, 비만유병률 등 건강생활실천 관련 주요지표의 개선 및 아동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아동의 과체중·비만 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사업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추계하고, 지자체의 여건변동, 사업 수요 및 사업평가결과 등에 따라 예산 교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 인구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건강지표의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의 건강수준 지표 개선 정도와 사업추진의 효과성, 추진 의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 배분시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비율 측면에서 정성 90%, 정량 10%로 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임

-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에 기반하여, 재원을 집행하고 있음

○ 민간보조 사업은「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동 규정에는 사업자 선정기준, 공모절차, 교부절차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재무안전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합한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업 안내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점검 실시 후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건소 현장 모니터링 및 연 2회 이상 광역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사업집행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동 규정에는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 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에 관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통한 중요재산 취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목적사업 외 집행건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을 취소 조치하는 등 집행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보다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 보조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로서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정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복지부 훈령) 제41조(보조사업자 회계감사)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한다고 하나 지자체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점검 노력은 필요함

○ 부정수급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임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국민건강증법, 지역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보건소)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 비만예방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민간보조를 위한 것으로 공익성,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함

- 다만, 본 사업은 정상추진 하되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비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력 소요의 정확한 추계와 더불어 사업관리비 등 행정비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건강증진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공익성이 강하며, 건강관리의 높은 공익적 효용성에 비해 주민의 낮은 지불용의로 자율적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보다 적극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시 인구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건강지표의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의 건강수준 지표 개선 정도와 사업추진의 효과성, 추진 의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 배분시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비율 측면에서 정성 90%, 정량 10%로 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임

- 또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의료인자격시험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7.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7.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과 효과성 인정됨. 사업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br>·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간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는 필요하다고 봄.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 보조율이 합의되어 유지되어온 바 있으므로 당분간 정상적으로 추진<br>·다만, 일부 감염병의 경우 수산업 등 산업적 연관성이 존재하며 이와 연계된 지자체의 경우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현재 자치단체분담이 국가 대 지자체 약 45% 대 55%임을 미세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조율 재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일부 감축할 가능성이 있음.<br>·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생산된 데이터 모니터링, 검증, DB화 등 공정관리 강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제3항, 제48조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 종합 매개체 감시체계 구축 규정
-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 본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의 명확성 및 타당성을 고려

-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실험실 감시망의 운영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령에 규정
- 기호변화 대응 국가 종합 매개체 감시체게 구축 및 운영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재해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이 규정이 상정하고 있는 활동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감염병 관리 체계구축은 정부주도의 필요성 높음

-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모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법정감염병으로 각 지자체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감시사업이 필요
- 의료의 공공성, 감염병의 파급은 외부성이 크고 네트워크효과도 높아 정부개입이 요청되는 대표적인 분야임
- 의료감염 발생에 따라 환자, 의료인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피해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가차원의 체계로 추진할 필요성 인정
- 감염병으로 인한 연관 산업에도 피해가 미치고 의료인, 환자 등 사회,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인정됨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은 전국단위에 효과가 파급된다는 면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으로 실험실 감시망이 상시적으로 대비수준에 맞추어 유지되고 있는가가 사업의 성과임

-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은 주관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 분석을 위한 용역업체, 검체 채취 및 임상정보 기록을 위한 협력의료기관의 역할이 나누어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지자체의 역할은 설사분변과 호흡기 가검물로부터 병원체 확인 및 양성 검체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시약재료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내역이 설정되어 있음

- 매개체 감시망 사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권역 거점을 중심으로 매개체 및 매개체 전파 감염병 발생에 대한 조사감시 및 매개체 내 병원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중앙(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내역이 설정되어 있음

○ 두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확인진단기반 구축과 정기적 실시간적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가임

○ 감시망을 상비하는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서 사업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였음

○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 어느 정도 성과관리가 되고 있음

○ 다만, 결과지표, 영향지표, 만족도지표 등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의 효과의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금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하는지 문제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실험실 감시망 운영은 국가의 산학협력, 전문가집단과 협력을 통하여 전국적인 감시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생각됨

- 지자체 및 민간을 활용한 보조사업 형태의 실험실감시망 운영이 필요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예방활동이 필요

- 감염병 예방활동은 외부성에 의하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어려움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조정 및 통합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고려

-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고유한 특성이 있어 사업주체와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

○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추진이 시급한 사안인지 고려

- 본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 감염병 예방활동 필요성이 인정됨

- 감염원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계속되므로 사업을 연장 지속해야 할 필요 인정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사업비가 적정 하게 구성 되었는지 고려

- 사회적 니즈에 비하여 예산규모가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음. 적정한 수준의 예산규모를 유지해야 함

- 전반적으로 사회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사업구성으로 파악됨

○ 보조율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분담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 질병 발생시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활동에 사회적 가치구현의 의미가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수행자가 되며 공모가 적절하지 않음

○ 교부시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지자체에게 재원을 집행

○ 민간경상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일반적 관리규정과 지침을 준수

- 사업에 대한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적절함

○ 민간경상사업의 경우 산출물이 비교적 분명하며 관리노력이 적절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공공기관으로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처리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음

○ 적절한 부정수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음

- 현장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통하여 관리

○ 민간경상사업의 경우 적절한 관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 보조율이 합의되어 유지되어온 바 있으므로 당분간 정상적으로 추진

○ 다만 장기적으로 일부 감염병의 경우 수산업 등 산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이와 연계된 지자체의 경우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현재 자치단체분담이 국가 대 지자체 약 45% 대 55%임을 미세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조율 재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일부 감축할 가능성이 있음.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과 효과성 인정됨

-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간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는 필요하다고 봄
- 정상추진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하고 시각화 등의 기법을 적극활용하여 산출물의 활용도는 높이는 노력 요구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치매관리체계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8.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8.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치매관리체계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 및 중요성이 인정되고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국정과제와도 밀접한 연계성이 있으며, 그간 적정한 예산 하에서 대체로 실효성 있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br>·치매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부양에 따른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및 가계 부담 등 고통이 심화됨에 따라 동 보조사업의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함<br>·치매관리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고, 치매관리 전달체계 각급별 지원인력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보조사업은 「치매관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특히, 「치매관리법」은 중앙치매센터(치매상담콜센터)-시·도 광역치매센터-시·군·구 치매안심센터-공립요양병원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치매관리 전달체계에 관한 사업인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함

○ 중앙치매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각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치매관리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하나로서 동법 제6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지급하도록 함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환자를 위해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지속적 치료·관리,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홍보 등을 추진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됨

○ 현 정부 국정과제인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등 치매 국가책임제가 포함되어 있고, 동 보조사업과 이와 밀접한 연계성이 있음

○ 동 보조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치매정책 수립, 대국민 인식개선 및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혜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수혜범위는 특정지역 또는 단체의 범위를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광범위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해서는 ①치매환자 발굴, 예방, 1:1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원스톱 치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②치매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③인식개선 및 사회적 지원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동 보조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중앙치매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적절한 내역사업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각 내역사업은 중앙치매센터(치매상담콜센터)-시·도 광역치매센터-시·군·구 치매안심센터-공립요양병원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치매관리 전달체계 내 각 요소에 맞추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계획한 목표를 대체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치매환자 등록률, 치매파트너즈(플러스) 누적 모집인원 등 두 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18.11월 기준, 치매환자 등록률 44.6%, 목표대비 148% 달성, ’18.11월 기준, 치매파트너즈(플러스) 누적 모집인원 648,836명(플러스 8500명), 목표대비 108%(109%) 달성
- 합리적인 준거지표를 제시하여 성과목표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 있음
- 치매관리의 출발점이 치매환자를 선별·진단·감별하여 관리체계 내 등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치매환자 등록률 성과지표는 타당하지만, 등록 이후 치매관리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예를 들어, 치매가족 만족도) 개발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치매관리 전달체계 각급별 지원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국가차원에서 통일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 치매 관련 인프라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에 대한 실질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을 통한 정책수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는 수익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민간에서 국고보조없이 수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음

○ 동 보조사업 내 각 내역사업들과 사업목적, 사업내용, 수행절차 및 수혜대상 등에 있어서 유사·중복된 사업은 발견되지 않음

○ 치매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부양에 따른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및 가계 부담 등 고통이 심화됨에 따라 동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하여 시급성이 인정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보조율을 100%로 하고 있고,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공립요양병원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거나 설립주체가 지자체인 사업의 경우 서울과 지방에 따른 차별적 보조율을 50~80%로 적정하게 적용하고 있음

○ 동 보조사업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5년 단위의 재정소요액을 적정하게 추계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보조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촘촘한 치매관리체계가 구축되는 등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17개 광역단체 및 256개 보건소에 설치·운영하고 사업의 성격,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매년 지침 개정 시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적정하게 명시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지역사회 치매관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가능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지침 개정 시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 등을 적정하게 명시하고 있음

○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는 공모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사업대상자를 적정하게 선정하였으며, 법적합성,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등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를 받고 있음

○ 보조사업 집행점검 시 실집행 현황을 같이 점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 및 교부조건에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수행제한 등)를 명시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실집행률 점검 및 저조시 사유확인, 집행계획 및 예상 집행률 확인 등 수시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에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집행 및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치매상담콜센터 운영은 사업 종료 후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환 및 정산 등 사후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현재 부정수급 발생사례는 없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에서 정산까지 처리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전용계좌, 보조금 별도계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부 시 안내를 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치매관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중앙치매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각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되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계성이 있음

○ 각 내역사업은 국가치매관리 전달체계 내 각 요소에 맞추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치매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부양에 따른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및 가계 부담 등 고통이 심화됨에 따라 동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충분하여 시급성이 인정됨

○ 내역사업별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합리적인 준거지표를 제시하여 성과목표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 있음

○ 치매관리의 출발점이 치매환자를 선별·진단·감별하여 관리체계 내 등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치매환자 등록률 성과지표는 타당하지만, 등록 이후 치매관리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예를 들어, 치매가족 만족도) 개발이 필요함

○ 동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치매관리 전달체계 각급별 지원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한센병환자관리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2.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2.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 추진<br>·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타당함<br>·향후 한센병 환자수의 감소추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보조사업 지원대상의 특성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복지·서비스 수요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내역사업의 예산구조 및 규모 개편 등 노력이 요구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7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무 규정)과 지원경부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의무 규정)되어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한센병은 제3군감염병으로 국가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한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여야 함

- (지자체 경상) 한센병의 예방.치료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 한센사업대상자의 복지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지자체 자본) 노후화된 한센생활시설 및 한센간이양로주택 신개축 지원을 통해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

- (민간경상) 한센병 치료, 한센정착마을관리, 한센병연구 등을 위탁.수행하는 민간단체 운영 지원

○ 한센병은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있으며,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므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함

- 한센사업 대상자(2017년) : 10,033명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657 | 758 | 670 | 243 | 173 | 186 | 109 | 26 | 888 | 217 | 319 | 349 | 1,055 | 1,309 | 1,841 | 1,162 | 71 | 10,033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을 위해 환자발견, 환자관리, 복지지원으로 내역사업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 도모

○ 동 사업은 한센병 재발률, 조기발견율 등 목표치를 모두 100%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 성과지표 | 목표 | 실적 | 달성도 |
|---|---|---|---|
| 한센병 재발률(%) | 0.008% 이하 | 0% | 100 |
| 한센병 조기발견율(명) | 65.3% 이상 | 100% |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경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필요함

○ 한센병 환자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대상자가 2017년 현재 10,033명이고 이들 중 76.2%가 장애인으로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한센병 환자수: 33,116명(1974) → 10,033명(2017)

<한센사업대상자 발생 현황, 1974~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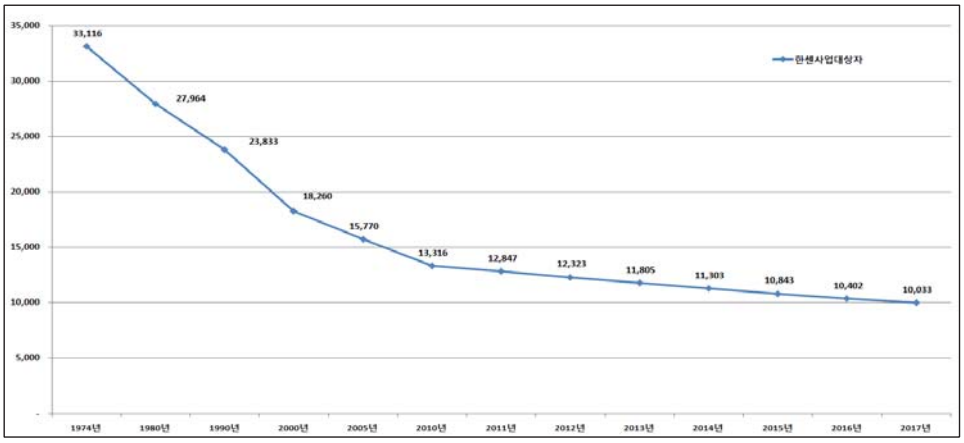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한센병환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운영비 단가 상승 및 복지서비스, 인권향상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

- 고령자, 장애인이 다수인 한센병 환자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조치 필요

* 한센인의 평균 연령 75.9세(2017년), 장애인 비율 76.2%를 차지

○ 동 사업은 보조금법령에 의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한센병관리 내역사업별 예산 추이>

| 사업명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한센병환자관리지원 | 10,541 | 12,931 | 11,277 | 10,792 | 10,622 | 9,560 | 10,539 | 11,716 |
| · 한센병관리운영비 | 53 | 91 | 102 | 39 | 36 | 37 | 36 | 37 |
| · 한센의약품지원 | 254 | 254 | 260 | 257 | 189 | 224 | 292 | 363 |
| · 한센재활지원 | 272 | 272 | 263 | 263 | 263 | 263 | 263 | 263 |
| · 한센민간단체지원 | 3,434 | 3,444 | 3,643 | 3,604 | 3,285 | 3,943 | 3,383 | 3,533 |
| · 한센시설운영 | 2,221 | 2,216 | 2,219 | 2,218 | 2,080 | 2,238 | 2,511 | 2,659 |
| · 한센생활시설기능보강 | 100 | 509 | 769 | 193 | 122 | 104 | - | 425 |
| ·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 1,627 | 1,639 | 1,766 | 1,787 | 1,906 | 1,996 | 1,923 | 2,030 |
| · 한센간이양로주택기능보강 | 783 | 726 | 397 | 200 | 154 | 229 | 609 | 1,884 |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744 | 727 | 805 | 785 | 672 | 526 | 522 | 522 |
| · 익산왕궁 신개축지원 | 1,053 | 1,053 | 1,053 | 1,446 | 1,415 | - | - | - |
| · 여수애양원 한센기념관 건립 | - | 2,000 | - | - | 500 | - | - | - |
| · 호혜원주거환경개선 | - | - | - | - | - | - | 1,000 | - |
| □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 | - | - | - | - | 17,587 | - | - |
| · 삼애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신축 | - | - | - | - | - | 3,087 | - | - |
| · 호혜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신축 | - | - | - | - | - | 2,500 | - | - |
| · 호혜원 월산제 퇴적오니 준설 | - | - | - | - | - | 12,000 | - | - |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한센병환자관리지원은 지자체 경상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로 내역사업에 따라 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 경상 및 자본보조는 보조사업 선정 및 교부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여건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등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는 '한센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선정 추진됨

- 4개 민간기관(한센복지협회, 가톨릭대학교 한센병연구소, 한센총연합회,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이외에 경쟁력 수행기관이 없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한센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민간경상보조)과 한센사업지침(지자제보조)에 의거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시 사전승인, 분기별 실적보고, 상하반기 집행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예산집행 실적점검을 통해 시.도의 재가 한센인생계비 지원대상 및 소요예상액 파악

⇨ (부처의견) 현재 한센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한센병환자관리지원은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 마련 및 준수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수행시 용도외 사용금지, 지원결정의 취소, 부정수급 대상자 환수 등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 발생 및 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있음

- 지자체 보조사업: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관련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연1회 이상 지원대상자 자격관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함
-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상하반기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교부금액에 상관없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정산의 의뢰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한센관련 민간단체 3곳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2018.3분기, 현지점검), 증빙서류 보완하도록 조치

- 한센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예산 항목별 증빙서류에 맞춰 집행서류 처리 필요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정상 추진

-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타당함

### 3-2 정책 제언

○ 향후 한센병 환자수의 감소추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보조사업 지원대상의 특성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복지·서비스 수요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내역사업의 예산구조 및 규모 등에 대한 개편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부처의견)** 격년으로 한센사업 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하여 한센인 감소 및 장애한센인 고령화 등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특성 변화에 맞게 내역사업의 예산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하겠음**

**[중앙일보 2018.3.4] 국내 한센병 환자, 5년 뒤 사라질 듯… 지난해 신규환자 3명**

**5년 후면 국내 한센병 환자가 사라져 더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한센병 경험자나 마무리 치료 단계 환자도 20년 후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센병은 나균이 피부와 말초신경계 등에 침투해 피부 조직을 변형시키는 병이다. 병명은 1873년 최초로 나균을 발견한 한센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7일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진행한 '한센병관리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센병 주 치료 대상자인 활동성 환자는 125명으로 2001년(581명)에 비해 78.4% 감소했다. 매년 평균 28.5명이 줄어들고 있다. 한센병 활동성 환자와 재발·재활관리 대상(유경험자)은 2017년 총 1만33명으로 지난 2001년(1만7712명) 대비 43.3%(7679명) 감소했다. 한센병 환자 및 관리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적극적 의료 정책으로 지난해 신규 환자(3명)가 2005년(15명)보다 80%(12명)나 줄어드는 등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한센병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주 치료 대상인 활동성 환자는 5년 후, 전체 관리 대상은 20년 후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한센병 환자 및 재활·재발 관리대상 등의 평균 연령은 약 76세로 지난 2005년 66.51세보다 9.39세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 중 70세 이상 비율도 2017년 기준 71.24%로 조사됐다. 한센병 환자 및 관리대상의 거주지 비중은 재가가 6053명(60.3%), 정착 마을이 3129명(31.2%), 한센생활시설이 851명(8.5%)으로 집계됐다. 정착 마을이나 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한센인이 더 많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한센인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 감소와 예방, 재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국가한센관리정책을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복지적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한의약산업육성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5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본 세부사업은 '감축('20년부터 8,359백만원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br>- 19년 종료 예정인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5,675백만원 및 '탕약 표준조제시설 구축' 2,684백만원을 삭감함<br>·단기성 사업인 인프라 구축사업 이외의 내역사업은 사업내용 및 성과관리 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br>·한의약 산업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시 산출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br>-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조사업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세부사업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기반 구축으로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약제제 현대화, 한의약소재은행,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기반 구축, 한의약침약제 규격표준화,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한약(탕약) 현대화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한의약육성법'에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법령 명 및 조항>**

- 한의약육성법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한의약육성법 제5조(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본 세부사업의 7개 내역사업 모두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법적근거와 관련성이 있으며 보조금 지급근거(할 수 있다)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세부사업은 국정과제 34-3번 '제약·바이오·의료기관 산업육성 지원'과 관련성이 높으며,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가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이 타당함

○ 본 세부사업은 한약제제를 활용하는 한방의료기관과 더불어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 생산 유통과정의 재배농가, 제약회사, 유통관계자 등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세부사업의 7개 내역사업은 공공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한약제제의 현대화, 한의약소재은행, 한의약침약제 표준화,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구성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연차별로 내역사업별 목표와 실적관리가 잘 수행되고 있음

○ 사업의 성과지표는 4개로 설정하고 있으며, 17년에 당초 계획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 및 달성도('17년)

| 성과지표 | 가중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① 한의약 소재은행 기능 강화(유·무상 분양)(건) | 0.4 | 당해연도 한의약 소재 물질 유·무상 분양 건수 | 목표 | - | 신규 | 600 | 750 |
| | | | 실적 | - | 신규 | 746 | 755 |
| | | | 달성률(%) | - | - | 124.3 | 100.0 |
| ②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건) | 0.3 | 당해연도 제형 개발한 시제품 건수 | 목표 | 7 | 8 | 8 | 8 |
| | | | 실적 | 9 | 10 | 8 | 8 |
| | | | 달성률(%) | 128.6 | 125.0 | 100.0 | 100.0 |
| ③한약제제 약효표준화(건) | 0.1 | 당해연도 약효표준화 시험건수 | 목표 | 10 (임상) | 2 (임상) | 2 (임상) | 3 (임상) |
| | | | 실적 | 10 (임상) | 2 (임상) | 2 (임상) | 3 (임상) |
| | | | 달성률(%) | 100.0 | 100.0 | 100.0 | 100.0 |
| ④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기반구축(건) | 0.2 | 토종자원 유효성(생리활성) 평가 실적 | 목표 | 30 | 30 | 30 | 40 |
| | | | 실적 | 30 | 30 | 36 | 40 |
| | | | 달성률(%) | 100.0 | 100.0 | 120.0 | 10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기반구축으로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본 세부사업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유일한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으로 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및 통합가능성은 없음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효과적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전통의약기술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한 한의약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사업내용 상 단기(19년)에 종료되는 내역사업이 있는 반면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은 미수립됨에 따라 단계별 사업비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9년 세부사업 중 한약 공공인프라사업, 탕약 표준조제시설 구축 사업이 19년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단기성 인프라 공급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이 폐지될 경우, 한약 개발제형의 식약처 품목허가 및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단되고, 이로 인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별 재정지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본 세부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음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민간 보조(국비 100%)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세부사업은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한약처방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약제제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세부사업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자체를 선정하고, 매년 2회에 걸쳐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보고회를 거쳐 사업실적, 보조금의 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받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사업 안내 지침에 띠라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고금 교부절차, 집행, 정산 등을 준수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체계를 마련함

○ 본 세부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사업 안내 지침에 띠라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례는 없으며,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절한 관리체계를 유지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사업 안내 지침에 띠라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세부사업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기반 구축으로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약제제 현대화, 한의약소재은행,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기반 구축, 한의약침약제 규격표준화,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한약(탕약) 현대화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19년에 종료되는 내역사업을 감안하여 20년부터 사업비 감축(8,359백만원)이 필요함
- 19년 종료 예정인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5,675백만원 및 '탕약 표준조제시설 구축' 2,684백만원을 삭감함
- 단기성 사업인 인프라 구축사업 이외의 내역사업은 사업내용 및 성과관리 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3-2 정책 제언

○ 한의약 산업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시 산출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조사업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
| 사 업 명 |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54.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35.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6.8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2.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9.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6.3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8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사업은 '감축('20년 108백만원)'이 요구됨<br>·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감축이 필요함<br>·'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동 센터를 통한 관련 교육실적이 미흡하고, 유사 기관과 비교하여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움<br>·'19년 말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추후 용역 결과를 고려하여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건복지부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법적근거로 하여 추진되고 있음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동법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41조를 고려할 때,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정책지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법적근거는 명확하다고 평가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모형 개발을 통해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기반 마련

-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추진

○ 동 사업의 목적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필요성 및 지역사회기반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는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3%가 만성질환자로 구분되고 있으며(약 1,730만명), 그 중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약 800만명으로 증가속도를 빠름에 따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함

- 또한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국정과제 45번(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볼 때, 동 사업은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한 혜택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 중 하나인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3개 지역에 설치된 건강동행센터의 2018년 교육실적(1월~9월)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가하여 생활습관개선교육을 받은 전체 인원 26,251명 중 불과 2.8%(738명)의 인원이 건강동행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시범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동 사업의 혜택이 충분이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첫째, 2014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모델 개선 및 평가 등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일차의료정책지원'과 교육상담, 지역보건 자원 연계 등을 추진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분

  * '19년의 경우 세계당뇨병총회 지원을 위한 '만성질환 네트워크 지원' 내역사업을 단년도 편성

○ 사업구성적 측면에서 '일차의료정책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통합모형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이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비교하여 건강동행센터(일차의료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2014년 건강동행센터는 6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시군구의 지방비 미확보로 4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7년에도 1개소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실질적으로 3개소만 설치·운영되었음

-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강동행센터의 생활습관개선 교육 실적을 확인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개선교육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원주시 건강동행센터 의뢰교육 실적의 경우에도 전체 교육인원 및 교육실시횟수 대비 각각 5.8%, 3.4%로 실제 기여도는 매우 낮음

○ 보조사업의 목표는 일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부분이 존재하나, 연도별 성과지표가 변화함에 따라 충분한 목표 달성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17년의 경우 서비스만족도는 성과목표를 달성한 바 있으나, '건강동행센터 의뢰자 수 대비 서비스연계자 수'로 집계되는 서비스연계율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18년의 경우 서비스만족도와 '전체 등록 환자 대비 상담·교육 서비스 참여환자 수'로 집계되는 교육참여율로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으며, 두 지표 모두 성과목표 달성

- '19년의 경우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모형 참여 의료기관 비율로 성과지표가 변경

- 전체 플랫폼 차원의 성과지표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강동행센터와 관련된 성과지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기존 민간체계 하에서는 충분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 인정되나, 현재의 정책수단이 최적의 대안인가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함

- 특히 이러한 이유에는 별도의 건강동행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내 다른 보건의료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에 건강증진센터 20개소를 이미 설치하고 있어 동 사업의 건강동행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센터의 추가 설치를 추진할 경우 이를 통한 정책 목표 달성 역시 가능

- 이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별개의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 또한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동 사업의 특성상 동 사업을 통해 개별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함

- 현 시점에서 그간 동 사업의 수행을 통해 개별 환자의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 또한 경증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편익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증가추세는 물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투입되는 행정비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목표 달성과 비교하여 사업비의 배분은 재검토가 필요함

- 건강동행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비 매칭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필요

○ 동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존보조율 적용대상이 아님

- 내역사업별 보조율의 경우 2018년의 경우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은 50%(지자체경상보조), '일차의료 정책지원'은 100%(민간경상보조)로 구성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동 사업은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경상보조의 경우 서면심사·대면심사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

- '17년의 사업 신청이 접수된 지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내부위원(2인)과 관련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동행센터장,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등) 및 외부 전문가(6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진행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는 사업계획 적정성 및 참여의지,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지역선정의 타당성 등을 기준을 중심으로 실시됨
- 다만 이러한 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관련 예산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평가 기준 중 지자체 참여의지에 대한 기준 개선과 효과적인 심사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의미함

○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정 위탁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 보조사업자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지원 및 평가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음
- 별도의 공모절차는 없었으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자 지정이라는 점에서 일부 선정절차의 합리성이 인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집행 현황 등을 수시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조치사항을 안내함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하며, 이에 대한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 다만, 건강동행센터 설치·운영과 관려하여 는 6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시군구의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이 담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 법령, 사업안내 등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장(보조사업 사후관리), 제5장(부정수금 대응 및 방지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부정수급 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4조(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36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제37조(과오납의 환급), 제38조(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등 보건복지부 소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일부 내역사업의 예산 감축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동 센터를 통한 관련 교육실적이 미흡하고,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움

- 실질적 운영의 필요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 불용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19년 대비 30%의 예산 감축을 권고함(108백만원)

- ’19년 말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추후 용역 결과를 고려하여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공공수역녹조발생대응
국립공원및지질공원사업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수질및수생태계측정조사
수질보전활동지원(금강)
수질보전활동지원(낙동강)
수질보전활동지원(영산강섬진강)
수질보전활동지원(한강)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
영농폐기물재활용촉진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
친환경제품보급촉진및환경표지제도운영
폐기물처리시설확충
환경교육강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0.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6.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을 축소,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18년 )기준, 부처 불용액 40억 및 지자체 불용액 50억. 사업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예산규모를 감축하여 추진하다가 사업규모가 안정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보조금 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불용액의 규모와 보조금 규모의 평균을 고려할 때 10-15%정도(50억 원)의 예산감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br>·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은 대표적으로 외부성이 존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당성조사 및 부지확보 등의 과정에서 재정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활동을 수행함<br>·사회수요 및 중기사업계획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지연 및 사업포기의 사례가 발생하는 바, 추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법령에 명확하고 타당하게 제시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및 제42조(국고보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등에 사업의 목적, 수행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내역사업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가축분뇨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데 있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국고보조)에서 지자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법령 간의 정합성이 높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의 심각성과 축산농가에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하는 논거가 비교적 명확함

- 고농도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발생부하량(BOD 기준 38%, TP 62%)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나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거나 처리함으로써 축산악취 민원이 증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정책방향과 부합함

- 외부성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환경개선에 있어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단위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확인됨

○ 해당 사업의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는 축사 등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시켜 처리하는 축산농가이며, 실질적으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 혜택을 누리는 일반 국민이 간접적·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어 그 수혜가 광범위하게 귀속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므로 대표적으로 외부성이 존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조 및 제42조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내역사업을 구성하였으므로 구성적 타당성은 높은 편임

○ 수질관리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농도 오염물질로서 적정처리가 어려운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지자체 또는 농협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명확한 사업임

○ 사업의 효과성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염물질 삭감량(BOD)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며, 가축분요관리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염물질 삭감량(BOD)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일정 정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로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졌으며, 타당성조사 및 부지확보 등의 과정에서 재정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활동을 수행함

- 다만, 주민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 및 사업포기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바, 집행율 제고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고농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상수원 등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의 심각성과 축산농가에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할 것으로 보임

○ 이전 연장평가의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었던 농식품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였으나, 오염배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중복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3.2)」에 따라 농식품부지원시설 유입처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지 않게 사업반영의 조치가 이루어짐

○ 축산농가도 전업화·기업화되어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 배출하고 있으나 축산업자의 소극적 시설투자와 낮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급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 개선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 해당 사업의 일차적 수혜자는 축사 등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시켜 처리하는 축산농가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 혜택을 누리는 일반 국민이 간접적·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어 폐지 시 그 잠재적 피해도 광범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37.0%(생활하수의 90배) 으로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아 하천 유출시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회수요 및 중기사업계획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지연 및 사업포기의 사례가 발생하는 바, 추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18년 기준, 부처 불용액 40억 및 지자체 불용액 50억은 부처의 사업합리화를 위한 판단인 것으로 파악됨.

- 즉,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축소,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됨. 사업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예산규모를 감축하여 추진하다가 사업규모가 안정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보조금 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 해당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에 따라 기준보조율 적용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중기사업계획 작성(환경부) 및 검토(기재부) 절차를 이행하여 재정소요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고농도 오염물질로서 적정처리가 어려운 가축분뇨를 공공기관에서 수거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⑪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인정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8.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2018.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 에 따라 사업신청 단계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선정 및 교부절차 등 보조사업의 추진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절차에 따르면, 예산 선심 → 사업확정(국회통과) → 지자체사업추진[ 설계 → 재원협의(환경부) → 인가(시도) → 공사착공 → 사업완료 → 정산보고(환경부)의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8.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2018.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축소,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집행실적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및 단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8.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2018.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사후관리의 내용을 제도화하고 있음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통해 재원협의, 설계검토, 준공확인, 정산 및 보조금 반환, 부정수급 여부 확인 노후시설 기술진단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은 일반 축산농가 등이 아닌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으며 지금까지 부정수급 발생 사례가 없으나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 보조금 교부시 공문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8.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2018.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내역사업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의 심각성과 축산농가에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해야 하는 논거가 비교적 명확함

- 해당 사업의 직접적·실질적 수혜자는 축사 등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시켜 처리하는 축산농가이며, 실질적으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 혜택을 누리는 일반 국민이 간접적·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어 그 수혜가 광범위하게 귀속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됨

○ 사업의 효과성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염물질 삭감량(BOD)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며, 타당성조사 및 부지확보 등의 과정에서 재정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활동을 수행함

- 수질관리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농도 오염물질로서 적정처리가 어려운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지자체 또는 농협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명확한 사업임

- 다만, 주민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 및 사업포기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바, 집행율 제고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고농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상수원 등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의 심각성과 축산농가에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할 것으로 보임.

- 축산농가도 전업화·기업화되어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 배출하고 있으나 축산업자의 소극적 시설투자와 낮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급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 개선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 사회수요 및 중기사업계획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지연 및 사업포기의 사례가 발생하는 바, 추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고농도 가축분뇨의 심각성과 축산농가에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할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개선에 있어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도 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 혹은 자발적 정책수단과 병행해야 추진되어야 함

○ 주민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 및 사업포기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바, 집행율 제고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1.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3.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8.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동 사업은 녹조로 인한 먹는물 안전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br>·금년도 추진 예정인 녹조제거 신기술 시범사업(2억원)의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동 사업의 지원규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br>·아울러 부처 추진중인 다양한 녹조대응 시책들과 연계를 통해 체감할수 있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한편, 효과 높은 시책 위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지원 근거(임의 규정)를 두고 있음

- 동 법에 의거하여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녹조로 인한 먹는물 안전 피해 등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총인처리 강화 운영)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4대강 사업이후 녹조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언론과 국민들의 녹조에 대한 관심한 신속한 대응요구 증가에 대응해, 먹는물 안전피해 예방을 위한 오염원의 선제적 관리(저감)를 목적으로 함

○ 동 사업의 수혜범위는 국민의 안전한 먹는물 제공 등 전국민이 수혜범위에 해당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조류피해 예방조치에 따라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질을 저감토록 하여 총인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영실적(2018.5.1.-9.20) 분석결과, 총인 125.3톤을 배출, 기준년도(2015년 총인배출량 515.3톤) 대비 75%를 저감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효과를 거둠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대상지역 | ①한강<br>②낙동강 | ①한강<br>②낙동강<br>③금강 | ①한강<br>②낙동강<br>③금강<br>④영산강 |
| 대상 하·폐수처리장* | 44개소 | 61개소 | **115개소** |
| 총인 저감량(5~9월)<br>('15년 배출량 대비) | 423톤 | 347톤 | 390톤 |
| 예산집행액 | 250백만원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 수계 내 총인기여율이 높거나, 녹조 빈발구간, 친수활동 및 상수원 취수구간에 위치한 하·폐수 처리시설

| 수계 | 대상시설 | 기준년도('15년)<br>배출량(톤) | '18년도 배출량(톤) | 저감량(톤)<br>('15-'18) |
|---|---|---|---|---|
| 한강 | 22 | 453.1 | 73.7 | **379.4** |
| 금강 | 21 | 17.2 | 20.7 | **△3.5** |
| 낙동강 | 65 | 30.7 | 19.5 | **11.2** |
| 영산강 | 7 | 14.3 | 11.4 | **2.9** |
| 합계 | **115** | **515.3** | **125.3** | **39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공공수역의 조류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로서 사업효과 등이 나타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하·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인 지자체에 대해 피해조치비용을 보전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여름철 녹조발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소액사업(5억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방류수 수질강화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를 일부 보전하는 것임

- 유역관리권자인 국가의 책무로 국고 100% 지원사업임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등 방류수 수질강화 운영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목표에 부합한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임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수면관리자, 취.정수장 관리자(지자체)에게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하는 것으로 실제 이행비용에 따른 사후적 지원임

- 2018년, 115개 대상시설 중 항목별 목표를 달성한 75개 시설, 10개 지자체에게 총 5억원을 지원하였음

| 지자체 | 대상시설수 | | 지원금액 (단위: 천원) | 비고 |
|---|---|---|---|---|
| | 참여 시설 | 지원 시설 | | |
| **합계** | **115** | **75** | **500,000** | |
| 서울특별시 | 2 | 2 | 21,000 | |
| 경기도 | 20 | 17 | 105,000 | |
| 대전광역시 | 1 | 0 | - | |
| 세종특별자치시 | 2 | 2 | 14,000 | |
| 충청북도 | 16 | 12 | 70,000 | |
| 충청남도 | 2 | 2 | 13,000 | |
| 광주광역시 | 2 | 2 | 10,000 | |
| 전라북도 | 3 | 1 | 8,000 | |
| 전라남도 | 2 | 1 | 8,000 | |
| 대구광역시 | 9 | 9 | 54,000 | |
| 경상북도 | 41 | 16 | 115,000 | |
| 경상남도 | 15 | 11 | 82,000 | |

※ (참여시설) 총인처리강화 참여 시설, (지원시설) 지급기준 만족 시설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수면관리자, 취.정수장 관리자(지자체)에게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하는 것으로 실제 이행비용에 따른 사후적 지원임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수면관리자, 취.정수장 관리자(지자체)에게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하는 사후적 조치로서, 목표이행 실적에따라 지자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목표달성 여부는 TMS(수질자동측정장치)의 객관적인 자료로 측정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방식 변경

- 동 사업은 녹조로 인한 먹는물 안전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금년도에 추진 예정인 녹조제거 신기술 시범사업(2억원)의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동 사업의 지원규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부처 추진 중인 녹조대응 시책*들 간 연계를 통해 체감할수 있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한편, 효과성이 높은 시책 위주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녹조대응시책: 사전예방, 모니터링, 녹조 발생시 위해관리

# 참고: (부처 추진중) 녹조대응시책

□ **녹조대응정책 :** ①사전예방; ②모니터링; ③녹조 발생시 위해관리

* 녹조발생 4대요인 : 수온, 일사량, 영양물질(질소·인 등), 체류시간

① **(사전예방)** 녹조를 유발하는 영양물질(인·질소)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 (대권역·중권역·소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반영)

| 구 분 | 주요내용 |
|---|---|
| **오염원 공통** | ▸수질오염총량제 /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 실개천·도랑 살리기 |
| **하수** | ▸하수처리시설 확충 / 월류수 저감 / 여름철 총인처리 강화 등 |
| **폐수** |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 수질TMS(감시) 등 |
| **가축분뇨** | ▸공공처리시설 확충 / 바이오가스화 / 수거·퇴비화(대청호) 등 |
| **도시 비점오염** | ▸저영향개발(LID) 확산 / 물순환도시 조성 등 |
| **농촌 비점오염** | ▸양분수지 분석·관리(최적시비) / 오염유출저감형 농법 보급 등 |
| **비점오염원 공통**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생태하천 조성 등 |

※ 수질개선 사업은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과 별도로 세부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② **(모니터링)**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간('조류경보제 운영'), 4대강 보 구간 등에 대해 녹조(남조류) 발생상황을 정기적으로(주 1~3회)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

- 또한, 첨단기술(초분광 센서)을 활용한 면(面)단위 녹조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여 DB 축적·관리

③ **(녹조 발생시 위해관리)** 녹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Risk)에 대응하여, △취·정수처리 강화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 △친수활동 자제·제한조치 △(필요시)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수면관리자 주관) 등 추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4.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5.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9.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본 사업의 전체와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사업성과 및 사업집행 전반이 적절하나 사업명과 사업내용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사업수행에 혼란감을 주고 있고, 사업성과관리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판정함<br>· 보조사업명을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으로 명명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에 혼란감을 주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지질공원으로 제한하는 보조사업명으로 수정하는 부분적 개선이 요구됨<br>· 본 보조사업은 지질공원 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사업 전반에서 국립공원사업과 지질공원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역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성과지표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사업효과성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함<br>· 사업관리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 사업집행과정,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실제 증빙자료들로 확인할 수 있어 사업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중 지질공원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지질공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 36조의 3과 제 36조 7에 근거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국정과제나 공약과제는 아니지만 지질공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 및 소득증대 가능성이 있다면 또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의 구체적인 수혜자 범위와 잠재적 수혜 범위를 제시해야 하며, 공원 이용객 외에 지역주민이 수혜대상자라면 어떤 면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이러한 혜택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함

- 현재 지질공원 해설사 배출 수치는 제시하였으나 그 외 본 사업의 수혜범위나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사업내용이 성과지표인 지질공원 이용만족도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으나 이용만족도의 세부 내용을 대표 지표로 제시하여 내역사업과의 일관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효과성에서 제시한 지질공원 이용만족도를 통해서 사업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내역사업과 관련한 사업성과를 탐방객 이용만족도의 문항 내 포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본 사업의 효과성을 알 수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중 지질공원사업은 민간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타 부처와 사업과의 중복과 유사성은 낮음

- 국립공원사업과의 차별화할 수 있도록 노력들이 필요함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시급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보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됨

- 사업폐지시의 손실은 해당 지자체에 주어지는 손실과 국제적 측면까지 제시하여 사업 지속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향후 지자체의 손실 측면이 다양한데 이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추산하여 제시한다면 사업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에 대한 보조사업의 규모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국비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적절한 수준임

- 현행 보조율이 법적 근거를 갖고,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설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기준보조율 없는 사업으로 해당부터 유사사업의 기준에 준하여 보조율을 산정하고 있어 산정기준이 타당하다고 평가됨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본 사업은 지질공원 보존을 통한 자연과 환경 보존이 궁극적 목적이고 해설사 양성 등은 그에 따른 세부적 사업내용이므로 사회적 가치실현 1번 영역보다는 10번 영역인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해당한다고 평가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절한 지침과 규정들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질공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실적의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 점검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업집행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지질공원 인증제도의 운영과 보조금 집행 적절성을 점검하는 것과는 분리되어야 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의 보조금 반환이나 중요재산 국가지질공원 점검 계획을 수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조금관리에 대한 법률과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으로 사업비 정산 및 문제발생 시에 대처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증빙자료를 통해서 해당사업의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의 보조금의 부정수급 발생한 바 없어 향후 발생 가능성도 낮음

- 환경부의 타 사업에서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은 지질공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세부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불일치하여 사업 근거 및 내용 이해에 혼란감을 줌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공약사업이거나 국정과제, 계획과제는 아니며 긴급성을 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자연보존과 환경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연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사업의 수혜대상 확장, 외부효과, 사업폐기시의 손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여 사업타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사업관리가 사업자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인됨

- 사업관리를 위해서 보조금관리 및 환경부 보조금관리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실제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증빙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음

## 3-2 정책 제언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에서 본 보조사업인 지질공원사업에 대한 성과와 실적을 산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됨

-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5.0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5.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사업추진 타당성이 있고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br>·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가가 보조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br>·대기환경과 관련된 정량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실시됨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와 제81조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의무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대해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의무대상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장별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굴뚝자동측정기 의무사업장을 지정하고 측정기기를 부착 및 운영할 때의 혜택은 대기환경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자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해 부착 및 운영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의무대상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명확하나,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근거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설치비, 정도검사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 목표와 내용은 명확하지만, 사업 실시를 통해 대기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은 불명확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굴뚝자동측정기기 의무사업장을 지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 의무사업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사업은 민간에서 대체하여 수행하기 어려움
-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없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법령에 정해진 보조율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보조금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행정비용이 소요되어 보조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상실될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음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22호에 정해진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의 보조율을 준수하여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본 사업의 추진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됨

- 본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경우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을 검토 후 확정함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예산편성 및 확정 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을 파악하여 검토중임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함

-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예산은 연초 한 차례 교부 후 2~3분기에 기 교부한 예산의 집행 현황, 지원 대상 사업장의 변동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잔액을 추가로 교부함
- 필요한 경우 집행관리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매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의 집행관리실태 검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지침 위반사항 적발 시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해당 지자체(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종료 후 지자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지원 금액 적정 여부 확인 및 반환 필요액 등을 파악함
- 사업종료 후 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예산의 지원 대상 사업장, 지원 금액 등의 지원 내역, 이자 발생액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이를 통해 집행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수행중임

-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없으며 적발 시 환수 등 조치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가가 보조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 의무대상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음
- 하지만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근거한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이 불명확함

## 3-2 정책 제언

○ 대기환경과 관련된 정량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평가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목표 수립 후 사업성과를 평가한 뒤, 사업추진체계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9.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5.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 추진.<br>·보조금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인정됨.<br>·현재의 성과지표와 그에 대한 달성도로 볼 때에는 본 보조사업의 실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 있음. 이는 현재의 사업내용이 전국 15개 센터별 쟁점을 수합한 성격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분석됨.<br>·향후, 사업 전체의 포커스를 확인하고 장기과제를 일정 비율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과지표 개선 관리 요망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10조 5항에 의거하여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동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각 내역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보조금 지급 조건이 타당하게 마련되어 있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7.>
1.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각지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지역 곳곳으로 다가가는 소통형 환경교육 내역이 각각 법령의 근거 보유하고 있고, 각 내역사업은 국정과제/주요 정책 방향과 연계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됨.(예: 국민이 마음 놓고 숨쉬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

- 3차 수혜자로 국민의 숨쉬기 편안한 공기에 이르기까지 본 사업이 천명하고 있는 외부효과 인정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및 기간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용과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의 경우 개선과 보완 여지 있음. 이는 지역 환경 현안문제 중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각 내역사업(연구개발, 기업지원, 환경교육)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국민이 마음 놓고 숨쉬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각지대 유해 화학물질 관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유역 녹조/수질 관리, 지역 환경 현안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 서비스).

- 특히, 미세먼지와 수질 녹조 관련 부분에서 사업 목표와 내용의 구체성 저조함.

○ 지역 내 환경 거버넌스 체계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지역 환경 현안을 발굴하고, 각 내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환경 현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당초 계획을 위해 노력 중인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설정된 성과지표와 그에 대한 달성 정도로 볼 때에는 이러한 목표가 실제 달성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지역 환경현안 문제해결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도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중 통합수요자 만족도(지역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각 내역사업별 직접 수혜자인 지역 주민과 지자체 만족도)의 주관적 성격과 포괄성 보완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 폐지 시 재정적, 사회적 손실 발생 가능성 존재하고, 사업의 유사중복 없고, 수요가 상존하여 사업 연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인정됨.

○ 환경부 정책인 환경 질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중심의 물 문제 해결,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등은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연구 및 기업지원과 부합함.

○ 다만,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환경 거버넌스인데, 이러한 성격에 비해 재정의 지역연합 거버넌스 성격은 미약하므로 재정 측면에서도 연합 환경 거버넌스로서 지역 환경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 18개 센터를 4,5개의 권역별로 통합하여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적받은 바 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조정' 및 '통합 시 대응 자금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조정과 대응 자금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가능성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자체로부터 대응 자금을 받고 있으며, 실제 전체 사업비의 지출은 실제 사업 비율은 운영/인건비 30%, 연구개발 37%, 기업지원16%, 환경교육 10%, 기타 7%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한 적정성 확보한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을 위한 비중을 높이려는 이 본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며,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내 환경 현안 연구 수요에 비해 국고보조금 감소로 연구과제 선정 비율 감소 추세('12년 65% → '18년 48%)가 나타났다고 하나, 일반적인 연구과제의 선정 사례에 비해 볼 때, 이는 낮은 비율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지자체와 주관기관에서 대응 자금을 적극 마련하여 실제 국고 보조율은 사업비 대비 38% 내외 수준으로 확인됨.

- 센터는 국고보조고금의 100% 이상 대응 자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환경청장"으로 한다)은 이를 조성하지 못한 센터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존재함.

###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보조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공모절차 준수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교부조건 충족 검토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센터 설립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을 공모하도록 하며, 환경청장은 주관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단을 구성하고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사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로 구성하고,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관계공무원(지방청·시·도 등)·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심사위원은 신청기관과 관계없는 자로 선정하며 평가는 예비심사(연구능력 평가)와 본심사(사업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사실 인정됨.

○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대응자금을 조정하였는지 자부담 능력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계획/수립단계, 사업집행/추진단계별로 집행 관리체계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됨.

- 연구협의회, 환경부, 행정협의회가 사업 분야별로 집행의 적정성 확보 위한 역할 하는 사실 인정됨.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행정착오에 의한 단순 시정조치(10건) 정도 발생한 사실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된 사실 인정됨.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환경부, 사업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은 행정협의회, 예산회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하는 사실 인정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행정협의회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지체 합동 지도·점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적용 등 다각적인 관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실 확인된 바 없음.

-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훈령('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을 등을 제정·운용하는 사실 인정됨.

○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교부 준수하는 사실 인정됨. 센터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계획과 함께 행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보조금을 신청하고, 참여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청장에게 통보하며, 환경청장이 사업비 지원 내역과 참여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결정 등을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분할 교부를 하고 있음.

○ 정산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실 확인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인정됨.

○ 다만, 사업내용이 전국 15개 센터별 쟁점을 수합한 실정이어서, 사업 전체의 포커스를 확인하고 장기과제를 일정 비율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3-2 정책 제언

○ 현재의 성과지표와 그에 대한 달성 정도로 볼 때에는 본 보조사업의 실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난점이 있으므로 성과지표 개선 관리 요망됨.

- 예컨대, 환경현안 문제해결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도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중 통합수요자 만족도(지역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각 내역사업별 직접 수혜자인 지역 주민과 지자체 만족도)의 주관적 성격과 포괄성 보완 필요함.

- 장기 과제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여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있으며, 민간협력 거버넌스 전문가 확충 필요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6.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9.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2.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본 보조 사업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2016년도 평가 지적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감축하여 사업수행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불용액 발생 원인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사업계획에서부터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어 사업방식변경을 최종 판정함<br>· 사업타당성과 관련하여 수혜자 범위와 외부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성과지표와 사업달성도를 통해서 효과성은 높아 사업수행이 적절함<br>· 사업달성도는 높으나 사업의 효과성 추이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br>· 사업의 시급성이나 연장필요성 등의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br>· 사업집행과정에서 설치기간 선정 기준 등 사업관리 적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예상 책정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자료, 사업주체 선정과 사업집행의 적절성과 관련된 지침이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시설 설치 지역선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기관 선정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과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제 4조, 농어업인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9조에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함.

- 단일사업으로써 농어촌의 폐기물 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 사업은 국정과제나 공약사업, 계획사업이지는 않지만 국가 전체의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음

○ 근거자료에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고, 외부효과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사업의 직접적, 잠재적 수혜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외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본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향후 사업성과를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목표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 2016년도 평가에서 감축 운영의 평가를 받아 예산을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은 사업내용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신규와 계속시설에 수치만 제시하고 있고 기준이나 내용이 충분히 하지 않아 명확성이 미흡함

○ 성과지표인 농어촌생활폐기물 매립율의 달성도가 100%이상인 점으로 효과적으로 사업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연도별 보조사업의 폐기물 설치에 대한 실적은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인지, 신규와 계속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폐기물 매립율의 변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해당시설의 매립율의 변화 정도 등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현재의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은 폐기물 처리비용만의 근거보다는 수혜자 및 외부효과, 사업효과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해야 함

- 민간투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국민 부담을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국가 보조 사업으로서의 필요성 부각될 수 있음

○ 첨부 자료에서 제시한 2018~2027년 자원순환기본계획 내에 폐기물 매립과 소각과 관련한 계획을 통해서 본 사업이 지속, 연장되어야 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손실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고 재정적 손실이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시설 확충이 되지 않을 때 농어촌에 주게 되는 재정적, 직접적 손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본 사업이 지자체 군 단위 83개 지역에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단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규모가 적절함

○ 현행 보조율이 법적 근거를 갖고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설정하고 있음

○ 내역사업별로 보조율 준수여부가 상이하나 현행 보조율은 국고 보조율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본 보조 사업은 사회적 가치 10번 영역인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해당됨. 10번 영역은 구체적으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행하는 의무적 활동으로 본 사업은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농어촌민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어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사전예산협의 절차를 통해서 본 사업이 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 단계 집행 점검 등 집행 관리를 위한 체계와 규정들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음. 내부규정과 지침으로 집행 절차도 구체적임

- 사업의 적정 추진과 예산 집행율 점검을 위한 분기별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서 사업실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실 집행률 부진 시에 익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확인 불가능함.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증빙 자료들이 제시되어야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와 규정이 있으며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사업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연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음

○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및 문제해결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설설치의 단일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과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사업의 목적이 부합됨

- 사업타당성은 법적 근거와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됨

- 사업의 직접적 수혜대상자가 모호하고, 외부효과나 사업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여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고가 필요함

○ 사업의 성과지표는 적절하나 사업 효과성과 연계하는 부분인 충분하지 못함. 즉, 시설설치 지역의 폐기물 매립률의 증감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관리의 규정이나 지침이 내역사업별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을 확인함

## 3-2 정책 제언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관련 성과지표의 개발 및 조정하여 농어촌 발전방향과 본 사업과의 연계 방향으로 사업방향이 전환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됨

○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의 원인과 개선 조치에 대한 부분, 예산 책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5.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8.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7.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4.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8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br>·동 사업은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br>·지자체 등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율이 낮고, 지속적인 이월예산이 발생하였음<br>·보조사업자의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br>·또한 현행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상 설치목표 달성 이후 장비 보수 및 교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마련 및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행 사업 소관부처 중심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주요 법적근거로 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법 제3조에서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하여야 할 측정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과 근거법령과 구체적인 연계성이 존재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대기정보를 파악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대기보전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교체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미세먼지 발생일수 및 농도 증가로 인해 대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동 사업의 목적은 타당성을 지님

- 특히 동 사업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58번)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편익이 광범위하게 전달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 측정·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에 따라 공익적 효과가 큼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대기질 현황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교체 지원이라는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세먼지 예보·경보제 운영의 기반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 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

- 이 같은 사업구성은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정확도 제고 및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사업의 성과목표를 '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률(%)'로 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효과적으로 집행되었으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63.5%, 2018년 71.3%('18.10 기준)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소관부처는 '15년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은 90% 이상이었으나,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대기측정소 신규 설치사업 등이 '16년 추경(10억원, '16.9), '17년 예산편성 심의시 국회증액(20억원, '16.12), '17년 추경(33억원, '17.8) 예산이 반영되면서 지방비 편성,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제시하였음

- 즉 설치지점별 단년도 사업인 동 사업과 관련된 실집행률 저조 원인은 추경 편성 및 국회증액으로 인한 지방비 미편성이 주된 사유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소관부처는 2019년 예산 편성내역을 '18년 9월, '18년 12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방비 확보, 신규 설치지점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집행률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또한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단계별 추진목표'를 추가하였음

○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소관부처는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등에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이라는 일련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자체 보조를 활용하는 현행 정책수단이 적합하다고 평가됨

○ 법령상 의무로 부여된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문제도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인구밀집지역, 미세먼지 다량 배출지역,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 등의 측정망 설치 추가 요구 등이 급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연장이 필요성이 존재함

- 다만, 동 사업이 현재 폐지되더라도 '신규' 대기측정망 설치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폐지가 직접적인 손실 발생과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동 사업의 규모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히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됨

- 이는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사업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사업소관부처는 차년도 예산편성내역의 사전통보, 관련 지침 상 보조금 집행 추진목표 등을 추가하는 등 보조사업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소관부처는 기존의 대안과 더불어 사업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또한 동 사업은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의 신규 설치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목표로 제시된 측정망 설치 이후 단계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 대기오염측정망은 단순히 구축만이 아니라 향후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수적임

- 즉 내구연한 증가에 따른 장비의 노후화, 이로 인한 장비의 보수·교체 등에 대해서 사업소관부처에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요구됨

○ 동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존보조율 국고 50%, 지방비 50%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심사·검토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됨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의 주요 기준은 인구 및 대기오염 배출량 증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내구연한,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함
- 다만, 지속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 기존 사업실적, 이월액 발생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없이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 심사 및 요구내역 적절성에 대해 본부 담당부서에서 심사·검토하는 현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역시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후정산을 관리함

- 동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교부결정 취소·보조금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9년 1월 대기오염측정 구축·단계별 추진목표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집행기준 및 절차에 추가함으로써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함

○ 다만, 지속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이 담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반환, 정산,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절차 및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이라는 사업 특성상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측정망 확대 지원대상, 지원단가를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대기정보를 파악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대기보전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교체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 측정·분석하여 국민의 건강 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에 따라 공익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됨

○ 다만,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율이 낮고 지속적인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안이 요구됨

-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63.5%, 2018년 71.3%('18.10 기준)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음

### 3-2 정책 제언

○ 첫째, 현행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의 설치목표 달성 이후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

- 대기오염측정망은 단순히 구축만이 아니라 향후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수적임에 따라 장비의 노후화 및 이로 인한 장비의 보수·교체 등에 대해 사업소관부처에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요구됨

○ 둘째,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현행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은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없이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 심사 및 요구내역 적절성에 대해 본부 담당부서에서 심사·검토를 실시
- 기존 선정기준에 더하여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여부, 기존 사업실적, 이월액 발생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2.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이 필요<br>○ 본 사업은 재활용 집하, 선별장 등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대체, 확충하여 재활용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함<br>○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내구연한 도래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br>○ 재정지원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에서는 지자체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선별·처리 시설 설치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1170호)」 에서는 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교부 및 집행'을 명시하고 있는 등 보조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성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지자체장이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본 사업은 재활용 집하·선별장 등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대체·확충하여 재활용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재활용쓰레기의 집하·선별시설 실치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 처리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어려움
- 또한 소각·매립시설, 재활용쓰레기 집하장 및 선별장 등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 등 입지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여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대체로 광범위함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는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체, 기술개발 업체 등으로 광범위함
- 보다 넓게 수혜자를 정의할 때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환경보존은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및 기간 등)이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이 필요한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예산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사업진행 준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편성하므로,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됨

○ 보조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지방비만으로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우므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위생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추진(국고보조율: 30~50%)

○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함

- 201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7,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 비율은 약 60%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은 없으나, 생활자원회수센터(선별장)의 계속지원을 통해 향후 재활용비율의 유지 또는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민간수행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보다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많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으로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비용이 막대하여 민간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시설 특성상 노후화가 빠르고 이에 따른 보수, 신설 등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지원 필요함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야기되는 재정적 손실 및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18.4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업체 수거거부 사태 발생) 수요 발생 등으로 현대화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이 불가피하며, 매년 약 10여개 정도의 지자체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을 위해 국비를 지원해야하므로 지속적으로 보조사업 운영이 필요함

- 기존의 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용량 부족으로 재활용가능 자원의 사장 및 재활용산업 위축, 환경오염 유발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1170호)」에 따라 인구수 및 사업체 종사자수, 인접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구역 및 시설규모를 산정하고 있음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내구연한 도래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으나, 예산 신규 수요가 증가됨을 고려하여 보조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보조금법 시행령 기준보조율을 따름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 업무처리지침'사업별 세부 보조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국고보조율이 차등 적용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1170호):「Ⅲ.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교부 및 집행」에서 사업의 기본설계 이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급성, 예산투자 효율성, 준비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예산지원 사전검토 요청을 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Ⅱ. 사전예산협의」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사업진행의 준비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국고보전 지원 여부를 판단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관리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교부금 교부 신청 → 환경부 보조금 교부 조건검토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이후 사업추진 사항, 보조금 재정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음
- 실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 등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고려함. 실집행 부진사업별 감액기준이 집행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정산(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명령 조치)
- 자료의 보완 및 정산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않는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변경 시 패널티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사후관리 규정 외 별도의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규정 없음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바는 없으며, 부정수급 발생 및 사업비 과대산정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재활용 집하, 선별장 등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대체, 확충하여 재활용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내구연한 도래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

### 3-2 정책 제언

○ 재정지원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 보조유형 |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5.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0.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7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O |
| 총 평 | ·정상추진을 판정함.<br>·동 사업에 대한 수요는 사업연장이 필요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국가적으로 타당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br>·다만, 2019년 수소연료전지차 신규 보급목표를 4,000대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산업의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할 수도 있다고 봄.<br>·수소 충전소 설치·운영 지원 예산도 현실성을 반영하여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 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보조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3항 2호는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국정과제 등을 통해 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국정과제(58번,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중 경유차 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에서 수소차 보급을 포함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관계부처합동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2018.06)>에서 수소차 보급사업에 국가차원의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함.
- 보조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수소차 구매 수요자 및 수소충전소를 지원받는 지자체이지만, 간접적으로 내연기관차 대체와 수소 생산에 있어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대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수혜자가 광범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은 수소차 구매자에게 자금 지원 및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명확하지만, 사업의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기대한 효과가 발생할 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2017년에 대비하여 10배 이상 증가했고(2017년 51대 -> 2018년 11월 575대), 2019년 4,000대의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사가 1년에 약 8배, 2년 사이 80배 증가된 물량을 공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또한 언론기사, 전문가 등은 국내 유일의 수소차 생산 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연 4,000대 생산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수소차는 5인승 SUV 현대 넥쏘 1종으로 차량의 크기와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임.

○ 2018년 8월 기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함. 통상 입지 선정에서 준공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19년 4,000대의 보급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행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지에 관한 의문이 있음. 특히 2018년 9월 기준, 부산·대전·강원·세종·충북 지역에는 수소충전소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

○ 또한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민원,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수소 충전소를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보조금은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사업연장이 필요할 만큼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최종적으로는 민간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를 육성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자생적으로 시장이 운영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 정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비해야 할 사항들, ① 급증하는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공급(공장증설에는 짧지 않은 시간 소요) ② 한발 앞서 구축되어야 할 고비용 인프라(수소충전소 설치) ③ '친환경차' 카테고리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에 제시된 목표인 '2022년까지 수소차 1.5만대,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므로 보조사업의 연장에 동의함. 다만 2018년 8월 기준 12개소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4년간 26배에 이르는 310개소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급 초기단계에서 충전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소충전소의 운영손실이 불가피한 기간을 대략 10~15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 절감, 가동률 제고와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동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은 없음.

○ 사업이 폐지될 경우 정부가 인공지능·빅데이터와 함께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지정한 수소경제를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게 될 것임.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 12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인 정액보조와 50%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보조율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2022년까지 수소차 누적 1.5만대, 수소충전소 인프라구축 310개소 보급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2018년 기준, 수소차의 경우 넥쏘 1대당 22,500천원의 정액보조가, 수소 충전소 1개소 당 3,000백만원의 50% 보조가 지급됨.
  *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산출내역: 22.5백만원(내연기관 가격차액 55백만원×50%) × 4,000대 = 90,000백만원
  * 수소 충전소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산출내역: (지자체)20개소×3,000백만원×50%, (민간)10개소×3,000백만원×50%

○ 수소자동차의 공급 및 충전 인프라의 급속한 증가에 있어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

○ 동 사업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가치를 깨끗한 대기를 공급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짐. 본 사업 지원에 따른 직접적 효과로 먼 미래에 대기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리라 보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40년까지 4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상기 두 가치는 기대 가치일 뿐 현실화된 것은 없음. 특히 우리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생산에 기존의 화석연료 등을 활용할 경우 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대상으로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의 적정성, 지차제의 사업추진 의지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선정·교부 절차를 준수하여 지자체에 적절한 재원을 집행하고 있음.

- 당해 보조사업 확정 이전에 지자체의 보급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별 형편에 따라 매칭 지방비 단가 기준을 산정하고 있어 지차제의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

○ 2018년부터 수소충전소 물량 중 일부를 민간보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7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함.

- 환경자동차환경협회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되어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민간보조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4조(입찰공고)에 준하여 공모 절차를 규정하며 동 기준 제 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준하여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조달청의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절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을 수립하는 등 사업에 대한 명문화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구비되어 있고, 이러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위의 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 신청서 검토부터 결정까지를 관리하며, 교부 후 매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 연말 완료보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함.

- 집행관리에 있어 국고보조사업 집행독려 공문을 발송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관리를 도모하고 수시로 예산집행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함.

-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을 명문화하여 구비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운행 상황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비 집행실적이 확인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 출력물을 원본대조확인하고, 차량등록증 등 차량구매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사후관리를 실시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적사항도 없었음.

-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자동차등록증 등 명확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므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교부목적에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분기별 보조금 수행상황 보고, 회계종료 후 정산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에 대한 수요는 사업연장이 필요할 만큼 충분히 존재하며, 국가적으로 타당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9년 수소연료전지차 신규 보급목표를 4,000대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산업의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할 수도 있다고 봄.

-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은 수소충전소 설치와 상호견인하며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8년 8월 기준, 전국의 수소 충전소는 12곳이며, 평균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함. 따라서 신규보급 4,000대의 원활한 운영의 뒷받침할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국내 유일 수소차 생산 업체인 현대자동차의 현실적 생산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최대 생산 잠재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 할 수도 있음.
- 수소 충전소 설치·운영 지원 예산도 현실성을 반영하여야 함.
- 지자체에 지원되는 20개소의 경우 민간에 비해 부지 확보와 경제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 달성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음.
- 민간 사업자에 지원되는 10개소의 경우 부지 확보와 관련된 민원 발생 가능성, 운영상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 사업자를 모두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

## 3-2 정책 제언

○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수소가격 변동, 수소차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율, 수소 생산에 소요되는 청정 에너지의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0.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3.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동 사업은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수질개선 효과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br>·예산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90%를 하회하고 있으므로 예산책정 및 집행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br>·지속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 및 수질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실효성있는 후속조치 필요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 제1항에 지원 근거(임의규정)가 규정되어 있음

- 동 사업은 4대강수계외 기타 수계(진위천수계, 삽교호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할수 있는 임의적 총량제로서 자발적인 지자체의 수질개선 촉구를 위해 국고 지원토록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오렴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오염물질 삭감·배출시설의 모니터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으로 지원이 타당함

-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유량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자발적인 관리를 촉구하고 있음

< 오염총량제 시행전·후 배출부하량 및 수질개선 성과 >

(단위 : mg/L)

| 대상물질 | 구분 | | 시행전 ('04년, A) | 1단계 ('10년, B) | 2단계 ('15년, C) | 개선율(%) | | |
|---|---|---|---|---|---|---|---|---|
| | | | | | | 1단계 (A-B)/A | 2단계 (B-C)/B | 총개선율 (A-C)/A |
| BOD | 배출부하량(kg/일) | | 353,348 | **209,235** | **155,158** | 40.8 | **25.8** | 56.1 |
| | 목표수질 달성률(%) | | - | 83.7 | 82.6 | | -1.1 | |
| | 하류 수질 | 낙동강(낙본K) | 2.7 | 2.4 | 2.2 | 11.1 | 8.3 | 18.5 |
| | | 금강(금본K) | 4.5 | 3.1 | 2.4 | 31.1 | 22.6 | 46.7 |
| | | 영산강(영본C) | 7.8 | 4.5 | 4.4 | 42.3 | 2.2 | 43.6 |
| T-P | 배출부하량(kg/일) | | - | **16,414** | **8,952** | - | **45.5** | - |
| | 목표수질 달성률(%) | | - | - | 91.4 | - | - | - |
| | 하류 수질 | 낙동강(낙본K) | 0.116 | 0.108 | 0.043 | 6.9 | 60.2 | 62.9 |
| | | 금강(금본K) | 0.185 | 0.161 | 0.052 | 13.0 | 67.7 | 71.9 |
| | | 영산강(영본C) | 0.560 | 0.247 | 0.118 | 55.9 | 52.2 | 78.9 |

※ 총량제 시행 전 BOD 배출부하량은 1단계 산정방법 적용, T-P는 미시행(미기재)

※ 1단계 BOD 배출부하량(1단계 산정방법 적용시 213,322kg/일)은 2단계 배출량 산정기준으로 산정

※ 1단계 T-P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2단계 배출부하량 설정시 예측치로 산정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진위천 수계 및 삽교호 수계의 총량관리에 따른 수질개선으로 해당 수계 뿐만아니라 주변, 하류의 수질개선으로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음

- 4대강수계외 기타수계(진위천수계 8개, 삽교호수계 3개 지자체 대상)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유역별, 지자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관리

-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부하량 이내 관리 확인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비용으로서 사업목적 달성하기에 효과적임

[ 수질오염총량제 우수관리 성공사례(2단계 2011~2015) ]

**<광주광역시>**

○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을 법적기준(5.0~10.0mg/L)보다 강화된 3.0~4.5mg/L의 공격적 총량관리계획 수립

- 목표수질(3.0~4.5mg/L)보다 개선된 수질(2.0~2.9mg/L) 결과 도출
- 오염물질 배출량을 시행계획(1,753kg/일)보다 약 37.2% 감축(2,405kg/일)

**<경북 구미시>**

○ 낙동강수계의 가장 큰 규모인 구미하수처리장 T-P 방류기준을 법적기준(0.3mg/L)보다 강화된 0.28mg/L로 관리하여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에 큰 기여

○ 구미시 하이테크벨리 조성사업 사업내용 변경 협의 시 초기계획보다 비점저감시설 설치의 확대 유도(제조여과형시설 추가, 녹지면적증가, 초기우수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지 설치 등)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여 난개발 방지

※ (최초협의) 저류지 4개소 → (변경) 저류지 13개소, 여과형 장치 27개소

**<전남 나주시>**

○ 호혜원(한센촌) 대규모 축산단지 이주를 통한 오염물질 감축효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개발사업 원활히 추진

- 총사업비 327억을 투자하여 지장물(가축 처분, 축사 등) 보상 후 적치된 가축분뇨 처리(협의체결 후 사육 전면 금지)
- 또한 현애원 축산단지 하류에 축산습지 조성(시비 50%)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및 수질개선 유도

**<경북 경산시>**

○ 개별 오·폐수처리시설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노후한 시설의 방류수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하여 추가 처리 후 방류

< 노후시설의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후 방류수 수질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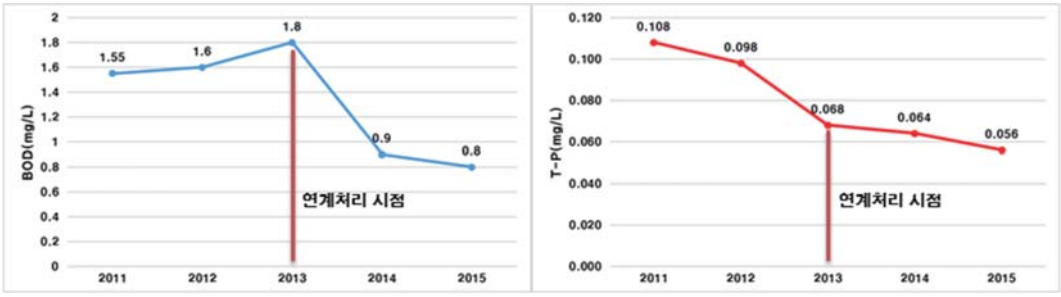


○ 악취, 녹조 등으로 오염된 남천에 하상여과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한 하천 유지수를 확보하고 자연형 하천정비로 수질개선

※ 남천 하류에 하상여과시설, 송수펌프장을 설치하여 하상여과수(7만$m^3$/일)와 하수처리수(3만$m^3$/일)를 상류로 압송

< 남천 정비 전 >

< 남천 정비 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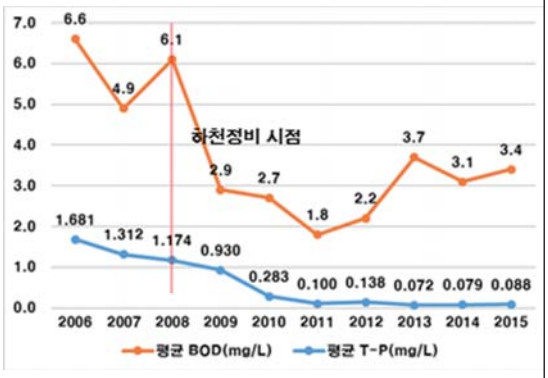


< 하천정비사업 후 하천수질 변화 >

**<전북 고창군>**

○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오염총량제와 연계하여 축산오염 우심지역 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일정한 구역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 가능

○ 2018년 진위천수계 할당부하량 초과 지자체가 2개소(안성시, 화성시)로 나타남

- 지속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는 수질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실효성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준수율: 87.5%

※ 할당부하량 초과 현황

| 지자체 | 17년 할당량(kg/일) | | 17년 배출량(kg/일) | | 17년기준 준수여부 | |
|---|---|---|---|---|---|---|
| | 점 | 비점 | 점 | 비점 | 점 | 비점 |
| 안성시 | 108.51 | 694.72 | 109.85 | 496.96 | 초과 | 준수 |
| 화성시 | 6,812.78 | 6,952.90 | 4,491.28 | 7,088.22 | 준수 | 초과 |

(후속조치)

<안성시>

○ (초과원인)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향후 전망 대비 물사용량 및 인구증가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배출허용량을 초과

○ (조치내역)「물환경보전법」제4조의6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 요청('18.12.28)

- (주요내용) 미산1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적기 추진, 관거 정비, 하수처리율 제고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저감대책 수립 등

<화성시>

○ (초과원인) 축산자원화시설 준공지연, 축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배출허용량을 초과

○ (조치내역)「물환경보전법」제4조의6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 요청('18.12.28)

- (주요내용)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저감대책 수립, 축산자원화시설 적기 추진 등

○ (후속조치 실효성)

- 조치계획 수립 요청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조치계획을 이행 중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검토

* (물환경보전법제4조의8제3항) 오염총량관리시행 지자체가 위 조치요구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여 근원적으로 하천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위유역 목표수질과 허용총량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단계별 평가를 추진하며, 초과시 개발행위 제한 등 제재를 부과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유량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자발적인 관리를 촉구하고 있음

- 진위천 수계 및 삽교호 수계의 총량관리에 따른 수질개선으로 해당 수계 뿐만아니라 주변, 하류의 수질개선으로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음

< 진위천수계 수질개선효과>

(단위 : mg/L)

| 단위 유역 | 대상 물질 | 목표 수질 | 연도별 수질 | | | | | |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 진위A | BOD | 6.6 | 6.6 | 7.5 | 8.2 | 7.0 | 5.7 | 5.7 |

○ 임의적 수질오염총량제도(2011-2030년)의 정착을 위해 일정부분 국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수질오염총량관리(임의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일정 비용의 국가 지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하며,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부하량 이내 관리 확인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하천 모니터링은 광역 시·도에 지원하고, 보고서 작성비용은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음

○ 기준보조율을 진위천 수계 및 삽교호수계 10개 지자체는 70%, 평택시는 80%로 적용하고 있음

○ 예산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9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적절한 예산 책정 및 집행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됨

- 2015년 85.3%, 2016년 84.7%, 2017년 85.2%, 2018년 81.0%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무 이행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경상 보조사업으로 진위천수계와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는 11개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서 적절하며, 임의제로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가 있음

-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결과물에 대해 국가연구기관(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검토로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관리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 관리체계를 준수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방식 변경

- 동 사업은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수질개선 효과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타당함

- 예산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90%를 하회*하므로 향후 적절한 예산책정 및 집행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부처의견)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만큼 집행잔액이 불용되어 국가에서 환수조치하고 있음. 향후 실집행률이 90% 이상 관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3-2 정책 제언

○ 지속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 및 수질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실효성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수질보전활동지원(금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4.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4.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br>·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직되고 관성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br>·도랑살리기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수질보전활동지원(금강) 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임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내역사업은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이며, 각각 추진지침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함이 타당함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민간이나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큼
-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도랑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지만, 궁극적인 혜택은 수질 개선과 유역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이 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추진되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 두 가지로,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수질오염감시 및 수질보전 활동을 선정하여 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랑살리기 사업은 마을주민, 민간단체, 지자체 구성된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의 도랑 밀 실개천 생태복원 활동을 선정하여 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민간 주도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현행대로 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 이외에도 단체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개인과 소그룹이 자유롭게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민간의 여러 가지 자율적인 자부담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조직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특정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정형화된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경직적이고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제약으로 작용함

○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중이나, 수질보전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활동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지정분야를 공지하고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이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업의 성과는 지원사업 건수와 개별 사업의 평균 평가점수, 도랑살리기 사업의 주민만족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1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한 성과가 사업목표인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함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 수행 전후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 정도의 변화를 정량평가하여 수행해야 하며, 수업추진 계획과 목표 또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을 정량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수립 및 관리되어야 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수질활동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연장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공헌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민간단체의 개별 사업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른 형태의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됨
-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보조사업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존재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행 개별 선정 사업의 보조금액 대비 추진내용과 성과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은 소규모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가의 행정비용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사업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행정비용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 실효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개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과 「도랑·실개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및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대비 수질개선 및 유역공동체 구현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함
- 보조사업 추진상의 보조율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등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단체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재정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체부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임

- 보조사업 추진 시 수질개선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역공동체 구현에 공헌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발견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각 내역사업별로 지침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과 「도랑·실개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및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공모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로 지침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과 「도랑·실개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및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도랑살리기 사업은 연 2회 현장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급 유예, 일부 반환, 사업 취소 등의 불이익을 적용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로 관계법령, 지침, 계획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수행함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협약 체결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을 요구하여 추후 정산액 미반납시 손해를 청하고, 지원금의 3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함
- 도랑살리기 사업의 경우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현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사후 정산하고 있는데, 집행정산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사업비의 부정한 지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집행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지, 각 건별 집행이 지침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수질보전활동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있으나, 현행 사업내용과 추진체계하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추진의 수립 및 관리가 불명확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 목표설정과 평가가 이루어지 않음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민간이나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의 궁극적인 혜택은 수질 개선과 유역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은 민간단체 지원과 도랑살리기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경직되게 추진될 경우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중이나, 수질보전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사업의 성과는 지원사업 건수와 개별 사업의 평균 평가점수, 도랑살리기 사업의 주민만족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1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한 성과가 사업목표인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함

## 3-2 정책 제언

○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분야별로 균형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를 정비 및 관리하고, 사업목표와 성과를 수질개선 및 유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정량지표로 설정하고 측정하여 평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경직되고 관성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단체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개인과 소그룹이 자유롭게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민간의 다양한 자율적인 자부담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조직 운영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활동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지정분야를 공지하고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 수행 전후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 정도의 변화를 정량평가하여 수행해야 하며, 수업추진 계획과 목표 또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을 정량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수립 및 관리되어야 함

- 현행 개별 선정 사업의 보조금액 대비 추진내용과 성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수질보전활동지원(낙동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4.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4.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br>·경제,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함<br>·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직되고 관성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br>·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수질보전활동지원(낙동강)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임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내역사업은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과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이며, 각각 추진지침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함이 타당함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민간이나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큼

-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지만, 궁극적인 혜택은 수질 개선과 유역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이 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추진되어 사업목적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과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 두 가지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수질오염감시 및 수질보전 활동을 선정하여 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은 마을주민, 민간단체, 지자체 구성된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추진협의회의 도랑 밀 실개천 생태복원 활동을 선정하여 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민간 주도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현행대로 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 이외에도 단체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개인과 소그룹이 자유롭게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민간의 여러 가지 자율적인 자부담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조직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특정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정형화된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경직적이고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제약으로 작용함

○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과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중이나, 수질보전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의 경우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활동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지정분야를 공지하고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이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업의 성과는 지원사업 건수와 개별 사업의 평균 평가점수,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의 주민만족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1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한 성과가 사업목표인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함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 수행 전후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 정도의 변화를 정량평가하여 수행해야 하며, 수업추진 계획과 목표 또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을 정량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수립 및 관리되어야 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수질활동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연장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공헌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민간단체의 개별 사업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른 형태의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됨

-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과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은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보조사업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존재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행 개별 선정 사업의 보조금액 대비 추진내용과 성과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은 소규모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가의 행정비용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사업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행정비용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 실효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개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과 「도랑·실개천 복원활동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대비 수질개선 및 유역공동체 구현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함

- 보조사업 추진상의 보조율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등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단체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재정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체부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임

- 보조사업 추진 시 수질개선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역공동체 구현에 공헌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발견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각 내역사업별로 지침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과 「도랑·실개천 복원활동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공모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로 지침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과 「도랑·실개천 복원활동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은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은 연 2회 현장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급 유예, 일부 반환, 사업 취소 등의 불이익을 적용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로 관계법령, 지침, 계획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수행함

-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의 경우 협약 체결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을 요구하여 추후 정산액 미반납시 손해를 청하고, 지원금의 3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함
-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현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사후 정산하고 있는데, 집행정산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사업비의 부정한 지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집행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지, 각 건별 집행이 지침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수질보전활동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있으나, 현행 사업내용과 추진체계하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추진의 수립 및 관리가 불명확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 목표설정과 평가가 이루어지 않음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민간이나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의 궁극적인 혜택은 수질 개선과 유역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은 민간단체 지원과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경직되게 추진될 경우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과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중이나, 수질보전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사업의 성과는 지원사업 건수와 개별 사업의 평균 평가점수,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의 주민만족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1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한 성과가 사업목표인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함

## 3-2 정책 제언

○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분야별로 균형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를 정비 및 관리하고, 사업목표와 성과를 수질개선 및 유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정량지표로 설정하고 측정하여 평가해 나가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정 형태의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경직되고 관성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단체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개인과 소그룹이 자유롭게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민간의 다양한 자율적인 자부담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조직 운영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

-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의 경우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활동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지정분야를 공지하고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 수행 전후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 정도의 변화를 정량평가하여 수행해야 하며, 수업추진 계획과 목표 또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을 정량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수립 및 관리되어야 함
- 현행 개별 선정 사업의 보조금액 대비 추진내용과 성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수질보전활동지원(영산강섬진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4.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4.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방식의 효과적인 변경이 필요함<br>·수질보전활동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있으나, 현행 사업내용과 추진체계하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추진의 수립 및 관리가 불명확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 목표설정과 평가가 이루어지 않음<br>·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분야별로 균형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를 정비 및 관리하고, 사업목표와 성과를 수질개선 및 유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정량지표로 설정하고 측정하여 평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수질보전활동지원(영산강섬진강) 사업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함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내역사업은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과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며, 각각 추진지침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법적근거가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함이 타당함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민간이나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큼
-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도랑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지만, 궁극적인 혜택은 수질 개선과 유역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이 민간단체에서 1년 이내의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고, 개인과 소그룹 단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은 배제되어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 두 가지로,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수질오염감시 및 수질보전 활동을 선정하여 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랑살리기 사업은 마을주민, 민간단체, 지자체 구성된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의 도랑 밀 실개천 생태복원 활동을 선정하여 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민간 주도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특정 단체의 추진사업을 선정 후 지원하는 방식 이외에도 단체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개인과 소그룹이 자유롭게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민간의 다양한 자율적인 자부담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조직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연 단위 사업비 지원 형식으로만 보조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중이나, 수질보전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활동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지정분야를 공지하고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이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업의 성과는 개별 사업의 평균 평가점수와 도랑살리기 사업의 주민만족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1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한 성과가 사업목표인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며,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업 성과는 불명확함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 수행 전후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 정도의 변화를 정량평가하여 수행해야 하며, 수업추진 계획과 목표 또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을 정량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수립 및 관리되어야 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수질활동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연장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공헌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민간단체의 개별 사업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른 형태의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됨

-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보조사업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존재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행 개별 선정 사업의 보조금액 대비 추진내용과 성과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은 소규모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가의 행정비용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사업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행정비용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 실효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개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과 「도랑·실개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및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건평 평균 2천만원 수준의 보조사업 규모 대비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효과적으로 공헌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함

- 보조사업 추진상의 보조율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등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단체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재정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체부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임

- 보조사업 추진 시 수질개선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역공동체 구현에 공헌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발견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각 내역사업별로 지침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도랑·실개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공모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로 지침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도랑·실개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도랑살리기 사업은 연 2회 현장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급 유예, 일부 반환, 사업 취소 등의 패널티를 적용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로 관계법령, 지침, 계획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수행함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협약 체결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을 요구하여 추후 정산액 미반납시 손해를 청하고, 지원금의 3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함
- 도랑살리기 사업의 경우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현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사후 정산하고 있는데, 집행정산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사업비의 부정한 지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집행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지, 각 건별 집행이 지침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관리함이 바람직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수질보전활동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있으나, 현행 사업내용과 추진체계하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추진의 수립 및 관리가 불명확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 목표설정과 평가가 이루어지 않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민간이나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의 궁극적인 혜택은 수질 개선과 유역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은 민간단체 지원과 도랑살리기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간단체에서 1년 이내의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편중되어 개인과 소그룹 단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이 배제됨

-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중이나, 수질보전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사업의 성과는 개별 사업의 평균 평가점수, 도랑살리기 사업의 주민만족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1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한 성과가 사업목표인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며,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는 불명확함

## 3-2 정책 제언

○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분야별로 균형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를 정비 및 관리하고, 사업목표와 성과를 수질개선 및 유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정량지표로 설정하고 측정하여 평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일부 민간단체에서 1년 이내의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편중에서 벗어나 단체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개인과 소그룹

이 자유롭게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민간의 다양한 자율적인 자부담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조직 운영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활동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지정분야를 공지하고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성과평가는 사업 수행 전후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 정도의 변화를 정량평가하여 수행해야 하며, 수업추진 계획과 목표 또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을 정량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수립 및 관리되어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수질보전활동지원(한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4.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4.8**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0.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4.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30.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변경<br>·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방식의 효과적인 변경이 필요함<br>·수질보전활동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있으나, 현행 사업내용과 추진체계하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추진의 수립 및 관리가 불명확하며, 사업비 전액이 국고보조로 지급되고 민간단체의 자부담이 전혀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함<br>·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분야별로 균형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를 정비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수질보전활동지원(한강) 사업은 「한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함

-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내역사업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과 샛강도랑살리기 사업은 동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함이 타당함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민간이나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큼
-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도랑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지만, 궁극적인 혜택은 수질 개선과 유역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내역사업이 민간단체에서 1년 이내의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고, 개인과 소그룹 단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은 배제되어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수질오염감시 및 수질보전 활동을 선정하여 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샛강도랑살리기 사업은 마을주민, 민간단체, 지자체 구성된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의 도랑 밀 실개천 생태복원 활동을 선정하여 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민간 주도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특정 단체의 추진사업을 선정 후 지원하는 방식 이외에도 단체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개인과 소그룹이 자유롭게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민간의 다양한 자율적인 자부담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조직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연 단위 사업비 지원 형식으로만 보조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중이나, 수질보전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활동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지정분야를 공지하고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른 수계에 대한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에 비해 수질보전활동이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평가결과 지적사항 이행률,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결과 활용도, 준공하천 수질개선 하천비율, 비점오염물질 삭감량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성과계획서  상의 목표치를 달성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수질활동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연장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공헌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민간단체의 개별 사업이 국

가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른 형태의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됨

-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보조사업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존재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현행 개별 선정 사업의 보조금액 대비 추진내용과 성과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은 소규모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가의 행정비용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사업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행정비용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 실효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개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과 「도랑·실개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및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보조사업 규모 대비로 수질개선과 유역공동체 구현에 효과적으로 공헌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임

- 보조사업 추진 시 수질개선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역공동체 구현에 공헌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발견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은 각 내역사업별로 지침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도랑·실개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공모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로 지침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도랑·실개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도랑살리기 사업은 연 2회 현장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급 유예, 일부 반환, 사업 취소 등의 패널티를 적용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별로 관계법령, 지침, 계획 등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수행함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협약 체결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을 요구하여 추후 정산액 미반납시 손해를 청하고, 지원금의 3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함
- 도랑살리기 사업의 경우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현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사후 정산하고 있는데, 집행정산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사업비의 부정한 지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집행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지, 각 건별 집행이 지침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관리함이 바람직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은 민간이나 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의 궁극적인 혜택은 수질 개선과 유역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있음

○ 현행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하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 민간단체 지원과 도랑살리기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1년 이내의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편중되어 개인과 소그룹 단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이 배제됨

## 3-2 정책 제언

○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분야별로 균형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를 정비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일부 민간단체에서 1년 이내의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편중에서 벗어나 단체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 지원,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 특정 단체 주도가 아닌 개인과 소그룹이 자유롭게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민간의 다양한 자율적인 자부담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조직 운영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내용과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활동 분야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지정분야를 공지하고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의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정상추진함.<br>·환경안전을 위해 중요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함.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로서 국고보조율 50% 기준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수행됨. 석면의 위해성을 고려할 때, 환경부의 종합대책에 기초하여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함. 환경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사업 수행이 요망됨.<br>·2016년에 산정한 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가구당 지원금액이 결정됨. 종합계획에서 확인된 전체 사업 가운데 잔여 사업수요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다를 수 있음. 사업대상의 재정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사업비 단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br>·지자체 유형별로 남아 있는 사업수요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 혹은 사업수행 관련 정책환경 변화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균형적인 관점에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와 제25조에 근거한 국가의 기본 책무에 해당하는 사업임. 석면 조사와 대책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②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0년대에 정부 주도로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보급되었음. 당시 건축자재로 사용했던 슬레이트가 노후화 되면서 석면 비산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음. 정부 정책에서 시작되었던 만큼 석면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중요함.

○ 노후 슬레이트지붕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택에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취약계층에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사업목적이 인정됨.

○ 환경부에서는 1그룹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종합대책('10.12)」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생활환경안전과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노후 슬레이트 지붕 자체를 철거하기 때문에 위해석면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보장됨.

○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종합대책」의 목표인 '2021년까지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19만동 철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2018년까지 16만여동 철거), 사업초기에는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했지만 2014년부터 매년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 표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량 추이

(단위 : 억원, 동)

| 구 분 | 계 | 2011 (시범사업)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국 고 | 1,963 | 28 | 60 | 192 | 288 | 369 | 344 | 341 | 341 |
| 사업물량 | 135,548 | 2,500 | 10,000 | 20,000 | 20,000 | 22,000 | 20,450 | 20,300 | 20,298 |
| 철거실적 | 160,149 | 2,372 | 8,290 | 17,942 | 22,320 | 27,746 | 27,125 | 27,807 | 26,547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노후슬레이트 철거는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사업임.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환경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사업대상은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재정사업으로 수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불균등한 사업수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형평성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 환경분야의 보편적 서비스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지원에서 지역여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균형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사업 수행을 진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전체 약 141만동, 주택 약 73만동)과 환경위해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철거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자발적 처리가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자체수행이 어려움. 특히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주거환경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무단방치와 불법폐기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러한 정책환경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율은 50%이며 가구당 정액으로 지원함. 일상생활에서 환경관리는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보조율은 적정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대상 가구당 정액보조를 지원하는데,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에 가구당 168만원,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개량비 151만원으로 산정함.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2016년도에 계산한 원가에 기초하여 연도별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환경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의 목적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 가산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의 시행주체는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이며 지방비 50%를 매칭하면서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강한 편임.

○ 지자체가 실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차질없는 사업운영을 위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대상 모집절차 및 대상선정 결과 등의 관리 감독을 병행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 초기에는 불용액이 상당하였지만 최근에는 집행률이 높음. 2017년 결산기준으로 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당초 예산대비 집행잔액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에서 특별한 쟁점이 제기되지는 않음.

○ 환경부에서는 전년도 집행률 저조 지자체에 대해 예산 수립시 10% 감액 조치하는 등 집행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음.

※ '19년 예산 편성시 서울시(전년도 집행률 59%) 10% 감액 조치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함. 전국 주택슬레이트 건축물 동수 및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사업규모를 배정하고 매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매년 슬레이트 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 실집행률 관리 등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관리함. 최근까지 부정수급 관련된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음.

○ 시도별로 슬레이트 지원사업 처리단가를 조사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과잉 혹은 과소지원에 따른 예산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환경부에서 관계부처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초기에 예산불용액이 많은 등 집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음.

○ 석면의 위해성을 비롯한 환경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취약계층이 주거하는 지역에서 사업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관리에서 특별한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음.

## 3-2 정책 제언

○ 환경안전을 위해 중요한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함.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로서 국고보조율 50% 기준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환경부의 종합대책에 기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함. 다만, 철거대상 잔여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 2016년에 산정한 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가구당 지원금액이 결정됨. 종합계획에서 확인된 전체 사업 가운데 잔여 사업수요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다를 수 있음. 사업대상의 재정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사업비 단가를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유형별로 남아 있는 사업수요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 혹은 사업수행 관련 정책환경 변화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균형적인 관점에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
|---|---|
| 사 업 명 |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 |
| 보조유형 | 민간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5.2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8.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5.4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5.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5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본 보조 사업은 전체 사업 및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내역사업명과 사업내용의 불일치에 대한 사업조정이 필요하여 사업방식변경으로 최종 판정함<br>· 전체사업명과 내역사업명, 사업내용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사업이 명확히 수행되었는지에 혼란감을 야기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내역사업 명확성을 확보하는 조정이 필요함<br>· 사업내용이 재활용 노후시설 개선과 공동집하장 운영의 효율화가 주가 되고 있음으로 사업내용에 적절한 사업실적이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함<br>· 내역사업의 선정, 재정규모의 적절성 등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 집행에 대한 근거 자료 확인할 수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영농 폐기물 재활용 촉진사업과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제 4조와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에 명시되어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국정과제나 계획사업이지는 않지만 농어촌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농어촌 환경문제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평가되나 내역사업의 내용과 사업명과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내역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재활용시설 설치의 수혜자와 고용창출과의 연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재활용시설 설치와 공동집하장 확충을 통해서 지역 내 농어촌 폐기물 처리완 관련한 직접, 간접적 수혜자가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내역사업이 재활용 노후시설 교체이고 공동집하장으로의 폐비닐 공동수거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수혜대상자와 외부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영농 폐기물 재활용 촉진사업 중 내역사업별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과 기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보조사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재활용시설 설치와 공동집하장 확충에 대한 사업내용 및 기간별 사업성과를 토대로 하여 목표설정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별 2015-2017년까지의 연도별 사업목표달성에 대한 성과지표와 목표달성률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역사업별 제시한 성과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재활용시설 설치에 따른 제품 생산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공동집하장의 폐기물 수거실적을 통해서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 폐기물 재활용촉진 사업은 보조사업의 필요성이나 국가 보조가 필요한 사업임. 폐기물 처리시설과는 구분되어 유사 중복성이 낮음

○ 농어촌 폐기물 재활용촉진 사업은 사업자체의 시급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사업폐지 시에 폐기물 처리의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지속성은 필요하다고 평가됨

- 폐비닐 수거지원금 사업은 지방비의 매칭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급성이나 사업 연장성에 대한 사업방향과 사업성과를 고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함
- 내역사업별로 사업폐지 시에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이나 문제점을 모호하게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제시하여 사업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선을 제안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내역사업 3개 영역 모두에서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지료를 통해 확인함

- 재활용시설 설치 및 공동집하장 확충은 노후시설 및 기기의 교체시기를 토대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점은 적절함
- 농어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대한 예산책정은 폐비닐 발생 비율이나 수거비율 등의 증빙지료를 확인함

○ 내역사업별로 보조율 준수여부가 상이하나 현행 보조율은 국고 보조율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됨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본 보조 사업은 사회적 가치 10번 영역인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해당됨. 10번 영역은 구체적으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행하는 의무적 활동으로 본 사업은 노후 된 재활용시설을 개선하고, 폐비닐 수거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영농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사업자선정 적절성에 대한 내용 적절함

- 재활용시설 설치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
- 공동집하장의 확충 내역사업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의 실무지침', 환경부 국고금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과정을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음.
-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내역사업은 지자체와 환경부가 수거비를 지원주체이나 사업수행의지나 사업추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되어 있음
- 설명 자료나 기초보고서에 제출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영농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사업집행에 대한 규정은 사업자 선정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검토,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2개 내역사업(공동집하장 확충, 재활용 시설 설치)로 사업집행의 관리, 감독이나 점검에 대한 절차와 규정은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점검 결과나 그에 따른 개선조치의 실시 여부를 확인함
- 폐비닐 수거지원금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각 내역사업의 보조금 반환이나 중요재산 관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은 마련되어 있음

-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불용액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나 내용이 증빙자료로 확인되어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규정 준수가 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영농 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부재하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사업은 사업 전반에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사업 타당성이 있음

- 전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고 내역사업별로 명확한 사업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내역사업별 사업성과 지표가 사업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폐비닐 수거지원금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는 제시되지 않아 성과지표에 선정이 요구됨

○ 전체 사업명과 사업내용간의 불일치성으로 인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혼란감을 야기하고 있음으로 각 내역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역사업과 전체 사업의 목적이 일치하도록 해당 부처가 종합적 검토가 요구됨

- 사업의 수혜 대상자 명시가 모호하고,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음으로 이를 반영하여 수혜자 확장성과 외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재고해야 함

○ 사업관리의 규정이나 지침이 내역사업별로 제시되어 지침 마련과 근거자료 구비가 잘 되어 있음

### 3-2 정책 제언

○ 전체 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이 일치하도록 내역사업명 변경 등 내역사업 명확성을 확보하는 개선이 필요함

○ 전체사업과 내역사업 간의 연계성과 사업타당성을 제고하는 검토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역사업이 전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함

○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의 원인과 개선 조치에 대한 부분, 내역사업별 예산 책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5.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8.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O |
| 총 평 | ·정상추진을 판정함.<br>·충전기 설치사업의 경우 전국에 걸쳐 공공 충전시설 인프라 보급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고, 정부가 급속 충전기 보급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1회 충전에 4~6시간이나 소요되는 완속 충전기 보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소의 급속한 확대는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정부의 의견을 인정함.<br>·주요국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비율이 15~1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7%에 달하는 바, 향후 일몰까지 보조 비율에 대한 연도별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br>·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사업과 함께 동 사업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보조사업 아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충전서비스육성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제 3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 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사업을 수행할 근거는 되지만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음.

- 동 사업과 법령 내용간의 연계성은 높은 편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의 목적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국정과제 58-3번)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도시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억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자금 지원을 받는 전기차량 구매자, 자동차 제작사, 자동차 판매 기업 또는 충전기 설치자로 명확하며 간접적 수혜자는 대기질 개선을 향유할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충전기 설치 등 내용이 명확하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이라는 목표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계획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음.

-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핵심적인 충전 인프라 설치를 보조하는 등 사업의 내용이 명확함.

-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원물량 역시 증가하여 연내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2016년 5,519대, 2017년 5,197대의 다음 연도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예산의 집행실적도 부진하여 2015년 65.4%, 2016년 40.2%, 2017년 8월까지 3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의 정량적 계획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중단 또는 축소와 동시에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 개발·생산에 매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국내 전기자동차의 초기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보조금 지급이 잠재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것임.

○ 한편 보조금 효과로 인하여 전기차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보조금 외에 규제 등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중국, 일본, 영국, 독일의 경우,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세제감면을 합쳐 구매보조 비율이 세제 적용 전 차량가격의 15~1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47%에 달해 구매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그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일몰됨에 따라 대표적 업체인 TESLA가 대규모 가격인하 및 비용 감축 방안을 발표하였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기자동차 대당 1,400만원 지급이라는 단순한 구조의 정액보조에서 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지원 기준이 세분화됨. 또한 국비보조의 경우 2018년 최대 1,200만원에서 2019년 9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 차량 구매 보조금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원 규모를 하향하는 등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주요국의 경우 구매보조 비율이 15~1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7%에 달하는 바, 향후 일몰까지 보조 비율에 대한 연도별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업체들이 일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충전시설의 경우 공용여부와 설치 대수에 따라 상이한 보조 기준이 마련되어 보조율 산정이 합리적임. 그러나, 설치 대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부터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하여 공동주택에 충전기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함. 이는 더욱 광범위한 전기차 이용자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됨.

- 오른 쪽 그림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 (www.ev.or.kr)에서 캡처한 전국 공용 충전기 설치 지도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용 충전기의 보급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음.

- 현재 (2019. 3. 22. www.ev.or.kr) 전국에 10,400개의 공용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 또한 정부가 전기차를 보유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개별 충전기도 상당한 숫자에 달함 (현재까지 보급된 누적 개별 충전기 숫자는 관련 부처에서 제시하지 못하였음. 2009년 한 해만 18,000기를 보급할 계획).

- 또한 정부는 정부가 계획한 급속 충전기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 예산 투입 목표 (환경부만 2022년까지 총 1만기)를 세우고 있음.

- 환경부에 의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2기의 급속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었고, 전국에 산재한 동사무소 등 수많은 공공기관에 설치되었음. 현대자동차가 SK네트웍스와 전국 주유소에 전기충전소 설치 협약을 맺는 등 민간 차원의 충전소 확보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1회 충전에 4~6 시간이나 걸리는 완속 충전기 보급에 현재와 같은 예산 (공용 기준 연 10,286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전기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어 국민에게 깨끗한 대기환경 제공이 가능하게 됨.

-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전기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과정에서 51%로 감축되며, 대기오염 배출량 역시 각 오염물질별로 약 54~98%가 감소되어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그러나 이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연료의 오염물질 배출 등 전주기적 (life cycle)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대기환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별 자체 재정형편과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단가 기준을 산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대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연도별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처는 지자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재원을 집행하고 있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전기자동차 구매자금 보조는 (국비 + 지방비)가 지원되며, 지자체 사업예산이 소진되거나 일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기초지자체 거주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자금보조를 신청하여 국비만 지원받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신청서 관리는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연중 보급사업 추진상황 확인을 통해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확인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 매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본 업무지침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구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정산관련자료 검토 등으로 집행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고 있음.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사업수행기관 등 각 운영주체별로 역할이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명문화되어 있음.

- 지원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 대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음. 추첨당일 직접 참석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추첨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계하여 공정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의 정산 검증결과 "오류 누락 현황 및 그 조치 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서 보조금 수급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와 보조금 반환, 폐배터리 반납 절차에 관해 수혜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음.

- 이전에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1)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 구매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추가 구매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연구기관의 연구목적 차량 구입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 완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및 예산집행실적 완료보고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관리대장과 충전인프라 구축 실적 관리대장을 통해 사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동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와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동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거주지 증빙서류,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출고자료를 받으며,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지침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산업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충전기 설치사업의 경우 전국에 걸쳐 공공 충전시설 인프라 보급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고, 정부가 급속 충전기 보급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1회 충전에 4~6시간이나 소요되는 완속 충전기 보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소의 급속한 확대는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정부의 의견을 인정하여 동 사업을 정상추진으로 판정함.

## 3-2 정책 제언

○ 주요국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비율이 15~1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7%에 달하는 바, 향후 일몰까지 보조 비율에 대한 연도별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보조금이 일몰되자 대표적 업체인 TESLA사가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등 비용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사업과 함께 동 사업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보조사업 아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충전서비스육성사업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완속충전기사업의 경우 산자부의 충전서비스육성사업과 지원 대상이 완속과 급속이라는 차이 외에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사중복성이 엿보임.

- 환경부의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국가(환경부)가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관리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18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 발표에 따르면, 사용 불가능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46%가 한달 이상 방치되는 등 관리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또한 환경부 계획대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2기의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으나 전력선의 인입이 지연되어 가동되지 않는 충전기도 다수 있음 (현황에 대해 환경부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 향후 환경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사업방식을 민간사업자 보조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환경부의 완속 및 급속 충전기 설치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급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지하철역사공기질개선대책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8.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3.2**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5.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지하철 역사내 공기질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와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br>·내역 사업으로 선정된 특정 역사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연차별 선정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br>·특정역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국고 보조금이 할당되도록,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내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22)'을 수립, 지하역사, 터널, 지하철 차량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의 일환임.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지하철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 사업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외부 유입에서 기인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외기 미세먼지 오염도 및 지하역사 구조적 특성상 유입공기에 대한 100% 필터링 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관리·지원 필요하다는 점 또한 인정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본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환기설비 교체, 자동측정망 설치 등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음

- 5년간 약 4천억 투자를 통해 미세먼지 오염도 13.3% 저감(79.6→70㎍/㎥)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22)'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임.
-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3~'17)을 통해 미세먼지, 라돈 등이 절감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하철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 운영기관의 부채가 약 4천억 원에 달하나 서민교통수단인 지하철 운임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제2차 대책('13~'17)은 대부분의 예산(87%, 828억중 721억)이 석면철거에 투자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고 보조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소요예산 조사에서 도출된 액수는 지자체나, 지하철공사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규모를 넘어서고 있음.

- 소요예산 조사에서 도출된 4천억원이라는 국고지원 필요액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고 보조액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하지만, 지자체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8,303백만원 | 백만원 | 19,998백만원 |
| | 33% | % | 32% |
| 자치단체부담 | 17,184백만원 | 백만원 | 42,535백만원 |
| | 67% | % | 68% |
| 민간단체부담*<br>(자부담)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합계 | 25,487백만원 | 백만원 | 62,533백만원 |
| | % | % | % |

○ 노후역사 환경개선공사 사업 대상으로 잠실새내역이 선정되었음.

- 잠실새내역은 1980년에 건설된 서울 제1기 지하철로, 설치 후 약 4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190%에 이르고 있어 미세먼지 오염도는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높아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국고 지원이 필요함.

- 향후에는 특정역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국고 보조금이 할당되도록 세부 사업내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공기질 개선은 친환경적인 여건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임.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방비 확보 등 자금 부담능력, 보조금의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정산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준수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을 부여하고 추진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지하철 실내공기질 자체 실태조사·평가 결과보고서, 사업 추진실적 등을 제출받아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집행내역 확인, 반환금 산정 등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 없음.

- 과거년도 설계단가 등을 고려하려 예산을 산정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 조사 등 실시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역사내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요금인상 등의 제약 등 여건상 소요 경비를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3-2 정책 제언

○ 지하철 역사내 공기질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와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지하역사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오염원인과 변화 추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특정역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할당되도록,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내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 및 환경표지 제도 운영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1.8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4.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9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9.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 추진<br>·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이 필요하므로 향후 보조비율을 차등화하거나,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근거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을 지급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당함.

- 보조사업의 목적은 녹색제품의 구매력 및 정보 제공 강화, 유통매장 모니터링,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과 관련된 교육의 실시,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등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지자체와 제조사, 유통사, 일반시민까지 다양한데, 잠재적으로는 후세대 일반국민까지 확대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는 정부의 당초 계획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녹색구매지원센터 모니터링,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역 사업 간 연계는 적절함.

○ 녹색구매지원센터를 기준으로 녹색소비 정보 제공, 녹색생활 실천교육, 녹색구매 모니터링, 협력사업 추진,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보조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의 성과지표 효과는 미흡함.

-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나,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수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 및 지역사회의 원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없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위협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반적인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하며,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필요하므로 50% 보조율은 적정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있으며,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 자치단체장이 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지방비 확보·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운영 지침’을 통해 교부절차 및 재원 집행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운영 지침’ 별도로 마련하여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있음.

-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자료보관,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의 단계별 집행점검에 대한 규정과 집행에 문제가 있을시 페널티 적용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연 2회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중간점검,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자료를 제출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일부 미흡하나 2019년 상반기 개정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

- 센터 평가결과 조치 기준 등 2019년 상반기 중 설치·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예산 집행, 정산, 보조금 환수 등의 규정에 대한 세부(안)이 제시되었음.

- 녹색구매지원센터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결과 국고보조금 부당청구 및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녹색구매지원센터 점검시 자치단체와 함께 녹색구매지원센터 사무국 간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법적 근거 및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고, 보조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지침의 대부분이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가 혼재함.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거나 지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지역의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신청을 받고, 자치단체가 대응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의 적극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사업의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17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이는 시설에 대한 평가 방식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환되어야 함.
- 사업에 대한 관리 기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은 누락되어 수정보완이 필요함.
- 현재의 성과관리는 전달체계에 대한 시설 단위 평가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 보조유형 | 지자체자본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2.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5.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9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본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필요성도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집행도 체계적으로 잘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어 정상추진으로 최종 판정함<br>· 본 보조사업은 2016년도 사업방식 변경으로의 평가에 대한 반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업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으로 본 사업 전반의 계획에서부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짐<br>· 본 사업의 사업근거는 전체 사업과 내역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효과성 제고에 대한 측면도 실적 및 성과지표 등이 사업내용에 부합되고 목표 달성률도 적절함<br>·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은 내역사업이 농어촌 폐기물 처리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방식 조정을 통해서 사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폐기물보조시설확충사업은 보조사업과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함

- 폐기물보조시설확충사업은 내역사업 모두 법적 근거가 명확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정과제와 정책방향과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의 목적이 부합되며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제시하였음

- 국정과제 61번과의 연계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에너지 종하배책 및 실행 계획 등의 국가사업과 본 사업과의 연계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사업이 타당함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의 직접 수혜자, 잠재적 수혜자의 범위가 기초보고서와 근거자료에 제시되지 않고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을 제시하고 있어 본 보조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대상자와 혜택 구체화가 요구됨

- 지자체별 설치시설인 만큼 시설수의 확충으로 1차적인 수혜대상인 지역주민과 잠재적인 수혜대상과 대상 확대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였을 때 증가하는 혜택을 외부 효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설치의 경우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 제안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한 내용은 연도별 사업성과를 토대로 하여 목표설정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됨

- 내역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목표에 부합됨.

- 보조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보조 사업이 2016-2018년까지의 연도별 사업목표계획 대비 달성률이 적절함

- 2개의 내역사업에 대한 시설설치 확충의 양적 제시를 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은 보조사업의 필요성이나 국가 보조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과 시설설치에 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요구됨

○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수행이 되고 있으며, 시급성이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됨

○ 농어촌폐기물처리설치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손실을 제시하고 있음.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사업 폐지가 가져올 구체적인 손실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규모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구성됨

- 현행 보조율이 법적 근거를 갖고,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설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써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시설설치에 대한 계획이 적절함

### 1-6 사회적 가치 실현

○ 본 보조 사업은 사회적 가치 10번 영역인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해당됨. 10번 영역은 구체적으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행하는 의무적 활동으로 본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절한 지침과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전예산협의 절차를 통해서 본 사업이 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결과보고서와, 추가 자료에서 제시한 자료에 50개의 지자체의 2019년도 사업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증빙자료를 통해서 2-1-①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확충 보조사업 집행과 관한 관리와 감독, 단계별 집행점검을 위한 절차와 규정들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고 실제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 증빙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의 실 집행에 대한 현황, 단계별 점검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서 사업실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점검 후 조치에 대한 내용이 제시하였으나 “조기집행노력”, “정상추진 노력”, “신속처리 독려” 등의 조치가 모호함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의 보조금 반환이나 중요재산 관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증빙자료가 제시되어 사업의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제시한 증빙자료가 구체적이고 사후관리 실제 확인 가능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연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규정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전체사업과 내역사업 간의 연계성도 높아 사업타당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내역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전체 사업과의 부합 정도가 적절하다고 평가됨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국정과제로서 사업의 당위성이 부여될 수 있고, 사업의 긴급성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적절하며, 장기적 측면에서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측면에서 사업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사업의 수혜대상 확장, 외부효과, 사업폐기시의 손실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타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해당사업의 성과지표는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지표라고 평가됨

○ 사업관리의 규정이나 지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증빙자료를 통해서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 불용액이 2015-2017년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지자체의 사업포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선정 시에 사업수행 의지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재고를 적극적으로 필요함

- 사업주체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발생한 불용액의 경우 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함

- 사업효율화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적정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 3-2 정책 제언

○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은 표전반적으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정책을 꾸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2년간 시설 설치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해당사업의 장애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서 본 사업의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하도록 함. 해당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적극적 홍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계획한 시설 설치가 되지 못해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환경부 |
|---|---|
| 사 업 명 | 환경교육 강화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93.9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6.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2.8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br>· 향후 '꿈꾸는 학교'의 예비비 항목의 비중은 줄이고 학교별 배정액의 비중을 높인 후, 사업의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함.<br>- 불용액이 발생하는 지역의 예산 편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10조, 25조에 근거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으며, 제17조에 근거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함.

- 내역사업 중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음.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환경은 민간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므로 국가사업이 타당함.

-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 교육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며, 미세먼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함.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다양하며, 해당 사업의 잠재적 수혜자는 온 국민이라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목적은 타당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구성이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학교지원, 환경교육센터 운영, 자연환경연수원 등 보조사업 등은 개별 내역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유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있음.

- 성과목표는 환경 교육 인원(만명)과 교육 전후 환경의식 태도 변화도(%)로 측정하고 있어 사업의 투입 측면과 산출 측면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수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 및 지역사회의 원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 기능으로 대체할 수 없고 학교를 통한 의무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 혹은 지역 사회 교육 기반 구축이 필요함.

-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가능성은 없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위협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전반적인 재정지원 규모는 적정하나, 자치단체 및 단위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과와 연계한 재정지원 방식이 적정함.

- 꿈꾸는 환경학교의 경우 재정지원 규모는 7.4억원으로 크지 않으나, 환경학교 16개교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 예비비의 비중이 큰 편임(15.8%). 이는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공간조성, 학교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위해 학교별 미배정액으로 남겨 두고 하반기에 학교별로 배분하였음.

- 그러나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라는 차원에서 예비비의 구성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연초 배정액을 전액 집행하고 중간 점검 등을 통해 배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6 사회적가치 실현

○ 해당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방비 확보 및 편성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사업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교부조건에 근거한 교부절차 등을 운영지침에 제시하였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관리함.

- 보조금에 대한 관리, 사용범위, 지도·감독 등을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 예산의 점검과 함께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집행이 적절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사업별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에서 보조금 반환 및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와 관련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음.

- 보조금 잔액시 반환 등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부당청구 및 부당수급에 따른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운영지침에 부정수급, 잔액발생시 반납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 증빙 서류 미비에 따른 국고 반환이 수행된 실적이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및 국가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자치단체 및 학교별 사업에 대한 관리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자연환경 연수원 등의 지정 운영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이 발생하는 지역의 예산 편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2 정책 제언

○ 환경 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교육부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의 다각화 및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환경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사업의 구성은 평면적이므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

- 또한 환경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및 단위 학교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사업 부진 등)의 마련이 필요함.

# 기관별 · 사업별 평가의견서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장년층취업지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고용안정장려금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73.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3.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6.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0.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2.8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5.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사업방식 변경<br>· 최근 3년간 사업예산의 불용액 규모가 커서 예산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br>· 사업예산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16년 7.7%, '17년 25.3%, '18년 5.5%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정규직 전환지원'에서 불용액(5,646백만 원) 규모가 매우 큼<br>· '정규직 전환지원'의 예산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주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사업개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보조사업은「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제 23조, 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여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 본 보조사업에서 시행하는 4개의 내역사업들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 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타당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보조사업은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지니며,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64번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직접적 수혜자)이 소재한 전국의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간접적 수혜자)도 전국에 분포하여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도모한다는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음

- 보조사업이 일·가정양립지원 단위사업에 속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내역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위사업의 명칭을 '고용안정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 보조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들은 사업의 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등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체인력뱅크 사업을 지원하여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의 근무혁신비, 혁신담당자 수당을 지원하여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정규직 전환지원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증가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사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보조사업은 당초 계획한대로 집행되었으나,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성과지표인 사업 종료 후 6개월 시점에 지원 대상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을 보면, 2017년 82.5%를 기록하여 목표치 97.6%에 미달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을 유지하거나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조치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조치를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2017년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라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조정하여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음

○ 탈산업사회에서 고용불안과 질 나쁜 일자리(indecent jobs)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여성취업자의 증가로 일·가정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고용과제로 부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본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보조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그리고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고용불안과 여성근로자의 취업 곤란,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사업의 사업예산은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였고, 내역사업들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3년간(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의 불용액 규모가 큼

- 사업예산 대비 불용액 규모는 '16년 7.7%, '17년 25.3%, '18년 5.5%를 기록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18년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에서 불용액이 5,646백만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컸으나, '19년에 동일 금액의 사업예산을 배정하였으므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개선 조치가 필요함

<보조사업 예산 규모>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17,847백만원 | 38,601백만원 | 42,300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민간단체부담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합계 | 17,847백만원 | 38,601백만원 | 42,300백만원 |
| | 100% | 100% | 100% |

<보조사업 불용액 규모>

| 구분 | 2016(결산) | 2017(결산) | 2018(결산) |
|---|---|---|---|
| 예산 불용액 | 7,223백만원 | 6,032백만원 | 2,122백만원 |
| | 7.7% | 25.3% | 5.5% |
| 예산 이용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예산 전용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사유* | ○ 2017년 예산불용 사유<br>-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7년 신설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유인 부족, 제도 도입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불용(집행률 87.4%)<br>- (정규직 전환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발생되는 기업부담에 비해 여전히 지원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참여가 미흡하여 불용(집행률 67.8%) | |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

| 사 업 명 | '18년 예산 (백만원) | '19년 예산 (백만원) | 증감 | |
|---|---|---|---|---|
| | | | | % |
| □ 고용안정장려금 | 38,601 | 42,300 | 3,699 | 9.6 |
| ①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10,751 | 10,950 | 199 | 1.9 |
|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1,488 | 1,488 | - | - |
| ③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 12,071 | 17,671 | 6,800 | 56.3 |
| ④ 정규직 전환지원 | 18,141 | 18,141 | - | - |

○ 내역사업들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보조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액보조금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 보조사업에서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있으며, 이를 보조사업 예산 규모 산정에 적절하게 반영함

<고용안정장려금 재정추계>

(단위: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 | '18 | '19 | '20 | '21 | '22 |
|---|---|---|---|---|---|
| 고용안정장려금 (민간경상보조) | 38,601 | 42,300 | 49,812 | 52,302 | 54,918 |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보조사업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
- 임신기 여성근로자 및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제고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모절차, 선정기준, 교부조건 등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음

<보조사업 수혜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 | | | | | | | |
|---|---|---|---|---|---|---|---|
| 1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 | 2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 | 3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 ⇨ | |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 사업주 | | 고용센터 심사위원회 | | | |
| 4 심사결과 통보 | ⇨ | 5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 ⇨ | 6 장려금 ·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 | | |
| 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 | | |

○ 고용노동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를 준수하여 법적합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재원을 교부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관한 적절한 집행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안정장려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고용안정장려금의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패널티 적용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의 반환, 중요재산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에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가 취해졌음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

| 연도 | 부정수급건수(개사) | 부정수급액(백만원) | 환수액(백만원) |
|---|---|---|---|
| 2015 | 11 | 19 | 34 |
| 2016 | 17 | 111 | 64 |
| 2017 | 31 | 176 | 95 |
| 합계 | 59 | 306 | 193 |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①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 ② 2배에서 5배까지의 추가징수 처분, ③ 최대 1년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병과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축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함

○ 고용안정장려금은 국정과제 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기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며 수혜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이 타당함

○ 고용안정장려금의 내역사업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은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고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함

○ 최근 3년간 불용액이 상당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여('16년 7.7%, '17년 25.3%, '18년 5.5%)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탈산업사회에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안정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지속되어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집행관리, 사후관리, 부정수급자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정수급가 발생하였음

## 3-2 정책 제언

○ 보조사업 예산에서 불용액 규모가 크며, 특히 '정규직 전환지원'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지원수준 개선 조치가 필요함

○ 보조사업이 일·가정양립지원 단위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내역사업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은 일·가정양립지원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고용안정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장려금의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고용유지지원금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6.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2.7**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4.0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0.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0.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동사업은 정상 추진으로 판정함<br>·동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br>·동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는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휴직 등 형태의 고용유지 조치 중에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동사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비롯한 2차적 수혜자의 범위도 어느 정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br>·동사업은 ’18년에 1,290명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사업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1.23.>

○ 동사업의 내용과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의 연계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음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동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동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1차적인 수혜자는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휴직 등 형태의 고용유지 조치 중에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임

- 특정 대상(연령, 성별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근로자의 생계보호 및 사업의 회생가능성)에 따른 적정 사업장으로 승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은 대체로 명확하고 할 수 있음
-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잠재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생계불안 해소 및 소비지출에 따른 내수증대, 향후 기업 시 회생에 따른 세제납부, 근로자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차적 수혜자의 범위도 어느 정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경영이 어려워 유급의 휴업·휴직조차도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속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사업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예비적 성격의 사업임

○ 동 사업의 목적은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용조정 대신 지원금을 받아 무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실업을 예방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표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사업의 내역사업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사업 등인데 이중 보조사업은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사업이며, '18년에 대규모 조선업 및 자동차 업종 등에서 무급 휴직을 통해 1,290명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은 경영이 어려워 유급의 휴업·휴직조차도 어려운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및 실업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금 외에 다른 정책 수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일시적 고용변동에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므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유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예비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15년까지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16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내역사업으로 조정·통합 운영 중에 있음

- 지원대상을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한정되고 있어 지원대상이 일반적이지 않아 유사 중복성, 조정 및 통합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의 규모는 최소 수준 및 산업구조 및 경기변동 등에 따른 탄력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현행의 사업 운영이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실업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18년 1일 최대 6만원, '19년 기준 최대 6.6만원)임

- 한도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급여기초 일금일액 상한액의 50% 수준임

○ 동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유급)'의 예비적·보충적 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장기적, 추상적 수요예측은 어려우며,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고용위기 등 현장의 수요가 있는 경우 편성·운영해야하는 지원금의 성격이 큼

○ 이러한 점을 고려한여 최소금액 제도를 유지하고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등 대체로 재정지원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해당 사항 없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동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임

○ 동사업은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공모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수혜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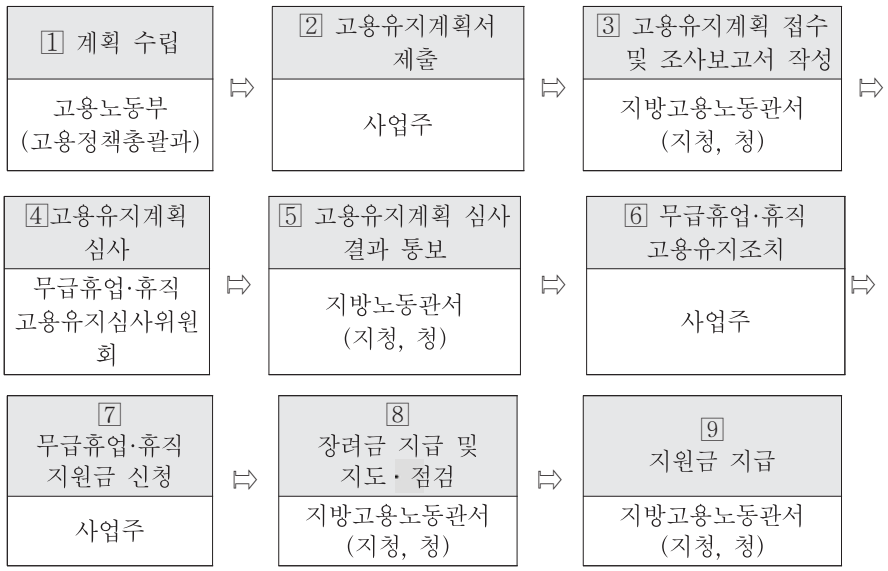

○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무급휴업 시 노동위원회 승인절차와 무급 휴직시 사전 노사합의 및 일정기간 유급의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활용이 우선되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음

○ 법령상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복직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보완적 성격의 제도로서 지방고용청 내 설치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선정됨

○ 이상과 같이 수혜자 선정은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017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동사업의 적정하고 내실있는 운영 지도 및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 사항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사업주에 대해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계획한 대로 이행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보조사업 집행은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지원금 지급후 감원방지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이 확인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포함) 및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보조사업 사후집행 역시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원금 지원기간 동안은 고용보험법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해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및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처리규정(예규 2015-111호)에 따라 1회 이상 지도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있음

- 고용장려금 지원기간 동안 1회 이상 지도 점검(불시) 실시하고, 고용보험시스템(자동알림)을 운영을 통해 해당 기간 내 지원제외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심대상자

로 통보 되는 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금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①지원받은 지원금 정액 환수 처분, ②2배에서 5배까지의 추가징수 처분, ③ 최대 1년까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병과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축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무급휴업휴직지원보조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가적으로 대체로 타당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 동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는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휴직 등 형태의 고용유지 조치 중에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동사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비롯한 2차적 수혜자의 범위도 어느 정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보조사업의 관리도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현재와 같이 정상 추진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9.1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9.6**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5.6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5.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9.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2.8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2.8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감축(46,700천원/약 5%)<br>·본 사업은 2018년부터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내역사업도 운영비 지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내역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br>·그러나 확대된 내역사업, 즉 중소기업 관리자 대상 교육, 피해자 대상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역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움<br>·본 사업은 직장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1차적 상담, 신속한 구제, 후속조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소관인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의 유기적 연계 등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br>·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직장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 비추어 지나치게 영세하고 1회성 사업이라고 판단됨. 또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상담실 주관의 단발성 추진은 그 효과성이 의문시됨. 본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상담소 별 성과관리 근거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상담외 내역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과관리에 대한 해당부처의 계획을 접수(여성고용정책과-1210)하여 감축 범위를 5%로 조정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본 사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상담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의 추진근거를 확보하고 있음(1.0)

○ 본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인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비 지원'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확인됨(1.5)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차별 등에 대한 심층 상담, 심리치료, 행정조치 지원 등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비교적 인정됨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과 홍보, 교육 등 역할을 통해 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공공성이 인정됨

○ 수혜자의 범위가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음. 직장내 성희롱, 고용평등,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는 잠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볼 수 없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018년부터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내역사업도 운영비 지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내역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확대된 내역사업, 즉 중소기업 관리자 대상 교육, 피해자 대상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역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본 사업은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 사례 상담 및 후속 조치를 연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현재 피해 유형별 상당검수 등 사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담건수,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상담 방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혜자들의 후속조치 연계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한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과의 연계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지자체의 직장맘지원센터 및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차별적으로 인정됨.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인정되나 현재 고용평등상담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역할 정의가 필요한 시점임

○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피해근로자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례를 신고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상담실 운영비는 1개소당 월185만원 규모로 인건비 지원하는 규모였으나, 18년부터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됨

○ 현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21개 민간단체에 대한 동일한 지원 금액 편성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상담 수요와 연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임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동 사업은 피해근로자들이 고용 단절을 겪지 않고 직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희롱, 성차별 근절과 성평등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업임.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참조)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해 지원요건(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직원 중 1명 이상이 상담원 채용, 해당 민간단체 시설로 상담사업을 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 등)에 적합여부를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

- 공개 모집 절차를 갖추고 선정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대체로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련 법에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 보조사업의 실집행 단계에 대한 점검,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및 개선조치를 실시한 사례가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규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하며 보조금법을 준용하여 보조금 취소 및 반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 절차 등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지 않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상담실 당 운영비가 월 185만원 수준으로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낮으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고용평등 상담실 운영지원 규정, 매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및 운영기관 부실 운영을 확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사업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나 내역사업의 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효과성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고용평등상담실은 기존의 상담 기능과 후속 조치 연계에만 집중하고 직장 관리자 교육,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성희롱, 성폭력 방지는 범정부 아젠다로 고용노동부 주관의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내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1차적 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 효율화를 추구하고 신속한 상담과 구제, 후속조치 연계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18년부터 시작된 내역사업인 사업장 교육,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은 고용평등상담실의 사업 영역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직장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1차적 상담, 신속한 구제, 후속조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소관인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의 유기적 연계 등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성희롱·성차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 비추어 지나치게 영세하고 1회성 사업이라고 판단됨. 또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이 높고, 효과적임

-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담외 내역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담실의 광역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담 접수, 구제 연계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추진이 필요함

- 현재 21개소 상담실에 대해 1명 수준의 인건비를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9.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0.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6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2.1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0.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5.8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9.3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 **총 평** | · **감축(20년 100백만 원,** 최근 3년 실집행률이 약 65%에 머물고 있으므로 19년 예산 대비 35%에 해당하는 100백만 원을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br>· 지난 보조사업연장평가(2015년, 2016년)에서 지적된 관리체계 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성과로 볼 수 있는 교육생 취업률이 평균 30%에 머물고 있는 등 사업조정 및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br>· 낮은 성과에 대한 원인 파악 등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검토할 데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br>· 제주도 지역의 일자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으며, 지급 대상 및 수당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을 통해 훈련비 지원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고 있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하고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제시된 상당수 조항의 권한과 사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있으며,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398조 >**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고용촉진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등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실업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실집행률이 2015년 68%, 2016년 53.5%, 2017년 79.1%, 2018년 61.2%(대면심사 일자 기준)에 머물고 있음

| 구분 | 부처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 | | | | | |
|---|---|---|---|---|---|---|---|---|---|---|
| | 예산 |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 이월액 | 교부 현액 | 집행액 (B)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B/A)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15 | 638 | - | 638 | 638 | - | 638 | 434 | - | 204 | 68.0 |
| 2016 | 437 | - | 437 | 437 | - | 437 | 234 | - | 203 | 53.5 |
| 2017 | 306 | - | 306 | 306 | - | 306 | 242 | - | 64 | 79.1 |

- 동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교육생 취업률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 내외에 머물고 있는 등 사업의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수료훈련생 수 | 수료 후 취업자 수 | 수료 후 취업률(%) |
|---|---|---|---|
| 2015 | 206 | 51 | 24.8 |
| 2016 | 128 | 39 | 30.5 |
| 2017 | 91 | 25 | 2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이양된 사업이며, 이양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됨

○ 하지만 지원 대상 축소에 따라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연장해야 할 만큼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 폐지 시 관련 법령 개정의 어려움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등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 폐지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인프라 등을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제주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국적 범위로 적용되고 있는 지원을 제외할 수 없으나, 타 세부사업과의 중복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부 기여하고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양사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법적으로 적정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동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고용노동부의 고시(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및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전산망(HRD-Ne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사업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된 만큼 사업 관리 및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통합관리지침 제5장(보조사업 집행관리)을 준수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

○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 사업의 집행관리 체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의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5장(보조사업 집행관리), 제6장(보조사업 사후관리)을 준수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적정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7장(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을 준수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HRD-Net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관리하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목적도 타당하나,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하고 유사 중복 문제 등 사업의 필요성도 낮음

- 실집행률이 저조하며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타 세부사업과 중복 문제도 있으며, 지원 대상 축소에 따라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난 보조사업연장평가(2015년, 2016년)에서 지적된 관리체계 개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 전체를 혁신적이고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 감축(최근 3년 불용액 35%를 적용하여 19년 예산 대비 20년 100백만 원 감축) 필요

## 3-2 정책 제언

○ 제주도 지역의 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66.6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47.1**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4.7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4.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6.1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2.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19.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5.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사업방식변경이 요구됨<br>·신중년 인구 및 실업자 수와 지자체 참여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어 사업수혜 범위가 비교적 넓고,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도 간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사업 수혜자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과관리체계 및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파급력이 크지 않으며, 실집행율 역시 2016년 88.1%, 2017년 87.9%로 높지 않음<br>·다만, 고용문제가 국가적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특히 신중년 대상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을 볼 때, 예산감축보다는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br>·내역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달리, 지원금 이외에 기관위탁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인 만 50세 이상 퇴직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에 두고 있음. 또한 간접적 수혜자인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두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 강제규정은 아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인 50세 이상 퇴직인력을「고용정책기본법」의 고령자 범위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만 50세 이상 퇴직인력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준고령 및 고령자의 일자리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이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내용이나 성격상 국가적 차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동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관됨

※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연차별 이행계획) '18년 1만명 → '19년 2만명 → '20년 3만명 → '21년 4만명 → '22년 5만명

○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만 50세 이상 퇴직인력이며, 간접적 수혜자는 비영리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임. 신중년 인구 및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 신청자 수나 참여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수준보다 직접적, 간접적 수혜자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신중년 퇴직인력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간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의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 볼 수 없음

※ 신중년(5060세대) 인구: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이며('17년 1,378만명, 생산가능인구의 31.3%), '27년 1,667만 명까지 증가 예상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목표는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시키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임

○ 동 사업은 2018년까지 1개의 내역사업('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내역사업을 추가하여 2개 내역사업으로 추진함('신중년 사회공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2015년 보조사업 평가결과 성과관리가 체계화되어있지 않아 사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이에 사업명칭을 「사회공헌일자리지원」을 「사회공헌활동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방식을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동 수행형태로 변경함

**<2015년 보조사업 평가 종합판정결과>**
현 단계에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주어져 있지 않음. 사업의 진행 초기이므로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해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속 추진의 근거가 없음.

※ 사업추진경위
'15년 사업명칭을 「사회공헌일자리지원」을 「사회공헌활동지원」으로 변경
'15년 중앙-지방자치단체 사업 공동 수행
'19년 사업명칭을 「사회공헌활동지원」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으로 변경
'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내 내역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

○ 성과관리체계, 성과지표 및 기타 제출된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사업파급력이 크지 않음

- 성과지표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참여자수' 및 '참여자 만족도'로 두 지표 모두 최근 4년간 목표치를 100% 달성함

| 성과지표 | 구분 | '15 | '16 | '17 | '18 | 측정산식 |
|---|---|---|---|---|---|---|
| 참여자수 | 목표 | 5,500 | 5,790 | 6,000 | 6,470 | 참여인원 |
| | 실적 | 5,805 | 5,928 | 6,081 | 6,647 | |
| | 달성도 | 105.5 | 102.4 | 101.4 | 102.7 | |
| 참여자 만족도 | 목표 | 80 | 82.4 | 84.0 | 85.0 |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
| | 실적 | 80 | 82.7 | 84.1 | 85.2 | |
| | 달성도 | 100.0 | 100.4 | 100.1 | 100.1 | |

- 참여자수는 동 사업은 연평균 5천 명대, 참여기관수는 1,100개 수준으로 아직까지 참여자나 참여기관 규모가 작아, 사업의 파급력이 크지 않음

※ 직접적 수혜자 수(참여자): '16년 5,928명 → '17년 6,081 → '18년 6,647명
※ 간접적 수혜자 수(참여기관): '16년 1,021기관 → '17년 1,208기관 → '18년 1,307기관
※ 50대 이상 실업자 추이: '16년 4분기 212천명 → '17년 4분기 216천명 → '18년 263천명

- 국정과제 상 연차별 이행계획 상 2018년 목표치인 1만 명을 달성하지 못함

※ 국정과제 연차별 이행계획
: '18년 1만명 → '19년 2만명 → '20년 3만명 → '21년 4만명 →'22년 5만명

○ 20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는 '보통'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고용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다가, 2014년부터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개발, 시행하기 위해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혹은 자체수행보다는 현재의 국가보조 운영방식이 적절함. 다만 현 단계에서는 사업성과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성과관리가 요구됨

○ 유사·중복사업 여부를 검토해볼만한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 구분 | 노인일자리 공익형(복지부)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고용부) |
|---|---|---|
| 목적 |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
| 지원내용 | 시간 당 6천원, 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 | 시간 당 2천원, 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
| 활동내용 | 어르신 말벗 나눔, 장애인 활동지원, 공공시설봉사 등 |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아동 학습지도, 재무 컨설팅 등) |

자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활동내용이 상이함

○ 사업이 폐지되었을 때 재정적 손실이 야기되지는 않으며, 사업 수혜자 수가 크지 않아 50대 이상 실업자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예산내역은 참여자 지원금(수당 및 활동실비), 운영기관 위탁비, 참여자 및 참여기관 교육비, 운영비로 구성되었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지원금과 위탁비(4% 범위내 운영비 사용)로 구성됨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달리, 위탁기관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위탁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신중년 사회공헌 내역사업비 중 운영기관 위탁비의 비중

: '16년 15.2% → '17년 12.6%→'18년 11.9% → '19년 12.3%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
| **세부사업: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 **7,002** | **7,948** | **8,559** | **21,821** |
| **□ 신중년 사회공헌** | **7,002** | **7,948** | **8,559** | **13,790** |
| ■ 참여자 지원금(수당 및 활동실비) | 5206 | 6251 | 6708 | 10944 |
| ■ 운영기관 위탁비 | 1062 | 1003 | 1018 | 1696 |
| - 상해보험 | | | | 96 |
| - 운영비(인건비, 공공요금, 집기류 유지보수, 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 구입비, 업무담당자 교육훈련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기타 경비) | | | | 1600 |
| ■ 참여자 및 참여기관 교육비 | 535 | 654 | 714 | 1110 |
| ■ 운영비 | 40 | 40 | 40 | 40 |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 | | **8,031** |
| ■ 지원금 | | | | 8,031 |
| ■ 위탁비(4%이내) | | | | |

○ 동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6년 7,002백만원, 2017년 7,948백만원, 2018년 8,559백만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 추세이며(2.8%), 특히 2019년에는 21,821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함(167%)

- 그러나 실집행율은 높지 않아, 2016년 88.1%, 2017년 87.9%이며, 불용액 규모는 2016년 830백만원, 2017년 960백만원(* 운영비 등 일부 미집행)으로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구분 | 예산 현액(백만원) | 실집행액(백만원) | 실집행률(%) |
|---|---|---|---|
| 2016년 | 7,002 | 6,172 | 88.1 |
| 2017년 | 7,948 | 6,988 | 87.9 |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지침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정함

<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별 재정분담 기준(총사업비 기준) >

| 재정자립도(%) | 50 미만 | 5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
|---|---|---|---|
| 국고보조율(%) | 80 | 70 | 60 |
| 지방분담률(%) | 20 | 30 | 40 |

<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별 재정분담 기준(총사업비 기준) >

| 재정자립도(%) |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
| 국고보조율(%) | 90 | 80 | 70 |
| 지방분담률(%) | 10 | 20 | 30 |

○ 중기재정추계('18~'22년)가 되어있음. 특히 한·중 등 FTA 피해보전대책 관련 여·야·정 합의('15.11.30.) 및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20년까지 지급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소요 예산에 반영함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가치 ⑦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과 ⑪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함이 인정됨

- 신중년 참여자들은 치매노인 돌봄, 지역아동 학습지도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기존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제3섹터 영역을 지원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지자체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 산정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 고용노동부는 지역 안배, 사업수요, 과거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하고, 지원인원 배정 후 사업규모 변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

- 지자체 간담회 및 지침 수립 전 지자체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 추진 여건 마련

○ 운영기관 선정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비영리기관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운영기관 자격 요건(①사회적경제기업, ②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③공공기관)만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운영기관의 선정에 따른 절차는 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이 적정하며, 관련 규정 및 지침, 계획서 등을 확인함

-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

- 지방자치단체는 운영기관의 지도점검을 매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참여자나 참여기관이 지침, 사회공헌활동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

- 고용안정정보망 및 e나라도움을 통해 매월 실집행 모니터링

- 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차년도 사업심사 및 감점 부여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적정하며, 관련 규정 및 지침, 계획서 등을 확인함

- 매 회계연도 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 수행중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정산) 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운영기관의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하고 고용노동부에 실적보고서를 제출

-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한 정산보고를 확인하고, 반납 절차 진행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며, 부정수금 관리체계가 적정함

- 운영기관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당·부정수급 행위 적발 시 사실조사 후 부정수급조사표를 작성, 고용노동부에 보고

  ※ 정기 현장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배정인원의 매 반기 10% 이상(전체 배정인원의 20% 이상) 선정·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운영기관의 지도점검을 매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

- 사업 참여자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급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동 사업의 참여를 2년간 제한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만 50세 이상 퇴직인력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나 성격상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연관규정을 찾을 수 있으나, 재정적 지원은 강제규정이 아님

○ 신중년 인구 및 실업자 수와 지자체 참여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어 사업수혜 범위가 비교적 넓고,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도 간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사업 수혜자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과관리체계 및 사업성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파급력이 크지 않으며, 실집행율 역시 2016년 88.1%, 2017년 87.9%로 높지 않음

- 다만, 고용문제가 국가적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특히 신중년 대상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을 볼 때, 예산감축보다는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예산내역은 참여자 지원금(수당 및 활동실비), 운영기관 위탁비, 참여자 및 참여기관 교육비, 운영비로 구성되었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지원금과 위탁비(4% 범위내 운영비 사용)로 구성됨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달리, 위탁기관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위탁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사업방식변경])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장애인고용장려금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5.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3**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9.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1.6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4.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4.3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정상추진<br>·본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br>·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분명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기관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8.10.16. 일부개정)

| |
|---|
|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18.5.29. 일부개정)

| |
|---|
|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2018.5.29. 일부개정)

| |
|---|
|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br>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br>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br>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br>4.「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에 의하여 대상별 지급단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대상별 장려금 지급단가>

|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
| 지급단가 | 300,000 | 400,000 | 500,000 | 600,000 |

○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고용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목적과 일치함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18.5월 현재 국내 등록장애인(15세이상)은 2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5.7%를 차지하나, 장애인 고용사정은 비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등 고용 사정이 열악함

※ 장애인 실업률('18.5월 기준): 6.6%(전국민 4.08%), 장애인 고용률: 34.5%(전국민 61.3%)

○ 이에,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타당한 사업임.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취업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여성 및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음.

○ '16년, '17년 사업목표 예산의 100%, '18년 11월 현제 93.3%의 집행률로 계획대비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18.11월 현재 6,739개소 116,442명(지급연인원 508,362명)에 대한 고용안정과 창출을 도모하였음.

○ 다만, 차등 지급 정도가 여성 및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시현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정액보조 지급과 상한선 설정이 단순하고 열악한 일자리 위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책으로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으나, 장애인 고용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은 고용장려금이 유일하며, 국고로 보조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유지는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증대와 고용안정을 기여하므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19년 예산은 최근 4개년 실적(지급연인원 및 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음.

- 예산: ('18년) 1,993억→ ('19년) 2,101억

- 최근 5개년 지급연인원 및 지급액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11월 |
|---|---|---|---|---|---|
| 지급연인원 | 412,744 | 435,592 | 459,173 | 473,411 | 508,362 |
| 지급액 | 141,729 | 148,224 | 158,155 | 164,095 | 185,848 |

○ 고용장려금 지출변동 내역에 지원 연인원 및 단가 등의 증가 등으로'20년도의 증가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제시되어 있으며, 향후 제반 사항을 고려한 재정규모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출변동 내역 >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 '19 | '20 | '21 | '22 |
|---|---|---|---|---|---|---|
| '17~'21계획 | 164,095 | 199,262 | 210,560 | 295,598 | 312,075 | 327,847 |
| (증가율) | | (21.4) | (5.7) | (40.4) | (5.6) | (5.1) |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6,000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2018년 11월 현재 508,362명의 지급연인원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5개년 지급사업체 수 및 지급연인원, 고용장려금 지급액>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11월 |
|---|---|---|---|---|---|
| 사업체 수 | 6,154 | 6,474 | 6,356 | 6,193 | 6,739 |
| 지급연인원 | 412,744 | 435,592 | 459,173 | 473,411 | 508,362 |
| 지급액 | 141,729 | 148,224 | 158,155 | 164,095 | 185,848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동법 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선정은 적정함.

- 동법 제16조에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이 아닌 위탁운영 방식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이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 또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기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고용장려금 지급실적을 매분기 보고받는 등 회계정산을 실시하는 등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음.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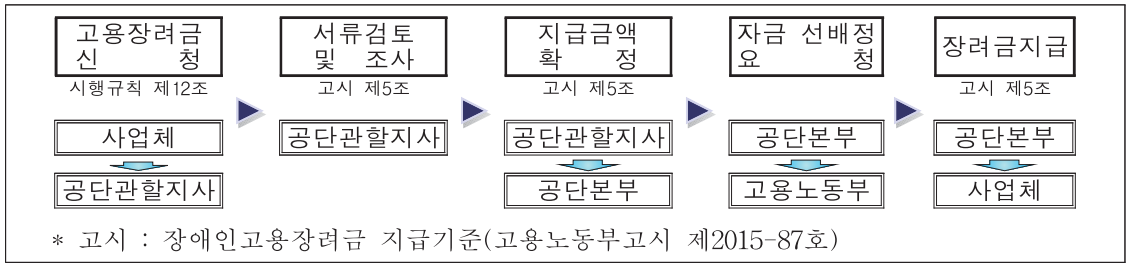


* 고시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7호)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억원, %)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예산현액(A) | 결산(B) | 집행률(B/A) |
|---|---|---|---|---|---|
| '16 | 장애인고용장려금 | 1,518 | 1,582 | 1,582 | 100.0 |
| '17 | 장애인고용장려금 | 1,561 | 1,641 | 1,641 | 100.0 |
| '18.11월 | 장애인고용장려금 | 1,993 | 1,993 | 1,858 | 93.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상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는 미흡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부정수급관련 외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부정수급 금액과 부정수급률이 감소하고 있음.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중지급 및 장애말소자 과오지급) 방지시스템 구축

| 기관 | 시스템 | 확인 사항 |
|---|---|---|
| 보건복지부 | 행복e음시스템 | 장애정보 확인 |
| 보건복지부 |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 근로자 확인 |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전산망 | 근무기간, 이중지급 확인 |
| 근로복지공단 | 노동보험시스템 | 이중지급 확인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이중지급 확인 |

- 근로복지공단(직장복귀지원금) 전산망 연계 주기개선(주1회→주2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고용장려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강화

<부정수급 금액 및 부정수급률 추이>

(단위: 개소, 백만원, %, '18.11.30. 기준)

| 구 분 | 지 급<br>업체수 | 지급액<br>(A) | 부정수급<br>업체 수 | 부 정<br>수급액(B) | 부 정<br>수급율<br>(B/A) |
|---|---|---|---|---|---|
| 2016년 | 6,356 | 158,155 | 8 | 179 | 0.11 |
| 2017년 | 6,193 | 164,095 | 8 | 153 | 0.10 |
| 2018년11월 | 6,739 | 185,848 | 11 | 46 | 0.02 |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본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기관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고용장려금 지출변동 내역에 지원 연인원 및 단가 등의 증가 등으로'20년도의 증가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제시되어 있으며, 향후 제반 사항을 고려한 재정규모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분명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상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는 미흡함.

## 3-2 정책 제언

○ 차등 지급 정도가 여성 및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시현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정액보조 지급과 상한선 설정이 단순하고 열악한 일자리 위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됨.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1.3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3.5**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2.1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7.5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6.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7.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8.5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0.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사업방식 변경(성과에 연계한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을 권함.)<br>·타 부처, 지자체 및 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비용 대비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br>·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나, 효과적 프로그램 등이 전제되어야 함.<br>·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년취업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2페이지 이상 작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비교적 명확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3호)에도 운영에 소요되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조항, 내용, 재·개정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생 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생 략)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년층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및 생산성 향상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음.

○ 중장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목적은 타당함.

- '브라보 4060 신중년' 정책 공약 실현* 및 국정과제 18. 성별·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4]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과 사회안정망 강화 과제**에도 반영

  * '17.8.8.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통해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하여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전직·재취업 단계)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

○ 40세 이상 중장년이 수혜자가 되므로 범위가 광범위하고 서비스 혜택이 명확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운영기관별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다만, 타 부처,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들과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비용 대비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016년 보조사업평가 외부 지적사항) 동 사업의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을 받은 중고령자들의 취업 여부, 일자리 특성, 그리고 창업 등의 성과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미약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급증하는 중장년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년취업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성과에 기반을 둔 지급 방식 검토 필요.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금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제시한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의 재정지원 메카니즘을 성과에 연계한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함.

- 예를 들어, 취업자 수 등의 성과지표와 연동한 재정지원 규모 책정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장년이 경력계획을 수립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와 개인 상담을 제공하고, 전직·재취업 관련 교육을 통해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일자리 알선 등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자치단체 보조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6조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등의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것으로, 적정함.

○ 민간 보조사업자 신규 지정시 공모에 의한 선정 절차 진행이 아래와 같이 마련되어 있음.

- (계획수립) 보조사업자 선정 예정 지역(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결정), 공고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공고 및 접수) 사업목적·내용, 선정기준, 보조금지원액, 일정 등을 포함한 공고문을 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심사 및 지정) 내부 검토 및 현장 실사, 선정 심사위원회(외부 위원 1/2 이상) 등을 통하여 적정 기관 선정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정산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가 부재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사업 실적보고 접수, 보조금 정산, 중요재산 관리, 정보공시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에 대한 조치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현장 점검, 업무분장 확인, 고용보험 조회, 이나라도움 부정수급 징후 확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17년 총 지원액 22,400백만원 중 집행잔액 1,383백만원, 부적정 지출 9백만원, 예치이자 11백만원 등 환수조치

○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임.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사업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중장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은 타당함.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님.

○ 그러나,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미래의 발전적인 사업 수행에 의문이 듦.

○ 성과기반(연계) 재정지원 규모 책정을 권함.

## 3-2 정책 제언

○ 미래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인구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 역시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중장년취업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경로의존성의 사업진행을 탈피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2.4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1.4**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8.0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2.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0.4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0**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3.5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노사민정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업역량이 강화되고 보다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의 변경이 요망됨.<br>·지자체 단위별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사업임. 2005년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성과 창출이 확인됨. 다만, 지역노사민정 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보조사업운영체계 구축이 요망됨.<br>·행정 및 재정역량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정착시키고, 중앙정부는 참여 미진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의 전략화가 필요함. 소규모 사업에서 차등보조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차등보조율 적용시 합리적 기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br>·지자체의 세입 및 사업 운영역량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보조사업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지역노사민정 협력체계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사업방식 개편이 요망됨. | | | | | |

# 평가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 국고보조사업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인정됨.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노사협력을 위한 정책지원의 핵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범위내에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행정 및 정책사항들은 지자체의 업무영역과 거리가 있음. 전형적인 중앙정부의 기능이지만 기업활동 및 고용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들을 지자체에 위탁 대행할 필요성이 인정됨.

○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장려적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됨. 다만, 2005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의 내용에서 의미있는 변화와 구체적 성과 창출에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매년 유사한 수준에서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주체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노사단체,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용자, 주민이 직·간접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지자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회의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협의체의 각종 행사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소규모 영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사업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사업참여 지자체 수가 증가하여 지자체별 지원금액이 불안정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영세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매년 80여개 지자체에 대해 2천만원 정도의 소규모 보조사업비를 지원함. 이러한 소규모 영세 보조사업에서 사업의 구체적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또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지자체 수가 2005년 71개에서 2018년 152개로 증가하였음. 다만, 최근 3년동안에는 협의회 설치 지자체 수가 정체된 경향이 있음.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지자체는 2015년 77개에서 2018년 83개의 소폭 증가에 그쳤음.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협의회 설치 운영이 형식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현재와 같은 정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지향하는 보조사업 효과의 전국적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일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정착이 된 지자체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자체 수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주요 고용·노동 현안을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 논의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지방세입의 구조적 특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동일한 관점에서 차등지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이 시작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노사민정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사업운영체계를 전략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정착이 되어 있는 대도시 등 지자체의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 파트너십 구축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협의회 구축 초기단계 지자체에 국한하여 협의회 운영, 파트너십 구축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등과 같이 사업운영방식의 전략성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을 통해 중앙단위의 주요 고용·노동 현안을 지역단위에서 적극 논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규모 예산지원에서, 중앙단위의 지원이 필요한 맞춤형 사업유형을 개발하여 사업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일정규모 이상 전략적 지원과 지자체의 자체 사업 운영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산정의 합리성, 협의회 운영실적 및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지원함. 하지만, 매년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 지자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원지원 금액은 소규모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소규모 보조사업에서는 성과 대비 재정지원 규모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협의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152개인데 2018년 보조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80개임. 지자체 평균지원 단가 2천만원(평균적으로 광역 49백만원, 기초 13백만원)으로 신청 대비 54.8% 지원수준에 그침.

○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략적인 지자체 및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의미있는 규모의 집중적인 사업비 지원이 요망됨.

○ 지자체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광역 45~55%, 기초 75~85%이며,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국고보조율을 차등적용함. 장려적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80%를 적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전략적인 사업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사업성과와 책임성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국고보조율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소규모 보조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단위별로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

○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p 단위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음. 시행령에서는 10%, 15%, 20% 단위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등보조율 적용 조항**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 1-6 사회적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노사민정이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진흥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의의가 부분적으로 인정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사업공모를 통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업비 지원 지자체를 선정함. 매년 유사 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규모 예산 사업에서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음.

○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지자체는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계속 남아 있게 됨.

○ 소규모 예산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워크숍과 담당자 교육, 전문가 세미나 등의 행사들이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음.

○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자 선정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자체 집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 소규모 지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경상적 행사 지출과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에서 특별한 쟁점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음.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집합적 행사 사업이 많고 사업참여자 개인에게 직접적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쟁점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2005년도부터 지속되어온 소규모 영세 보조사업임. 2000년대 초반 상황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진흥 역할이 중요하였음.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노사민정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여전히 중요함.

○ 하지만 매년 소규모 예산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전략적인 비전-미션체계 구축·운영과 의미있는 수준에서의 전략적 성과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지자체의 지원 규모가 소액이지만, 지역 경제주체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노사단체,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용자 주민이 직·간접적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협의회를 통해 지역에서 중앙단위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소규모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관리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단위의 사업을 관리해야할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취약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망됨.

### 3-2 정책 제언

○ 사업 도입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전국 지자체의 사업운영 역량을 진단하고,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노사민정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전략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가 달성되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수준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예산총량이 제한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 역량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에서 한시적 일몰규정을 적용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역할은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분야 혹은 업종별 노사관계의 사각지대를 식별하고 지자체의 자생적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의 전략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보험기금)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7.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5.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br>· 환노위 '17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목표대비 가입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 다수 발생하였으나 '18년은 불용액은 행정비용 절감을 제외하면 거의 없음<br>· '18년 12월말 현재 집행률도 99.7% 달성함. 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정상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br>·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정부-기업의 3자 가입구조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br>·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국적 사업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br>· 지자체별로 많은 청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성격이 유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수급을 금지하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등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제25조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지속적으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고착화되는 가운데 에코세대인 20대 후반 청년층이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하여 구직경쟁 격화, 청년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많으나 사회보상체계 왜곡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미취업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에는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도라 판단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정과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주요과제로 목적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정부-기업의 3자 가입구조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해,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2년 또는 3년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 목적인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각 적립주기별로 고용유지 중인 청년 및 기업을 지원하도록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음

<지원기간 및 방식>

| 【2년형】 | 【3년형】 |
|---|---|
| ①(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br>②(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br>③(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 정부로부터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순지원금 100만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br>→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마련 | ①(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납입 (매월 16.5만원)<br>②(정부→청년) 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br>③(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 정부로부터 3년 7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 (순지원금 150만원)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br>→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마련 |

○ 동 사업은 미취업청년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동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계획대로 추진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과지표인 고용유지율을 1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원효과>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효과(「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산기대, '17년))
- (청년 측면) 취업 소요기간 약 5개월 단축
  * 청년공제 참여 청년의 입직기간은 평균 5.91개월로, 전체평균 11.2개월 대비 약 5개월 단축
- (기업 측면) 신규근로자 채용 증대 효과
  *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69.7%로, 도움이 안된다(7.8%)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장기근속<1년이상 근속비율>) 청년공제 78.4% > 일반 중소기업 48.6%

< 재직청년의 근속기간 분석 >

| | 소 계 | 1년 미만 근속 | 1년 이상 근속 |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1,076,692명 (100%) | 553,821명 (51.4%) | 522,871명 (48.6%) |
| 청년공제 가입 청년** | 19,837명 (100%) | 4,290명 (21.6%) | 15,547명 (78.4%) |

* '16년 고용보험 취득(계약직 제외)한 청년(15~34세, 5~3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상실 여부를 통해 근속기간 추적 (고용보험 DB)

** '18.6월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율 (단, 가입 후 1년 미도래자는 모수에서 제외) (중진공 DB)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청년 및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여,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년 또는 3년간 청년의 공제부금 적립을 통한 안정된 자산형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민간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정책사업이라 판단됨

○ 특히, 대기업 또는 공기업 선호현상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안정된 일자리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여, 기업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을, 기업에는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이중 일부를 청년에게 적립)하는 사업집행 구조상 유사 중복사업이 없는 고유의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단체보조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백만원 | 209,391백만원 | 423,157백만원 |
| | % | 100% | 100% |
| 민간단체부담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합계 | 백만원 | 209,391백만원 | 423,157백만원 |
| | % | 100% | 100% |

○ 본 사업은 정규직 취업 후 청년-정부-기업 3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공동가입하여 청년 본인이 2년(매월 12.5만원) 또는 3년간(매월 16.5만원)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정부(일반회계)가 2년형 900만원, 3년형 1,800만원을 공동적립하고

- 기업은 정부로부터(고용보험기금) 2년간 500만원을 지원받아 그중 400만원을, 3년간 700만원을 지원받아 그중 600만원을 청년의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임

- '18년 예산은 사업별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18년 예산은 신규가입자 11만명, 기존 가입자 4.5만명의 예상 고용유지율과 지급 회차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목표인원 및 예산액>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 '16년(시범사업) | '17년 | '18.11월말 | '19년 |
|---|---|---|---|---|---|
| 사업규모 | 계획 | 10,000 | 55,000 | 110,000 | 100,000 |
| | 실적 | 5,217 | 40,170 | 102,088 | - |
| 예산 | 일반회계 | - | 70,915 | 216,400 | 573,975 |
| | 고보기금 | - | - | 209,391 | 423,157 |
| | 합계 | - | 70,915 | 425,791 | 997,132 |

* '16년은 별도의 편성 없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시범사업 실시
* '17년 고보기금(기업지원금)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혼재 편성, '18년부터 분리편성

<18년~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재정계획>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 '18 | '19 | '20 | '21 | '22 |
|---|---|---|---|---|---|---|
| 사업규모 (명) | 2년형 | 9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3년형 | 20,000 | 50,000 | 50,000 | 50,000 | - |
| 예산 (백만원) | 일반회계 | 216,400 | 596,288 | 883,771 | 1,054,201 | 1,074,500 |
| | 고보기금 | 209,391 | 441,127 | 554,141 | 569,173 | 569,612 |
| | 합계 | 425,791 | 1,037,415 | 1,437,912 | 1,623,374 | 1,644,112 |

* 3년형은 '18추경부터 실시, '21년까지 한시사업임

##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청년이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실질적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자원 개발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은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 고용유지, 자산형성을 통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조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고용센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없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고용센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센터)는 운영기관 관리 및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월 단위로 집행 및 가입실적을 관리하여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혜자의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기업의 40%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등으로 충실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지원을 받은 청년과 기업 중에는 부정수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실시기업 전부에 대해 수시 현장지도와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부정지출·수급 방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제제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참여자 모집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일반용역비는 별도의 정산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 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액 환수하는 등 보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사후절차 및 절차규정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2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38건(일반회계 16,500천원, 고보기금 10,600천원)으로, 부정수급 발생 사유는 사전근로 및 허위서류 제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①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과 참여제한, 부정수급 기업에 대하여는 ①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과 참여제한 ②2배에서 5배까지의 추가징수 처분, ③최대 1년까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병과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축소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부정지출·수급 방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제제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대규모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전국적 사업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자체별로 많은 청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수급이 금지되는 다른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일선 담당자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미취업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에는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 판단되어 정상추진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정부-기업의 3자 가입구조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부정지출·수급 방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제제조치 등으로 부정수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국적 사업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자체별로 많은 청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성격이 유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수급을 금지하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조차 취업이 어려워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노동취약계층의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환노위 '17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목표대비 가입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 다수 발생하였으나

- '18년 12월말 현재 집행률도 99.7% 달성함. 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효과가 확실하여 정상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 보조유형 | 민간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7.7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65.9**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7.1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25.0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22.8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1.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8**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7.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4.3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3.5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7.0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정상추진<br>· 환노위 '17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목표대비 가입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 다수 발생하였으나 '18년은 불용액은 행정비용 절감을 제외하면 거의 없음<br>· '18년 12월말 현재 집행률도 99.7% 달성함. 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정상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br>·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정부-기업의 3자 가입구조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br>·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국적 사업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br>· 지자체별로 많은 청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성격이 유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수급을 금지하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등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제25조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지속적으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고착화되는 가운데 에코세대인 20대 후반 청년층이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하여 구직경쟁 격화, 청년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많으나 사회보상체계 왜곡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미취업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에는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도라 판단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정과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주요과제로 목적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정부-기업의 3자 가입구조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동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해,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2년 또는 3년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 목적인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각 적립주기별로 고용유지 중인 청년 및 기업을 지원하도록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음

<지원기간 및 방식

| 【2년형】 | 【3년형】 |
|---|---|
| ①(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br>②(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br>③(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 정부로부터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순지원금 100만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br>→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마련 | ①(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납입 (매월 16.5만원)<br>②(정부→청년) 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br>③(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 정부로부터 3년 7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 (순지원금 150만원)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br>→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마련 |

○ 동 사업은 미취업청년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동 사업내용과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계획대로 추진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과지표인 고용유지율을 1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원효과>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효과(「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산기대, '17년))
- (청년 측면) 취업 소요기간 약 5개월 단축
  * 청년공제 참여 청년의 입직기간은 평균 5.91개월로, 전체평균 11.2개월 대비 약 5개월 단축
- (기업 측면) 신규근로자 채용 증대 효과
  *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69.7%로, 도움이 안된다(7.8%)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장기근속<1년이상 근속비율>) 청년공제 78.4% > 일반 중소기업 48.6%

< 재직청년의 근속기간 분석 >

| | 소 계 | 1년 미만 근속 | 1년 이상 근속 |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1,076,692명 (100%) | **553,821명 (51.4%)** | **522,871명 (48.6%)** |
| **청년공제 가입 청년**** | 19,837명 (100%) | **4,290명 (21.6%)** | **15,547명 (78.4%)** |

* '16년 고용보험 취득(계약직 제외)한 청년(15~34세, 5~3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상실 여부를 통해 근속기간 추적 (고용보험 DB)

** '18.6월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율 (단, 가입 후 1년 미도래자는 모수에서 제외) (중진공 DB)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청년 및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여,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년 또는 3년간 청년의 공제부금 적립을 통한 안정된 자산형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민간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정책사업이라 판단됨

○ 특히, 대기업 또는 공기업 선호현상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안정된 일자리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여, 기업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을, 기업에는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이중 일부를 청년에게 적립)하는 사업집행 구조상 유사 중복사업이 없는 고유의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민간단체보조

| 구분 | 2017(결산) | 2018(예산) | 2019(예산) |
|---|---|---|---|
| 국고보조금 | 31,434백만원 | 214,400백만원 | 571,475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민간단체부담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합계 | 31,434백만원 | 214,400백만원 | 571,475백만원 |
| | 100% | 100% | 100% |

○ 본 사업은 정규직 취업 후 청년-정부-기업 3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공동가입하여 청년 본인이 2년(매월 12.5만원) 또는 3년간(매월 16.5만원)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정부(일반회계)가 2년형 900만원, 3년형 1,800만원을 공동적립하고

- 기업은 정부로부터(고용보험기금) 2년간 500만원을 지원받아 그중 400만원을, 3년간 700만원을 지원받아 그중 600만원을 청년의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임

- '18년 예산은 사업별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18년 예산은 신규가입자 11만명, 기존 가입자 4.5만명의 예상 고용유지율과 지급 회차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목표인원 및 예산액>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 '16년(시범사업) | '17년 | '18.11월말 | '19년 |
|---|---|---|---|---|---|
| 사업규모 | 계획 | 10,000 | 55,000 | 110,000 | 100,000 |
| | 실적 | 5,217 | 40,170 | 102,088 | - |
| 예산 | 일반회계 | - | 70,915 | 216,400 | 573,975 |
| | 고보기금 | - | - | 209,391 | 423,157 |
| | 합계 | - | 70,915 | 425,791 | 997,132 |

* '16년은 별도의 편성 없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시범사업 실시
* '17년 고보기금(기업지원금)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혼재 편성, '18년부터 분리편성

<18년~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재정계획>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 '18 | '19 | '20 | '21 | '22 |
|---|---|---|---|---|---|---|
| 사업규모 (명) | 2년형 | 9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3년형 | 20,000 | 50,000 | 50,000 | 50,000 | - |
| 예산 (백만원) | 일반회계 | 216,400 | 596,288 | 883,771 | 1,054,201 | 1,074,500 |
| | 고보기금 | 209,391 | 441,127 | 554,141 | 569,173 | 569,612 |
| | 합계 | 425,791 | 1,037,415 | 1,437,912 | 1,623,374 | 1,644,112 |

* 3년형은 '18추경부터 실시, '21년까지 한시사업임

### 1-6 사회적가치 실현

○ 본 사업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청년이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실질적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자원 개발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은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 고용유지, 자산형성을 통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조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고용센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없음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고용센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센터)는 운영기관 관리 및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월 단위로 집행 및 가입실적을 관리하여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혜자의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기업의 40%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등으로 충실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지원을 받은 청년과 기업 중에는 부정수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실시기업 전부에 대해 수시 현장지도와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부정지출·수급 방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제제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참여자 모집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일반용역비는 별도의 정산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 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액 환수하는 등 보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사후절차 및 절차규정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최근 2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38건(일반회계 16,500천원, 고보기금 10,600천원)으로, 부정수급 발생 사유는 사전근로 및 허위서류 제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①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과 참여제한, 부정수급 기업에 대하여는 ①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과 참여제한 ②2배에서 5배까지의 추가징수 처분, ③최대 1년까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병과하여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축소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부정지출·수급 방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제제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대규모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전국적 사업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자체별로 많은 청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수급이 금지되는 다른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일선 담당자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미취업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에는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 판단되어 정상추진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정부-기업의 3자 가입구조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3-2 정책 제언

○ 부정지출·수급 방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제제조치 등으로 부정수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국적 사업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자체별로 많은 청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성격이 유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수급을 금지하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조차 취업이 어려워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노동취약계층의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환노위 '17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목표대비 가입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 다수 발생하였으나

- '18년 12월말 현재 집행률도 99.7% 달성함. 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효과가 확실하여 정상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평가요약표

| 기 관 명 | 고용노동부 |
|---|---|
| 사 업 명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 보조유형 | 지자체경상보조 |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83.5 |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55.0** |
| 1-1. 보조사업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 3.0 |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6.2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16.6 |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19.2 |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7.0 |
| 1-6. 사회적가치 실현 | 3.0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8.5** |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10.0 |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5.0 |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5.0 |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8.5 |

| 구 분 | 즉시 폐지 | 단계적 폐지 | 통폐합 | 감축 | 사업방식 변경 | 정상 추진 |
|---|---|---|---|---|---|---|
| | | | | | ○ | |
| 총 평 | · **사업방식변경**<br>· 사업의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취업의 질적 측면(급여 수준, 근속기간 등)에서 사업효과성이 낮음<br>· 성과가 낮은 이유로 취업능력 향상 미흡, 교육 및 훈련과정의 단순함, 훈련기관 선택 제약 등이 지적되고 있음<br>· 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개별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실제적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 |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로 고용정책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26조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을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위탁관리기관 운영 등이 제시되고 있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26조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정신적 장애,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용촉진법 및 직업안정법에 제시된 상당수 조항의 권한과 사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있으며,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47조 >**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

## 1-2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 고용촉진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등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명확함

○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혜택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명확함

< 지원 대상 >

- 패키지Ⅰ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기타 특정취약계층*
  * 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청년 니트족,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등
- 패키지Ⅱ : 청·장년층
  · (청년층) 18~34세(소득 무관)
  ·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 지원혜택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비고 |
|---|---|---|---|---|
| Ⅰ 유형 | 참여수당 25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만원(자부담 최대 10%)<br>훈련수당: 월 28.4만원 | 청년구직 촉진수당 :30만원 (3개월) | 취업성공수당:<br>3개월 근속: 30만원<br>6개월 근속: 40만원<br>12개월 근속: 80만원 |
| Ⅱ 유형 | 참여수당 20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200만원(자부담 5~50%)<br>훈련수당: 월 28.4만원 | 청년구직 촉진수당 : 30만원 (3개월) | |

## 1-3 보조사업의 효과성

○ 단위사업인 제주이관업무지원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기준 취업률이 50% 내외여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 가중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목표대비 달성률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① 고용센터 구직등록자 취업자 비율(%) | 0.3 | 고용센터 구직등록자 취업자비율: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자수/구직등록자수*100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37 |
| | | | 실적 | 신규 | 신규 | 40 | |
| | | | 달성률(%) | | | | |
| ②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기준 취업률(%) | 0.3 | (취업자수/사업참여 종료자수)×100<br>* 연도말 기준 실적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45.0 |
| | | | 실적 | 39.1 | 45.7 | 46.5 | 56.7 |
| | | | 달성률(%) | | | | |

○ 보조사업의 사업비는 사업 참여자가 단계별(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로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하는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업자의 급여 수준이 낮고 근속기간이 길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됨

-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자의 급여가 낮고 근속기간이 길지 않은 원인으로 “국비 지원 강의로 연명하는 학원이나 건당 20만~150만원인 취업 알선 수수료를 노리는 민간 위탁업체가 취성패 예산중에 자기 몫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현장에 대한 평가보다 취업률 중심으로만 평가하다 보니 일단 보내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음(중앙일보, 2018.11.12.)

- 서울연구원(2015)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약 40%에 불과했고, 불만족한 이유로 취업능력 향상 미흡, 교육 및 훈련과정의 단순함, 훈련기관 선택 제약 등이 지적되었음(한국일보, 2016.08.18.)

- 대부분 기업과 직접 연계하는 방식보다는 구인 업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조선비즈, 2017.03.11.)

### 1-4 보조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이양된 사업이며, 이양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됨

○ 또한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연장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상당한 노력이 요구됨

### 1-5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은 인정됨

### 1-6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부 기여하고 있음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양사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법적으로 적정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의 누수방지를 위해 참여수당이나 취미형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유인을 줄이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고용노동부에 있으나, 동 사업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된 만큼 사업 관리 및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

### 2-3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5장(보조사업 집행관리), 제6장(보조사업 사후관리)을 준수한 내부 규정(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적정함

### 2-4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통합관리지침 제7장(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을 준수한 내부 규정(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함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3-1 종합 평가

○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목적도 타당하나,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낮으므로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함

## 3-2 정책 제언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략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 한국노동연구원(2017,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실제적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취업을 원하는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현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후자의 방향은 양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계속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자의 방향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9년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Ⅱ)